



2013  
여성기업 백서

## • • 발간사

우리나라는 고속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문화적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함께 사회 각 부문에서 우수한 여성인재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기업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여성기업체 수는 매년 증가하여 130만개를 넘어서서 전체 사업체의 38%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성장의 한계점에 다다른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은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에서부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조경제시대의 성장원동력인 여성기업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여성기업육성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성은 감성제품과 디자인과 같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강점을 나타냄으로써 경제위기와 성장 침체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인력입니다.

여성기업에게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기업에 대한 정확한 현황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희 여성경제인협회에서는 여성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여성기업 백서」를 격년으로 발간하여 여성기업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여성기업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조명함으로써 발전과제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2013 여성기업 백서」에서는 여성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여성기업의 다양한 경영활동 및 지원제도와 같은 구체적인 여성기업의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특히 ‘창조경제’라는 시대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 여성기업인들의 잠재력과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선진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우리나라 여성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주요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여성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기업백서」 발간을 통해 여성기업인과 여러 정책 수요자에게 여성기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본 「2013 여성기업백서」가 향후 정부의 여성기업정책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다양한 관심과 연구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4. 2.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이 민 재



## 발간사

### 1부 총론

#### 제1장 서론

- 1. 배경 ..... 3
- 2. 구성 및 내용 ..... 4

#### 제2장 여성기업에 대한 이해

- 1. 여성기업 정의 ..... 6
- 2. 여성사업체 현황 ..... 8
- 3. 여성기업의 특성 ..... 11

#### 제3장 여성기업 관련 법률 현황

- 1. 국내의 여성기업 관련 법률 현황 ..... 18
- 2. 해외의 여성기업 관련 법률 현황 ..... 28

### 2부 여성기업의 현주소

#### 제1장 여성기업 동향

- 1. 여성 창업동향 ..... 39
  - 2. 여성기업 일반현황 ..... 46
-

3. 여성기업 고용현황 .....	53
4. 여성기업 재무현황 .....	57
5. 여성기업 수출 및 투자활동 .....	61
6. 교육 및 연수.....	63
7. 여성기업 애로현황 .....	64
제2장 해외 여성기업 동향	
1. OECD 여성경제 활동 현황 .....	70
2. 해외 여성기업 현황.....	79
<b>3부</b> 여성기업 지원정책 현황 및 성과	
제1장 국내 여성기업 지원정책 현황	
1. 여성기업 지원정책 방향.....	99
2. 주요 지원기관 현황.....	107
제2장 국내 여성기업 지원사업 성과	
1. 개요 .....	126
2. 중앙부처 여성기업 지원사업 성과 .....	129
3.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사업 성과.....	174
제3장 해외 여성기업 지원정책 현황	
1. 미국의 여성기업지원 .....	177
2. 유럽연합(EU)의 여성기업지원 .....	183
3. 영국의 여성기업지원 .....	187

4. 독일의 여성기업지원 .....	190
5. 스웨덴의 여성기업지원 .....	195
6. 핀란드의 여성기업지원 .....	198
7. 호주의 여성기업지원 .....	200
8. 일본의 여성기업지원 .....	202
9. 각국의 여성기업 지원정책 비교 .....	207

## 4부 여성기업 발전과제와 전략

### 제1장 여성기업 발전과제

1. 경제환경의 변화 .....	213
2. 여성기업 발전과제와 전략방향 .....	215

### 제2장 여성창업 촉진과제

1. 여성기업가정신의 정립과 사회적 확산 .....	221
2. 여성기업의 유망창업분야 및 고부가가치 창업 유도 .....	225
3. 준비된 창업유도로 성공률 제고 .....	246
4. 전문 여성인력의 창업 촉진 .....	262
5.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 촉진 .....	267
6.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확대 .....	278
7. 여성창업에 대한 홍보 강화 .....	285

### 제3장 여성기업 육성과제

1. 여성기업 마케팅 플랫폼 구축 및 지원 확대 .....	288
2. 여성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	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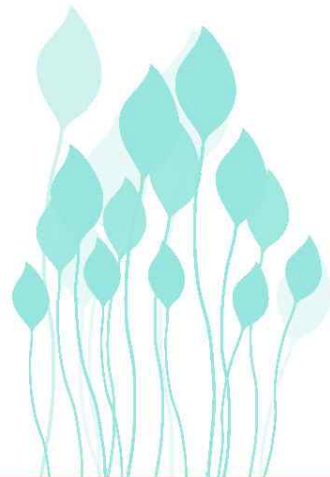
---

- 3. 여성기업의 네트워크 및 혁신역량 강화 ..... 308
- 4. 여성친화 전문분야로 구조전환 ..... 314

#### 제4장 여성기업지원 인프라 확충 및 재정비

- 1. 여성기업관련 제도 및 법률 검토 ..... 318
- 2. 여성기업 통합 정보망 고도화 ..... 334
- 3. 여성기업 정책연구원 설립 ..... 337
- 4. 여성기업 정책자금 접근성 제고 및 공제조합 설립 운영 ..... 343
- 5.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장기 발전전략 ..... 357
- 6.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혁신전략 ..... 370

- 별첨 ..... 379
- 표목차 ..... 489
- 그림목차 ..... 4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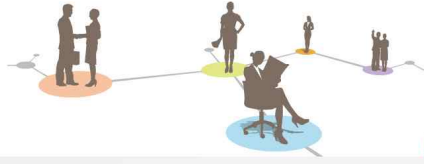




그래픽으로 보는  
여성사업체 현황







# 국내 여성사업체 수

그래픽으로 보는  
여성사업체 현황

여성사업체 중 전 산업  
**1,306,148**



우리가 여성 사업체 수는 총 1,306,148개로  
전체 사업체 중 **3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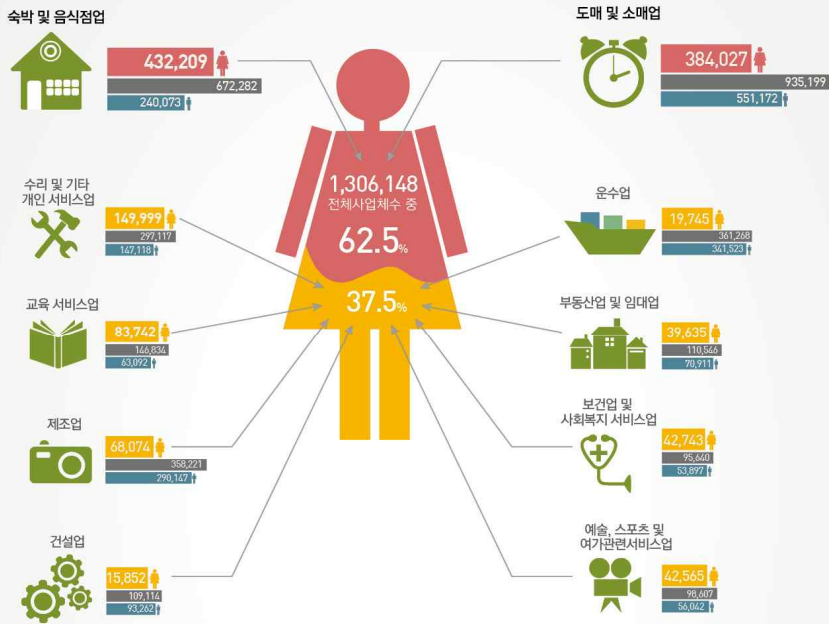




# 업종별 여성사업체 수

그래픽으로 보는  
여성사업체 현황

여성사업체 증 전 산업  
1,306,148



여성사업체가 가장 많은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 (432,209개)과 '도매 및 소매업' (384,027개)이며, 전체 여성 사업체의 6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숙박 및 음식점업' (432,209개),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49,999개), '교육서비스업' (83,742개)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사업체수가 더 많은 업종에 해당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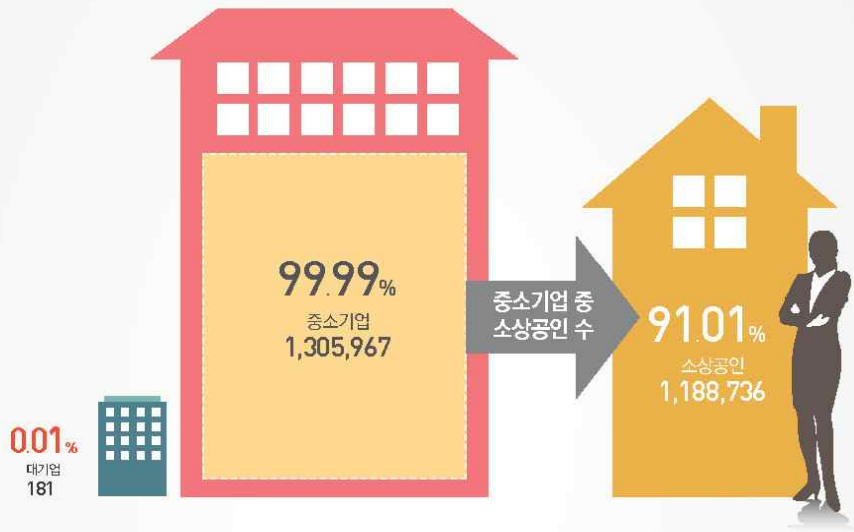




# 규모별 여성사업체 수

그래픽으로 보는  
여성사업체 현황

여성사업체 중 전 산업  
1,306,148



{ 여성사업체 1,306,148개 중에서 중소기업이 99.99% (1,304,967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91.0%(1,188,736개)는 소상공인에 해당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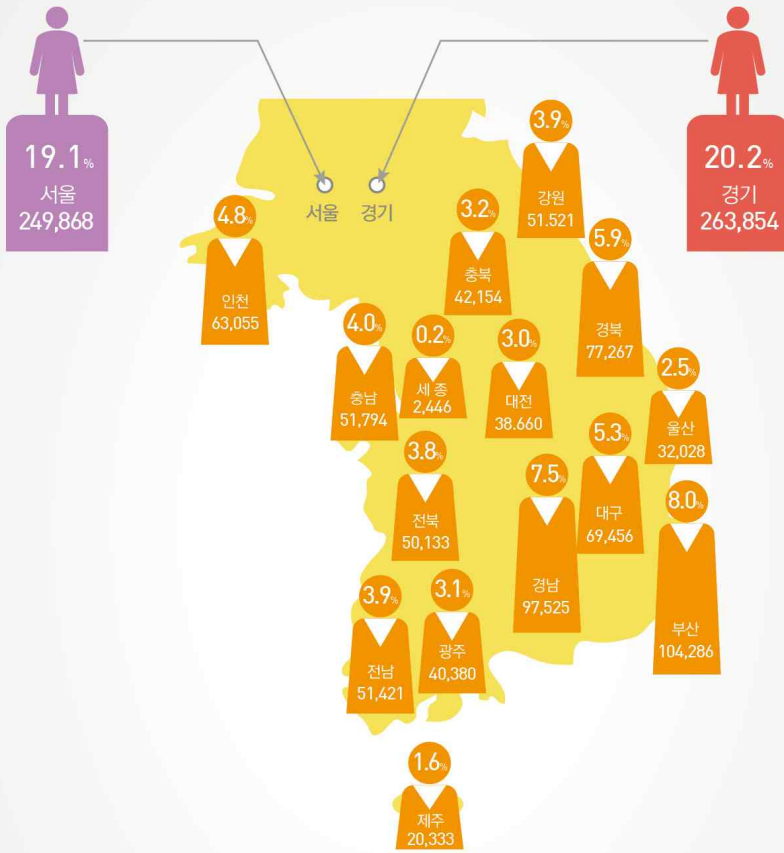




# 지역별 여성사업체 수

그래픽으로 보는  
여성사업체 현황

여성사업체 중 전 산업  
1,306,148



여성사업체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은 경기와 서울이며, 경기도에 263,854개(20.2%), 서울에 249,868개(19.1%)의 여성사업체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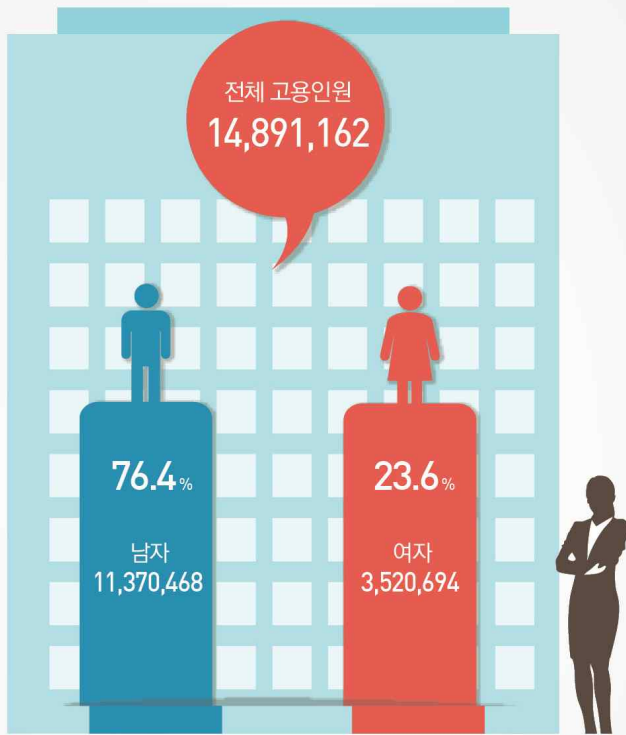




# 여성사업체 종사자 현황

그래픽으로 보는  
여성사업체 현황

고용인원 전체 (명)  
**14,891,162**



{ 전체 고용인원 14,891,162명 중에서 여성종사자 인원은 **3,520,694명 (23.6%)**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비율

그래픽으로 보는  
여성사업체 현황



{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 비율은 50.2%로  
절반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





## 1부

# 총론

## 제1장 서론

---

1. 배경
2. 구성 및 내용

## 제2장 여성기업에 대한 이해

---

1. 여성기업 정의
2. 여성사업체 현황
3. 여성기업의 특성

## 제3장 여성기업 관련 법률 현황

---

1. 국내의 여성기업 관련 법률 현황
2. 해외의 여성기업 관련 법률 현황





# 제1장 서론

## 1. 배경

대한민국에는 약 130만개의 여성기업이 있다. 여성들은 기업이나 기관 등의 조직에서 뿐만 아니라, 창업을 통해 한 기업의 리더가 되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전체 사업체 335만개 중, 여성사업체는 약 38.9%를 차지하고 있으며, 10년 전과 비교해서는 22만 여개의 여성 사업체가 늘어났다.

여성기업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성장 한계론에 봉착해있는 상황에서 성장 회복의 신(新)원천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경제참여율이 50%대에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성창업은 여성경제활동 증가에 기여하고,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여성기업인 특유의 경영 스타일이 안정적인 경제 성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97년 후반 중소기업체의 평균어음부도율이 30%를 넘어설 때도 여성기업의 부도비율은 7%정도로 낮게 나타나 불안정한 금융환경을 잘 극복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는 여성기업의 건실한 경영방식을 잘 나타내 주는 결과이다.<sup>1)</sup>

이러한 여성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의의에 따라 정부에서는 여성기업 육성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다. 정부에서 여성기업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1999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틀이 마련되면서 부터이다. 중소기업청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매년 ‘여성기업 활동촉진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지난 13여 년 동안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여성창업촉진, 여성기업 역량 강화, 판로 지원의 방향에서 지원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정책의 틀은 성 평등 관점에 근간을 두고 있어서 여성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이나 역량 강화보다는 기존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분배하는 데에 초점이

1) 강혜련(2003), “여성경영자의 관리역량과 기업성과”, 『경영논총』 제21집 제2호(통권 26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연구소, pp.9-10

---

맞추어져 있었다. 이제는 최근 시장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여성기업 육성 정책의 발굴이 우선되어야 할 시점이다.

현재 여성기업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선입견은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영세한 규모와 특정 업종의 편중 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여성기업은 사업 확대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설정함으로써 혁신적 변화에 소극적이고, 상대적으로 자본에 대한 낮은 접근성 때문에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안정적이기는 하나 급진적인 성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여성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의 성장에 대한 패러다임(paradigm) 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기업의 전반적인 특성에 대한 분석과 함께 여성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정책적 방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백서는 이러한 배경 하에 여성기업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 현재 여성기업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정책 현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여성기업의 정책적 지원 방향성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이는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고, 그 결과로 여성기업의 건전하고 발전적인 성장을 도모하는데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구성 및 내용



본 백서는 크게 여성기업 동향과 여성기업 지원 정책 현황, 그리고 향후 여성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과제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1부에서는 본 백서의 목적, 필요성 등 배경에 대해 서술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정의와 지원 법률 현황 등 여성기업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 2부에서는 여성기업의 동향을 살펴보는 부분으로 국내외 여성기업 전반적인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특히 2014 여성기업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국내 여성기업의 창업, 수출, 인력 등 국내 여성기업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해외 여성기업 동향은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가 발표한 2013 Women's Report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발표한 2012 GEM Korea Report의 내용이 주로 담겨있다.

제 3부에서는 여성기업 지원정책 현황 및 성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성기업과 관련된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여성단체들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정책을 조사하였으며, 본 정책들의 성과를 요약하여 설명하였다.

마지막, 제 4부는 여성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과제에 대한 부분으로 여성기업이 가지고 있는 단점과 강화될 필요가 있는 요인을 중심으로 세가지 측면에서 육성 과제를 제안하였다. 1) 여성창업 촉진과 2) 여성기업의 육성, 그리고 3) 여성기업 지원 인프라 확충/재정비를 중심으로 향후 나아가야 할 여성기업 정책 방안 및 세부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 제2장 여성기업에 대한 이해

### 1. 여성기업 정의



#### 가. 국내의 여성기업 정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며, 그 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 함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상법상의 회사로서 여성이 당해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이하 "공동대표"라 한다)인 경우에는 여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하되,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남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로 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또한,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기청장이 그 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위한 여성기업 확인요령』(중기청 고시, 제2013-37호)에서 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다.

#### 나. 해외의 여성기업 정의

미국은 1인 이상의 여성이 최소 51% 이상의 기업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경영

및 일상영업에 참여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비해 보다 엄격한 개념으로 여성기업을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에서 여성기업에게 주어지는 각종 지원과 혜택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기업의 경영에 대한 권한과 법적 책임에 있어서 여성의 소유여부에 대한 관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만의 경우에는 여성이 기업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비율이나 서류상에 여성의 이름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통해 여성기업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나라들 보다 가장 폭넓은 개념을 적용하여 여성기업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인도의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여성의 직접적인 소유나 경영의 관점뿐만 아니라, 특이하게도 다른 나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기업이 고용한 여성의 비율, 즉 여성고용비율을 여성기업의 요건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각 나라별 여성기업에 대한 정의는 다르게 정의되어 있지만, 여성이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크기로 여성기업을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각 나라별 여성기업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본다.

표 1-1 | 각 나라별 여성기업 정의

구분	개념
미국	미국의 중소기업법(1953년 제정)은 여성기업을 '1인 이상의 여성이 최소 51%의 기업을 소유(공개된 기업의 경우 주식의 51%)하는 1인 이상의 기업으로, 경영(management) 및 일상 영업(daily business operation)이 1인 이상의 여성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으로 정의
독일	독일의 여성기업 지원정책에 따른 법률(2001년 통과)에 따라 여성기업을 '기업의 모든 의사 자율권과 법적 책임을 여성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형태'라고 정의 <sup>2)</sup>
대만	대만은 '여성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기업 또는 여성이름으로 등록된 기업'으로 정의
인도	인도는 여성기업을 '여성에게 의해 소유 및 운영되는 기업으로 기업자본금의 최소 51%를 여성이 투자하고, 적어도 기업의 고용인력 중에서 51%가 여성인 기업'으로 정의

## 2. 여성사업체 현황



여성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는 2012년 기준 총 1,306,148개로, 전체 사업체 대비 38.9%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 대비 4.2% 증가한 수치로, 여성사업체는 3년 기준으로 볼 때 연평균 2.8%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전년 대비 전체 사업체가 3.7% 증가하였고, 3년 기준 연평균 2.4%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여성사업체의 증가비율이 더 높아 여성 기업 활동이 보다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2 | 전체 사업체 및 여성 사업체수 추세

(단위 : 개,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전체 사업체	3,125,457	3,234,687	3,354,320
여성 사업체	1,203,832	1,254,971	1,306,148
전체 사업체 대비 여성 사업체 비율	38.5	38.8	38.9

※ 자료 : 중소기업청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10-12년)'에서 재편가공

그렇다면, 여성사업체의 산업별 분포는 어떨까? 업종별 여성 사업체의 분포를 보면, 여성사업체의 경우는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매 및 소매업의 두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가 넘는 상황인데, 숙박 및 음식점업이 33.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도매 및 소매업(29.4%),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11.5%), 교육서비스업(6.4%)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중소기업청, 선진국의 여성기업 지원정책 및 실질적인 여성기업 지원사업 수립방안, 2004

표 1-3 | 남녀 사업체의 산업별 분포

(단위 : 개, %)

구분	전체	여성사업체		남성사업체	
		개수	비율	개수	비율
농업, 임업 및 어업	805	114	0.01	691	0.03
광업	1,832	195	0.01	1,637	0.1
제조업	358,221	68,074	5.2	290,147	14.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501	43	0.003	458	0.02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5,955	914	0.1	5,041	0.2
건설업	109,114	15,852	1.2	93,262	4.6
도매 및 소매업	935,199	384,027	29.4	551,172	26.9
운수업	361,268	19,745	1.5	341,523	16.7
숙박 및 음식점업	672,282	432,209	33.1	240,073	11.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9,904	4,328	0.3	25,576	1.2
금융 및 보험업	10,897	2,396	0.2	8,501	0.4
부동산업 및 임대업	110,546	39,635	3.0	70,911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7,716	10,202	0.8	67,514	3.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1,882	10,365	0.8	31,517	1.5
교육 서비스업	146,834	83,742	6.4	63,092	3.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5,640	41,743	3.2	53,897	2.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8,607	42,565	3.3	56,042	2.7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97,117	149,999	11.5	147,118	7.2
합 계	3,354,320	1,306,148	100	2,048,172	100

※ 자료 : 중소기업청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10-12년)'에서 재편가공]

반면, 남성사업체의 경우는 도매 및 소매업이 26.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제조업(14.2%), 숙박 및 음식점업(11.7%)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사업체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특정업종에 편중된 경향이 덜하고, 제조업의 비중이 2순위로 여성사업체에서의 제조업 비중(5.2%)보다 높은 편이다.

한편, 성별 업종분포 비교에서 4개의 업종은 남성사업체에서 보다 여성사업체에서 업종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육서비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이에 해당된다.

표 1-4 | 남녀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단위 : 개, %)

지역	전체		여성사업체		남성사업체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서울	740,129	22.1	249,868	19.1	490,261	23.9
부산	254,696	7.6	104,286	8.0	150,410	7.3
대구	182,872	5.5	69,456	5.3	113,416	5.5
인천	166,490	5.0	63,022	4.8	103,468	5.1
광주	98,220	2.9	40,380	3.1	57,840	2.8
대전	97,149	2.9	38,660	3.0	58,489	2.9
울산	70,234	2.1	32,028	2.5	38,206	1.9
세종	5,970	0.2	2,446	0.2	3,524	0.2
경기	705,564	21.0	263,854	20.2	441,710	21.6
강원	113,238	3.4	51,521	3.9	61,717	3.0
충북	102,653	3.1	42,154	3.2	60,499	3.0
충남	128,041	3.8	51,794	4.0	76,247	3.7
전북	121,254	3.6	50,133	3.8	71,121	3.5
전남	117,325	3.5	51,421	3.9	65,904	3.2
경북	182,059	5.4	77,267	5.9	104,792	5.1
경남	223,686	6.7	97,525	7.5	126,161	6.2
제주	44,740	1.3	20,333	1.6	24,407	1.2
합계(전국)	3,354,320	100.0	1,306,148	100.0	2,048,172	100.0

※ 자료 : 중소기업청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10-12년)'에서 재편가공]

전국 사업체는 주로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다. 이중, 여성 사업체는 경기도(20.2%)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그 외에 서울(19.1%), 부산(8.0%), 경남(7.5%)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한편, 남성사업체는 서울(23.9%)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서울지역에 분포한 여성사업체는 19.1%로 남성사업체 대비 4.8% 더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지역분포도는 남성과 여성사업체 간에 큰 차이 없이 유사한 분포도를 보이고 있다.

### 3. 여성기업의 특성



기존 연구들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남성과 여성기업가 여부에 따른 경영 방식의 차이를 연구해 왔으나, 아직 관련 이론이 명확히 정립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여성기업의 특성으로 이야기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여성은 남성보다 더 위험 회피적이고,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경영을 한다는 것들이 그 예이다. 기업의 경영자가 남성이나 혹은 여성이냐가 반드시 한 기업의 성격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기업은 남성기업과는 다르게 여성기업 특유의 경영 스타일을 보인다. 다음은 여성기업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서 장점과 약점에 대해 살펴 보았다.

#### 가. 여성기업의 장점

##### 1) 안정적인 경영 추구

여성기업인은 경제적인 목표 외에 사회적인 목표에도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단순히 매출이나 수익 등의 양적 성장에만 집중하지는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남성기업인의 경우, 경제적 성과에 대한 몰입이 강한 반면, 여성기업인은 경제적 성과와 함께 고객만족도나 기업의 가치, 종업원의 만족도 등과 같은 질적 성과도 중시하는 경향이 크다. 이 때문에 단순히 수익을 늘려 회사의 규모를 키우는 데 급급하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안정적인 기업이 되는데 더 큰 목표를 두는 특성이 강하다<sup>3)</sup>.

3) Brush, Candida G.(1992), "Research on Women Business Owners : Past Trends, a New Perspective and Future Direc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6(4), 5-30

---

또한 여성은 남성기업인보다 위험에 대한 회피성향이 강하여 재무적인 건정성 및 안정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국내 여성중소기업과 남성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비교한 결과, 여성기업은 남성기업 보다 매출액과 종업원 규모 자체는 더 작은 편이지만, 부도와 같은 사고율은 여성기업이 더 낮고, 수익성이나 활동성, 생산성은 여성기업이 더 높아 재무적 건정성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sup>4)</sup>. 또한 자산 구성에서 여성기업은 자기자본의 구성비가 높아 부채 비율이 낮은 편이며, 어음결제보다는 신뢰성이 높은 현금결제 비중이 높은 편이다<sup>5)</sup>. 이는 단기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자금 차입이나 투자보다는 건전한 재무 상태를 유지하여 내실 있는 경영상태를 유지해나가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여성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은 IMF 금융위기 이후 불안정한 금융환경을 잘 극복 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1997년 후반 중소기업체의 평균어음부도율이 30%를 넘어설 때도 여성기업의 부도비율은 7%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기업의 건실한 경영방식을 잘 나타내 주는 결과이다.<sup>6)</sup>

## 2) 여성적 리더십(Feminine Leadership)

전통적인 리더십 모델은 가부장적인 것으로, 리더가 스스로의 신념과 확신에 의해 결정을 하고, 구성원들을 과업에 동원시켜 이끌어가는 유형이었다. 그리고 가부장적 리더십과 유사하지만 보다 나아간 것이 부성적 리더십(paternalist)인데, 이는 리더가 과제 수행에 있어 핵심적인 책임과 역할을 하지만, 구성원들과 소통을 높이고 도움으로써 그들로부터 존경, 의존을 얻어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부성적 리더십도 리더 권력의 영향력이 막강하고, 조직 구성원 보다는 리더 중심의 리더십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sup>7)</sup>

반면, 여성적 리더십은 가부장적 리더십이나 부성적 리더십의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 한다. 여성적 리더십은 리더의 결정에 따라 구성원이 따르게 되는 하향식(Top-down)

---

4) 김경조, 최진배, 김태훈(2008), “국내 여성중소기업과 남성중소기업의 경영성과 비교”, *여성연구*, 75(2), 5-26

5) 안승철, 박소영, 김명화(2005), “여성기업인의 경영활동 특성에 관한 연구 -대구·경북지역 여성기업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산경연구*, 13, 95-129

6) 강혜련(2003), “여성경영자의 관리역량과 기업성과”, *경영논총*, 21(2), 1-19

7) 김양희, 김홍숙(2000), “기업 내 남녀 관리자의 리더십 비교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50(7), 30-34

구조에서 벗어나, 경쟁이 아닌 협동에 초점을 맞추고, 양적 성장 외에 질적 결과물을 동시에 추구한다. 또한 지위에 의한 권력이 아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 유능함과 능력에서 리더십의 근원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특징이다.<sup>8)</sup> 이 때문에 여성적 리더십이 발휘되는 여성기업에서는 권력에 의한 통제보다는 팀 중심의 협동으로 소프트한 조직문화가 형성된다.

뿐만 아니라 모성적 감정이 조직 구성원과의 친밀한 유대감 형성에 작용하여 노사문제 발생의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여성기업인은 조직을 가족과 같은 하나의 네트워크로 보고, 근로자의 후생복지에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인력관리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가족적인 기업문화라는 새로운 기업문화를 창조하고 섬세한 주의력을 바탕으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며 민주적 관계를 지향함으로써 기업의 성과를 높인다는 점에서 여성적 리더십은 여성기업의 성공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sup>9)</sup>

### 3) 수평적 소통과 조직 구조

여성은 상하관계가 위계적으로 형성된 관계보다는 수평적인 관계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경향이 강해서 소통방식과 조직분위기에서 남성과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먼저, 여성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친밀감, 신뢰감을 유도할 수 있는 대화로 소통을 해나간다. 대개 상하관계를 두기보다는 공통적 관심사나 개인적인 대화를 유도하여 수평적인 소통을 이끌어가기를 원하며, 의사결정을 할 때도 창의성, 감수성, 가치에 의한 의사결정을 중시하여 수평적인 의사결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sup>10)</sup> 또한 조직관리에서는 공동체(communal)적이고, 관계적인 친사회적 행동(relational prosocial behaviors)경향이 있기 때문에<sup>11)</sup> 여성이 대표자로 있는 기업의 경우, 상하관계가 분명한 위계적 구조보다는 조직 구성원 간에 수평적이고, 유연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8) Loden, M.(1985), "Feminine leadership or how to succeed in business without being one of the boys", N.Y : Times Books

9) 김정화(2011), "여성기업 육성에 관한 법제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2

10) 헬렌 피셔, "제1의 성THE FIRST SEX", 정명진 역, 생각의 나무, 2005

11) Eagly, Alice H.(2009), "The his and hers of prosocial behavior : An examination of the social psychology of gender", *American Psychologist*, 64, 644-658

---

반면, 남성의 경우, 규칙과 질서의 확립에 역점을 두어 수직적인 조직 구조를 선호하고, 사고 자체를 논리적·분석적으로 사고하여 소통하는 경향이 있다. 필요에 따라 남성은 수직적 관계를 곧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과를 내는데 필요하다면 상하관계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또한 남성에게 말은 권위를 얻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인 특성이 있어, 권위에 대한 집착이 일종의 남성적인 언어로 드러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남성은 기술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용어 사용을 통해 자신의 우월성을 입증하려고 하고, 수치나 데이터 중심의 대화를 통해 어느 것이 더 우월한지를 분명하게 비교하여 순위화시키고자 한다. 이 때문에 조직 내에서는 수치적인 성과를 기준으로 성과에 따라 위계적 질서를 더욱 분명히 하기도 한다.<sup>12)</sup>

## 나. 여성기업의 약점

### 1) 영세한 기업규모

여성이 대표자인 사업체의 91.0%는 소상공인이고, 99.99%가 중소기업이다. 대부분 소규모의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여성기업은 영세한 규모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성기업의 이러한 영세성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여성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약점 중 하나이다. 여성기업이 영세한 규모를 보이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적은 초기 자본 때문이다. 초기자본은 제품개발이나 인력확보 등 사업 성과에 주요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자원인데, 여성의 경우, 창업 이전에 받는 임금 수준과 고용기간이 남성보다 낮고, 짧은 편이기 때문에 초기 창업자금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sup>13)</sup> 남성보다 평균 임금이 낮은 여성은 금융 자산을 획득하는데 제약이 있고, 결혼 또는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되면서 자본금을 축적할 수 있는 기간도 단축되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은 외부 자본을 차입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 남성만큼 외부 자본을 끌어오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성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의 범위 안에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며, 향후의 성과 결과를 보수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대출을 받으려고 하고, 외부 투자를 받는데 주저한다.<sup>14)</sup>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남성기업인 300명과 여성기업인

---

12) 한상복, 박현찬, “취미에 리스크”, *위즈덤하우스*, 2013, 32-37

13) Boden, Jr, R. J. & Nucci, A. R(2000), “On the Survival Prospects of Men's and Women's New Business Ventur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 347-362

14) Gracie, S.(1998), “In the Company of Women”, *Management Today*, June, 66-70

300명의 초기자본을 비교한 결과, 여성기업의 초기자본이 남성기업인의 초기 자본의 2/3 수준임을 분석하였다.<sup>15)</sup>

여성기업의 영세성에 대한 또 다른 이유는 여성의 위험회피 경향으로 인한 사업 확대의 기피 때문이다. 여성은 더 많은 성과를 내는 것 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규모의 확대로 인한 성과 증대보다 현 규모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경영을 하고자 한다<sup>16)</sup>. 이와 유사하게 여성의 경우, 더 이상 사업을 확대하지 않으려는 ‘최대사업규모 값(maximum business size thresholds)’을 설정하려는 경향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는데, 이는 여성기업인은 조직에 대한 통제 가능성, 투입되는 시간과 에너지의 합리성, 일과 개인생활간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적정 사업규모를 심리적으로 정해놓고 더 이상 확대하지 않으려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sup>17)</sup>

## 2) 편중된 산업 분포

여성기업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성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소매업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130만여 개의 여성사업체 중, 숙박 및 음식점업에 약 33.1%가 분포하고 있고, 도매 및 소매업에는 29.4%가 분포해있다. 남성사업체의 경우에도 도매 및 소매업이 26.9%로 가장 많기는 하나, 가장 많은 도소매업(26.9%)과 운수업(16.7%), 제조업(14.2%)의 분포 비율을 합쳐도 약 60%가 채 되지 않는다. 반면, 여성기업은 2개 업종에서 약 62%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업종 내 편중성이 큰 편이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여성기업이 두 업종에 편중되었다는 점 외에 편중된 업종이 경쟁이 매우 치열한 레드오션에 해당하고, 시장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산업 내 경쟁자가 매우 많고, 그 만큼 생존율이 낮아 사업실패의 위험성도 높은 편이다. 또한 수익성과 부가가치가 낮은 편이라 투자비용을 수확하였더라도 타 산업 대비 고부가가치 창출이나 향후 성장에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15) Carter, S. and Rosa, P.(1998), "The Finding of Male and Female Owned Businesses", *Entrepreneurship and Research Development*, 10(3), 225-241

16) Watson, J. and Robinson, S.(2003), "Adjusting for risk in comparing the performances of male-and female- controlled SM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8, 773-788

17) Cliff, J. E.(1998), "Does One Size Fit All?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s towards Gender, and Business Siz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2, 125-145

---

여성들이 자본을 들여 창업을 시도 했지만, 결국 치열한 경쟁과 낮은 수익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영세한 소상공인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sup>18)</sup>.

한편, 여성기업의 업종 편중성의 원인에는 대개 이러한 업종이 진입장벽이 낮은 생활 밀착형의 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즉 비교적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고, 기술력이나 교육 수준 등이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지는 않아 접근이 쉽다. 또한 업종 특성상, 노동 집약적이고,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여성 초기창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창업 아이템으로 관심있는 업종이 아닐 수 없다.

비록 최근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나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에서 성장하고 있지만, 향후 여성창업 업종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 3) 네트워크 부족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관련된 정보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여성기업인의 경우, 남성기업인에 비해 제한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바이어에 대한 술 접대나 로비 등 이러한 접대 문화가 최근에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 활동은 남성 중심의 영역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성이 그 영역으로 들어가는 데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한다.

여성기업이 네트워크 부족을 겪는 원인은 먼저, 기업문화의 중심인 남성기업인들만의 상호작용 경향 때문이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가치나 경험 등이 자신과 유사한 상대방을 선호하기 마련인데, 기업 문화에서 특히 주류가 되는 남성기업인들은 여성을 배제하고 남성들 간의 비공식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들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해간다.<sup>19)</sup> 이런 상황에서 여성이 상호작용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토큰리즘(Tokenism)의 역학에 따라 여성은 남성지배적인 집단에서 본연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또한 함께 일하는 동료라기보다는 성(sex) 차원에서 여성으로서 대우를 받을 가능성에 대개 노출된다.<sup>20)</sup>

---

18) 김경조, 최진배, 김태훈(2008), “국내 여성중소기업과 남성중소기업의 경영성과 비교”, 여성연구, 75(2), 5-26

19) Vinnicombe, S.(1998), “The issues facing women in management in U.K and around the world”, in Women in Management

또한 여성기업인들 스스로가 사회생활이나 조직생활 경험 부족으로 인하여 네트워크 관리 및 구축에 소극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 연구에서는 여성기업인과 남성기업인의 네트워크 활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성기업인이 남성기업인 보다 네트워크를 개발 하는데 적은 노력을 투입하며, 대체로 소규모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혀 냈다.<sup>21)</sup> 이는 여성의 성향자체가 그렇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성의 창업 이전 사회경험이나 직장경험 자체가 현실적으로 남성기업인과 어울리기에 부족하여 소극성을 띄게 된 것일 수도 있다. 즉 남성기업인의 경우 현 사업과 관련 있는 직장경험을 비교적 충분히 가진 데 비해, 여성기업인의 경우 경력이 짧고 경력이 있더라도 기업 내 핵심 부서에서 경력을 오래 쌓기 힘들어서 기업인으로서의 직장생활 및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한 편이다. 이 때문에 여성기업인은 자연스럽게 남성기업인 중심의 네트워크에 참여 하는데 소극성을 띄게 될 수 있다<sup>22)</sup>.

결과적으로 여성기업인들은 남성기업의 성격에 의해 네트워크에서 배제되기도 하지만, 스스로 네트워크 관리에 소극적인 경향 때문에 제한적인 네트워크를 갖게 되는 것이다.<sup>23)</sup>

20) Kanter, R. M(1977), "Men and women of the corporation" New York : Basic Books

21) Reese, P. R(1992), "Entrepreneurial networks and resource acquisition : Does gender make a differenc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22) Watkins, D. S & Watkins, J.(1984), "The female entrepreneur : Her background and determinants of business choice - some British data",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2(4), 21-31

23) 김영옥, 임희정(2006), "여성기업의 장애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여성연구*, 71, 107-140



## 제3장 여성기업 관련 법률 현황

### 1. 국내의 여성기업 관련 법률 현황



####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1999. 2. 5. 제정, 2013. 07. 30 일부개정)

##### 1) 입법 배경 및 취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문적 능력을 갖춘 고급 여성인력이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생활 참여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었지만, 여성의 사회활동에는 여전히 많은 제약과 차별적 관행이 지속되어 여성이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제도와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에 1997년 11월 ‘여성기업활동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여성경제인지원 및 기업활동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각각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다. 그리고 양 법안은 내용면에서 큰 차이가 없어서 산업자원위원회가 이를 통합한 법안을 제출<sup>24)</sup>한 결과, 1999년 1월 6일 제199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러한 통합 법안을 통해서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하여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취지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sup>25)</sup>

##### 2) 주요 개정 내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1999년 제정된 후 현행법에 이르기까지 총 4회에 걸쳐 개정되었다.

24) 지성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경과, 1999

25)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서울·동 위원회), 여성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여성의 적극적인 기업활동 참여와 창업지원 등을 통하여 여성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서 남녀의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기업활동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하고, 여성경제인지원 및 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 영역에 있어 실질적인 양성평등의 정착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성기업활동촉진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1998



1차 개정(2005년 5월)은 제정법상 여성경제인의 정의가 여성기업의 임원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한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해당 기업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여성경제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률상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에 개정된 법률에서는 여성경제인의 정의를 '기업의 임원으로서 당해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으로 규정하여 여성경제인의 범위를 모든 기업의 여성임원으로 확대시켜 여성경제인의 경제활동 활성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동기 부여, 여성의 고용 증대 및 경제 기여도 증가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차 개정(2009년 5월)은 여성 및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통폐합과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여 이루어졌다. 개정 전 법률상의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는 여성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여성의 기업활동촉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와 통합하여 균형성장촉진위원회로 변경하고 장애인활동촉진위원회는 폐지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개정 전 법률에는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구매 비율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여성기업이 공공구매 주요 납품업체수의 10~1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구매 총액 대비 여성기업에 대한 구매 비중은 2.8%로 과도하게 낮은 실정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장이 여성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 목표를 제시하되, 공공기관 특성상 구매목표 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3차 개정(2009년 12월)은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등 통보절차 규정에 대한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법문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개정 전 법률은 구매계획과 계약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하였는데, 통계관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구매계획과 계약실적 대신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통보하도록 하였다.

그 밖의 개정 내용은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것으로서 한자 표기의 한글화,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표현의 우리말 순화, 띄어쓰기 및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는 수정, 길고 복잡한 문장의 간소화 등을 통해 법령 수요자인 국민이

---

법령의 내용을 보다 알기 쉽도록 하였다.

4차 개정(2013년 7월)은 공공기관의 장이 여성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키고, 해당 구매계획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였다. 2차 개정에서 정한 구매목표비율의 달성이 권고사항이었다면, 제4차 개정은 구매목표비율을 의무화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구매목표비율의 의무화사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 3)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미국과 같이 중소기업법 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별도의 조항이 아닌, 독립된 법으로 1999년에 제정되었다. 총 2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의 목적, 여성기업의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차별적 관행의 시정,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균형성장촉진위원회, 여성기업 실태조사, 여성의 창업지원시책, 그리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설립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의 주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 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여성발전 기본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여성기업지원의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 목적을 기반으로 여성기업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여성기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법률에서는 이러한 여성기업의 정의를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sup>26)</sup>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여성의 실질적인 경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

26) 동법 시행령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고 있다.

- ① 상법상의 회사로서 여성이 당해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으로 등기된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이하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여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하되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의 수가 남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로 한다.
- ② 여성이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그리고 ‘여성경제인’이란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하며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 즉,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성기업확인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는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를 위한 여성기업확인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다. 여성기업 확인제도에 관해서는 여성기업확인제도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여성기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본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에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기본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위원회는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중요사항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심의된 기본계획에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기업을 지원한 현황 및 성과 그리고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를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2년마다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 안에 여성의 창업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보다 많은 여성기업의 발굴과 성장을 유도하고 있다.

여성창업 촉진과 더불어 여성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판로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매년 공공기관은 구매계획에 여성기업의 제품을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키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을 우대하여 경영안정화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있다. 그리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 및 지도 등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기업지원의 구심체 역할로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여성경제인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여성경제인에 대한 연수 및 전문여성경제인의 양성 등의 업무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협회 산하에 여성기업종합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여성의 창업 및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법 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별도의 조항이 아닌 독립된 법으로서, 아시아 최초로 제정된 여성기업에 관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다.

#### - 여성기업확인제도

여성기업확인제도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기업정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여성기업확인제도의 목적은 요령의 명칭 및 요령 제1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 대상이 되는 여성기업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제8조에서 중소기업청의 고시로 여성기업의 범위, 확인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도록 수권하고 있다.

요령은 총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는 요령의 제정 목적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2조는 요령에 필요한 정의, 제3조는 여성기업확인기관을 한국여성경제인협회로 정하고 있다. 제4조는 확인신청, 제5조는 처리기한, 제6조는 확인신청에 따른 현장실사, 제7조는 현장실사 결과의 통보, 제8조는 확인증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다. 제4조부터 제8조까지 확인제도의 핵심인 여성기업확인증의 발급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제9조는 여성기업신청의 반려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정하고 있으며, 제10조는 이의신청을 검토

하는 심의조정위원회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11조는 사후관리, 제12조는 확인기관의 관리기관인 중소기업청에 대한 확인실적 통보, 확인업무 담당자의 교육 실시 등을 정하고 있다.

####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란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제품을 일정비율 이상 구매함으로써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동 제도는 2009년 권고사항으로 도입되었으나, 2014년 1월 1일부터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의무사항으로 변경되었다.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에 물품 및 용역의 경우에는 각 구매 총액의 5%,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 구매총액의 3%이상의 여성기업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여야 한다(여성기업지원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중소기업청장은 상기의 구매목표를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여성기업지원법 제9조).

중소기업청장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계획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경우는 공공기관이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한 구매계획에 포함된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제1항 본문에 따른 구매목표비율보다 낮은 경우, 공공기관이 제품구매에서 여성기업에 불리한 방법이나 절차 등을 적용하는 경우이다(여성기업지원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계획의 이행점검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여성기업지원법 제9조 제5항).

그리고,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에 필요한 사항(여성기업의 범위, 지원절차 등)을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여성기업지원법시행령 제8조).

---

## 나. 기타 여성관련 법률

### 1) 여성발전기본법(1995. 12. 30. 제정, 2011. 6. 7. 일부개정)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여성계의 활발한 활동과 정부의 여성에 대한 인식 변화로 정부장관(제2)실을 설치하였으며, 1995년에는 세계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세계화 추진위원회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0대 과제를 마련하고, 그 과제의 하나로 ‘여성발전기본법’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여성발전기본법은 국가가 여성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해서 제정되었다.<sup>27)</sup> 이 법의 제정 목적은 여성정책의 추진체계 및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sup>28)</sup>

여성발전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총6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제1장 총칙은 법의 목적,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 국민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조치 등을 다루고 있다. 남녀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의 목적과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남녀평등 촉진, 모성 보호, 성차별적 의식 해소 및 여성 능력개발을 통한 건강한 가정조성, 국가 및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기본이념을 담고 있다. 또한 앞에서 말한 목적과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각 대상별 노력과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 등의

---

27) 국회 여성위원회,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서울: 동 위원회), 2006

28) 국회 행정위원회, 여성발전기본법안 심사보고서(서울: 동 위원회, 1995) 동법의 제안경위는 다음과 같다. 여성발전기본법은 주양자의원 외 22인으로부터 1995년 12월 6일 발의되어 동년 12월 7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당위원회에 회부되어온 2건의 제정 법안에 대하여 제177회 국회(정기회) 제8차 위원회(1995년 12월 12일)에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각각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다. 법안심사소 위원회에서는 제3차~제5차 회의(1995년 12월 14일, 15일, 18일)를 열고 2건의 법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상기 양 법안은 각각 본회의를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법안의 공통 내용인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추진을 골자로 하는 위원회 단일안을 마련하였으며, 제9차 위원회(1995년 12월 19일)에서 이를 행정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책무와 그에 따른 조치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제2장은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여성가족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고, 중앙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렇게 시행된 정책을 분석·평가하며 이를 담당할 지정기관의 대상과 기준 및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여성정책조정회의의 설치 및 역할 뿐만 아니라,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임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1년 중 1주년을 여성주간으로 정한다는 내용 등을 다루고 있다.

제3장은 여성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여성의 참여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여성의 공직 참여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고용 전반에 남녀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고용평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여성의 성희롱 방지를 위한 교육, 조치방안 및 조치결과의 공표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교육, 학교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노력과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마련, 여성의 직장 및 가정생활 병행에 따른 지원시책, 평등한 가족관계를 위한 지원책, 여성의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과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를 위한 법제도 또는 시책 마련, 여성의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과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활성화 지원 등 여성의 권익향상 및 보호를 위한 여성정책의 기반을 다루고 있다.

제4장은 여성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적으로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사용 용도와 기금관리자의 지정 및 요건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5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단체 지원,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취소 기준 및 청문 등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함과 동시에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제6장은 여성가족부 장관의 권한에 대한 위임 및 위탁에 대한 내용과 매년 여성정책에 관한 연차보고 실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러한 여성발전기본법은 ‘헌법과 여성관련 입법 간의 중간법’이며, 종합적인 ‘여성지위향상법’인 동시에 여성정책을 전반적으로 규정한 ‘기본법’으로 법률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한 정책의 수립, 운용절차와 메커니즘을 정하는 도구로서 ‘정책기본법’일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내용 및 방향에 대한 부분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체법’으로서의 성격을 구비하고 있다고 평가<sup>29)</sup>받고 있다. 그러나 본 법의 목적과 같이 양성평등이나 여성발전을 위한 실체적 내용을 모두 담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규범력을 가지는 실체법으로서의 내용은 개별 법률을 통해서 실현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 2)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2008. 6. 5. 제정, 2010. 6. 7. 타법개정)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그동안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50% 정도 수준에 불과하여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여성의 임신·출산·육아 부담에 따른 경력단절과 노동시장 이탈, 하향취업 그리고 재취업의 어려움 등에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인턴취업의 지원,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은 총 1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 제2조는 이법에 필요한 정의를 담고 있으며, 제3조는 국가와 지자체가 경력단절여성 등의 지원을 위한 시책수립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관련 부처 장관에게 경제활동 촉진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하고 있다. 제5조는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제6조는 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를 정하고 있다.

제7조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8조부터

---

2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발전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 2009



제12조까지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으로서 일자리창출지원, 유망직종 선정지원, 직업훈련교육, 인턴취업지원, 직업의식개선을 위한 사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제13조부터 제14조는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센터업무 보고·검사에 대해 정하고 있다. 제15조는 여가부·고용부장관의 지자체장에 대한 권한의 위임, 제16조는 이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기관 또는 지자체 장에게 협조요청을 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 3)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2. 12. 18. 제정, 2013. 3. 23. 타법개정)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및 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제정·시행되었다.

이법은 총 1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정의, 제3조는 타법과의 관계를 정하고 있다. 제4조 내지 제5조는 정부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해 정하고 있다. 제6조는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 현황 및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의 실시, 제7조 내지 제8조는 여학생의 이공계 진학촉진을 위한 지원정책 및 우대시책을 실시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제9조부터 제13조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장학금지원, 연구활동비 지원, 채용목표 및 승진목표 비율 수립, 여성과학기술 담당 직원의 지정, 취업지원 등을 정하고 있다.

제14조는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의 설치, 제15조는 국가 및 지자체의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지원 사업비 조달, 제16조는 지원정책의 위탁을 정하고 있다.

### 4) 여성농어업인 육성법(2001. 12. 31. 제정, 2013. 3. 23. 일부개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어촌가정 구현과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시행되었다.

---

이법은 총 1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정의, 제3조는 국가와 지자체의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정책수립 및 지원을 위한 책무를 정하고 있다. 제4조는 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의 여성농어업인의 역할을 정하고 있으며, 제5조 내지 제6조는 정부의 여성농어업인 육성기본계획과 시도계획, 시행계획의 수립과 계획의 시행을 위한 관계부처의 협조를 정하고 있다. 제7조는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을 위한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제정 수권에 대해 정하고 있으며, 제8조에 따라 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부터 제13조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경영능력 향상, 지위향상,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과 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을 정하고 있다. 제14조는 이 법에 따른 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2. 해외의 여성기업 관련 법률 현황



해외 국가들도 각자 자국의 여성기업지원을 위하여 관련 법률, 조직 및 정책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해외 국가들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직접적으로 별도의 독립법을 제정하여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나라가 있는 반면, 간접적으로 타 법률 내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법적 조항을 근거로 해서 여성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이 장에서는 독립법을 시행중인 미국과 근거법에 의거하여 시행중인 영국, 독일, 스웨덴, 일본 등의 법률 현황을 살펴본다. 또한 주요 선진국들의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내용과 지원정책 및 조직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가. 미국

미국은 1960년대부터 여성기업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제도 및 정책에서 상당히 앞서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여성기업 관련 법안은 1988년에 제정된 「여성기업소유법(Women's Business Ownership Act)」으로서, 이 법은 1964년에 소수자 및 여성의 차별 금지 및 이들의 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시민권리법(Civil Right Act)」과 1974년에

혼인한 여성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신용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신용기회평등법(Equal Credit Opportunity Act)」 등을 제정배경으로 하고 있다.

또한 1977년 「공공사업고용법(public works employment act)」, 1988년 「여성기업소유법(Women's Business Ownership Act)」, 1991년 「여성기업개발법(Women's Business Development Act)」, 1994년 「연방정부구매합리화법(Federal Acquisition Steaming Act)」, 2003년에는 「여성기업센터유지법(Women's Business Center Pre-servation Act)」등이 대표적인 여성기업지원 관련법이다.

표 1-5 | 미국의 여성기업 지원 관련 법률 변화

연 도	법 률	내 용
1964년	시민권리법 (Civil Right Act)	소수자, 여성의 차별 금지 및 이들의 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
1968년	소비자신용보호법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성별 또는 혼인상태와 무관하게 신용에 공정하고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 부여
1972년	고용평등법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Law)	연방정부의 기금을 받는 교육기관에서 여성을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명시
1974년	신용기회평등법 (Equal Credit Opportunity Act)	혼인한 여성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신용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
1977년	공공사업 고용법 (Public Works Employment Act)	정부 조달부문에서 정부가 공사를 발주하거나 물품을 구입할 경우, 여성이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일정부분을 우대(Small Business Act 8조)
1978년	우대 조치법 (Affirmative Action Act)	연방정부의 구매 시, 소기업 및 여성소기업에 있어서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
1998년	여성기업소유법 (Women's Business Ownership Act)	여성이 소유 및 경영하는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국 중소기업법 내의 소기업법을 별도로 수정한 법률

연 도	법 률	내 용
1991년	여성기업 개발법 (Women's Business Development Act)	여성기업소유법 개정
1994년	연방정부구매합리화법 (Federal Acquisition Streamling Act)	각 연방기구와 여성소기업간의 계약목표를 5%로 수립
2000년	여성소기업 연방정부 계약지원 프로그램	여성소기업 대상 '제한경쟁'을 허용
2003년	여성기업센터유지법 (Women's Business Centers Preservation Act)	여성기업센터를 영구사업화 함으로써 센터의 신설과 기존 센터의 예산지원을 연장

### 1) 「공공사업고용법(public works employment act)」

1977년에 제정된 「공공사용고용법」은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제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미 연방정부는 소수 인종 및 여성이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각 행정기관들은 조달 계약에서 적어도 5%를 배정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8(a)조달지원 프로그램"<sup>30)</sup>은 사회적·경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중소기업(Small Disadvantaged Business : SDB)에 대한 특별조달지원시책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사회적·경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개인이 5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입찰응모 이전에 최소한 2년간 조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2000년부터는 '여성소기업 연방정부 계약 지원 프로그램'(중소기업법 제8조)을 시행하여 여성소기업의 참여도가 저조할 경우, 정부기구로 하여금 '제한경쟁'을 허용하도록 하여 기존 여성기업인에게 일정률의 계약을 지원하던 조치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였다.

30) 8(a) 프로그램의 명칭은 1953년에 제정된 중소기업법 제8조(a)항에 기재된 것으로부터 유래

## 2) 「여성기업소유법(Women's Business Ownership Act : WBOA)」

세계 최초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인 「여성기업소유법(Women's Business Ownership Act : WBOA)」은 여성기업을 국민경제의 새로운 축으로 보는 시각과 더불어 미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공헌자로 보는 관점이 내재되어 있다. 미국 내에서 '여성경제인법'으로 일맥상통하는 본 법은 여성이 소유 및 경영하는 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국 중소기업법 내의 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을 별도로 수정한 법률이다.

이러한 여성기업소유법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소기업의 법률적인 이익을 증진시키고, 여성기업이 자본 및 다른 생산요소들에 접근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성경제인들이 겪는 차별적인 장벽을 제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여성경제인들이 겪는 차별장벽을 분석·정의하고 확인하고자 하는 미국 정부의 노력에 의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유도하는 한편, 상호간에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여성경제인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끄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 여성기업소유법 제정 목적 >**

- 여성이 소유·경영하는 소기업의 법률적 이익 증진
- 자본과 다른 생산요소들에 접근하는 경우 여성경제인들이 겪는 차별장벽 제거
- 여성경제인들이 겪는 차별장벽을 분석, 정의, 확인하는 정부의 노력에 의회의 참여를 요청
- 협력관계 형성에서 여성경제인의 직접적인 참여를 포함

여성기업소유법에서는 여성기업의 정의, 지원방안, 지원예산 및 운용방안, 전국여성기업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여성기업 실태조사 등을 다루고 있다.

첫째, 여성기업의 정의로서, 여성이 소유·경영하는 기업이란 '1명 또는 2명 이상의 여성이 최소 5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경영에서 1명 또는 2명 이상의 여성에 의해 운영되는 기업'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

다음으로 여성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있어서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①여성기업지원기관의 설립방안으로서, 여성이 소유·경영하는 소기업을 위해서 시범계획을 시행하려는 비영리 민간단체(Private Organization)들의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정부는 타당성을 평가하고 승인한 후에 이러한 민간단체들을 통해서 여성기업들의 경영·자금·마케팅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sup>31)</sup> ②경영능력 기술 지원방안으로서, 여성기업인의 경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③예산 및 운용 위임방안으로서, 제201조에 따라 필요한 시범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1,000만 달러의 예산을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자본에 대한 접근 보장에서는 「소비자신용보호법률」을 수정하여 「보증 및 우대대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채권자들에게 공통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대출 신청자들에게 5만달러 이하의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전국여성기업가위원회는 여성기업들이 미국 경제의 주류에 합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또한 여성소유기업의 지위 및 상태 등에 대한 검토와 연방 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검토, 여성소유기업과 관련된 정부주도 사업에 대한 검토, 대통령 및 의회에 보고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이후 매 12개월마다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여성기업 실태조사에서는 인구조사 자료에 의거하여 노동통계청, 인구조사청에서 동법의 여성기업 정의에 따라 여성이 소유·경영하는 기업수를 조사하고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조달자료에 의거하여 각각의 연방 대행기관들은 성별에 의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소기업 및 여성기업 수에 관한 정보를 연방조달정책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

31) 민간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시범사업으로 1991년 만료되는 시점을 갖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 조항에 의거하여 시행된 모든 민간단체의 시범계획의 효과에 대한 보고서를 상·하원의 소기업위원회에 준비하여 제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시키고 있다.

i) 지원받는 사람들의 수, ii) 이제 시작되고 있는 사업 수, iii) 지원사업의 총 수령액, iv) 지원받는 회사의 이익 증감, v) 지원받는 회사에게 발생한 고용률의 증감 또한, 이 보고서는 적어도 24개월간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며, 이 조항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30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 3) 「여성기업개발법(Women's Business Development Act)」

미국은 1991년에 「여성기업소유법」을 개정한 「여성기업개발법(Women's Business Development Act)」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여성기업소유법」에 의해 지원된 여성기업들이 나름의 성과를 보임에 따라, 1991년에 종료 되는 시범사업 및 소자본 대출프로그램을 연장시켜 미국 내 여성기업을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기업개발법」은 소액대출 프로그램의 영구적인 운영과 시범사업들의 연장, 그리고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운영방식에 있어서 수정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 「여성기업개발법」 주요 내용 >

- 여성이 소유·경영하는 소기업을 위해서 시범계획을 시행하는 민간단체(Private Organization)들에게 정부 보조금과 동일한 매칭 펀드(Matching Fund)방식으로 지원
- 1차년도에는 정부와 민간단체가 2:1, 2차년도에는 1:1, 3차년도에는 1:2의 비율로 민간단체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수정

### 4) 「연방정부구매합리화법(Federal Acquisition Steaming Act)」 및 「여성기업센터유지법(Women's Business Center Pre-servation Act)」

1994년에 「연방정부구매합리화법(Federal Acquisition Steaming Act)」이 제정되어 복잡한 연방정부의 조달체제를 단순화시켰으며, 각 연방기구가 공공구매 목표비율을 5%로 정하고 여성기업위원회의 조직체계를 변경하였다. '정부조달 우대정책'으로써 조달계획의 5%를 여성이 소유하는 중소기업이 납품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의 각 부처에게 권고한다. 또한 각 부처는 직원 1명을 여성소유기업과의 연락업무를 담당하는 조달촉진자(Advocate)로 임명한다.

2003년에는 「여성기업센터유지법(Women's Business Center Pre-servation Act)」을 제정하여 여성기업센터를 영구 사업화하고 센터의 신설과 기존센터의 예산지원을 연장할 수 있게 하였다.

---

## 5) 미국의 여성기업 관련 법률 특징 요약

미국의 중소기업법은 법의 목적에서부터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의 범위와 지원시책에 이르기까지 법규의 내용이 분명하고 구체적이다. 따라서 법규시행기관의 자의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예를 들면, 여성기업에 주어져야 할 지원혜택이 남성기업에 돌아갈 위험을 배제하기 위해서 여성기업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여성기업의 지원사항도 지원방법(직접대출 또는 보증)과 절차, 그리고 대출 한도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규정하였다.

특히, 미국은 자국 내에서 여성경제인법이라고 평가되는 여성기업소유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였는데, 이 법은 미국 내에서의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여성기업을 국민경제의 새로운 축인 동시에 미국 경제발전의 공헌자로 인정하였으며, 미국 중소기업법의 내용 중에서 여성기업에 관한 부분을 새롭게 확대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법 및 여성기업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성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 나. 유럽연합(EU)

### 1) 「중소기업을 위한 결의("A Small Business Act" for Europe)」

유럽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는 2008년에 중소기업을 위한 결의("A Small Business Act" for Europe)를 제정하여 유럽 중소기업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특히, 여성의 기업가적 활동에 대한 관심과 재능 배양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절차 참여를 용이하도록 조달시장 접근에 장애가 되는 잔여 장벽을 완화한다.

### 2) 「여성기업을 위한 국고보조법(Aid for female entrepreneurship)」<sup>32)</sup>

유럽연합(EU) 및 28개 회원국에게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창업하는 여성기업인을 위한 국고보조법(aid for small enterprises newly created by female entrepreneurs)」<sup>33)</sup>은

---

32) Communication인 "A Small Business Act" for Europe은 EU 및 28개의 회원국 차원에서 공동의 노력을 강력하게 표명한 것이라면 Regulation인 Aid for female entrepreneurship은 법률 및 법령으로 해석되어 법률적인 구속력이 있다.

33) 「적용제외법(General block exemption Regulation)」 제16조(2008년 제정)



단일경제권을 목표로 하는 공동시장의 원칙 범위 안에서 여성기업을 위한 국고보조를 지원한다.

표 1-6 | 유럽연합(EU) 회원국

지역	회원국
유럽연합(EU) (28개국)	아일랜드,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체코, 오스트리아, 프랑스, 폴란드,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헝가리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그리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키프로스, 몰타

**유럽 위원회 규정 (EC) 800/2008 (2008.8.6.)**

창업하는 여성기업인을 위한 국가보조는 기본적인 공동시장의 원칙에 맞추고 다음 2항에서 5항까지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통보요구조건이 면제된다.

수혜 여성기업인은 여성에 의해 새롭게 설립되는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국고보조금은 사업당 1백만유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국가보조액은 전체 기업 자산의 33%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국고보조는 초기 창업시기 5년동안에 사용가능한 금액의 1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국고보조는 창업하는데에 필요한 적격비용, 법률상담, 자문 컨설팅비용으로 사용해야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도 포함한다.

- (a) 외부금융과 자본에 대한 배당 및 이자
  - (b) 생산설비나 장비임대에 대한 사용료
  - (c) 전기세, 수도세, 냉·난방비, 관리비용에 대한 세금
  - (d) 생산설비나 장비임대에 대한 비용 및 임금(다른 원조 혜택이 없는 경우)
  - (e) 보육·양육 및 육아 휴직 관련된 비용
6. 12개월 동안 같은 주주에 의해 운영되는 동종계열 여성소기업은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다. 영국**

영국의 여성기업 관련법 규정은 미국이나 우리나라처럼 여성기업을 위한 독립법이 아닌 남녀평등과 관련된 법률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며, 영국의 여성기업 및 남녀평등 관련 내용을 담은 대표적인 법은 다음과 같다.

### < 영국의 여성기업 및 남녀평등 관련 주요 법률 >

평등임금법(Equal Act)

성차별금지법(Sex Discrimination)

공정고용법(Fair Employment(Northern Ireland) Act)

평등임금법이 도입된 1970년 이전의 영국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보다는 시장경제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성 평등 관련 법률을 제정한 후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성기업지원에 대한 별도의 법률적 뒷받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영국은 1992년 이후부터 육아정책, 모성에 대한 고려, 시간제 근로자의 권리보호, 교육에 대한 고려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률 제정은 없다.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은 주로 민간조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부문에서 교육 및 훈련, 자금 지원 등이 활성화되어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에 대한 지원 체제로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 라. 일본

일본은 여성정책에 대한 개념을 직접 법에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남녀공동참회사회기본법」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정치·경제 및 사회·문화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고, 함께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법 역시 현재 구비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이 중소기업 규모인 여성기업을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정책수립과 실행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sup>34)</sup> 다만, 1999년 산업회복법 보충결의안에 ‘정부는 여성기업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최초로 공식 문서화하였다.<sup>35)</sup> 2003년 11월에는 민노당이 노동 고용 조항에 여성기업가 및 비영리조직의 양적 확대 및 여성기업 판로지원을 위해서 일정부분 정부계약에 대한 보장성명을 발표하는 등 여성지원 관련 법률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기 시작하였다.

34) 이태야, 여성기업지원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0

35) 이정섭, 여성기업 현황 및 지원정책의 발전방안, 2007



## 2부

# 여성기업의 현주소

## 제1장 여성기업 동향

---

1. 여성 창업동향
2. 여성기업 일반현황
3. 여성기업 고용현황
4. 여성기업 재무현황
5. 여성기업 수출 및 투자활동
6. 교육 및 연수
7. 여성기업 애로현황

## 제2장 해외 여성기업 동향

---

1. OECD 여성경제 활동 현황
2. 해외 여성기업 현황



## 제1장 여성기업 동향

본 장에서는 4,680개의 여성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기업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기존 조사와 다른 점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있고, 제조, 건설 등 다양한 업종의 여성기업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여성사업체 표본이 아닌 여성기업체(개인사업자 제외, 법인여성기업) 표본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다. 여성사업체의 경우, 숙박 및 음식점업이나 도소매업종이 60%이상을 차지하고, 소상공인이 약 91%를 차지하는 반면, 여성기업체는 도소매업, 건설업,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5인 미만 업체 비중이 약 50% 정도 차지한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특정 업종에 편중된 여성 소상공인보다는 제조업, 건설업 등 다양한 업종의 중소여성기업의 특성을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분석한 국내 여성기업 동향은 다음과 같다.

### 1. 여성 창업동향

최근 들어 취업난, 실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이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창업촉진정책 등 여러 상황 요인들이 창업을 촉진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많은 기업체들이 창업을 하고 있으나, 창업한 대다수의 기업들은 창업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니게 된다.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 어떤 사업체는 성공을 거두기도 하고, 어떤 사업체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한다. 특히 창업자들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창업자들의 성공적 창업 및 경영 여부가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2013년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한 「2013년 여성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여성기업수는 2013년 기준 약 130만개로 조사되었고, 대부분의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 도·소매업으로, 해당 업종이 전체의 6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1

---

년 조사시 전체의 70%인 것에 비해 7.5% 감소한 것으로 그동안 여성기업의 업종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포화상태인 숙박 및 음식업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여성기업인의 장점을 바탕으로 창업하여 성공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창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이때 많은 여성 창업자들이 성공을 거두고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가. 자발적 창업의 증가

여성의 창업동기에 대해서 연구한 Hisrich and Brush<sup>36)</sup>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과 다르게 독립의 욕구가 일차적인 창업동기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창업동기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여성이 창업하는데 있어서 독립심과 성취욕구(자아실현 욕구)라는 긍정적 창업촉진요인(Pull Factor)이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하지만, 가족기업의 승계, 정부지원, 친구의 권유, 적정한 일의 발견 등과 같은 외부압박 요인(Push Factor)도 많이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성들은 긍정적 창업촉진요인(Pull Factor)과 외부압박 요인(Push Factor) 중 어떤 요인에 의해서 창업을 더욱 많이 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맞는 적절한 창업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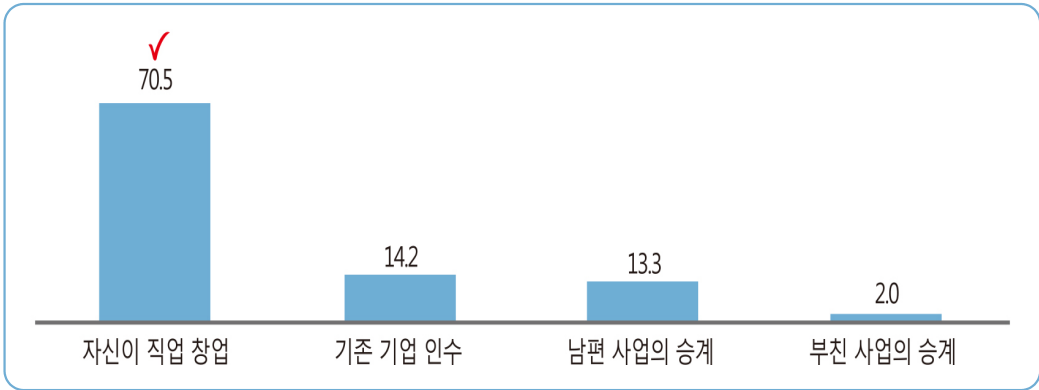
2013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 2012년도 여성기업의 창업유형은 자신이 직접 창업한 경우가 70.5%로 가장 높았고, 기존사업의 인수나 가업승계(남편이나 부친의 사업승계)와 같은 외부의 창업요인은 2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36) Hisrich and Brush, The woman entrepreneur : Starting, financing, and managing a successful new business, Lexington Books 1986

| 그림 2-1 | 지금의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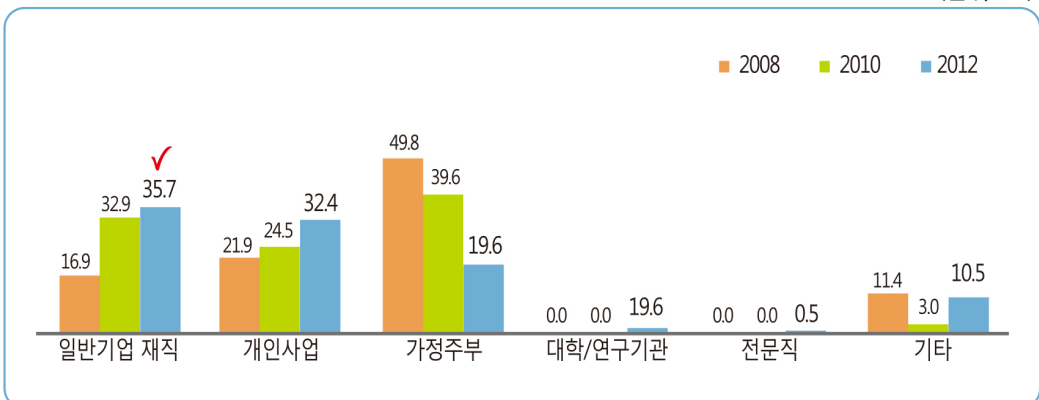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3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 나. 경제활동 여성의 창업 증가

2013년 여성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창업자의 창업 전 직업은 일반기업 재직 35.7%, 개인사업 32.4%, 가정주부 19.6%, 대학/연구기관 1.3%, 전문직 0.5%, 기타 10.5%로 나타나고 있다. 아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에는 창업 전 직업이 가정주부인 경우가 높았으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점차 증가하면서 일반기업에 재직하다가 창업을 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그림 2-2 | 현 사업체의 대표를 맡기 전 종사한 직업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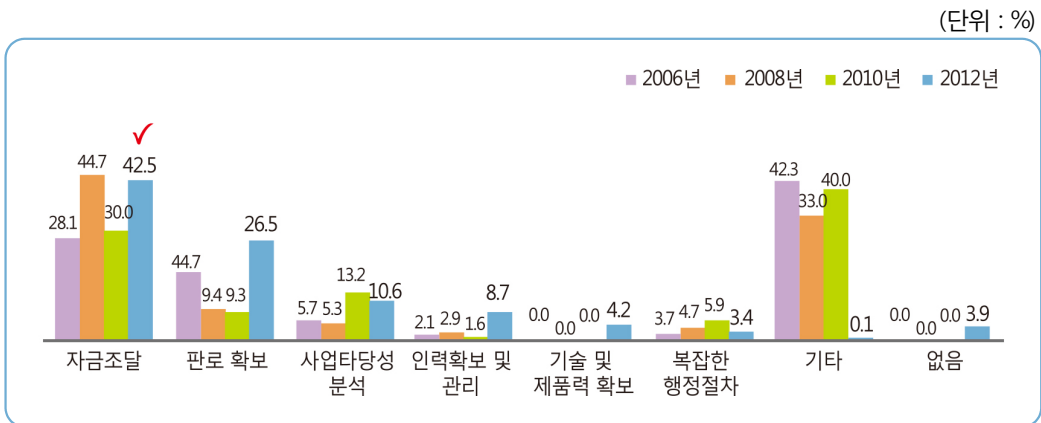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3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 다. 창업자금 조달 문제

여성기업인의 창업준비단계 애로요인을 조사한 결과, 창업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여전히 가장 어려운 일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0년의 조사에서는 창업준비 시 애로사항 중에서 자금조달에 응답한 비율이 30.0%였으나, 2012년은 42.5%로 크게 증가하였다.

| 그림 2-3 | 창업준비 시 애로사항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3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자금조달의 문제는 모든 창업자들이 경영활동에서 직면하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여성 창업자가 자금조달 문제를 더 어렵게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여성 창업자의 자체적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사회적 문화 및 관습 등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낮은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sup>37)</sup> 즉,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이데올로기에서 오는 사회적인 편견, 성별에 따른 직종분리 현상, 여성의 상급직 진출이 어려운 보수적인 기업구조, 가사와 육아라는 여성의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기대 등이 여성의 경력단절을 유발하고, 경제활동을 제약한다. 이로 인해 여성 창업자는 창업에 필요한 인적자원, 사회적 자원, 재정적자원이 부족하게 되고, 창업자금 조달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담보나 배우자의 서명 등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받기도 한다.<sup>38)</sup>

37) 김정화(2011), “여성기업 육성에 관한 법제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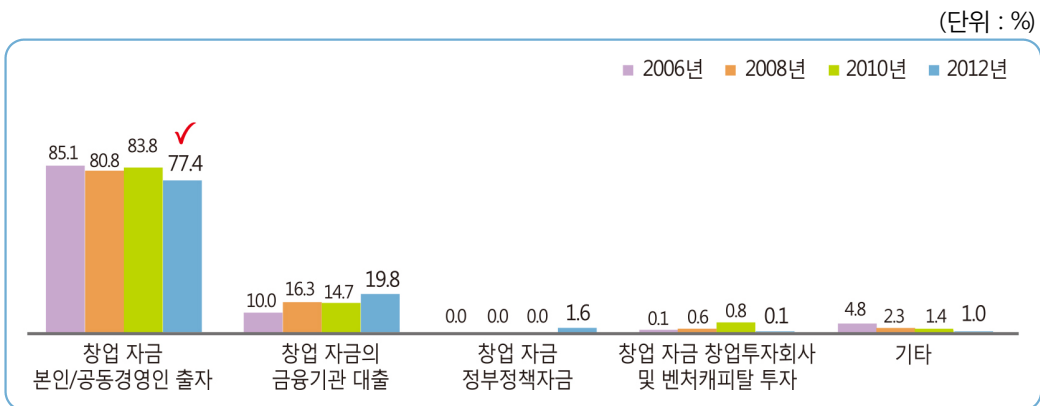
38) Coleman, S, Cohn R, Small Firm Use of Leverage : A Comparison of Men and Women-Owned Firms, Conference Proceedings, United Statse Association for Small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San Die해, January 14-17, 1997, p.4



사업타당성 분석에 대한 애로사항 비율은 2010년 13.2%에서 2012년 10.6%로 약간 줄어들었으나, 인력관리, 기술 및 제품력 확보에서의 애로사항 비율은 과거에 비해 높아지고 있다. 인력확보 및 관리 애로비율은 2010년 1.6%에서 2012년 8.7%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기술 및 제품력 확보 애로비율 역시 0.0%에서 4.2%로 증가하였다. 반면 행정절차에서의 애로비율은 2010년 5.9%에서 2012년 3.4%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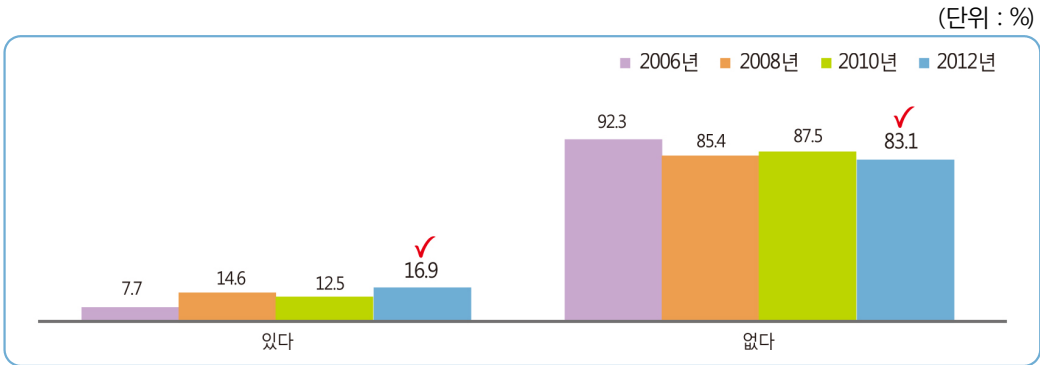
여성기업의 대표가 필요자금을 조달한 경로 및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본인/공동경영인 출자’가 77.4%로 가장 높았고, ‘금융기관 대출’이 19.8%, ‘창업자금 정부정책자금’이 1.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여성사업체 대상 조사와 비교한 결과, ‘창업자금 본인/공동경영인 출자’는 5.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창업 자금의 금융기관 대출’의 경우 5.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2-4 | 창업 시 필요자금 조달경로 및 구성비율



창업 시 정책 자금 신청 후 지원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6.9%, ‘없다’는 응답은 83.1%로 나타났다. 기존 여성사업체 대상 조사와 비교한 결과, 정책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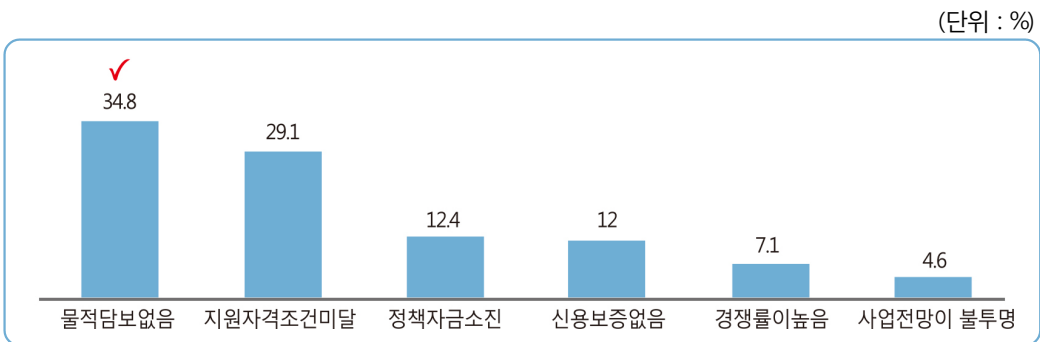
| 그림 2-5 | 창업 시 정책 자금을 지원 받지 못한 경험



※ 해당 없음의 값을 제외 한 후 '있다'와 '없다' 값을 재산출

정책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물적 담보가 없음'이 34.8%로 가장 높았고, '지원 자격조건 미달' 29.1%, '정책자금 소진' 12.4%, '신용보증없음' 12%, '경쟁률이 높음' 7.1%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기관 이용 시 담보 부족과 여성기업가들의 능력에 대한 신뢰의 부족으로 신용도를 낮게 평가받거나, 지원 자격 조건의 미달의 이유는 차별적 관행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 그림 2-6 | 창업 시 정책 자금을 지원 받지 못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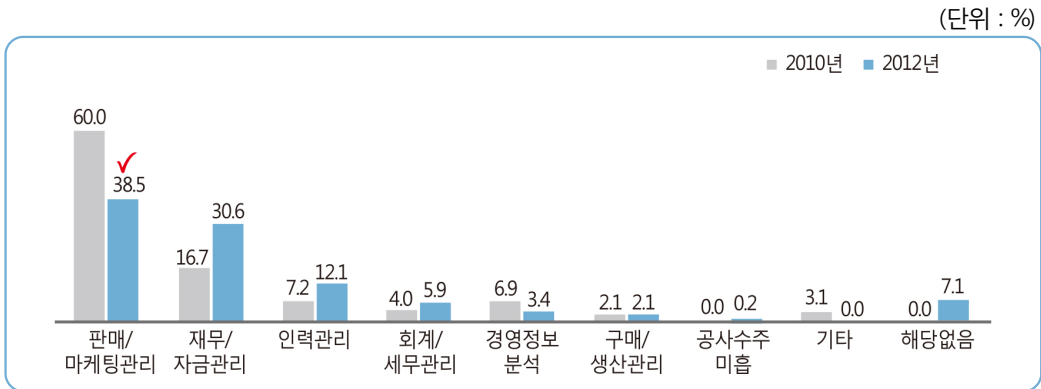


창업 후 초기 사업 운영 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는 '판매/마케팅관리'가 38.5%로 가장 높았고, '재무/자금관리' 30.6%, '인력관리' 12.1%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 여성사업체 대상 조사와 비교한 결과 '판매/마케팅관리'라는 응답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2010년 60.0% → 2012년 38.5%), '재무/자금관리'라는 응답은 13.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2-7 | 초기 사업 운영 시 가장 어려웠던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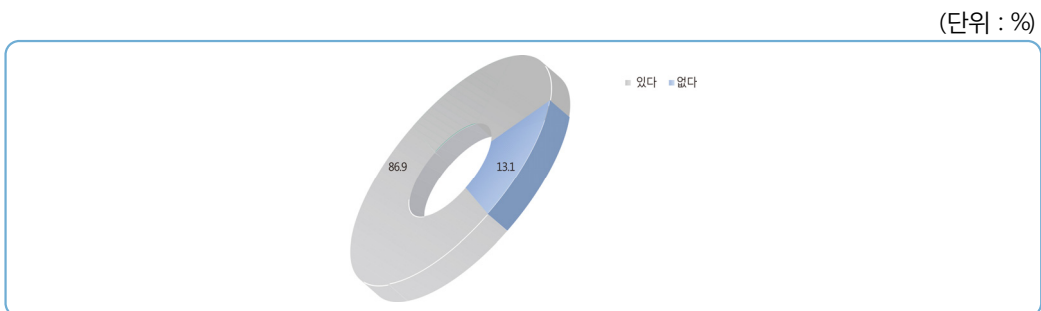


## 라. 전문가의 도움 없이 창업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창업진흥원, 소상공인진흥원, 한국여성경제인 협회 및 여성창업 전문기관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을 설치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창업자의 대부분은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 및 정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이러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창업관련 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자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창업 시 창업지원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13.1%,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86.9% 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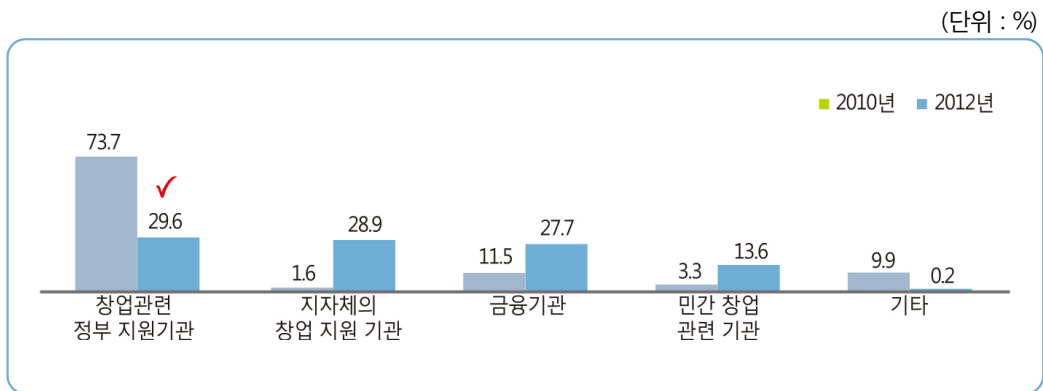
| 그림 2-8 | 창업지원 기관의 창업 지원 여부



창업 준비과정에서 가장 많은 관련 정보나 자문을 받은 기관으로는 ‘창업관련 정부 지원기관’ 29.6%, ‘지자체 지원 기관’ 28.9%, ‘금융기관’ 27.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 여성사업체 대상 조사와 비교한 결과 ‘창업관련 정부 지원기관’에서 도움을 받은 응답이 큰 폭으로(2010년 73.7% → 29.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2-9 | 창업 준비 시 관련 정보나 자문 받은 기관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3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 2. 여성기업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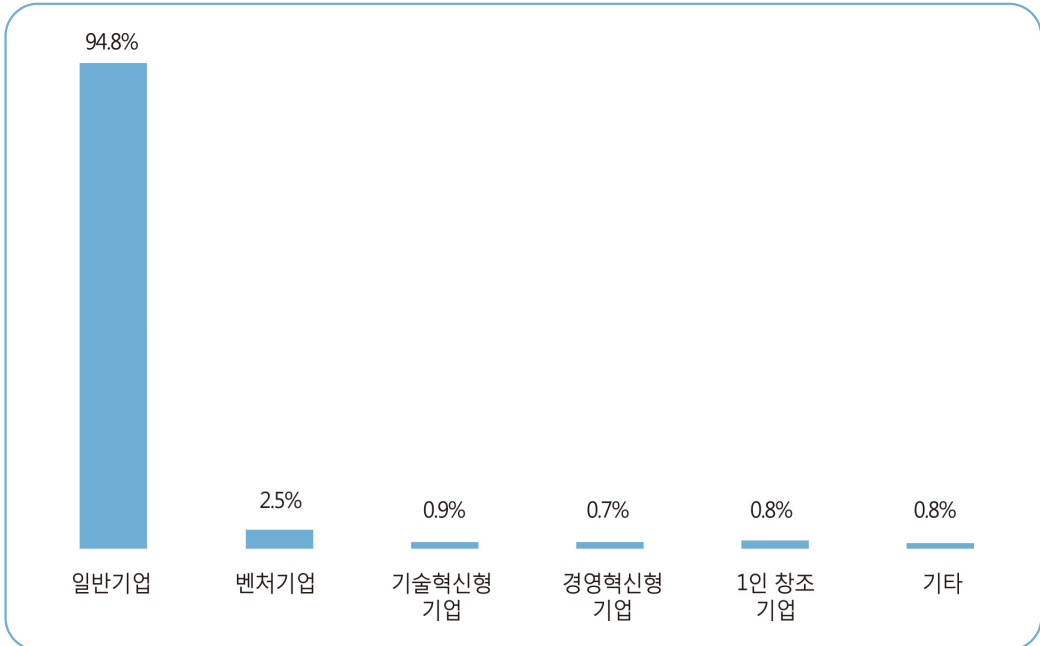
### 가. 기업유형

여성기업은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이노비즈), 경영혁신형(메인비즈) 등의 혁신 기업과 관련된 인증을 받은 여성기업이 적은 편이다. 여성기업의 기업 유형을 조사한 결과, 94.8%는 특별한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기업이며, 그 외 벤처기업은 2.5%, 기술혁신형 기업(이노비즈)은 0.9%, 경영혁신형 기업(메인비즈)은 0.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소기업 중, 제조업의 경우 혁신형기업(벤처, 기술혁신, 경영혁신 포함)이 30.1%,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경우 32.1%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여성기업의 혁신형 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 그림 2-10 | 여성기업의 인증 유형

(단위 : %)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3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 나. 성장단계

기업 수명주기 이론은 제품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 : PLC)이론에서 출발한 것으로, 기업도 유기체와 같이 일정 패턴에 따라 변화가 진행된다는 개념이다. 크게 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의 4단계로 구성되는데, 일반적으로 성숙기에는 수익성은 높으나 매출이나 점유율이 정체된 특성을 보이며, 경영지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쇠퇴기에 접어들면 대개 기업은 철수나 사업전환 등의 전략을 택하게 된다.

여성기업의 성장단계를 분석한 결과, 여성기업의 49.3%는 현재 자신의 사업분야가 성장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기는 매출액과 시장점유율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기로, 시장 수요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많은 혁신이 일어나면서 기업이 역동성을 띄는 경향이 있다. 여성기업의 경우 절반가량이 성장단계에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특히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55.6%)과 ‘교육서비스업’(54.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54.0%)에서 성장기에 있다는 기업 비중이 높았다.

그 외에 여성기업의 34.5%는 성숙기에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창업기는 9.6%, 쇠퇴기는 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중소기업의 기업성장단계 현황과 유사하다. 2013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는 성장기와 성숙기 비중이 각각 52.0%, 32.4%로 성장기, 성숙기에 있는 기업 비중이 높으며, 그 다음으로 진입기(11.4%), 쇠퇴기(4.3%) 순이다. 참고로, 여성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성장기(52.7%), 성숙기(31.4%), 창업기(10.4%), 쇠퇴기(5.6%)로 나타났는데, 중소기업 대비 성장기와 쇠퇴기는 각각 0.7%p, 1.3%p 높은 반면, 진입기와 성숙기는 1.0%p씩의 차이를 보여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2-1 | 성장단계별 위치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분		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전체	여성기업	9.6%	49.3%	34.5%	6.5%
제조업	여성제조기업	10.4%	52.7%	31.4%	5.6%
	일반 중소기업	11.4%	52.0%	32.4%	4.3%

- 주) 1. 진입기: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으로 제품 / 서비스 개발단계  
 2. 성장기: 매출액 또는 시장점유율 등의 지속적으로 증가, 양적·질적으로 발전 단계  
 3. 성숙기: 매출액 또는 시장점유율이 정체, 지속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확보하는 단계  
 4. 쇠퇴기: 뚜렷한 매출성과 없이 기업 활동이 위축되거나 재도약을 준비하는 단계  
 ※ 자료: 중소기업청, 2013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3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 다. 기업업력

여성기업의 평균 업력은 7.7년으로 2013 중소기업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중소기업 제조업(평균 10.8년)과 지식기반 서비스업(평균 8.0년)의 평균 업력 보다 짧은 편이다. 여성기업의 경우, 3년 미만 기업이 2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5년 업력을 가진 기업 비중은 16.5%로 낮아지다가, 6년-10년 기업 비중이 28.4%로 다시 증가하게 되는

U자형 형태를 그리고 있다.

대체로, 여성기업의 평균 기업업력은 짧은 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10년 이상 업력을 가진 중소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비중은 각 51.8%, 37.5%인 반면, 여성기업의 경우 25.3%로 나타났다. 여성제조업 기준으로는 10년 이상의 기업업력을 가진 비중이 31.8%로, 일반 중소기업 대비 14.3% 낮은 편이다.

기존의 관련 연구(김경조, 최진배, 김태훈 2008)에서도 남성기업의 업력은 평균 160개월, 여성기업은 평균 82개월로 남성기업이 여성기업보다 약 2배 정도의 긴 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시대적 분위기상 여성경제활동이 활성화되는 시기가 남성보다 늦은 편이고, 외환위기 이후 남편의 직장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면서 창업하는 여성이 외환위기 이후에 증가하는 등의 요인이 기업업력이 짧은 여성기업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하였다.

표 2-2 | 여성기업의 기업연령(업력)

(단위 : % , 년)

연도	3년 미만	4~5년	6~10년	11~15년	16년 이상	[평균 업력]
비중	29.7%	16.5%	28.4%	16.2%	9.1%	7.7년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3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 라. 여성기업의 경쟁력 평가

여성기업은 국내 주요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경쟁우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한편, 해외 경쟁사와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요 경쟁사와 비교한 자사 제품의 경쟁력 수준을 조사한 결과, '우수'하다는 평가가 58.5%로 가장 높고, '부족'하다는 의견은 4.9%에 불과하였다. 이는 여성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사 대비 자사의 경쟁력을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외는 달리 해외 주요 경쟁사와 비교한 경쟁력 질문에 대해서는 '우수'하다는 의견이 29.2%로 국내 경쟁력에 대한 응답보다 29.3%p 낮게 나타났다. 또한 '부족'하다는 의견은 11.8%로 국내 경쟁력 수준보다 6.9%p 높게 나타나, 여성기업은 국내 경쟁사와의

비교 대비 해외 주요경쟁사에 대한 경쟁력을 다소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2-3 | 여성기업의 제품/서비스 경쟁력 수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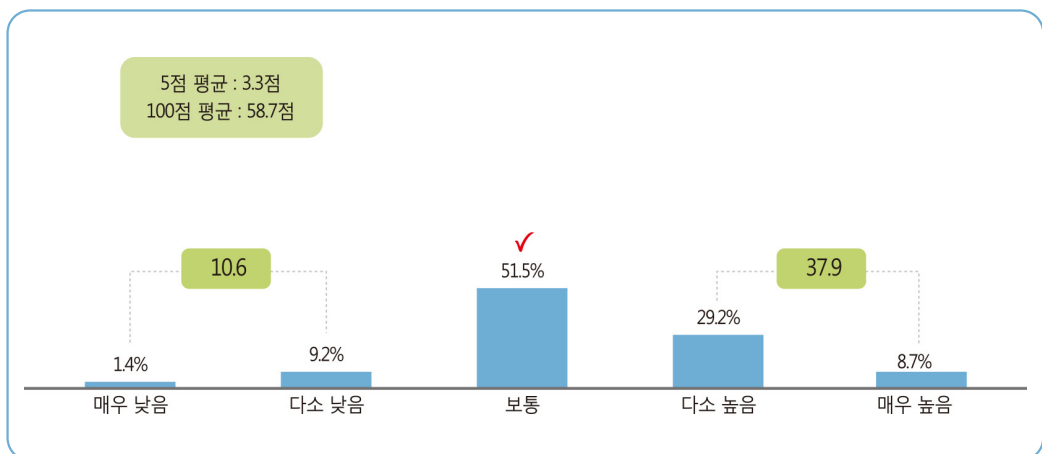
구 분	여성기업의 제품/서비스 경쟁력 평가			
	우수	보통	부족	모름/무응답
국내 주요 경쟁사 대비	58.5	36.5	4.9	-
해외 주요 경쟁사 대비	29.2	36.7	11.8	22.2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3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 마. 시장경쟁정도 및 기업중점전략

여성기업은 자사가 주력하고 있는 시장의 경쟁정도가 대체로 보통 수준(51.5%)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시장경쟁정도가 높다는 응답(37.9%)이 경쟁 정도가 낮다(10.6%)는 응답 보다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림 2-11 | 여성기업 주력시장 내 시장경쟁정도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3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특히 제조업(32.2%)보다는 비제조업분야(39.1%)에서 시장경쟁정도가 높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제조업 중에서도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58.9%),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48.6%),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7.4%) 등에서 시장 경쟁정도가 높다는 응답이 다소 많았다. 이러한 보건, 사회복지나 예술/스포츠, 여가관련 업종에서 특히 시장경쟁정도가 높게 평가된 것은 최근 힐링이 문화적인 트렌드가 됨에 따라 사회복지나 예술 분야 등 관련 업종에서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바. 여성 기업대표의 특성

국내 여성기업 대표자는 평균 49.5세로 40대(37.8%)와 50대(38.3%) 비중이 높으며, 20대(0.8%) 비중은 낮은 편이다. 학력의 경우에는 고졸이하가 30.2%이나, 전문대졸을 포함한 대학교 졸업자가 62.1%, 대학원졸업자가 5.1%로 고학력 여성의 비중이 높다. 대졸이상자의 전공 분야는 인문/사회계열(40.6%)을 전공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경제/경영(29.8%) 전공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4 | 여성기업인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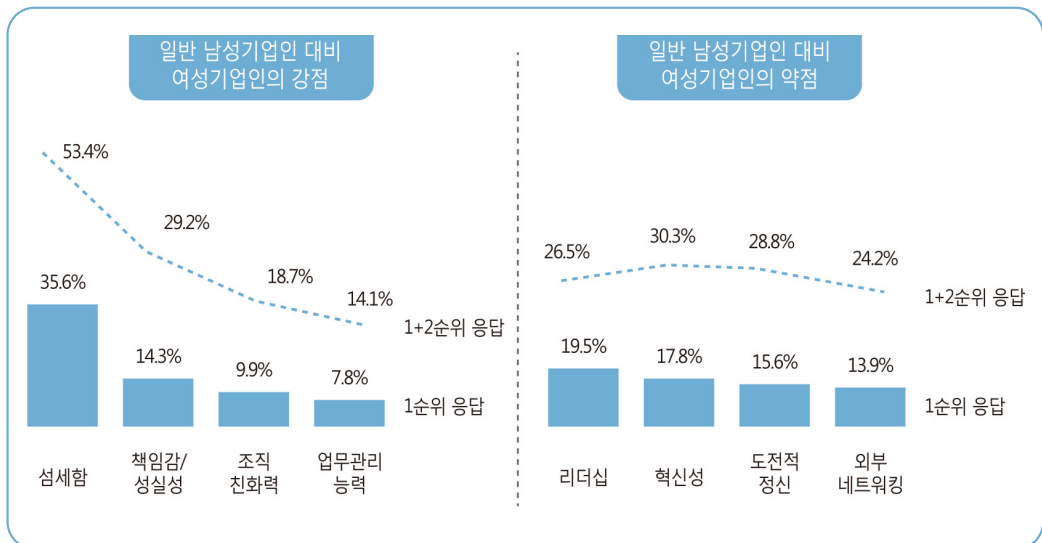
항목	구분	비중
연령	20대 이하	0.8%
	30대	10.1%
	40대	37.8%
	50대	38.3%
	60대	10.6%
	무응답	2.4%
	학력	고졸이하
전문대졸		9.2%
대졸		51.9%
대학원졸		5.1%
무응답		3.5%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3 여성기업 실태조사

여성기업인들은 남성기업인보다 섬세함과 책임감/성실성 강점을 보인다. 여성기업인이 생각하는 일반 남성기업인 대비 강점을 조사한 결과, 1위로 섬세함을 꼽았으며, 2위는 책임감/성실성, 3위는 조직친화력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여성 특유의 여성성에서 비롯된 특성들로, 기존 연구들에서는 사회심리학적으로 여성의 경우 공감능력과 소통, 조직친화력, 섬세함 등이 보다 뛰어나다는 점을 발견해왔는데, 이러한 여성 특유의 강점이 기업 경영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볼 수 있다.

| 그림 2-12 | 여성기업인의 강점 및 약점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3 여성기업 실태조사



반면, 리더십, 혁신성, 도전정신은 남성기업인보다 취약한 점으로 나타났는데, 여성기업인들은 리더십을 가장 취약한 점으로 꼽았고, 그 다음으로 혁신성, 도전적 정신, 외부네트워킹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즉 여성기업인들은 스스로 혁신능력과 리더십 등을 부족함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리더십과 혁신성 등의 요인이 여성기업에서 더 취약한가에 대한 질문은 이미 예전부터 자주 거론되어 왔는데, 관련 연구들은 여전히 연구자별로 상이한 주장을 하고 있어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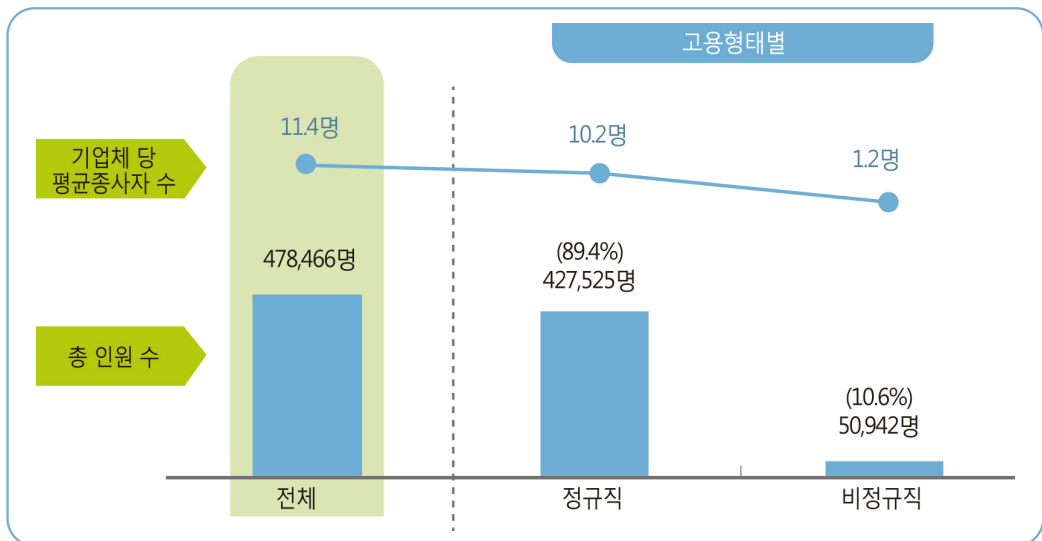
### 3. 여성기업 고용현황



#### 가. 고용 특성

'13년 6월 30일 기준, 여성기업의 종사자 인원은 총 478,466명으로 1개 기업체 당 평균 11.4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기준, 여성사업체의 업체당 평균 고용인원이 2.7명인 것에 비교하면, 여성기업체의 고용규모가 약 4.2배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여성기업체의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427,525명, 비정규직이 50,942명으로 비정규직(10.6%) 대비 정규직 비중(89.4%)이 높은 구조를 띄고 있다.

| 그림 2-13 | 여성기업체 고용인원 및 고용구조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3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성별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여성기업에 고용된 남성인력은 278,036명(58.1%), 여성이 200,431명(41.9%)으로 남성고용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고용 비율은 업종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예를 들어, 제조업 중, '섬유/의복/가방/신발'(51.7%)과 '식품/음료 제조'(51.4%), 비제조업 중,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76.2%), '교육

서비스업(64.9%), 그리고 ‘금융 및 보험업’(55.5%)의 경우는 남성고용을 보다 여성고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2-14 | 여성기업체 업종별 성별 고용현황

구 분		총인원	성별				
			남성		여성		
			총인원	비율	총인원	비율	
전 체		478,466	278,036	58.1	200,431	41.9	
부 문	제조업	118,001	73,735	62.5	44,266	37.5	
	비제조업	360,465	204,301	56.7	156,164	43.3	
세 부 업 종 별	제 조 업	식품/음료 제조	13,308	6,468	48.6	6,840	51.4
		섬유/의복/가방/신발	14,287	6,906	48.3	7,380	51.7
		기타 제조	90,406	60,360	66.8	30,046	33.2
	비 제 조 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5,013	3,605	71.9	1,408	28.1
		건설업	69,955	47,142	67.4	22,814	32.6
		도매 및 소매업	80,479	42,635	53.0	37,844	47.0
		운수업	27,512	19,353	70.3	8,159	29.7
		숙박 및 음식점업	15,057	7,931	52.7	7,126	47.3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9,686	11,962	60.8	7,724	39.2
		금융 및 보험업	7,329	3,264	44.5	4,065	55.5
		부동산업 및 임대업	14,221	8,163	57.4	6,057	42.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5,842	13,809	53.4	12,033	46.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70,198	36,507	52.0	33,691	48.0
		교육 서비스업	10,768	3,776	35.1	6,992	64.9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2,012	479	23.8	1,533	76.2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801	1,853	48.7	1,948	51.3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8,593	3,823	44.5	4,770	55.5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3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 인력 현황 수치의 경우, 소수점 아래 자리의 반올림으로 인해 각 세부항목의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성별 고용현황을 일반 중소기업과 비교했을 때 여성기업의 여성고용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중소기업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일반 중소기업과 여성 중소기업의 성별 고용현황을 비교한 결과, 일반 중소기업의 여성고용비율은 26.9%인 반면, 여성 중소기업의 여성인력 고용비율은 37.5%로 여성 중소기업이 10.6%p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 중소기업이 일반 중소기업보다 여성고용에 보다 적극적임을 보여준다.

표 2-5 | 여성기업 및 중소기업 종사자 현황(성별구분)

(단위 : 명, %)

구 분	여성제조업 부문		중소제조업	
	총인원(명)	구성 비율(%)	총인원(명)	구성 비율(%)
전 체	118,001	100.0	2,086,116	100.0
남 성	73,735	62.5	1,524,037	73.1
여 성	44,266	37.5	562,079	2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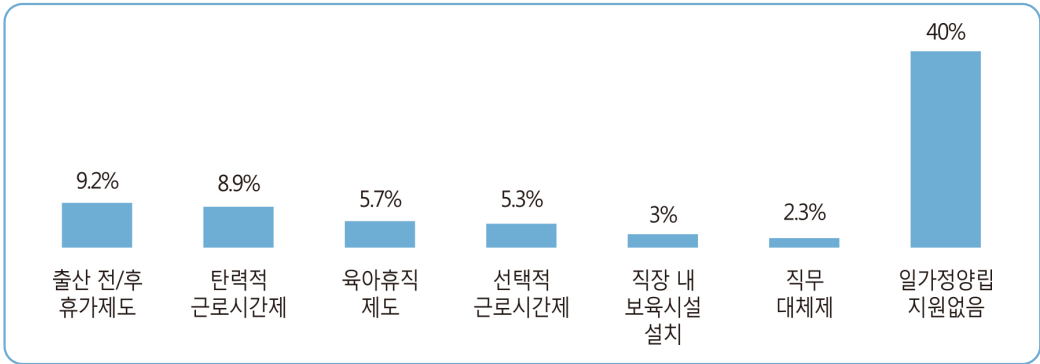
※ 자료 : 중소기업청, 2013 중소기업 실태조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3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 나.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은 여성의 사회활동 유지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여성 경제참여활동 촉진 차원에서 기업으로 하여금 일·가정양립이 가능하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성기업의 경우 근로자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을까? 여성기업 중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갖추고 있는 기업은 22.6%로, 나머지 77.4%는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정양립 지원을 하고 있는 여성기업의 경우에는 출산 전/후 휴가제도(9.2%)에 대한 활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8.9%), 육아휴직제도(5.7%), 선택적 근로시간제(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그림 2-15 | 여성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3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한편, 근로자 규모가 커질수록 일·가정 양립 지원을 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영세기업에서는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별도의 지원을 하기에 경제적, 인력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20인 미만 여성기업의 경우,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지 않는 기업 비중이 76%이상을 상회하는 반면, 100인 이상인 여성기업의 경우에는 45.6%의 여성기업에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지원종류별로는 출산 전/후 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 2-6 | 여성기업 규모별 일·가정 양립 지원 현황

구분	비중						
	출산 전/후 휴가제도	탄력적 근로 시간제	육아 휴직 제도	선택적 근로 시간제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직무 대체제	일·가정 양립 지원없음
5인 미만	8.1	8.0	4.4	5.3	3.4	2.1	79.7
5~19인	9.1	9.4	6.0	4.9	2.3	2.7	76.8
20~49인	14.2	11.5	10.1	6.6	2.2	1.7	68.3
50~99인	17.5	16.0	12.8	5.8	4.3	2.8	62.3
100인 이상	25.3	14.8	21.7	9.2	5.6	0.5	54.4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3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 4. 여성기업 재무현황



### 가. 재무 현황

여성기업의 기업체당 평균 자산은 1,584백만원이며, 이중 자본은 629백만원, 부채는 956백만원이다. 평균 매출은 2,389백만원, 당기순이익은 75백만원으로 순이익율은 약 3.1%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전반적으로 비제조업보다 제조업의 자산과 매출, 당기순이익 규모가 크다. 제조업의 자산규모(2,653백만원)는 비제조업(1,341백만원)의 약 1.98배이며, 당기순이익은 제조업(160백만원)이 비제조업(55백만원)보다 약 2.91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지표상으로도 비제조업은 제조업 대비 자기자본의 회전률은 높았지만, 부채비율은 더 높고, 매출액 대비 순이익율은 제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제조업의 안정성 및 수익성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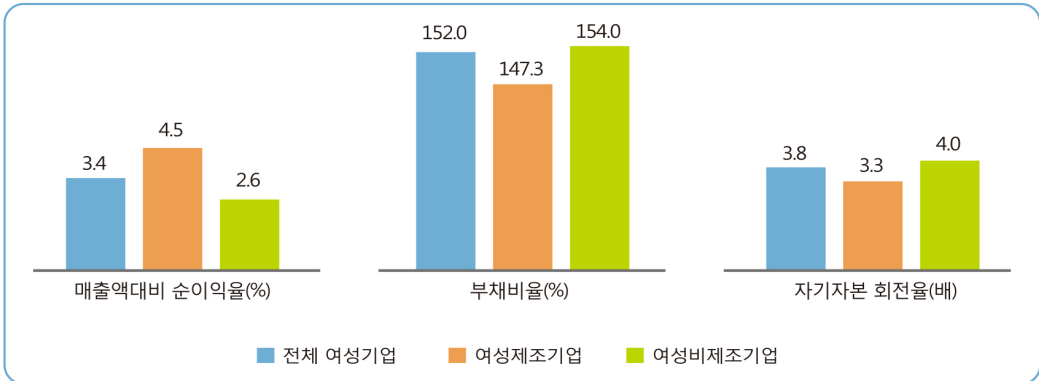
표 2-7 | 2012년도 여성기업 재무현황 및 경영지표 비교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업체당 자본	기업체당 부채	기업체당 자산	기업체당 매출액	기업체 당 당기순이익	
전체 여성기업	629	956	1,584	2,389	75	
구 분	여성 제조기업	1,073	1,580	2,653	3,591	160
	여성 비제조기업	528	813	1,341	2,115	55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3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그림 2-16 | 2012년도 여성기업 경영지표 비교



구 분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부채비율(%)	자기자본 회전률(배)
전체 여성기업	3.13	151.94	3.8
구분 여성 제조기업	4.50	147.29	3.3
여성 비제조기업	3.40	162.74	3.0

※ 주요 경영지표의 산식

• 수익성  

$$\text{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 \frac{\text{당기순이익}}{\text{매출액}} \times 100$$

• 안정성  

$$\text{부채비율(}\%) = \frac{\text{부채총액}}{\text{자기자본}} \times 100$$

• 활동성  

$$\text{자기자본 회전률(배)} = \frac{\text{매출액}}{\text{자기자본}}$$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3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한편, 제조업을 중심으로 여성제조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의 재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규모면으로는 여성제조기업이 더 영세한 편이었지만 수익성이나 부채비율 등에서는 여성제조기업이 일반 중소기업보다 더 안정적이고 수익성은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면에서는 일반 중소기업의 자산과 당기순이익이 여성제조기업보다 각각 1.7배, 1.1배씩 더 큰 편이다. 그러나 수익성은 여성제조기업이 4.5%로 중소기업



(3.4%) 대비 1.1%p 높았고, 부채비율은 147.29%로 중소기업(162.74%) 대비 15.45%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제조기업의 경우 일반 중소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수익성은 더 양호하나, 부채비율은 낮아 대체로 안정적이면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영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재무 활동성을 의미하는 자기자본 회전률의 경우, 여성제조기업의 자기자본회전율(3.3배)과 일반 중소기업(3.0배)간에 큰 차이는 없으나,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기자본 활동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여성제조기업이 일반 중소기업 대비 활동성과 수익성, 안정성 부문에서 모두 비교적 양호한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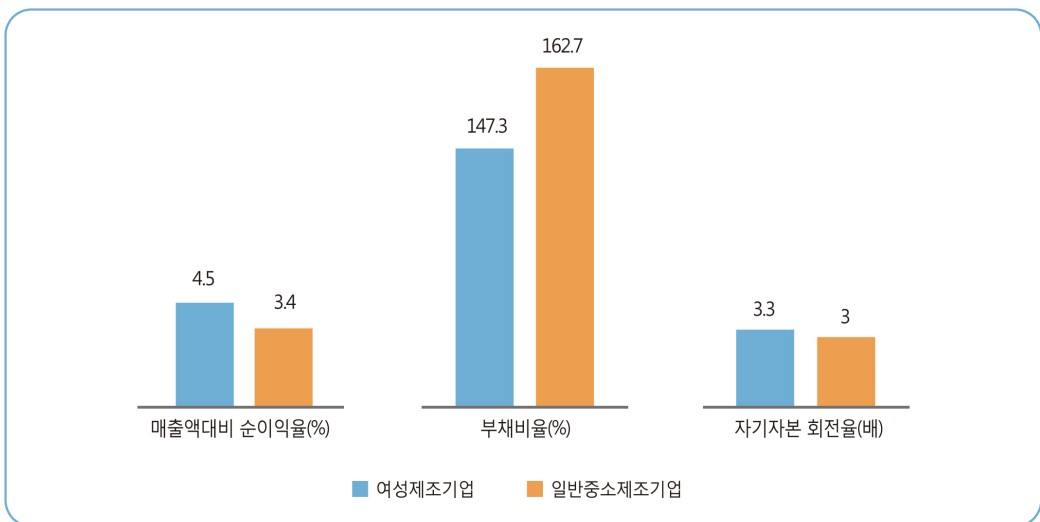
표 2-8 | 2012년도 여성제조기업 및 일반 중소기업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업체당 자본	기업체당 부채	기업체당 자산	기업체당 매출액	기업체 당 당기순이익
여성 제조기업	1,073	1,580	2,653	3,591	160
일반 중소기업	1,753	2,852	4,605	5,283	180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3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그림 2-17 | 2012년도 여성제조기업 및 일반 중소기업 경영지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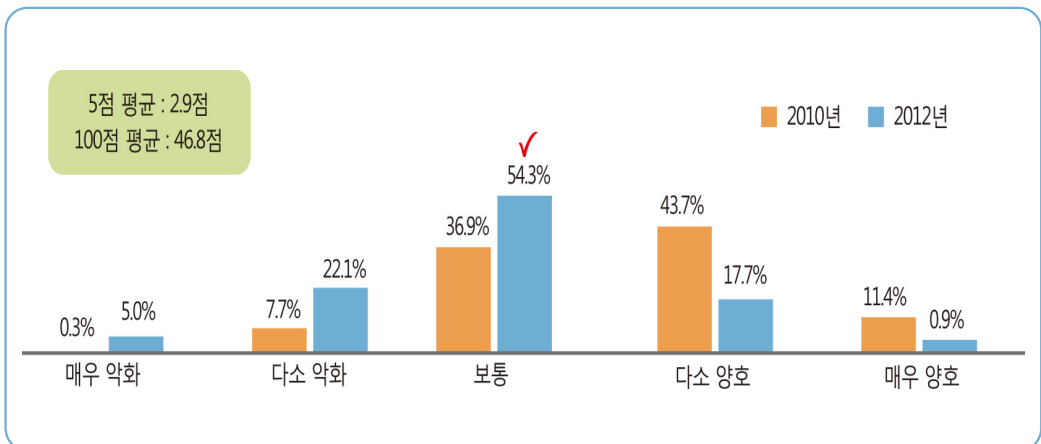
구분	구분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부채비율(%)
구분	여성 제조기업	4.50	147.29	3.3
	일반 중소기업	3.40	162.74	3.0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3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 중소기업 매출총액은 '13년 중소기업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함

## 나. 경영성과

여성기업의 경우 2012년도 경영성과에 대해 54.3%는 전년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대비 경영성과를 질문한 결과, 응답 여성기업의 54.3%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영성과에 대해 '다소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22.1%로, '다소 양호하였다'(17.7%)는 응답보다 8.5% 더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식품/음료 제조'(32.4%)와 '금융 및 보험업'(37.9%), '부동산 및 임대업'(35.5%) 등에서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높은 편이었다.

| 그림 2-18 | 경영성과에 대한 여성기업 평가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3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 5. 여성기업 수출 및 투자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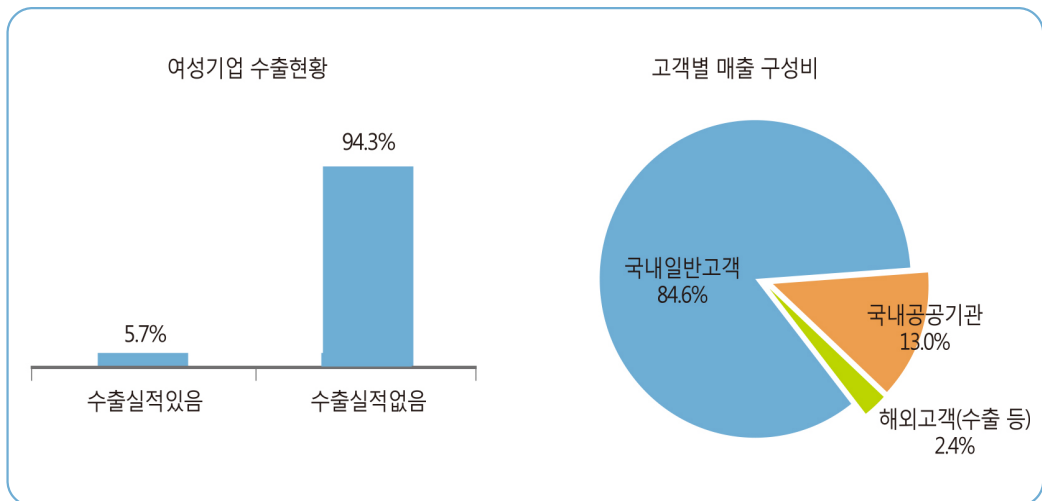


### 가. 수출활동

국내 여성기업은 내수중심으로 경영하는 경향이 강하다. 2012년 기준, 수출실적이 있는 여성기업은 5.7%로, 94.3%의 여성기업은 수출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분포에서도 국내 일반고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84.6%로, 해외고객의 매출 구성비는 불과 2.4% 수준이다.

여성기업의 수출이 저조한 주요 원인을 조사한 결과, 여성기업의 76.0%는 수출품목 발굴이 곤란하기 때문에 수출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해외 시장에서 유망한 수출 품목이 부재하다는 것으로, 여성기업 내부적으로 해외로 판매할만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자사제품의 해외 경쟁력 평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국내 경쟁사 대비 자사 경쟁력 평가에서는 58.6%의 여성기업이 우수한 수준이라고 평가하였으나 해외 경쟁사와 비교해서는 29.2%만이 우수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 그림 2-19 | 여성기업 수출 및 매출액 구성현황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3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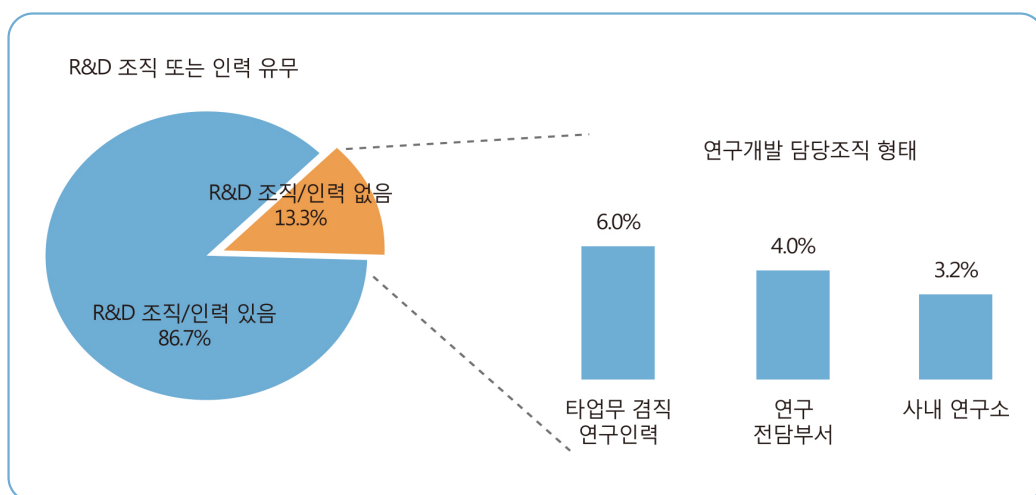
## 나. R&D 및 설비 투자활동

여성기업들은 R&D나 설비 등 투자활동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여성기업중 13.3%만이 R&D 활동을 위한 조직 또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86.7%는 R&D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R&D 투자를 하고 있더라도 전담인력이나 조직을 두기보다는 타업무 겸직하면서 연구활동을 진행하는 형태의 R&D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구조이다.

이중 제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체 여성제조업 중에서는 25.1%가 R&D 투자 조직 또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 중소기업의 R&D 투자 기업 비중이 평균 31.0%에 비교해서는 5.9%p 낮은 수준이며, R&D 투자를 하고 있는 여성기업 중에서도 10.6%는 타업무 겸직의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형태이다.

이 외에 설비투자나 사업확대 등의 계획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경향이 있는데, 여성기업 중 92.9%는 향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하였으며, 전체 매출액 중에서는 평균 18.1% 정도 설비 투자비용으로 투입하는데, 이 비용도 약 60%이상은 기존 설비의 유지보수 비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신규 설비 투자는 미미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2-20 | 여성기업의 R&D 조직 현황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3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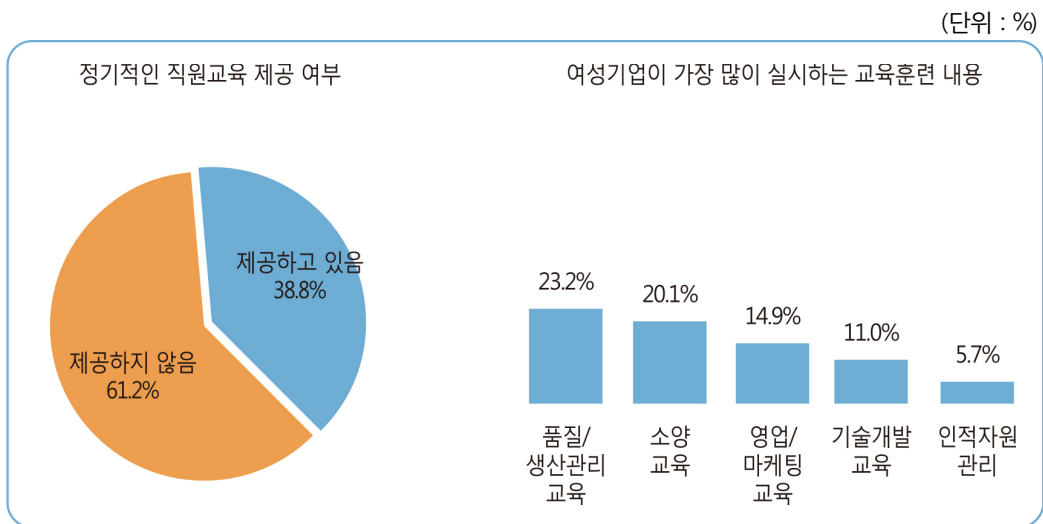
## 6. 교육 및 연수



### 가. 교육 및 연수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있어 근로자와 CEO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의 제공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성기업에서는 38.8%가 근로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재직자 대상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품질/생산 관리 교육(23.2%)을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직원 소양교육(20.1%)을 주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2-21 | 여성기업의 정기적인 직원교육 제공여부 및 교육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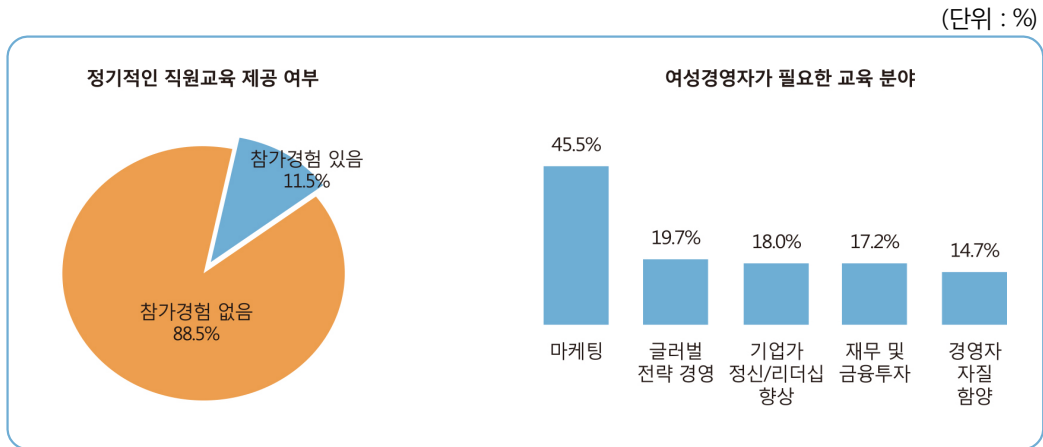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3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또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여성경영자 스스로의 지속적인 역량강화 교육도 요구되는데, 여성기업인의 11.5%가 여성기업인 대상 교육 또는 연수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마케팅과 글로벌 전략경영 교육 등에 니즈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경영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은 1위 마케팅(45.5%)이 가장 높고, 2위 글로벌 전략경영(19.7%), 3위 기업가정신/리더십향상(18.9%), 4위 재무 및 금융투자교육(17.2%)의 순이다. 한편, 교육 및 연수를 통해 여성기업인은 경영지식

함양뿐만 아니라, 동업종 경영자간의 정보교류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기업들이 업종 간 네트워크 교류를 통한 트렌드, 경영정보 등에 관한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 그림 2-22 | 여성경영자 교육의 필요성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3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 7. 여성기업 애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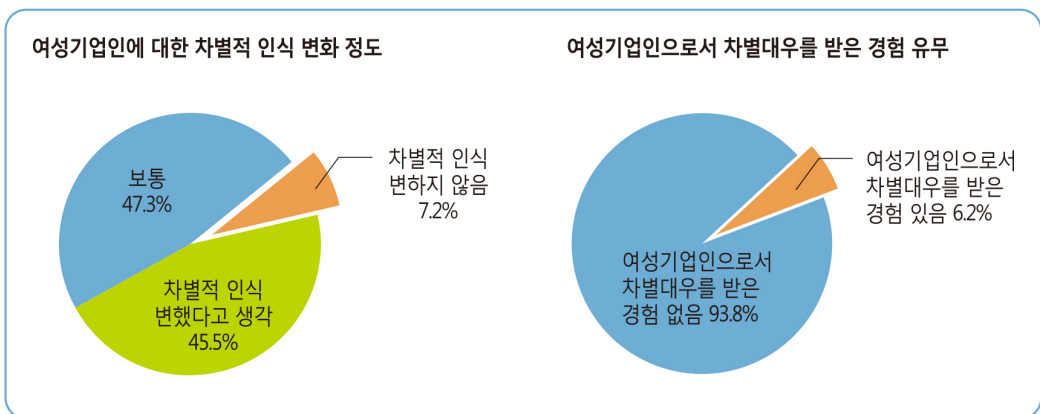
### 가.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차별대우

여성기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여성기업 경영에 불합리한 장벽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여성기업이 증가하고, 성장함에 따라 최근에는 이러한 사회적 편견이 완화된 것으로 보이고 있다. 과거 대비 여성기업인에 대한 인식 변화 정도를 분석한 결과, 여성기업인의 45.5%는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기업의 절반 정도는 차별적 인식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보였다. 반면, 7.2%는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주로 운수업(16.9%)과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17.0%)에서 인식이 변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이는 다량의 상품을 운송하는 운수업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의 경우에는 대체로 여성기업인의 비중이 낮은 편에 속하는 업종들로 2012년 전국 사업체 조사를 기준으로 볼 때, 여성사업체 비중이 25.0%를 채 넘지 않는 업종이고, 업무 특성상 체력적인 부분이 많이 요구되어 여성경영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다소 잔존해있기 때문일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여성이라서 차별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여성기업인은 6.2%에 불과하고, 나머지 93.8%는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불합리한 대우 등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는 것으로, 과거보다 여성기업인의 경영 여건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그림 2-23 |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차별대우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3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 나. 일반 중소기업인 대비 여성기업인의 불리한 부분

여성이라서 받게 되는 사회적 차별이나 불평등한 대우 등은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경영활동상 남성기업인 대비 여성기업인이 느끼는 불리한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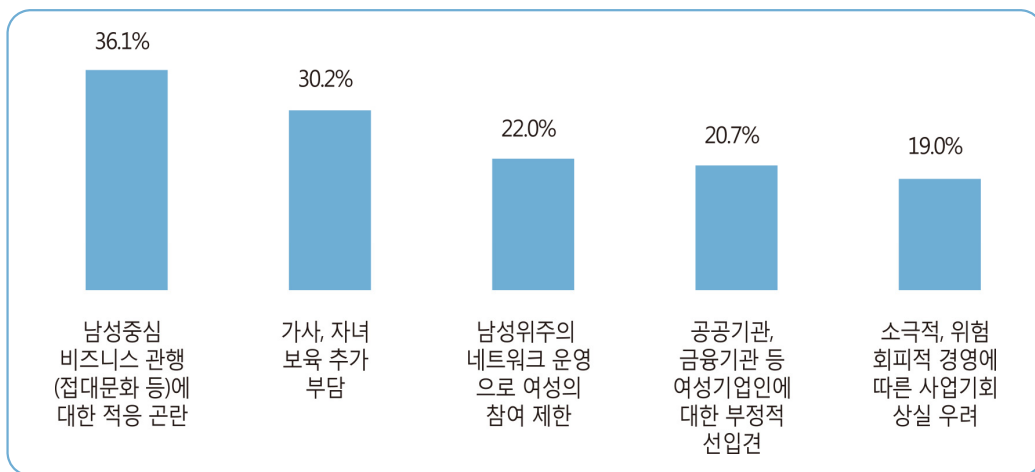
여성기업인이 경영과정에서 남성기업인 보다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조사한 결과, 1위는 남성중심 비즈니스 관행(접대문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기업의 약 36.1%가

접대문화에 대한 불리한 점을 꼽았으며, 특히 운수업과 섬유/의복/가방/신발 제조업에서 남성 중심 비즈니스 관행으로 인한 불리하다는 응답이 각각 56.0%, 50.9%로 높게 나타났다.

2위는 가사, 자녀보육의 추가 부담으로 기업경영과 동시에 가정 및 육아에 대한 역할을 동시에 소화해야 하는 책임감이 다른 남성기업인보다 불리한 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경우, 기업을 경영하더라도 여전히 가사, 자녀 보육 등의 역할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대개 남성경영인의 경우, 배우자가 가정에 대한 역할을 보다 부담할 수도 있지만, 여성이 기업경영을 한다고 해서 남자 배우자가 가사노동을 더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 관습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그림 2-24 | 남성기업 대비 여성기업인이 느끼는 경영상 불리한 부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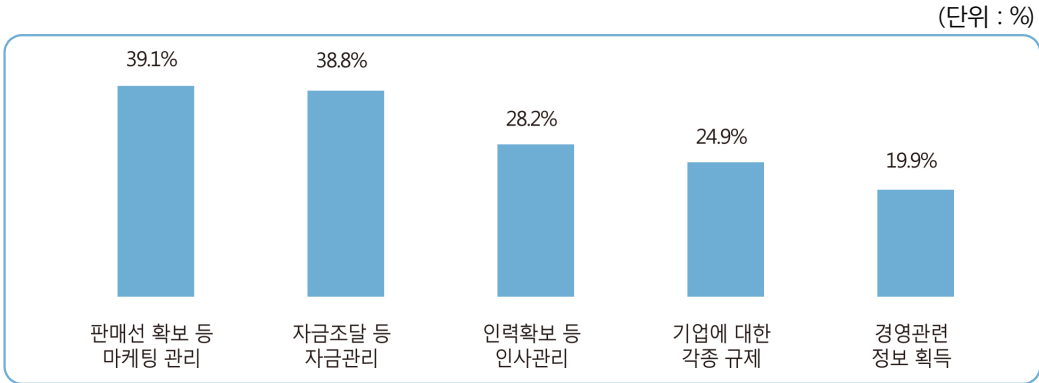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3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 다. 여성기업의 경영상 애로요인

여성기업이 기업 활동상,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분야는 마케팅 관리와 자금관리이다. 여성기업의 경영애로 사항을 조사한 결과, 판매선 확보 등 마케팅 관리(39.1%)와 자금조달 등의 자금관리(38.8%)가 애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인력확보 등의 인사관리(28.2%),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2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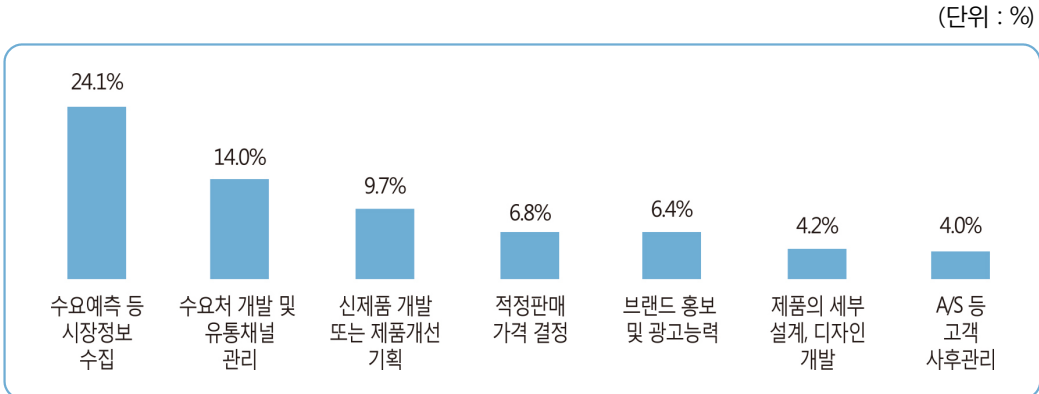
| 그림 2-25 | 여성기업의 경영상 애로 분야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3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여성기업이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마케팅 관리 상 애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장 정보 수집(24.1%)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요 예측 등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신 정보 수집 등에 취약하다고 하였다. 또한 수요처나 유통채널 등의 판매관리(14.0%) 및 신제품 기획(9.7%) 부분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전문 컨설팅 또는 마케팅 교육 등을 통해 수요예측, 시장분석, 기획, 유통 채널 관리 등의 마케팅 역량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 그림 2-26 | 여성기업이 취약한 마케팅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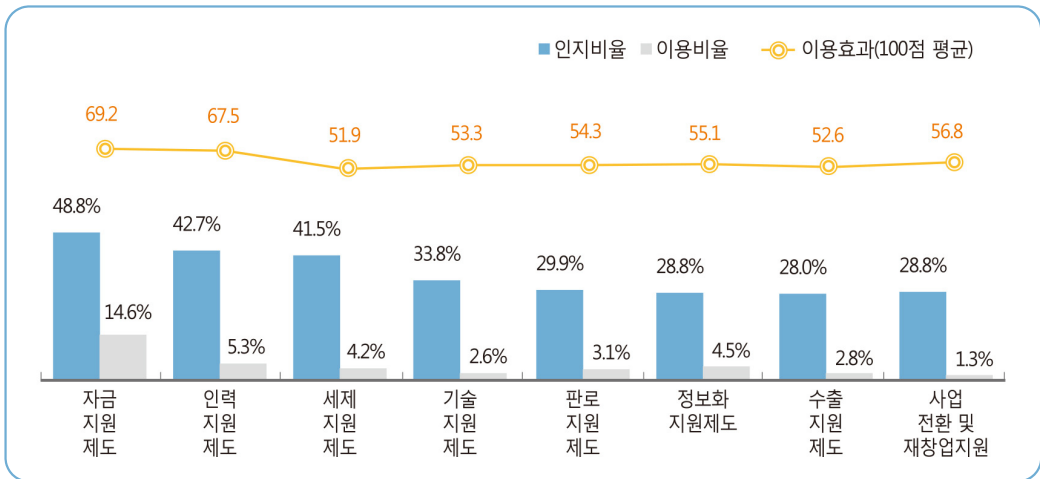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3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 라. 여성기업의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및 이용

여성기업체의 정부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율 및 이용률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정부지원 제도 중, 자금지원제도에 대한 인지율 및 이용율이 가장 높는데, 여성기업의 48.8% 정도가 자금지원제도를 알고 있고, 이 중 14.6%가 자금지원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외의 제도 인지율은 인력지원(42.7%)과 세제지원(41.5%)을 제외하고는 35%를 밑돌고 있으며, 제도 이용율은 인력지원제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5%를 넘지 않았다. 또한 이용효과에 있어서는 자금지원제도와 인력지원제도의 이용 효과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70점 미만이며, 전체 평균은 57.6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지원에 대한 여성기업 인지도나 이용, 그리고 효과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표 2-9 |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평가

(단위 : %)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3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이에 여성기업이 정부 정책 활용시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정보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는데, 여성기업의 37.7%는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 때문에 정책 활용이 어렵다고 하였다. 최근 공공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부 3.0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원 정보에 대한 여성기업의 접근성 및 정보획득 용이성 등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원정보에 대한 공유와 소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여성기업의 제도 인지도 및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기업의 30.9%는 신청자격 조건의 까다로움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8.2%는 지원규모 부족, 7.2%는 신속지원 부족 등을 정부지원 활용의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 제2장 해외 여성기업 동향

### 1. OECD 여성경제 활동 현황



#### 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 및 고용률

OECD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로 한국의 15세~64세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6~7%p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7년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54.8%로 OECD 회원국 평균인 60.9%와 6.1%p 차이를 보였으며, OECD 34개 회원국 중 30위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2년 한국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55.2%, OECD 평균은 62.3%로 7.1%p 차이로 격차는 벌어졌으나, 순위는 30위로 2007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미국, 일본과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비교해 보면, 2007년 미국은 69.1%, 일본은 61.9%를 보이며 한국과 각각 14.3%p, 7.1%p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이후 일본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한국은 답보상태를 유지하며 격차가 점점 커지다가 2012년에는 최대 8.2%p 격차를 보이고 있다. 2012년에 와서는 미국이 67.6%로 2011년 이후 소폭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은 63.4%로 여전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2011년도 대비 0.3%p가 증가했지만, OECD 평균 및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한참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OECD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국 여성인력의 고용률은 53.5%로 2007년 53.2% 대비 0.3%p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OECD 회원국 평균 57.2%보다 3.7%p 낮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주요 국가별 여성고용률을 보면, 일본의 경우 2007년 59.5%에서 2011년 60.3%, 2012년 60.7%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 2007년 65.9%에서 2011년 62.0%로 감소하였다가 2012년 62.2%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독일의 경우 2007년 63.2%에서 2011년 67.7%, 2012년 68.0%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영국의 경우 2007년 66.3%에서 2011년 65.3%로 감소하였다가 2012년 65.7%로 소폭 상승하였다.

표 2-10 | OECD 주요국가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15~64세)

(단위 : %)

구분	2007년	2011년	2012년
한국	54.8	54.9	55.2
미국	69.1	67.8	67.6
일본	61.9	63.0	63.4
영국	69.8	70.4	71.0
독일	69.4	71.8	71.7
스웨덴	76.8	77.4	77.9
핀란드	73.9	72.7	73.4
호주	69.5	70.5	70.4
OECD 평균	60.9	61.8	62.3

※ 자료 : OECD, 2013 Employment Outlook

한국의 경우 2007년 53.2%, 2011년 53.1%, 2012년 53.5%를 기록하며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OECD 평균을 보면, 2007년 57.2%, 2011년 56.8%로 감소하는 추세로 보이다가 2012년 57.2%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여성고용률에 대한 OECD 평균치와 주요 국가별 평균을 비교한 결과,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스웨덴, 핀란드, 호주는 OECD 평균치보다 높은 수치를 유지하면서 변화를 나타내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OECD 평균치를 밑도는 수치를 기록하며 긍정적인 신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구조 등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여성의 역할이 증대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2004년에서 2013년까지 경제활동 참가율에서 남성은 평균 73.7%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성은 49.9%로,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보다 23.8%p,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보다 11.6%p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2-11 | OECD 주요국가의 여성고용률 추이(15~64세)

(단위 : %)

구분	2007년	2011년	2012년
한국	53.2	53.1	53.5
미국	65.9	62.0	62.2
일본	59.5	60.3	60.7
영국	66.3	65.3	65.7
독일	63.2	67.7	68.0
스웨덴	71.8	71.3	71.8
핀란드	68.5	67.5	68.2
호주	66.1	66.7	66.6
OECD 평균	57.2	56.8	57.2

※ 자료 : OECD, 2013 Employment Outlook

고용률에서도 남성은 2004년에서 2013년까지 평균 70.9%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성은 48.4%로, 남성의 고용률보다 22.5%p, 전체고용률보다 11.0%p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국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20대에 사회로 진출한 여성들 대부분이 30~40대가 되면 출산이나 육아 등의 이유로 줄어들었다가, 40~50대가 되면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다시 사회진출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M자형 곡선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표 2-12 | 성별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단위 : 천 명,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	
경제	남	13,727	13,883	13,978	14,124	14,208	14,319	14,492	14,683	14,891	15,071	14,399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
활동 인구	여	9,690	9,860	10,001	10,092	10,139	10,076	10,256	10,416	10,609	10,802	10,194
	전체	23,417	23,743	23,978	24,216	24,347	24,394	24,748	25,099	25,501	25,873	24,532
경제 활동 참가율	남	75.0	74.6	74.1	74.0	73.5	73.1	73.0	73.1	73.3	73.2	73.7
	여	49.9	50.1	50.3	50.2	50.0	49.2	49.4	49.7	49.9	50.2	49.9
	전체	62.1	62.0	61.9	61.8	61.5	60.8	61.0	61.1	61.3	61.5	61.5
고용률	남	72.0	71.6	71.3	71.3	70.9	70.1	70.1	70.5	70.8	70.8	70.9
	여	48.3	48.4	48.8	48.9	48.7	47.7	47.8	48.1	48.4	48.8	48.4
	전체	59.8	59.7	59.7	59.8	59.5	58.6	58.7	59.1	59.4	59.5	59.4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4~2013

## 나. OECD 회원국의 여성고용 관련 지표 분석<sup>39)</sup>

OECD 회원국의 여성자영업자 비율(female self-employment rate), 여성 경제활동참가율(labour force rate), 여성 고용율(employment ratio), 여성시간제 비율(women's share in part-time employment) 지표와 국가 경제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GDP를 활용하여 OECD 회원국과 우리나라 여성기업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OECD 회원국(2011년 기준, 34개국)의 평균 여성자영업자 비율은 13.0%이고, 우리나라의 여성자영업 비율은 26.4%로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높으며, 터키 48.4%, 멕시코 34.8%, 그리스 31.7% 다음으로 4번째로 높아 여성자영업이 많은 국가라 볼 수 있다.

OECD 선진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여성 자영업주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에 속한다. 여성 고용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여성 자영업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sup>40)</sup>

39) 본 내용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인숙, 2012, 「여성기업 육성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2 Women's Report」를 참조함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여성들의 진입이 용이한 자영 창업을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기업추구형보다 생계형 창업활동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 정부의 여성기업 정책은 기업가정신에 기반한 기회형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여성기업의 양적 증가는 경제위기 속에서 여성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써 여성 자영창업을 지원한 데 기인한다. 이는 여성창업 생태계가 제대로 조성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53.1%,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4.9%로 OECD 평균 여성 고용률 56.8%,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61.8%인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한 시간제근로자 중 여성비율은 56.6%로 OECD 평균 69.3%보다 낮다. 한편 국가의 경제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GDP는 약 2만9천달러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크게 낮지 않다.

표 2-13 | OECD 회원국 여성고용 관련 지표

국가	여성자영업자 비율	여성 고용률	여성 경합률	여성 시간제비율	1인당 GDP
호주	8.6	66.7	70.5	70.9	43,350
오스트리아	11.3	66.5	69.5	80.2	42,142
벨기에	10.5	56.7	61.1	79.9	38,814
캐나다	8.0	68.9	74.2	66.6	(E) 40,444
칠레	26.0	49.1	53.9	58.7	21,050
체코	12.9	57.2	62.2	72.9	26,208
덴마크	5.3	70.4	76.1	62.1	40,950
에스토니아	5.2	62.7	71.4	71.5	22,357
핀란드	8.8	67.5	72.7	61.0	37,325
프랑스	7.1	59.7	66.2	77.3	35,505
독일	8.5	67.7	71.8	79.2	39,729
그리스	31.7	45.1	57.5	62.8	25,859
헝가리	8.5	50.6	56.8	61.7	21,262

40) 자영업주를 포함한 여성기업 비율을 여성기업 활성화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가	여성자영업자 비율	여성 고용률	여성 경활율	여성 시간제비율	1인당 GDP
아이슬란드	8.9	77.3	82.4	68.0	36,536
아일랜드	7.4	55.6	62.3	74.5	42,470
이스라엘	8.3	57.5	60.9	72.6	28,905
이탈리아	18.2	47.2	52.2	76.6	32,688
일본	10.4	60.63	63.0	71.0	33,834
한국	26.4	53.1	54.9	56.6	29,786
룩셈부르크	(E) 4.5	56.9	60.7	82.2	86,740
멕시코	34.8	43.4	45.9	57.1	(E)17,446
네덜란드	11.5	69.9	73.1	75.3	42,573
뉴질랜드	12.4	67.2	72.2	73.0	31,585
노르웨이	4.1	73.4	75.8	71.1	61,047
폴란드	19.8	52.7	58.9	66.9	21,138
포르투갈	17.0	60.4	69.8	59.5	25,441
슬로바키아	9.7	52.7	61.0	61.7	24,067
슬로베니아	13.4	60.9	66.5	58.0	27,330
스페인	12.3	52.8	67.9	76.6	31,607
스웨덴	6.0	71.3	77.4	62.7	41,222
스위스	10.9	73.3	76.7	80.2	51,359
터키	48.4	27.8	31.5	60.0	17,034
영국	9.0	65.3	70.4	74.7	36,092
미국	5.5	62.0	67.8	65.6	49,782
<b>OECD 평균</b>	<b>13.0</b>	<b>56.8</b>	<b>61.8</b>	<b>69.3</b>	<b>(E) 35,658</b>

(단위 : % \$)\* (E) Estimated Value 추정치

\*\* 자료 : OECD, StatExtracts 2012, Factbook 2012, Employment Outlook 2013

OECD 국가들의 대표적인 여성고용관련 지표, GDP 및 여성자영업자 비율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면 OECD 국가의 여성자영업자 비율은 여성 고용율, 여성 경활률과 매우 높은 (-)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여성 고용율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을수록

---

여성자영업 비율이 높아지는 역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시간제 중 여성비율 역사 유의도는 떨어지지만 여성자영업 비율과 역관계를 나타내었다. 1인당 GDP와도 역시 (-)의 관계를 나타내었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지표들의 관계는 국가집단별로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었는데,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 선진국들은 여성 고용율 및 경제활동참가율이 매우 높아 상대적으로 여성자영업 비율이 낮았다. 여성 고용율과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으면서도 시간제 여성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이들 국가는 여성 고용의 질이 높은 국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북유럽 국가들과 반대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터키, 멕시코, 그리스는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의 타격이 큰 나라들로 여성자영업 비율이 매우 높고 상대적으로 여성 고용율 및 경제활동참가율은 낮다.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들은 1인당 GDP도 낮으면서 여성자영업 비율도 낮는데, 여성 고용율 및 경제활동참가율도 낮아 전반적으로 국가의 부의 수준과 여성 취업 상황이 다 좋지 않은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국가의 경제 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GDP가 높으면서 여성자영업 비율도 높은 국가는 없었으며, 우리나라와 그리스, 폴란드, 포르투갈이 상대적으로 1인당 GDP가 낮고 여성자영업 비율은 높은 국가였다.

#### 다. 여성창업 의향을

OECD Science의 2010년 각 나라별 여성창업의향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창업 의향율은 19.8%로서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반면, 여성창업 의향율이 높은 나라로는 멕시코가 51.2%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러시아가 50.7%로 뒤를 따르고 있다. 그리고 미국 43.3%, 중국 42.0%, 일본 32.6%의 여성창업의향율을 보이고 있다. 이들 국가 모두 한국보다 여성창업의향율이 높고, 그 격차 또한 큰 차이가 나고 있는 모습이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여성창업의향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면서 그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노력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 표 2-14 | 국가별 여성창업의향을 현황

(단위 : %)

국가명	2010년	2005년	국가명	2010년	2005년
멕시코	51.2	35.4	영국	34.0	26.2
러시아	50.7	-	스페인	33.9	41.4
남아프리카	45.7	44.8	핀란드	32.9	33.6
브라질	45.4	42.2	일본	32.6	29.1
벨기에	43.7	33.9	포르투갈	31.7	-
미국	43.3	39.3	헝가리	31.5	-
프랑스	42.6	34.2	네덜란드	31.3	29.8
중국	42.0	38.9	덴마크	30.9	28.4
스위스	41.8	40.4	아일랜드	30.1	27.0
칠레	41.4	36.4	노르웨이	29.8	27.1
이탈리아	40.1	33.8	스웨덴	29.5	32.7
호주	39.7	35.9	그리스	25.2	37.0
이스라엘	36.6	-	슬로베니아	24.5	30.6
독일	36.5	33.5	한국	19.8	-
아이슬란드	34.8	32.7	터키	18.7	-

※ 자료 :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11

## 라. 여성자영업자 비율

OECD StatExtractse의 2012년 각 나라별 여성자영업자 비율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자영업자 비율은 26.4%로서 OECD 평균인 13.0%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나라로는 터키가 48.4%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멕시코가 34.8%, 그리스 31.7%로 뒤를 따르고 있으며 한국이 4번째로 높아 여성자영업이 많은 국가라 볼 수 있다.

자영업자(Self-employed person)<sup>41)</sup>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를 포함하는 집단이다. 구체적으로 자영업자는 고용원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인 기업인 경우 및 농어촌과 같은 가족 경영인 경우까지도 포함된다.

표 2-15 | 국가별 여성자영업자 현황

(단위 : %)

국가명	2011년	국가명	2011년
터키	48.4	슬로바키아	9.7
멕시코	34.8	영국	9.0
그리스	31.7	아이슬랜드	8.9
한국	26.4	핀란드	8.8
칠레	26.0	호주	8.6
폴란드	19.8	독일	8.5
이탈리아	18.2	헝가리	8.5
포르투갈	17.0	이스라엘	8.3
슬로베니아	13.4	캐나다	8.0
OECD 평균	13.0	아일랜드	7.4
체코	12.9	프랑스	7.1
뉴질랜드	12.4	스웨덴	6.0
스페인	12.3	미국	5.5
네덜란드	11.5	덴마크	5.3
오스트리아	11.3	에스토니아	5.2
스위스	10.9	룩셈부르크	4.5
벨기에	10.5	노르웨이	4.1
일본	10.4		

※ 자료 : OECD.StatExtracts (2012), OECD Factbook 2012

41) OECD 통계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ILO) 가이드라인이 정의한 내용을 따름

## 2. 해외 여성기업 현황



### 가. 해외 여성기업의 창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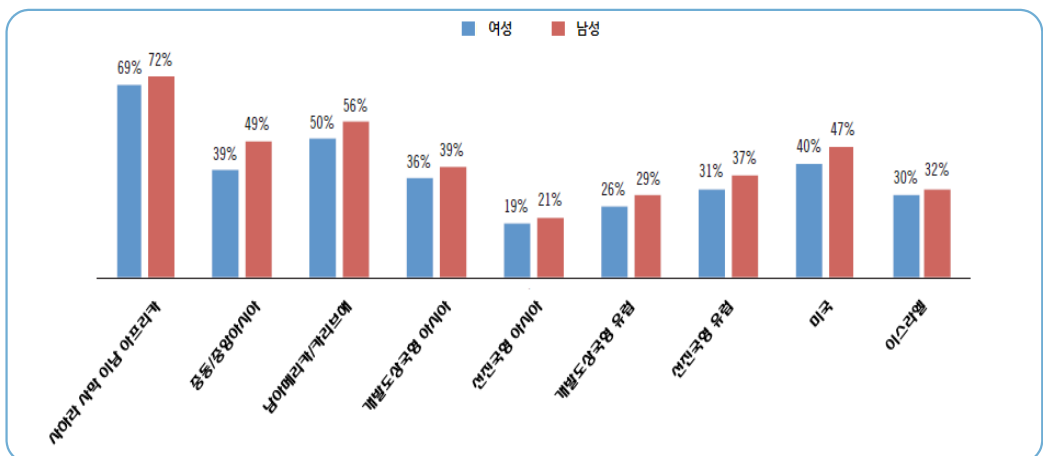
#### 1) 창업기회 인식(percieved opportunities)

창업기회 인식(percieved opprotunities)은 18~64세 여성 인구 중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기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캐리비안은 성인 여성의 69%가 그들의 지역에서 기업 활동에 대한 많은 기회가 열려 있다고 생각하며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기회의 인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기회에 대한 가장 인식의 최저수준은 우리나라를 포함하고 있는 선진국형 아시아국가(19%)와 개발도상 유럽국가(26%)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과 비교했을 때, 여성은 모든 지역에서 남성 대비 낮은 기회의 인식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중동/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그 격차가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창업기회인식은 8%로 선진국형 아시아 지역 19%보다 훨씬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남성의 창업기회인식 17%보다도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 그림 2-27 | 남녀 창업기회 인식



※ 자료 :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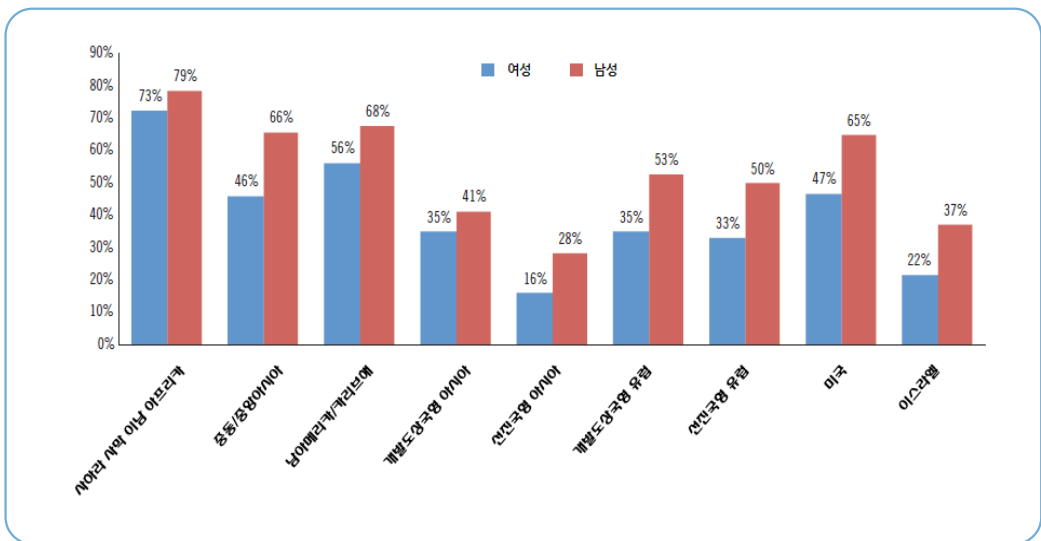
## 2) 창업능력인식 및 실패의 두려움에 대한 인식

창업능력인식(percieved capabilities)은 18~64세 여성 인구 중 사업을 시작할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고 실패의 두려움 인식(fear of failure rate)은 18~64세의 창업 기회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인구 중 창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 비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들보다 낮은 창업능력에 대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비교해 볼 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여성은 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하고 있는 선진국형 아시아 지역은 16%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창업능력에 대한 인식은 1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지역적 평균과 같고 남성의 경우 37%로 다른 선진국형 아시아국 평균인 28%보다 높게 나타났다.

| 그림 2-28 | 해외 남녀 창업능력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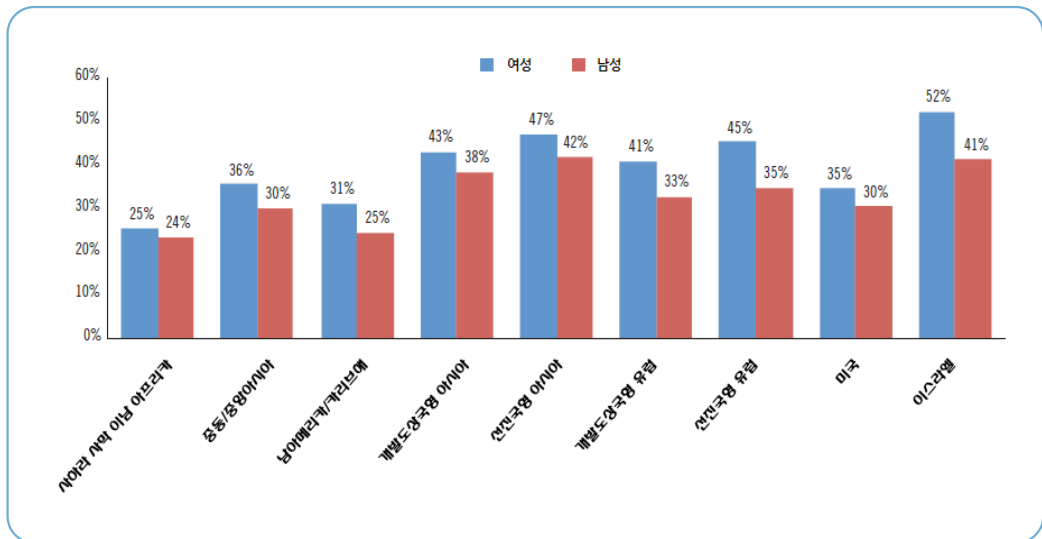
※ 자료 :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2

실패의 두려움에 대한 인식은 기업활동의 태도와 인식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모든 지역에서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남성들보다 높은 실패의 두려움에 대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표는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서 25%로 가장 낮았고, 남아메리카/카리브해가 31%로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가장 높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인식 비율을 보이고 있는 지역은 우리나라를 포함하고 있는 선진국형 아시아 지역 47%와 이스라엘 52%, 선진국형 유럽지역 45%인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실패의 두려움에 대한 인식은 54%로 선진국형 아시아 지역평균 43%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이스라엘 52%보다도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 여성이 특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 그림 2-29 | 해외 남녀 실패의 두려움에 대한 인식



※ 자료 :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2

### 3) 생계형 및 기회추구형 창업활동

생계형 창업활동(necessity-driven entrepreneurial activity)은 초기창업활동에 속하는 사람 중 별다른 직업 선택의 여지가 없어 창업을 선택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 기회추구형 창업활동(opportunity-driven entrepreneurial activity)은 초기창업활동(TEA)에 속하는 사람 중 별다른 직업 선택의 여지가 없어 창업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기회를 추구하고자 창업을 선택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11년에 비하여 2012년에는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크게 하락(3.2%→2.3%)하고 기회추구형 창업의 비중은 소폭 하락(4.4%→4.3%)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반적인 우리나라 창업활동의 질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겠으나 여성의 창업 활동이 상대적으로 생계형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기회추구형 창업활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부시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표 2-16 | 2008-2012 한국 생계형과 기회추구형 창업활동

(단위 :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초기창업활동(TEA)	10.0	7.0	6.6	7.8	6.6
생계형 창업활동	4.0	3.1	2.6	3.2	2.3
기회추구형 창업활동	5.8	3.7	3.9	4.4	4.3

주) 생계형 창업과 기회추구형 창업활동지수는 초기창업활동(TEA)을 생계형과 기회추구형으로 구분한 값임.  
※ 자료 : 2012 Global Entrepreneurs Monitor Korea Report

#### 4) 창업의도(Entrepreneurial Intent)

창업의도란 향후 3년이내 창업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창업의도 비율은 초기창업활동(TEA)과 상대적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가장 높은 창업 비율인 25%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 선진국형 유럽지역에서는 8%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창업의도 비율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성별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곳은 중동/중앙아시아 지역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창업의도는 9%로 선진국형 아시아 지역 평균 12%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우리나라 남성의 창업의도 18%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2-17 | 창업의도 주요 국가 간의 비교

(단위 : %)

국가명	창업의도		국가명	창업의도	
	여성	남성		여성	남성
한국	9	18	영국	7	13
싱가포르	14	19	독일	4	8
일본	2	3	스웨덴	10	12
미국	10	15	핀란드	15	19

※ 자료 : 2012 Global Entrepreneurs Monitor Korea Report

## 나. 단계별 여성기업 활동<sup>42)</sup>

2012년 글로벌기업가정신연구(GEM)에 참여한 67개 국가에서 약 1억2천6백만명의 여성이 초기의 창업단계에 있으며 9천8백만의 여성기업이 안정화된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GEM은 창업 활동을 잠재적인 예비단계(potential), 태동기(nascent), 초창기(new), 기업설립 후 안정기(established)의 네 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태동기와 초창기 창업 활동의 단계를 초기창업활동(TEA)이라고 지칭한다.<sup>43)</sup>

### 1) 여성의 초기창업활동(Total Entrepreneurial Activity : TEA) 비율

여성의 초기창업활동비율(TEA)은 18~64세 여성인구 중 사업을 소유 및 경영하고 있고 어떠한 형태의 임금지급이 42개월 이하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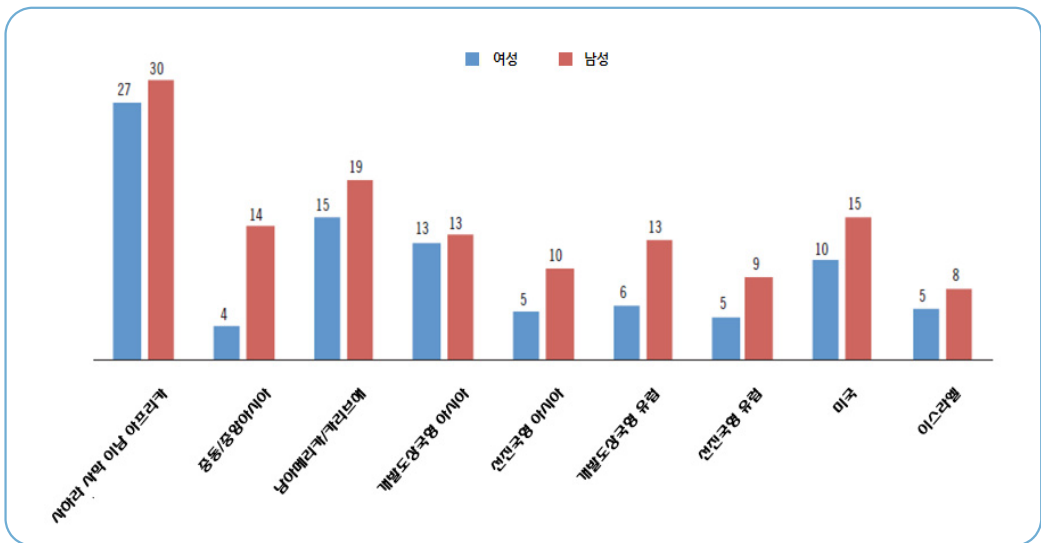
여성의 초기창업활동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으로 평균적으로 여성인구의 27%가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라틴 아메리카나 캐리비안 지역도 1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 편이다. 반면 경제성장과 비교해 여성초기창업 활동 비율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국가들이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4%로 가장 낮은 여성TEA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선진유럽국, 아시아와 이스라엘의 경우도 5%로 낮은

42) 본 내용은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가 발표한 2013 Women's Report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발표한 2012 GEM Korea Report를 참조함

43) 본 백서는 기업 성장단계를 창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4단계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으며 초기창업활동은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인 창업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성TEA비율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TEA 비율이 약간 낮거나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파나마, 태국, 가나, 이콰도르, 나이지리아, 멕시코와 우간다 7개국에서는 여성TEA 비율이 남성과 동등하거나 혹은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남성의 TEA 비율이 여성보다 4배 더 많은 비율을 보이면서, 가장 큰 성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31 | 해외 남성과 여성의 초기창업활동비율 비교



※ 자료 :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2

## 2) 여성의 안정기 소유경영 활동(Established business ownership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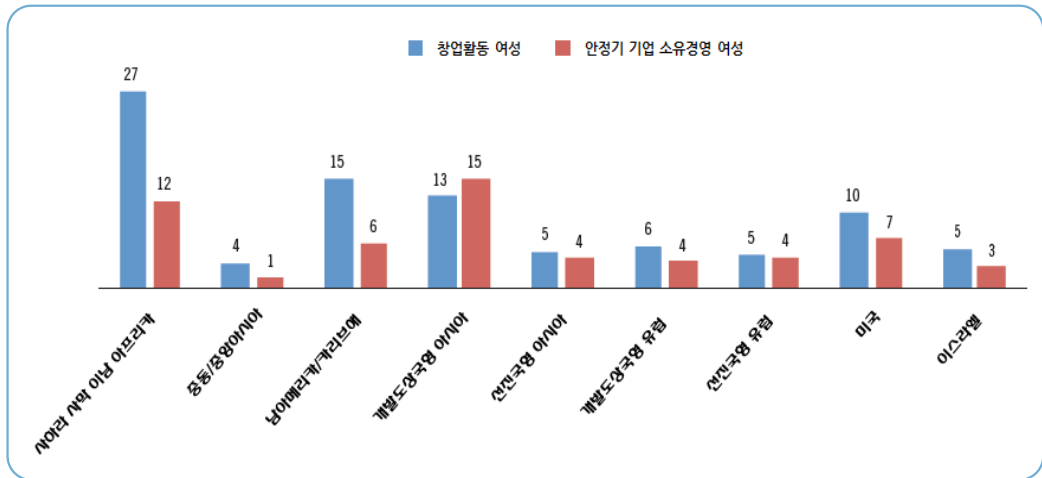
안정기 소유경영활동 비율은 18~64세 여성인구 중 현재 설립 후 안정화된 창업기업의 소유주이자 경영인에 해당하는 사람의 비율이다. 즉, 현재 사업을 소유 및 경영하고 있고, 어떠한 형태로든 임금 지급이 42개월 이상 이루어진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초기창업활동 비율이 안정기 소유경영 활동에 비해 조금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데 반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캐리비안지역의 경우에는 초기창업활동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 지역의 안정기 소유경영활동은 전세계 비율의 50%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여성의 초기창업활동 비율도 저조하고, 안정기 소유경영활동 비율도

매우 저조하며,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여성의 안정기 소유경영활동과 초기창업활동이 비슷하게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몇몇의 안정기 기업 덕분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안정기 소유경영 활동 비율은 초기창업활동 비율과 마찬가지로 남성들에 비해 훨씬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의 안정기 소유경영활동 비율은 3.8%에 그치는 반면 남성의 비율은 15.1%에 달하고 있다.

| 그림 2-32 | 해외 여성 초기창업활동비율 vs. 안정기소유경영활동



※ 자료 :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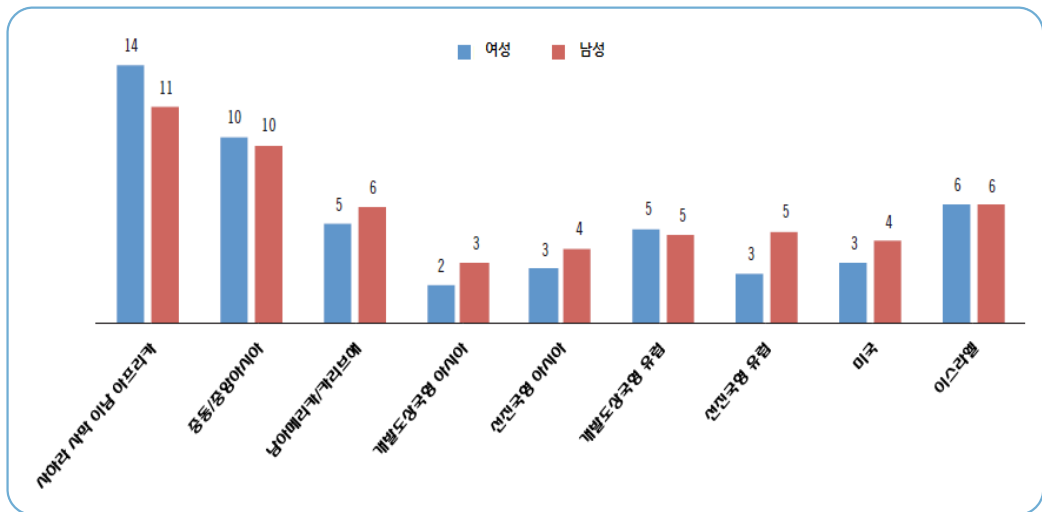
### 3) 여성의 사업 중단 (Business Discontinuance rate)

사업 중단 비율은 18~64세 여성 인구 중 지난 12개월 이내에 사업을 중단한 경험(판매, 생산, 사업 중단, 경영 혹은 소유의 중단)이 있는 사람의 비율로, 이는 기업부실이나 도산율 (business failure rates)의 개념이 아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남성과 여성의 사업중단 비율이 비슷하거나 더 낮은 반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은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의 사업 중단이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나라별로 비교해 볼 때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중앙아시아 지역

두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여성의 사업 중단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여성의 초기창업활동 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 중앙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초기창업활동 비율도 상당히 낮은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미국과 개발도상 아시아국에서는 비교적 사업 중단 비율이 낮으며 높은 초기창업활동 비율을 보이고 있다.

| 그림 2-33 | 해외 남녀 사업중단 비율



※ 자료 : 2012,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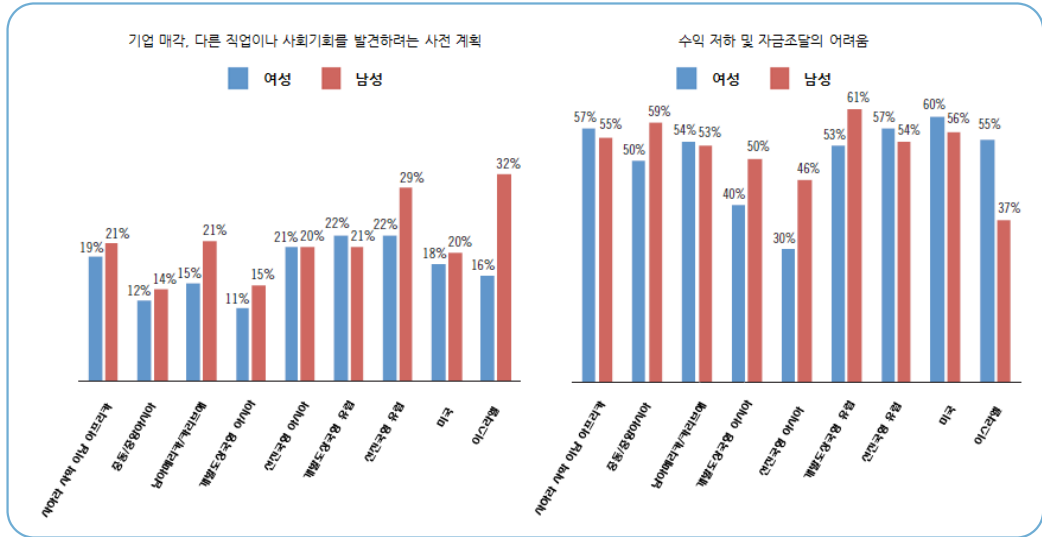
우리나라 여성의 사업중단 비율은 4%로 나타났다. 이는 선진국형 아시아지역이 3%로 나타난 것보다 높은 결과이며, 성별로는 우리나라 남성 사업중단 비율 2%보다 높은 결과이다.

선진 유럽국가의 여성인 경우 남성에 비해 수익성의 부재로 인한 사업 중단 비율이 높으며 이스라엘 기업은 3분의 1, 미국은 4분의 1 해당하는 여성기업이 남성보다 더 많은 재정적 문제를 보였다.

한편 우리나라가 속해있는 선진국형 아시아지역은 수익저하 및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업중단은 30%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기업 매각 및 다른 직업이나 사회기회를 발견하려는 사전계획에 의한

사업중단 비율이 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형 아시아지역의 여성기업인이 수익성 부재로 인한 어려움이 아닌,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업 중단이므로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그림 2-34 | 해외 남녀 사업중단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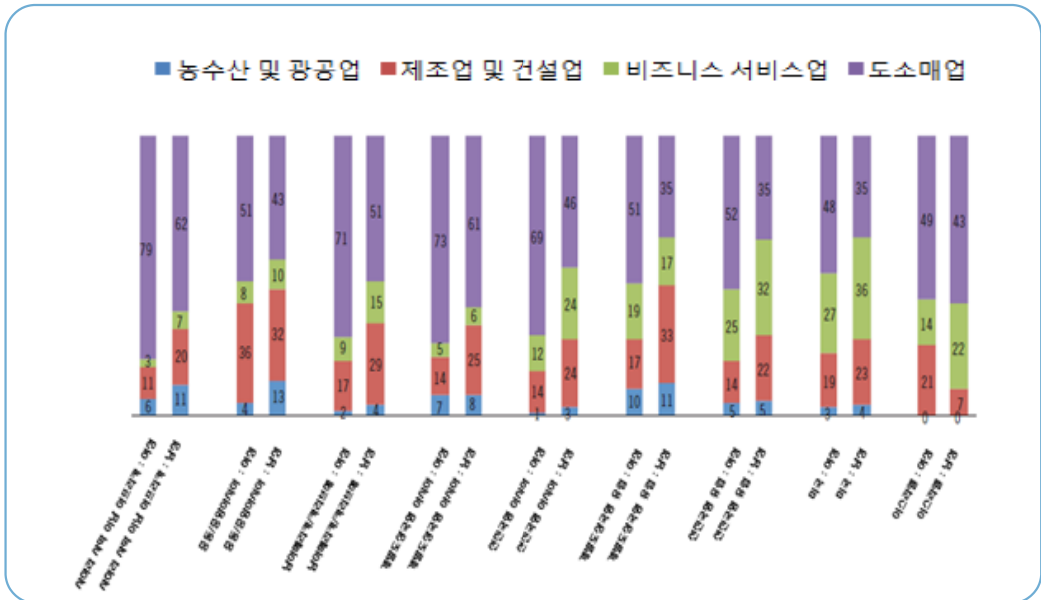
※ 자료 : 2012,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 다. 국가별 남녀기업의 산업 분포

GEM 연구에서는 각 나라의 산업을 크게 네 부문으로 나누어, 농수산 및 광공업, 제조업 및 건설업, 비즈니스 서비스업, 도·소매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 기업인들의 50%는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는 5분의 4 정도의 비율을 보인다. 남성들은 도소매업에만 집중되어 있는 형태가 아닌 다양하게 산업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혁신주도형 경제권의 선진 국가에서는 경영 혹은 법률, 컨설팅, 금융 서비스 등의 비즈니스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고 요소주도형경제권<sup>44)</sup>에서는 도소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44) 요소주도형 경제(factor-driven economies)는 주로 자연 상태에서 경제적 수단을 찾는 경제로서,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알제리, 이집트, 이란, 팔레스타인과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앙골라, 보츠와나, 에티오피아, 가나, 말라위, 나이지리아, 우간다, 잠비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파키스탄 등 13개국을 포함한다.

| 그림 2-35 | 해외 남·여기업의 산업분포



※ 자료 :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2

## 라. 연령 분포 및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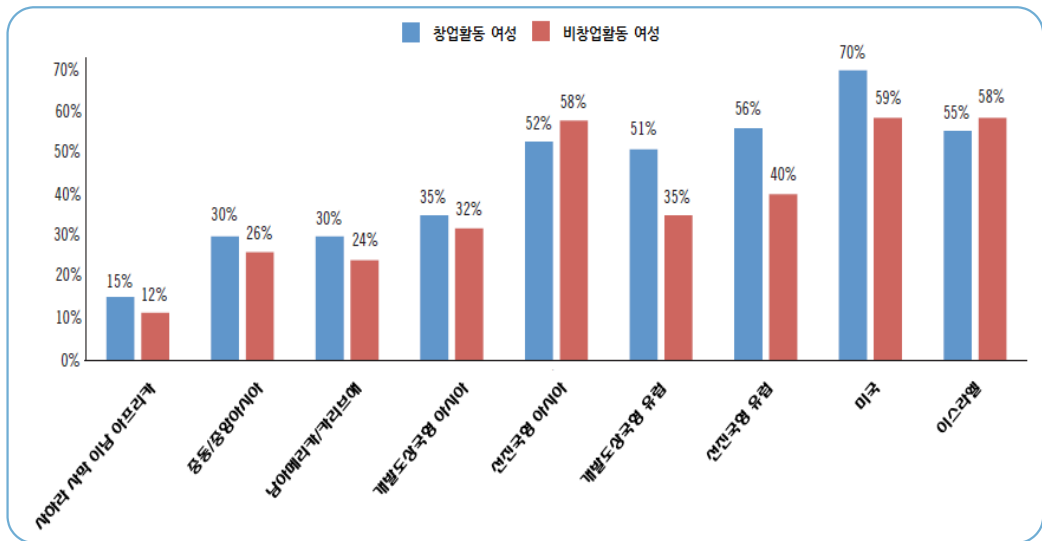
대부분의 국가에서 청년층 여성(18~23세)의 기업활동은 장년층 여성(35~64세)과 비슷한 활동 수치를 보인다. 이러한 수치는 사하라 사막이남의 아프리카 지역과 라틴 아메리카·캐리비안, 선진 아시아 국가들과 유럽 및 미국 등에서 보여 지는 수치로 장년층과 청년층 여성들 모두 기업활동을 선호한다. 하지만 개발 도상 유럽국가와 이스라엘은 청년층의 여성이 장년층보다 평균적으로 63% 더 많은 기업활동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층 여성들의 기업활동은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18-24세 연령대의 많은 사람들이 대학 교육을 받는 시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여성기업의 대표자 평균 연령이 49.5세로 나타났으며 20대인 청년 여성은 0.8%에 불과하다. 이는 글로벌 기업가정신연구(GEM)와 창업과 관련된 선행 연구결과들을 종합분석 해 본 결과, 창업가들을 사회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데 있어 교육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청년 여성들이 직업의 한 형태로 창업을 고려해

볼 수 있도록 정부의 청년여성 맞춤형 교육 및 제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은 최저 교육수준을 보이며 평균 15%의 여성 기업인들이 고졸 또는 그 이상의 교육수준을 갖고 있다. 이것은 비여성기업가·기업소유자보다는 약간의 높은 수준이지만, 남자 기업인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특히 미국의 여성기업인들 중 70%가 고졸 교육 수준을 보이며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기업인들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비기업가·기업소유자보다 높은 수치이며 남성들과도 상대적으로 유사한 정도이다.

| 그림 2-36 | 해외 창업활동 및 비창업활동 여성의 고졸 이상 학력



※ 자료 :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2

2012년 고졸 이상의 학력인 우리나라 여성기업인은 34%로 선진국형 아시아지역인 싱가포르와 일본의 고졸이상 학력인 여성기업인 66%와 5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이나 선진국형 유럽지역보다 2배 이상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고졸이상 학력을 지닌 남성기업의 경우 한국이 76%로, 싱가포르 75%, 일본 62%, 미국 67%, 영국 65%, 독일 43%, 스웨덴 37%, 핀란드 32%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졸이상 학력을 지닌 여성기업인(34%)이 남성기업인 (76%)보다 2배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선진국형 유럽지역인 영국, 독일, 스웨덴, 핀란드의 고졸학력 이상인 여성기업인이 남성기업인보다 비율이 같거나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남성 대비 여성의 학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진국형 아시아지역 및 선진국형 유럽지역의 여성기업인과 비교해서도 낮은 학력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2-18 | 여성기업인 학력 주요 국가 간의 비교

(단위 : %)

국가명	고졸 이상 학력		국가명	고졸 이상 학력	
	여성	남성		여성	남성
한국	34	76	영국	65	65
싱가포르	66	75	독일	58	43
일본	50	62	스웨덴	61	37
미국	70	67	핀란드	55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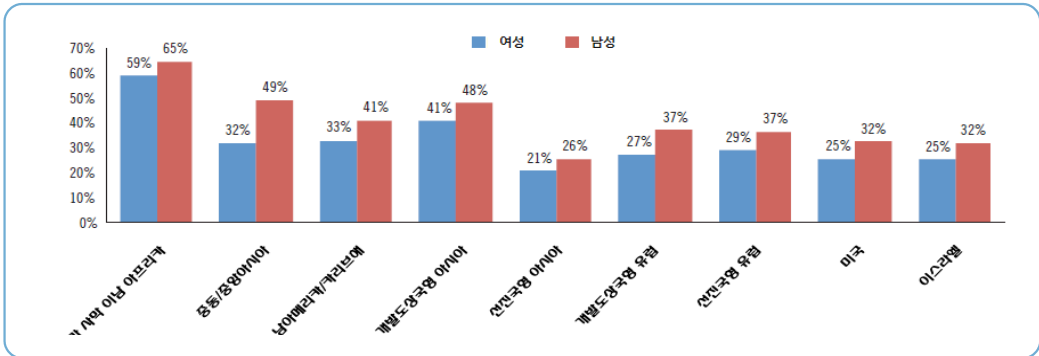
※ 자료 :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2

#### 마. 기업인과의 네트워크(Entrepreneurial Affiliation)

국내외에서 창업기업들의 네트워크의 활용실태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Bruderl and Presendorfer(1998)는 그들의 연구에서 네트워크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구성하는 개념 중 하나로 보고 성공적인 기업일수록 사회적 자본을 획득하기 위한 네트워크 활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도 초창기 창업기업의 경우 인력이나 자금 등의 내부자원 규모로는 열등하지만 기업외부의 네트워크를 잘 활용함으로써 다른 기업들보다 기술적으로 우수하고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제품을 개발하여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인과의 개인적인 네트워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곳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으로 59%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선진국형 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낮은 비율인 21%를 보이고 있다. 모든 지역에서 남성 대비 여성기업이 기업인과의 개인적인 네트워크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2-37 | 기업인과의 네트워크



※ 자료 :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2

우리나라 여성기업인 경우, 기업인과의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보유한 비율은 24%로 남성기업 33%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싱가포르 15%와 일본 12%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미국 25%, 영국 25%, 독일 22%, 스웨덴 38%, 핀란드 39%로 나타나 미국 및 선진 유럽 국가에 비해 기업인과의 개인적인 네트워크가 낮아 협소한 네트워크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표 2-19 | 기업인과의 네트워크에 대한 주요 국가 간의 비교

(단위 : %)

국가명	기업인과의 개인적인 네트워크		국가명	기업인과의 개인적인 네트워크	
	여성	남성		여성	남성
한국	24	33	영국	25	35
싱가포르	16	21	독일	22	27
일본	12	16	스웨덴	38	44
미국	25	32	핀란드	39	45

※ 자료 :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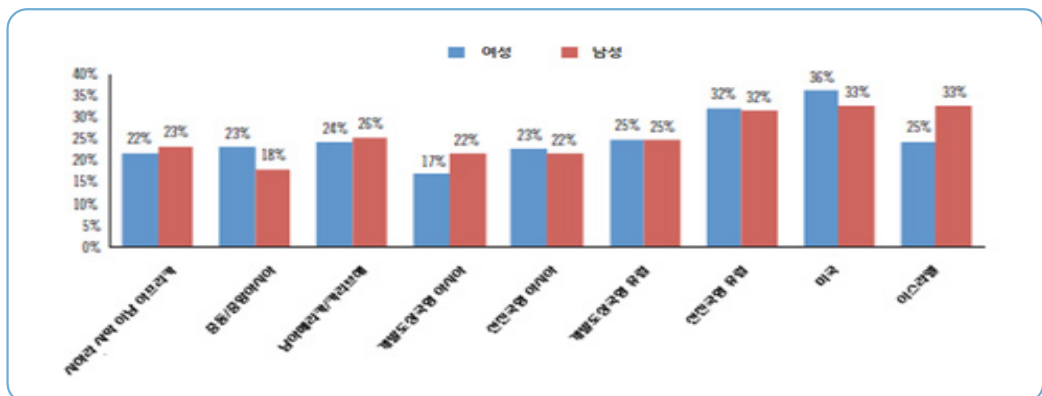
## 바. 해외 여성기업 혁신 동향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한국의 여성기업 혁신 수준은 핀란드보다 약간 더 높지만,

비교적 낮은 수준의 혁신신뢰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을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보수성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지만 무엇이 정말 신상품, 새로운 서비스, 첨단 기술을 대표하느냐에 대해서는 국가 간의 차이가 또한 있을 수 있다. 2012년 들어서 오히려 혁신신뢰지수가 전년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개별적인 항목의 평균값으로 측정한 수용도 변수는 2011년이 가장 낮은 저점이었고 회복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두 가지 조금 상반된 사실은 중립적인 소비자들의 태도에 기인하는 것인데, 혁신에 대해 부정적인 소비자군이 덜 부정적이거나 중립적인 포지션으로 이동했으나 적극적으로 구매하겠다는 신뢰지수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6개월 내에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구매하거나 시도하는 활동보다는 긍정적으로 관망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성기업 혁신수준은 미국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36%의 기업이 새로운 상품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거의 경쟁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여성의 혁신수준은 남성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선진국형 유럽지역은 32%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이는 남성과 같은 비율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형 아시아 지역은 여성기업 사이에서 17%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남성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선진국형 아시아지역의 여성기업 혁신수준은 23%로 나타나고 있으며 남성기업의 혁신수준인 22%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20 | 해외 남녀 여성기업 혁신수준



※ 자료 :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2

---

## 사. 여성의 잠재력 인식(Playing it comfortable)

여성기업이 분포하고 있는 산업부문의 다양성은 부족한 반면, 남성기업들은 전형적으로 자본 및 지식 집약적인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형 유럽국가의 경우,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들은 그다지 높은 경영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기업인로서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이러한 특징은 역량 지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여성 기업인들의 높은 교육수준, 심지어 남자보다 더 높은 교육수준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미국의 여성들은 같은 징계의 남자 또는 다른 지역의 여성들보다 기업활동에서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이는 그들의 교육수준과 비교할 때 자신감결여 및 기업 활동을 위한 훈련 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아. 단기형 기업(short term Endeavors)

해외의 많은 지역에서 여성들은 별다른 직업 선택의 여지가 없어 창업을 선택하는 생계형 기업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와 중동/중앙 아시아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다수의 가족구성원과 낮은 교육수준을 갖고 있는데 이는 대개 낮은 진입장벽과 사업에 대한 단기적인 시도에 그치게 만들뿐, 장기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기에는 역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여성기업인들은 아마도 그들의 현재 상황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의 환경적 제약에 둘러싸여, 사고를 확장하는 것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와 달리 생계형 여성기업은 선택의 여지가 없고 생계를 위한 창업이기에 더 높은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고려해 볼만 하다.

## 자. 대외 진출보다 내수산업 선호

일반적으로 개발도상 지역에서의 여성기업은(개발도상 유럽 지역 제외) 남성기업보다 낮은 국제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와 반대로 개발도상국형 유럽국가(24%)와 이스라엘(27%)은 여성기업들 중에서 가장 높은 국제화 수준을 보여주었다. 선진국가에서 괄목할 만한 예외사항으로 낮은 비율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이고 그 다음으로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지역이 두 번째로 낮게 나타났다(양 지역 모두 7%).

개발도상국가에서 최소 25% 상품이나 서비스를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에서의 여성과 남성 기업의 차이점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이와 달리 선진국가에서는 훨씬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성기업보다 남성기업이 국제 무역활동이 활발한 편이다. 예외적인 경우인 이스라엘은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국제 무역활동의 비중이 크다.

여성들의 국제 기업 경영 활동율의 저조함은 남아메리카/카리브해, 그리고 개발도상국형 아시아지역과 같은 개발 중인 지역과 미국과 같은 개발된 지역에서도 뚜렷함을 알 수 있다. 내부 시장의 크기와 경쟁적 특성이 어떤 지역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지역에서 여성들이 기회를 놓친 것을 설명해준다.

과거의 직장경험과 주위 창업가의 활동에 대한 관찰을 통해 형성된 전통적 창업관에 머무는 것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창업관을 보유하여야 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창업관이란 전통적 창업관과 달리, 글로벌 시장 지향, 지리적 제약과 무관한 시장 초점, 그리고 미증유의 잠재적 고객 니즈 개척등 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글로벌 시장으로 창업의 관점을 전환하는 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원이 부족한 한국경제의 미래는 결국 성공적인 글로벌 창업기회를 확대하는 데에 그 해답이 있다. 청장년층의 해외 진출을 위한 다양한정책지원이 필요한바, 각 국가별로 글로벌 창업지원센터를 세우고 여기에 국가별맞춤형 정보와 교육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 차. 이민자 창업 육성

2012년 GEM에서는 이민자 창업이라는 새로운 주제가 도입되었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이민자 역시 급증하고 있지만, 이민자 창업은 아직 맹아기 단계에도 접어들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문화적, 정서적 공감대가 있는 동북아시아 출신의 극소수 이민자들만이 창업에 참여(2000명 중 1명)하고 있을 뿐, 동남아시아와 구미(歐美) 지역 출신의 이민자들은 창업 현장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한편 2013년 GEM에 새롭게 추가된 조사 항목으로 사업자 등록 여부에 대한조사가 있었다. 이 조사에서 우리나라에서 비공식 창업가의 비중이 전체 소유경영자 중에서 5명 중 1명꼴로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결혼이민자 중 여성은 235,947명으로 전체 281,295명에서 83.9%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21 | 한국 결혼이민자 성별 현황

(단위 : 명)

성별 현황		
전체	남성	여성
281,295	45,348	235,947

※ 자료 : 안전행정부 '13.1.1. 기준

우리나라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는 포스코가 지원하는 다문화가정 여성의 창업 컨설팅을 받아 2010년 창업한 '리틀아시아'는 동남아시아 음식을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퓨전요리로 개발해 판매하는 다문화 레스토랑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이 사업의 주체로 활약하고 있다.<sup>45)</sup> 이러한 다문화가정 여성의 창업성공사례가 알려지면서 결혼 이주여성들의 참여율이 높아졌다. 실례로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의 비율이 전년도 7%에서 올해 23%로 상승했다.

45) Weekly 포스코 신문 2013.8.1.일자 기사 인용 <http://blog.posco.com/578>

## 3부

# 여성기업 지원정책 현황 및 성과

## 제1장 국내 여성기업 지원정책 현황

---

1. 여성기업 지원정책 방향
2. 주요 지원기관 현황

## 제2장 국내 여성기업 지원사업 성과

---

1. 개요
2. 중앙부처 여성기업 지원사업 성과
3.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사업 성과

## 제3장 해외 여성기업 지원정책 현황

---

1. 미국의 여성기업지원
2. 유럽연합(EU)의 여성기업지원
3. 영국의 여성기업지원
4. 독일의 여성기업지원
5. 스웨덴의 여성기업지원
6. 핀란드의 여성기업지원
7. 호주의 여성기업지원
8. 일본의 여성기업지원
9. 각국의 여성기업 지원정책 비교





# 제1장 국내 여성기업 지원정책 현황

## 1. 여성기업 지원정책 방향

### 가. 우리나라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발전 과정

#### 1)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시기별 발전 과정

여성기업이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국가 발전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 여성 경제참여율 증대, 나아가 경제적인 가치 창출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기여이다. 실제, 국가 발전에서 여성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는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1998년에 대통령직속의 ‘여성특별위원회’가 발족(정부조직법, 제18조 및 대통령령 제 156993호)되었고, 1999년에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도 1999년 2월에 법률적 발판이 마련되면서 부터이다. 당시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들이 경주되었으나, 1997년의 외환 위기 극복과정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부품소재공급자로서 전통 제조업 부문의 중소기업이 주 정책대상이었다면, 소상공인, 벤처기업, 여성기업 등을 대상으로 세분화된 법률체계와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여성기업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위한 법률체계가 마련되고 차별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시작하였다<sup>46)</sup>.

여성기업 지원정책 및 사업은 각 중앙부처별로 추진되고 있지만, 주무부처로는 중소기업청이 담당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지원사업의 성격에 따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여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16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성기업을 위한 지원정책 및 사업을 수립·

46) 양인숙, 강민정(2012), “여성기업 육성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추진하고 있으며, 나아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추세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여성기업 지원정책 및 사업은 추진성과와 사회 및 경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되거나 중단, 변화되어 오면서 체계화가 요구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2000년부터 정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매년 「여성기업활동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성기업의 지원정책 방향 및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의 여성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큰 틀은 2005년부터 매년 수립되고 있는 「여성기업 활동촉진기본계획」을 통하여 결정되고 있다. 2005년에서 2013년까지 기본계획 상의 지원 정책방향은 여성창업 활성화와 여성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지금까지 유지되어 추진 중에 있다. 여성기업 활동 촉진기본계획에 나타난 지원정책방향의 흐름을 시기 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 | 연도별 「여성기업활동촉진기본계획」 주요 내용

연도	정책 목표	추진 과제
2005년	다양한 분야에 여성창업을 활성화하고 여성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여 여성기업을 경제발전에 하나의 축으로 육성	여성창업 활성화 지원 여성기업 유망직종의 발굴·육성 여성기업 경영혁신 지원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2006년	혁신형 여성기업을 육성하고 창업활성화 및 성공률 제고와 여성기업에 대한 균형지원 강화	여성기업에 안정적인 정책자금 및 보증공급 창업 및 경영혁신 교육 강화 여성기업 책임관 제도 시행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제54차 세계여성경제인대회 개최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증대
2007년	혁신형 여성기업을 육성하고 창업 활성화 및 성공률 제고와 여성기업정책에 대한 고객 만족도 제고	여성창업지원프로그램 운영 여성CEO 경영혁신 교육 강화 여성기업제품 판로 및 공공구매 확대 여성기업의 정책접근성 제고 여성기업단체의 기능 활성화
2008년	여성의 창업촉진 및 글로벌 여성기업 육성	여성창업기반의 획기적 개선 여성기업 경영안정 지원 강화 여성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연도	정책 목표	추진 과제
2009년	여성의 창업촉진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여성창업 촉진 및 창업성공률 제고 경영안정 지원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여성기업 친화적 경영환경 조성
2010년	여성인력 활용을 통한 저출산, 고령화사회 극복 및 경제활동영역에서의 동반성장 구현	안정적 여성창업 시스템 구축 여성기업 경영역량 강화 및 판로 확대 진입장벽 완화 및 불평등 관행 해소
2011년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여성 기업 경쟁력 강화	여성창업 촉진 및 성공률 제고 판로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여성기업지원인프라 확충·재정비
2012년	여성특화 아이템 발굴 및 일자리 창출에 집중	여성창업 협력프로그램 시행 여성기업의 창업지원 시스템 보완 판로확대 및 글로벌 네트워킹 기회제공
2013년	여성의 중요성과 특수성 인식한 아이템 발굴 및 일자리 창출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시스템의 보완	여성기업 정보망 구축 비즈니스 역량 교육 확대 여성기업 맞춤형 창업지원 및 창업보육 확대 판로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자료 : 중소기업청, 여성기업활동촉진기본계획, 2005~2013

2005년부터 2007년의 기본계획에서는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고 육성하는 정책과 창업된 여성기업의 경영안정화와 시장개척 및 판로확대를 집중 지원하는 정책이 중심을 이루었다. 2008년부터 2009년의 기본계획에서는 고부가가치 창출 및 글로벌화 지원이 정책의 핵심이 되었다. 우선, 창업촉진 지원정책에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업종으로 창업을 유도하고, 기업활동 촉진지원정책에서는 여성기업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경영활동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2010년부터 2011년의 기본계획에서는 사회 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지원정책이 수립되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으로써,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여성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지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여성기업의 경영애로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의 지원인프라를 확충·재정비하는 방향도 제시하였다.

한편, 2012년부터 2013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에서는 여성기업 특유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으로 여성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원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 지원 시스템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먼저 여성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조사연구팀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의 확대, 여성창업교육 프로그램의 보완 등으로 창업 지원 과정을 보완하였으며, 여성기업 관련 정보망을 통합하고 고도화하여 관련 정보의 소통을 강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여성기업이 가장 애로를 가지고 있는 분야가 판로인데, 정부에서는 여성기업 판로확대를 위하여 공공구매를 통한 판로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내용을 여성창업 촉진 지원정책과 여성기업 육성 지원정책으로 구분하여 보면 세부적인 추진과제의 내용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여성창업 촉진정책을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여성기업활동 촉진기본계획에서 밝힌 지원정책은 여성의 창업촉진 및 안정적인 성장에 필요한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창업의 양적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2008년 이후의 지원정책은 창업의 질적 향상으로 초점이 변화되어졌다. 즉, 고부가가치 창업아이템 발굴,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성공창업사례 전파교육 실시 등과 같이 창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되어졌다.

표 3-2 | 여성창업 촉진 지원정책 흐름

구분	2005년 ~ 2007년	2008년 이후
여성창업 촉진 지원정책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창업교육 강화 및 자금지원 창업사전 정보·지식의 제공 소상공인 창업정보 제공	고부가가치 창업아이템 발굴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한 멘토링 기능 강화 성공창업사례 전파교육 실시 1인 여성기업 창업 촉진 창업보육 역량 증대 여성창업 구조전환 여성 창업자 맞춤형 지원 성장단계별 지원을 위한 시스템 연계 여성가장 생계형 창업자금 확대 및 개편

여성기업 육성에 대한 지원정책은 새로운 변화보다는 초기정책을 강화해 나가는 추세이다. 판로확대를 위한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지원과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 홍보 및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네트워킹 구축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포럼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자금 및 보증, 컨설팅 등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 및 실태조사, 여성기업책임관 제도, 성인지 예산제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통합 정보망 구축 등 여성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재정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및 유럽과 미국과의 FTA체결에 따른 국내외 시장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서 여성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에 대한 홍보지원방안도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국제대회와 여성지도자회의 등을 참가 지원하거나 유치하여 국내외 여성기업인 및 관계자들 간에 네트워크화를 강화하고 있으며, 기존의 해외 판로확대방안 이외에 해외 바이어DB 구축을 통하여 수출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표 3-3 | 여성기업 육성 지원정책 흐름

구분		2005년 ~ 2012년	2013년
여성 기업 육성 지원 정책	판로 확대	여성기업제품 전용관 운영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여성기업제품 온라인/홈쇼핑 지원 대-여성기업 동반성장 지원 국내외 박람회/전시회/상담회 지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유명박람회 참가 지원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여성기업맞춤형 입찰정보사이트 운영
	경영 안정화	여성기업인 교육/세미나/포럼 지원 경제인대회 및 경영연수 지원 경영안정자금 및 보증 지원 미래기업형 업종전환 구조개선 컨설팅 지원	멘토링 제도 및 프로그램 운용

구분	2005년 ~ 2012년	2013년
인프라 확충· 재정비	여성기업 확인제도 도입 및 운영 여성기업책임관제도 도입 및 활성화 여성기업 실태조사 실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구축 여성기업전용 입주단지 제공 여성기업 통합 정보망 구축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보육실 확장 및 여성특화창업보육센터 운영	여성기업 통합 정보망 고도화 여성기업의 통합 정보망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글로벌 네트 워킹	세계여성경제인대회 참가 지원 여성지도자회의 참가 지원 해외정책동향 정보 수집 및 정책 개발 세계여성경제인대회 유치 및 개최 여성기업 전용 수출사이트 (3D 사이버 전시장) 구축	통합정보망 구축과 연계하여 수출정보제공 및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해외 바이어 DB 탑재

## 2)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추진체계

중소기업정책의 법률적·제도적 변화 속에서 고령화 및 저출산 시대에 여성친화적인 디자인, 문화컨텐츠 등 지식기반 산업과 더불어 최근에는 SNS를 활용한 디지털산업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아 가기 시작하였다.<sup>47)</sup> 실제, 국내 여성기업이 고용, 부가가치, 기술개발 등의 측면에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면서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제도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와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추진되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 여성창업 지원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다만, 여성기업의 규모, 성장 가능성, 현재의 경영환경의 열악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여성청년 창업가들의 활발한 발굴과 기존 경력단절 여성<sup>48)</sup>들의 창업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들 여성기업들 중에서 글로벌

47) 국내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최근 5년간 평균 73.5%이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수준에 머물고 있다. 다만, 국내 여성기업은 전체사업체 수 대비 37.1%로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로 규모가 매우 열악하고, 숙박업 등 일부 업종에 편중되어 있다.

48)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창업자의 창업 전 직업은 가정주부 39.6%, 개인사업 24.5%, 기술/생산직

경쟁력을 가진 창조형 여성 강소기업 육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기존의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추진체계는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어 왔다. 그리고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도 제정되어 있고, 지원조직,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호주에 비하여 여성창업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강소기업 비율이 낮은 실정이다. 그 근본적인 이유로는 미국의 정책은 간결하고 분명한 반면에, 한국은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내용은 복잡하여 여성창업자 및 여성기업이 지원받는데 어려움이 있다.<sup>49)</sup> 따라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경제정책에서 탈피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여성 강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창업·성장을 이루는 여성 강소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 일반 중소기업이 다양한 형태의 융복합이 이루어지면서 이를 통해 융합화 및 신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이를 이끌고 갈 지원기관의 역할 강화 및 재설정이 요구된다. 이에 중소기업청의 역할 확대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역할 강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여성중소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 및 강소기업으로의 체질 강화를 위한 역할 강화가 요구된다.

여성중소기업의 지원체계는 이러한 기존 체계를 강화하여 창조형 여성인력의 발굴과 육성, 창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여성 강소기업 생태계 조성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 기능 및 조직재설계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서비스 전달체계와 더불어 글로벌 강소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창조적 여성창업자 및 여성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춰져야 할 것이다.

### 3) 정부 정책의 변화

중소기업 정책이 보호주의적 중소기업 정책에서 경쟁력 강화로 전환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시장경제원리를 강조하는 가운데, 중소기업 지원 방향으로 대기업-중소기업의

18.1%, 사무직 14.8%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49)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해외여성기업실태조사」, 2007.

---

동반성장을 강조하였다. 박근혜 새 정부는 경제정책 중심을 중소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 표명과 함께, ‘손톱 및 가시’를 뽑기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sup>50)</sup> 손톱 및 가시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거창한 정책보다 손톱 끝에 박힌 가시를 빼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 현장의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가리켜 한 말이다. 정책의 수사적 표현을 가시화한다면, 정책입안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사소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장기어음 결제나 납품단가 인하 등 대기업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비롯한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문제이고, 그 밖에 분리발주 제도 활성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이 있다.<sup>51)</sup>

우리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변화 속에서 여성기업 정책은 소상공인, 장애인 기업 등과 같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대상으로 자리 매김 되어 왔다.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의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에서의 최근 3년의 정책목표를 살펴보면, 2009년에는 ‘여성의 창업촉진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2010년은 ‘여성인력 활용을 통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 극복 및 경제활동 영역에서의 동반성장 구현’, 2011년은 ‘여성 일자리 창출과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2012년은 ‘여성특화 아이템 발굴 및 일자리 창출’이다.

저출산 문제와도 관련되어 폭넓게 접근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 속에서 여성기업 지원 주요 사업들은 여성창업 지원과 여성기업 육성(경쟁력 강화)의 2가지 큰 틀에서 재분류되는 과정을 거쳤고, 사업 내용의 변화는 크지 않았다.<sup>52)</sup>

---

50) ‘손톱 및 가시’를 위한 민관 합동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뉴시스, 2013.01.25)

51) 한겨레신문, 2013.01.20.

52) 초기(2003년, 2004년)에는 여성기업전용펀드, 여성벤처투자마트 등의 민간협력 자금지원 사업도 시행되었으나 사업추진 실적이 미진하여 폐지된 바 있다.



## 2. 주요 지원기관 현황



### 가. 중앙부처

#### 1)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은 여성기업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인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의 시정을 요구하고, 여성기업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여성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여성기업실태조사 등 여성기업 관련 업무를 실제적으로 총괄하고 있다.

| 그림 3-1 | 중소기업청 여성기업관련 지원사업

정책 방향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	--------------------

추진전략		세부추진과제
여성창업 촉진		실전창업스쿨, 창업경진대회 차세대 여성CEO 양성교육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여성기업 육성	판로확대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 지원 여성기업확인제도 운영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여성기업제품 전용관 운영 지원
	기술개발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중소기업 R&D 기획역량 혁신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 창업성장 기술개발
여성기업 인프라 확충 및 재정비		여성CEO MBA 교육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여성기업 조사연구 지원 여성CEO 멘토링 운영

---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여성창업 촉진, 여성기업 육성, 여성기업 인프라 확충 및 재정비 등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기업 관련사항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 내의 기업협력과, 기술개발과 등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편, 여성기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원하는데 있어서 중소기업청 내에 설치되어 있는 균형성장촉진위원회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수립되는 여성기업 활동촉진기본계획 및 여성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기업관련 대표기관으로서 사업계획 및 실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균형성장촉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은 중소기업청장으로 하며, 위원에는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및 조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회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부이사장, 신용보증기금의 전무이사,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전무이사 등이 있다. 균형성장촉진위원회는 여성기업에 관한 법률 및 정책 등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한다.

#### <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기능 >

-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에 대한 시정에 관한 사항
- 여성기업활동촉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 여성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촉진을 위하여 여성기업의 자금지원 우대에 관한 사항

## 2) 미래창조과학부

우리나라의 미래를 개척하고 창조경제의 새 시대를 여는 부처로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국민 연구개발 및 혁신역량강화, SW와 콘텐츠를 핵심산업화하며 국제협력과 글로벌화,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과 ICT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미래 여성과학기술인 꿈나무와 우수 여성과학기술인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 양질의 여성과학기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근거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성과파악을 위하여 여성과학기술인력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 3)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실물경제 주무부처로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부문간 균형있는 성장이 선순환되는 창조경제의 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산업융합을 확산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통해 중소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이 되는 협력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국익과 경제적 실리에 충실한 통상정책을 추진함을 목표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핵심정책 중 하나로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산업혁신 운동 3.0 전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는 성장사다리 구축, '손톱 및 가시'를 발굴·해결하는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하고 있다.

## 4) 여성가족부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과 여성의 권익증진을 통한 지위향상,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정부정책에 따른 성별영향력 분석·평가, 여성인력의 개발 및 활용,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부처이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의 일자리안대를 위해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

사후관리 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다양한 분야의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여대생 커리어 지원, 커리어 업, 사이버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있다.

### 5) 특허청

우리나라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으로 대표되는 지식재산권 설정 등의 심사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의 보호, 창출, 활용 등 국가의 지식재산관련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우리나라 지식재산정책을 관장하는 기관이다.

특허청에서는 여성발명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및 여성저변을 확산하고 여성발명인력 양성, 사업화 지원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여성발명품박람회, 세계여성발명대회, 세계여성발명포럼 등을 통해 여성발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6)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다양한 내·외자 물품 및 용역 계약은 물론이고 시설공사, 국유재산 관리, 해외조달시장 개척 등을 통한 중소기업지원, 원자재 비축 및 관리, 조달물품 품질관리 및 시장조절 등을 관장하는 기관이다. 조달청에서는 여성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위하여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및 조달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 나. 지방자치단체

서울시를 비롯한 6대 광역시와 9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 내에 있는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안정화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창업 촉진을 위하여 여성창업교육부터 창업자금지원, 여성창업기업에 대한 멘토링과 교육, 여성창업을 지원하고 있는 창업보육 센터에 대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여성기업 육성을 위해서 해외마케팅, 전시회 및 홍보, 공공구매 등의 지원사업과 운전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등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기업 인프라 확충 및 재정비를 위하여 여성기업인을 위한 포럼 및 경영연수, 경제인대회와 국제교류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의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다.

표 3-4 | 지자체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현황

지자체명	제정일자	지자체명	제정일자
부산광역시	2009년 07월 08일	구미시	2009년 09월 28일
울산광역시	2008년 10월 16일	김포시	2012년 10월 31일
광주광역시	2009년 11월 16일	제천시	2013년 5월 10일
인천광역시	2007년 12월 24일	성남시	2009년 12월 24일
경기도	2008년 07월 25일	광주시	2011년 12월 30일
충청북도	2008년 08월 08일	고양시	2011년 08월 05일
전라북도	2013년 08월 09일	시흥시	2012년 04월 10일
전라남도	2011년 05월 13일	안양시	2012년 10월 12일
경상북도	2013년 11월 11일	안산시	2012년 08월 08일
경상남도	2009년 08월 13일	천안시	2013년 05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	2009년 01월 07일	수원시	2012년 10월 04일
전주시	2009년 02월 27일	영월군	2013년 02월 20일
익산시	2013년 07월 15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2013년 06월 17일

※ 자료 : 각 지방자치단체, 2014

이를 기반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촉진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과 기회보장을 의무화하고,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및 시행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 다. 주요 여성기업 관련 단체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별로 등록된 주요 여성기업 관련 단체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21세기여성CEO연합, 한국IT여성기업인

협회,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한국여성발명협회,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등이 있다.

표 3-5 | 주요 여성기업 관련 단체

관련 단체 (소관부서)	설립목적	사업내용 요약	회원수/ 설립연도
한국여성경제인 협회 (중소기업청)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을 통한 여성경제인의 공동 이익증진과 건전한 발전 도모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을 위한 제도와 시책에 대한 대정부 건의 여성기업 및 여성창업 촉진 사업추진 등	2,025명/ 1971년
(社)한국여성벤처 협회 (중소기업청)	여성벤처 기업이 뿌리를 내려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여성벤처기업의 발굴 및 창업지원 사업 등	813명/ 1999년
(社)21세기여성 CEO연합 (기획재정부)	여성의 사회적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고, 투명한 경영문화 정착과 새로운 기업환경 조성	세계적인 경제인사와의 교류 여성경영인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 등	500명/ 2003년
(社)한국IT여성 기업인협회 (산업통상자원부)	우수한 IT여성기업인의 발굴 및 전문 여성 인력의 양성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지식경제부 여성IT인력 취업 지원 사업 IT여성기업지원 등	180명/ 2001년
(社)한국여성공학 기술인협회 (산업통상자원부)	공학기술계 여성인력의 육성 및 활용과 상호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	여성공학기술인의 경력개발 및 리더 양성 공학기술계 여성활용에 대한 정부정책 제안 등	1,200명/ 2004년
(社)한국여성 발명협회 (특허청)	여성의 잠재력을 창의성 계발로 이끌어 냄으로써 국가 산업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을 도모	여성발명사업화지원 여성발명 저변 확대 여성발명 인력 양성 등	650명/ 1993년
(社)한국여성 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	여성 경영자들의 경제단체로서 여성 경영인들의 교류는 물론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	여성의 지위 향상 여성경제인구 증대 여성경영의 세계화 도모 등	210명/ 1993년

※ 자료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및 각 기관 홈페이지, 2014

1)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을 통한 여성경제인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 도모를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여성창업 및 여성경제인의 경영 능력 향상 지원, 여성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여성기업제품 판로확대 지원, 해외시장개척 및 외국 여성경제인단체와의 교류협력 등을 수행하고 있다.

표 3-6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구분	지원사업명	사업내용
여성경제인 혁신역량 강화사업	여성CEO MBA 교육	○ 여성기업 특성에 맞춘 경영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기회를 제공하여 경영자 자질향상과 마인드혁신을 통해 기업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초청강연 및 기업CEO 패널프로그램 구성으로 전국 여성경제인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기회를 제공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 국제적 수준의 회의에 한국대표단을 파견하여 세계 여성기업간 네트워크 및 대외경쟁력 향상 도모
여성기업 판로지원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	○ 실질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여성기업에게 공공기관 경쟁 입찰 시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을 통해 여성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판로확대 및 구매촉진 증진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홍보	○ 여성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확대를 위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내 홍보물 제작 및 배포를 통한 공공기관의 구매율 제고
	여성기업 통합 정보망 구축	○ 여성기업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 및 제공하고, 여성기업에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효율적인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여성기업 실태조사	○ 여성기업에 대한 정확한 현황자료를 수집하고 각종 정책·보고 자료의 통계적 근거로 활용하며 분야별 여성기업 애로 사항을 파악하여 여성기업을 위한 법률 및 정책방향과 향후 과제 도출을 위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사업
여성창업 지원	여성가장 창업자금지원	○ 저소득 여성가장으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창업을 지원하여 가계안정 및 자활의지 제고와 더불어 여성창업을 촉진하여 경제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
	여성CEO 멘토링 운영	○ 다양한 지역 및 분야의 여성CEO가 예비/초보 여성창업자를 위한 멘토가 되어 자신의 경험이나 사업 노하우를 전수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여성경제인 혁신역량 강화 지원분야로 여성CEO MBA 교육, 전국경영연수,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등의 지원사업이 있으며, 여성기업 판로 지원분야로는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여성기업 통합 정보망 구축, 여성기업 실태조사 사업 등의 지원사업이 있다. 그리고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여성CEO 멘토링 운영사업과 여성기업 실태조사 사업도 있다.

## 2)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는 여성벤처기업 간의 협력증진을 위한 민간 협력단체로서, 여성벤처기업의 활성화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여성벤처기업의 사회적 인식을 고양하고 여성벤처기업이 뿌리를 내려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었다.

표 3-7 | 한국여성벤처협회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구분	사업내용
여성벤처기업 발굴 및 창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벤처기업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 및 기업의 모델 제시</li> <li>창업 의식 고취를 통한 여성인력의 고용창출에 기여</li> </ul>
여성벤처기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벤처기업의 애로사항 타개 및 사회 인지도 개선을 통해 여성이 기업을 원활한 여선 속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기반 조성</li> </ul>
여성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확립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 및 법 제도개선 등을 통해 여성벤처기업의 체질 강화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li> </ul>
여성벤처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벤처기업간 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성 및 효과적인 여성벤처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한 사업협력지원</li> </ul>
여성벤처기업의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벤처기업의 활동촉진을 위한 정부지원제도 및 입찰, 신기술동향 등 최신정보제공</li> </ul>
여성벤처기업의 국제교류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여성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마켓채널 구축 및 연계 지원활동 등 현지진출을 전략적으로 지원</li> </ul>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여성벤처 기업 발굴 및 창업지원, 여성벤처기업 활성화 정책개선 활동, 여성벤처기업 육성정책 건의, 여성벤처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여성벤처기업 정보제공, 여성벤처기업 국제교류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이 있다.

### 3) 21세기여성CEO연합

21세기여성CEO연합은 여성CEO 간의 협력증진을 위한 민간협력단체로서, 여성 경영인이 효율적으로 기업경영지식을 공유하고 그에 맞는 사회적 역할과 바람직한 여성 경영인상을 정립하고자 설립되었다. 21세기여성CEO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지원 사업으로는 세계적인 경제 인사교류 사업, 여성경영인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사업, 최고 경영지식 개발 연구 및 조사 등이 있다.

표 3-8 | 21세기여성CEO연합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구분	사업내용
세계적인 경제인사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유명CEO 초청 강연</li> <li>○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세계적 경영자 네트워크 구축</li> <li>○ 세계경영인과 한국문화 공유</li> </ul>
여성경영인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경영인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li> <li>○ 여성경영인 경영사례연구 및 교류지원</li> <li>○ 여성경영인 불이익 개선</li> </ul>
최고경영지식 연구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여성CEO 포럼 및 학회 개최</li> <li>○ 각 경영분야별 연구세미나 개최</li> <li>○ 산학연계 연구워크숍 개최</li> </ul>

### 4)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는 정보통신분야에 종사하는 여성중소·벤처기업의 활발한 창업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우수한 IT여성기업인의 발굴 및 전문여성 인력의 양성을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었다. 협회에서는 취약기업의 E-business 도입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e-catalogue제작 및 그룹웨어ASP도입 지원, 이브와 프로젝트 멘토링, 창의문제해결능력경진대회, IBWA 컨퍼런스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표 3-9 |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구분	사업내용
IT활용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catalog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기업(취약기업)등의 온라인 홍보 및 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부문의 IT활용지수 향상을 도모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에 대한 소개자료, 솔루션소개, 제품소개 및 홍보 리플렛 등을 e-book형태로 무상제작지원</li> </ul> </li> <li>○ 그룹웨어 A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시 종업원 수 10인 이하의 여성기업 또는 기본적인 기업 이메일 계정 및 자체 그룹웨어 등을 구축하지 못하는 IT취약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맞춤형 그룹웨어 ASP지원</li> </ul> </li> </ul>
이브와 프로젝트 멘토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공계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여 IT기업인을 매칭시켜줌으로써,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여성 전문 인력 양성과 IT여성인력의 사회 진출을 직간접적으로 지원</li> <li>○ 여대생과 대학교수 등이 수행 프로젝트를 제시하면, 협회가 해당 프로젝트의 수행에 적합한 멘토기업(IT기업)을 찾아 매칭시키는 대학-기업 공동 수행형 멘토링 사업</li> </ul>
창의문제해결능력 경진대회(c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주제로 이러한 역량을 발휘 비교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참가자에게는 자긍심과 탐구정신을 고양하고, 사회적으로는 융복합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며 국가적으로는 시대를 선도할 인재를 육성하여 IT융복합 시대의 선진국으로 위상을 강화</li> </ul>
IBWA 컨퍼런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IT업계 기업인들의 직·간접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li> <li>○ 다양한 정보교류 IT분야의 신기술 및 최근 트렌드 파악</li> <li>○ 산학협력을 위한 인적 인프라 형성을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li> </ul>

### 5)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는 공학기술계 여성인력의 육성 및 활용과 상호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으로 상생의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여성인력과 공학기술의 선순환적 활용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었다.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리더육성, 산업기술문화 조성, WATCH 21, R&D 중간조직 활성화 등이 있다.

표 3-10 |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구분	사업내용
리더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학계 여성인력이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경쟁력 있는 사회인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소양교육 및 전문성, 조직사회의 적응력, 리더십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li> <li>○ 차세대 여성 공학 기술 인력에게 공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들이 여성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리더육성 사업과 사회적 인식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li> <li>○ 공학분야에서 여성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체계화된 전문가 지도와 사회 진출한 선배들의 코칭을 통해 현장 적응능력 향상 효과</li> <li>○ 공학계 각 분야 Opinion Leader를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상호 연계 기반 구축</li> </ul>
산업기술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현장의 우수한 여성공학기술인 리더를 발굴, 표창</li> <li>○ 여성공학인 활용 우수기업 사례 발굴, 확산</li> <li>○ 여성기술인 성공사례보급(‘세계를 바꾸는 여성 엔지니어’ 시리즈 출판)</li> </ul>
WATCH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젝트 베이스 다자간 연구와 교육을 통한 공대 여자 대학원생의 리더십 함양 및 글로벌 고급 여성인력 양성</li> <li>○ 공학계 재학 여대생의 전공 유지 발전 및 연구중심 학습으로 학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모델로 새로운 교육형태 제공</li> <li>○ 연구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우수 여고생의 공학계 진학 동기 유발 (교육자-피교육자가 한 구성체가 되어 교육효과 극대화)</li> <li>○ 우수 여성공학기술인 Role Model 만남을 통한 종적이고 횡적인 네트워크 구축</li> <li>○ 대학원생-대학생-여고생이&lt;교수-교사-산업체여성인력&gt; 네트워크 지도와 함께 하나의 연구 프로젝트 완성 : 연구, 교육, 멘토링, 사회성, 조직사회 적응력→다각적 교육 효과</li> </ul>
R&D 중간조직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학계 각 분야 R&amp;D 중간조직의 경쟁력을 키우고, 여성공학기술 인력을 한국 산업사회 핵심인재로 활용</li> <li>○ 여성 공학기술인력의 정보공유와 원활한 의견 교환 및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현실적 지원 정책을 제안</li> <li>○ R&amp;D 중간조직 성과의 대외확산을 통하여 공대 여학생의 Role Model로서 미래에 대한 vision을 제시하고 멘토-멘티 교육확대에 활용</li> <li>○ 여성인력활용이 우수한 기업의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산업체의 여성 고용을 증대하고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원활한 연결통로 마련</li> </ul>
포럼/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여성공학기술인 활용' 정책토론회 개최</li> </ul>

## 6) 한국여성발명협회

한국여성발명협회는 여성들에게 발명의 생활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여성 발명인구의 저변확대를 바탕으로 범국민적인 발명풍토를 조성하며, 지식기반 사회와 세계화에 부응하여 여성의 잠재력을 창의성 계발로 이끌어냄으로써, 국가 산업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을 도모하고자 설립되었다.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세계여성발명대회 및 대한민국여성발명품 박람회, 시제품제작 지원, 변리자문서비스, 국제발명품전시회 참가지원, 여성발명경진대회, 여성발명인 워크숍 등이 있다.

표 3-11 | 한국여성발명협회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구분	지원사업명	사업내용
여성발명 사업화 지원	세계여성 발명대회 및 대한민국여성 발명품 박람회	○ 국내외 여성발명품의 홍보 및 전시를 통한 실질적인 판로 개척, 비즈니스 매칭 기회 제공, 국내외 여성발명기업인들의 교류확대 및 국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 강화, 국제적인 위상제고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장 마련
	세계여성 발명포럼	○ 국내외 여성발명인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연대 방안 구성과 지적 재산권 공동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포럼 및 회의의 연례화 방안 모색, 국내외 여성발명인들의 성공 사례를 통한 비전제시 및 정보공유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확대 구축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	○ 여성의 우수한 발명아이디어를 발굴해 시제품을 제작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업화 가능여부를 알아보고, 특허출원 및 등록을 통해 여성의 경제력 확대를 도모
	변리자문 서비스 제공	○ 발명에 관심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아이디어의 구체화, 특허 출원 등 지식재산권 및 사업화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과 컨설팅 제공
	국제발명품 전시회 참가지원	○ 해외시장의 신기술 개발동향의 파악 및 정보수집, 국제전 관람을 통한 발명아이디어 개발 및 의욕고취, 여성발명품의 해외시장 개척 가능성 점검, 우수 여성발명인의 발명의욕 고취와 사기진작 도모
여성발명 저변확대	올해의 여성발명 기업인상	○ 우수한 여성발명인들의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발표함으로써 우수발명품 홍보(사례집 발간, 해외박람회 출품지원, 언론 홍보)

구분	지원사업명	사업내용
여성발명 인력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공사례 홍보를 통해 여성발명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li> <li>○ 여성발명인의 발명의욕 고취 및 사기 진작</li> </ul>
	여성발명 경진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들의 창의력 발휘 기회 제공 및 아이디어 개발에 대한 의식 고양으로 여성 발명 인구의 저변확대 및 여성발명인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 진작, 미래의 주인공인 대학생의 발명에 대한 인식제고 및 발명생활화 촉진</li> </ul>
	여성발명인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발명인의 지식재산권 및 비즈니스 역량 강화 및 여성 발명인 간 정보교환과 친선 도모를 하고 여성발명인 성공 사례 홍보의 장 마련</li> </ul>
	세계여성발명& 기업인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여성발명과 기업인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제고 및 발명 역량강화와 국제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환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추구</li> </ul>
	여성지식 재산권 순회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들에게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생활 속 발명을 확산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와 고부가가치 창출의 마인드 제고 및 여성발명인력 육성</li> </ul>
	여성발명 창의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들에게 발명과 특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창의성을 발휘하여 이를 창업 또는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개발 및 자녀의 창의력, 발명교육을 할 수 있는 기초 소양을 함양</li> </ul>
	여성발명지도사 (초급)양성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취학 아동 보육, 교육기관과 초등학교 방과 후에 아동의 창의력 개발을 위한 발명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지도 인력을 양성하여 아동의 창의력 및 발명교육 분야에서 여성 일자리를 창출</li> </ul>
	여대생 발명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대생의 창의성 개발 및 발명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 및 지식 재산권의 중요성 인식과 창의적 아이디어 실현능력 함양</li> </ul>

### 7)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는 여성경영인들의 교류는 물론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과의 정보 교류 및 보다 나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제안 등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었다.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여성의 지위 향상, 여성경제인구 증대, 여성경영의 세계화 도모, 정부 및 유관단체에 정책제안 등이 있다.

표 3-12 |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구분	사업내용
여성의 지위향상	○ 여성경영인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 증진을 추구하여 지위향상 지원
여성경제인구 증대	○ 여성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고용 창출에 힘써 여성 경제인구 증대에 기여 ○ 여성 경영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영인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춘 예비 여성 경영인을 발굴하며 시장된 고급 여성인력의 활동을 유도
여성경영의 세계화 도모	○ 해외교포 여성경영인 및 외국 여성경영단체와의 국제교류를 활발히 하여 경영의 세계화를 도모
정부 및 유관단체 정책제안	○ 정부기관과 자치단체 등에 각종 경제정책을 제안하고 여성 경영인의 애로사항을 전달하여 여성 경영인에 대한 지원책 유도

## 라. 주요 여성기업지원기관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각 부처별로 등록된 주요 여성기업지원 기관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여성경제진흥원 등이 있다.

표 3-13 | 주요 여성기업지원기관

관련단체 (소관부서)	설립목적	사업내용 요약	설립 연도
(財)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청)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인의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한 각종 정보 및 교육, 훈련, 연수,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창업보육 여성경제인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등	2006년

관련단체 (소관부서)	설립목적	사업내용 요약	설립 연도
(株)중소기업 유통센터 (중소기업청)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판매 및 유통을 지원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홍보, 전시, 마케팅 지원 국내 판로지원 및 해외수출 지원 등	1995년
(財)한국여성 과학기술인 지원센터 (미래창조 과학부)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정책 및 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통합·추진하여 국가, 사회발전에 이바지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경영, 인력양성, 연구, 창업 지원 등 여중·고·대학(원)생을 위한 영재 발굴, 연구대회, 멘토링, 아카데미 지원 등	2011년
(財)한국여성 경제진흥원 (기획재정부)	여성경제진흥을 통한 한국경제의 선진화와 성숙한 양성 평등의 경제 환경 조성	국내외 여성경제인 네트워크 여성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여성경제인에 대한 효율적 지원 등	2009년

※ 자료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및 각 기관 홈페이지

### 1)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 경영활동 촉진을 위하여 창업보육, 여성경제인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 교육·훈련·연수, 경영활동 및 판로지원, 애로상담,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 및 조사 실시 등을 위해 설립되었다. 또한, 각 지역별 센터 간에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보육성과 및 창업성공률을 제고하여 여성기업 창업지원기관의 메카로서 위상구축을 사업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지원센터 운영 및 확장 사업으로 구분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있다. 또한 여성창업 지원사업으로 실전창업스쿨, 여성창업경진대회, 차세대 여성CEO 양성교육 등이 있으며, 여성기업해외진출 지원사업으로는 해외유명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는 수출여성기업지원이 있다.

표 3-14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구분	지원사업명	사업목적
여성창업 지원	실전창업스쿨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와 여성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식·감성기반의 서비스분야 및 유망분야 창업교육을 통해 여성 창업 촉진 및 1인 창조 기업 육성으로 여성경제 활동 참여 활성화
	여성창업 경진대회	○ 여성전문인력들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여성의 창업분위기를 조성하여 적극적인 창업 유도
	차세대 여성CEO 양성교육	○ 차세대 여성기업인 조기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체계적인 창업 교육과정 운영과 기업가 정신 고취를 위한 경영체험 실시
여성기업 종합지원 센터운영	지원센터 운영 (창업비운영)	○ 여성 창업유망업종에 속하는 여성기업에 대해 창업보육공간 및 시설을 제공하고, 전문 컨설팅 서비스 및 국내외 판로지원, 여성기업 지원사업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사업
여성기업 해외진출 지원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 해외판로를 모색하거나 준비 중에 있는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유명박람회 참가를 지원하여 해외시장 경험 제공, 수출 기획 제공 및 해외판로 개척을 도모를 지원하는 사업

## 2)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치열한 경쟁환경 속에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판로 및 유통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여성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제품 전용관 지원 사업을 중소기업청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 지원사업은 우수한 품질 및 저렴한 가격을 갖추고 경쟁력은 있지만 판매처의 부족으로 제품판매에 어려움이 있는 여성기업을 발굴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성기업제품 전용관에 입점하도록 하여 여성기업제품에 대한 마케팅장소 제공 및 매장운영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성기업제품 전용관은 여성 신진디자이너 창업관과 패션주얼리 전용관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으로는 의류 및 패션관련 예비창업자 또는 디자이너, 대학생



및 일반인 중 패션디자인 전공자이며, 예술 및 디자인계열 전공자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디자이너 창업관 참여자 중에서 우수디자이너를 대상으로 국내 유명 패션관련 사이트 및 패션잡지에 홍보와 인터넷 쇼핑몰 입점 및 판매를 지원하며, 매장 입점비, 임대료, 판매사원 인건비, 기타 관리비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통한 전시판매와 패션쇼 및 국내외 전시회 참여까지도 지원한다.

표 3-15 |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구분	사업내용
여성기업제품 전용관 지원	○ 사회진출을 앞둔 우수한 새내기 디자이너를 발굴하여 실질적인 디자인, 상품테스트 공간 및 실전 마케팅 체험기회를 제공, 역량을 강화시켜 국내·외 패션 시장에 진출 지원 및 창업·취업 기반 마련

### 3)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는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정책 및 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사업(4W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통합·추진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핵심 목표는 첫째, 4W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통합 기반을 구축하고 둘째, 소통과 창조를 통해서 열린 센터를 지향하여 선진화와 효율화를 이루며 셋째, 여성의 전생애주기에 맞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넷째, 여성과학기술인들을 위해 다층적·다면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범사회적인 지지기반 확대와 영향력 증대를 위해 노력하며 다섯째, 사업성과가 공유되고 환류되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쌍방향 지식관리시스템을 국내외에 널리 제공하기 위함이다.

표 3-16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구분	사업목적
이공계 여성인재 육성지원	○ 생애주기에 따른 통합적, 체계적,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프로그램 실행을 통한 이공계 여학생 유입 확대 및 여성과학기술인재 누수방지 ○ 고급 여성과학기술연구개발 인재 육성 및 리더십 강화 ○ 여성친화적 연구개발환경 개선을 통한 인재육성 문화기반 조성

구분	사업목적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차 기본계획의 정책사업 추진 전담 기관 설치·운영을 통해 정책 개발, 조사연구 및 관련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과학기술분야의 여성인재 활용 활성화</li> <li>○ 여성의 과학기술인력 양성·활용을 촉진하여 여성의 과학기술분야 진출을 확대</li> </ul>
제도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한 여성인력의 과학기술분야 진출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여성이 고급인적자원으로 성장하고 활용되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함</li> </ul>
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차원의 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자 이공계대학과 공공/민간기업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조사</li> </ul>
연대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 활성화를 통해 우수여성R&amp;D 인력 활용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지원</li> </ul>
과학기술여성인재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기술분야 여성인력의 양성 및 인재풀 확충을 통한 과학기술 혁신 역량강화 및 국제수준의 창조적 지식경제 기반 구축에 기여</li> </ul>

#### 4) 한국여성경제진흥원

한국여성경제진흥원은 여성경제인의 문제를 올바로 이해하고 해결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이루고, 선진 경제로 도약하는데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여성경제 진흥을 통한 한국경제의 선진화와 성숙한 양성평등의 경제환경조성을 비전으로 여성경제인의 역량 결집, 여성의 경제적 권한 향상, 여성·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미션으로 하고 있다. 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국내외 여성경제인 네트워크 구축, 여성·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여성인력개발 및 활용, 여성경제인에 대한 효율적 지원, 여성경제 진흥정책 연구개발 및 정책협력 등이 있다.

표 3-17 | 한국여성경제진흥원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구분	사업내용
국내외 여성경제인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경제인의 발전과 상호 교류 협력</li> <li>○ 여성경제 정책에 대하여 정부와 여성 경제계간의 통로 역할</li> <li>○ 여성경제인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으로 국제 경쟁력 제고</li> </ul>
여성·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인식과 기업문화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설득</li> <li>○ 실태조사 및 평가를 통해 기업문화의 여성 가족 친화적 변화 유도</li> <li>○ 여성에 대한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단점으로 평가되는 요인들의 제거를 위한 노력</li> </ul>
여성인력개발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위한 일자리 창출</li> <li>○ 여성 근로자 및 간부, 여성 기업인 등 대상별 맞춤형 커리어 개발</li> </ul>
여성경제인에 대한 효율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경제인에 대하여 사업발전 단계(life-cycle)와 사업 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경영 컨설팅</li> <li>○ 여성부, 중기청 등 각 부처의 각기 다른 지원을 함께 모아 종합적으로 one-stop 지원</li> </ul>
여성경제 진흥정책 연구개발 및 정책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경제활동이 국가경제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실태 조사 및 연구 분석</li> <li>○ 성별영향평가 등 정부 정책에 참여</li> <li>○ 여성인력활용 방안 등 정책제안</li> </ul>



## 제2장 국내 여성기업 지원사업 성과

### 1. 개요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여성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사업평가 및 분석이 요구되기 때문에,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원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성과분석을 실시함과 동시에, 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본 백서에서는 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특히 여성기업 지원사업 성과분석에 있어서 여성창업 촉진, 여성기업 육성(판로확대 및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재정비 등의 총 3가지 관점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중앙부처가 추진한 여성기업 지원사업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표 3-18 | 중앙부처의 여성기업 지원사업 구분

지원분야	지원사업명	주관부처 / 수행기관	
여성창업 촉진	실전창업스쿨	중소기업청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창업경진대회		
	차세대 여성CEO 양성교육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	중소기업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여성발명진흥지원		특허청 / 한국여성발명협회
	이공계 여성인력 창업컨설팅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지원분야	지원사업명	주관부처 / 수행기관	
여성기업 육성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중소기업청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중소기업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및 구매 지원	중소기업청, 조달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제품 전용관 운영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유통센터	
	기술 개발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중소기업청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중소기업 R&D 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	
창업성장 기술개발			
여성기업 인프라 확충· 재정비	여성CEO MBA 교육	중소기업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여성기업 조사연구 지원		
	여성CEO 멘토링 운영		
	여성 관리자 네트워크 구축지원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고급 연구인력 활용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여성기업 지원사업을 여성창업 촉진, 여성기업 육성, 여성기업 인프라 확충 및 재정비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표 3-19 | 지방자치단체별 여성기업 지원사업 구분

지원분야	지원사업명	지방자치단체명	
여성창업 촉진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부산, 인천, 경남	
	여성창업보육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	서울, 강원, 충북	
	여성소자본창업강좌	부산	
	창업아카데미		
	여성창업촉진 및 여성일자리창출	광주	
	중소기업 창업 지원	경북	
여성기업 육성	판로 확대	여성기업 전용단지 조성	강원
		여성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경북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촉진위원회	강원
		여성기업공공구매	
		모바일 웹구축	제주
	여성기업 전시회참가 지원		
	여성기업인 해외 판로 지원	경기	
	정책자금	여성기업 중소기업자금 우대지원	부산
		여성기업 경영안정자금지원	충남,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중소기업 육성자금우대 지원	강원, 광주, 전남, 충북, 경기
여성기업 특례보증		인천	
여성기업 신용보증우대 지원		경기, 충남	

지원분야	지원사업명	지방자치단체명
여성기업 인프라 확충·재정비	여성CEO 경영혁신포럼 개최	강원, 경남, 제주
	CEO 멘토링 워크숍	충북
	여성 CEO 양성 및 MBA 교육	경남
여성기업 인프라 확충·재정비	여성협회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	울산, 충남, 제주
	여성경영인 육성 리더십 스쿨	전북
	내일의 여성CEO 육성	
	CEO 멘토링 워크숍	충북

## 2. 중앙부처 여성기업 지원사업 성과

### 가. 여성창업 촉진 지원사업

여성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은 실전창업스쿨, 여성창업경진대회, 차세대 여성CEO 양성교육,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확장,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여성발명진흥, 이공계 여성인력 창업컨설팅 등이 있다.

#### 1) 실전창업스쿨

실전창업스쿨 지원사업은 여성에게 유망한 지식·감성기반 서비스 창업교육을 통해 여성창업 촉진 및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 사업으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수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예비여성창업자로서, 교육비의 80% 지원 및 전문가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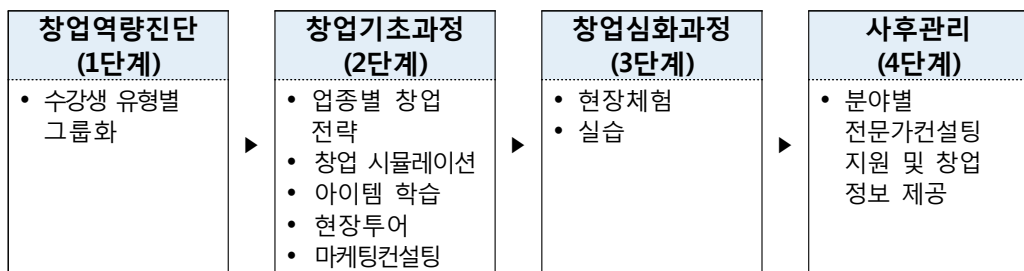
표 3-20 | 실전창업스쿨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예비여성창업자
지원사항	교육비(강사료, 강의장 임차료, 교재비, 홍보비, 실습비 등)의 80% 지원 전문가 컨설팅 무료 지원
문의처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376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69-0911

실전창업스쿨 지원사업 운영은 지식·감성에 기반을 둔 여성창업 유망 아이템을 여성 기업백서 및 지역 전략 및 연고산업과 연계하여 선정하고 실습 외에 창업시 필요한 창업 마인드, 사업 타당성 검토, 창업지원시책, 창업 상권·입지 분석 등의 이론 교육을 제공하며, 해당 교육 종료 후 수료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실전창업스쿨 지원사업은 예비여성창업자를 대상으로 수강생유형별로 그룹화하기 위한 창업역량진단단계, 업종별 창업전략수립 및 창업 시뮬레이션과 현장 투어, 마케팅 컨설팅 등의 창업기초과정단계, 현장체험 및 실습 등의 창업심화과정단계,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및 창업정보제공을 통한 사후관례단계 등으로 창업 준비에서 창업기업운영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3-2 | 실전창업스쿨 지원사업 프로세스



교육 강좌 수는 2011년 51회에서 2012년 52회, 2013년 42회를 실시하였으며, 교육 수강생은 2011년 1,302명, 2012년 1,330명, 2013년 1,041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 만족도는 2011년 86점, 2012년 86.8점으로 높아지고 있다.



표 3-21 | 실전창업스쿨 지원사업 성과

(단위: 회 명 % 점)

구분	연도별 실적		
	2011년	2012년	2013년
교육강좌수	51	52	42
교육수강생수	1,302	1,330	1,041
교육 후 창업률	19.1	19.2	-
교육수강생 만족도	86	86.8	87

※ 자료: 중소기업청 여성기업 지원사업의 성과분석 및 평가, 2013

표 3-22 | 지역별 실전창업스쿨 교육 현황(2013년)

(단위: 명)

구분	교육명	참가자 수
서울(중앙)	브런치와 함께하는 핸드드립 전문카페/멀티미디어출판 창업트레이닝교육	51
부산	슈가크래프트/실버케어 PT샵/온라인의류쇼핑몰	75
대구/경북	디저트 카페/웰빙브런치/한복대여점 1인 창조기업 창업교육/소콜라피에 소자본창업교육/디저트카페전문점 창업교육	125
광주/전남	파인 주얼리디자인/하이엔드 브런치카페/천연화장품 비누	70
대전/충남	생활자수/파티플래너 창업교육/슈가크래프트 창업교육	75
인천	홈베이킹지도사/천연화장품/웰빙푸드전문점 창업교육	75
울산	키즈파티플래너/학습코칭/수제초콜릿제작 창업교육/커피&브런치 테이크아웃 전문점	105
강원	DIY목공예 인테리어숍/컨텐츠제작 전문가 창업과정/규방공예 창업과정/슈가크래프트	90
경기	에코플라워아트/핑거푸드/온라인쇼핑몰/아트캔들공방	100
충북	플라워데코레이션/아동요리지도사/베이킹&바리스타/가구DIY공방 창업강좌	97
전북	전통놀이/창의놀이수학전문가/실내인테리어조경창업교육	74
경남	에스테틱/CS강사/노인종이조형심리미술 지도사 창업교육	75
제주	카페창업반양성교육	29
합 계		1,041

※ 자료: 중소기업청, 2013년 여성기업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교육 후 창업률은 2010년 18.4%에서 2011년 19.1%, 2012년 19.2%로 다소 높아졌으나, 여전히 높지 않은 수준이다. 그 원인으로는 창업은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곧바로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창업률을 평가하여 정책성으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문제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창업준비단계에 맞는 교육설계와 실전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에게 초점을 맞춘 교육에 대해서만 창업률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2) 여성창업경진대회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원사업은 창의적이며 우수한 창업아이템 발굴로 여성의 창업활성화 분위기를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수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우수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단체이거나 창업 후 2년 미만의 여성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여성창업경진대회는 총 9명의 우수팀에게 시상 및 포상을 하며 수상자에게는 여성창업보육실 입주 우대 및 신용보증서 발급 우대 등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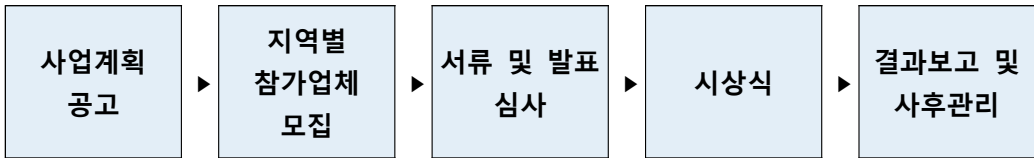
표 3-23 |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사업아이디어, 창업아이템 등 우수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단체(팀) 및 창업 후 2년 미만의 여성창업기업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상 및 포상 대상(1명) : 중소기업청장상 및 상금 1,000만원 최우수상(2명) : 중소기업청장상 및 상금 각 500만원 우수상(3명) : 중소기업청장상 및 상금 각 300만원 장려상(3명)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상 및 상금 200만원(1명) 우리은행장상 및 상금 각 200만원(2명)</li> <li>• 수상자 지원내용 여성창업보육실 입주 우대</li> </ul>
문의처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376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69-0934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원사업은 사업계획 공고, 지역별 참가업체 모집, 서류 및 발표 심사, 시상식, 결과보고 및 사후 관리 등으로 창업 활성화 및 창업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원사업은 SNS, 블로그, 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활용하여 경진대회 저변을 확대하고 있고, 여성경제인의 날에 대회를 개최하여 시상식 인지도를 올리면서 수상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그림 3-3 |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원사업 프로세스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원사업은 각 지역별로 참가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2011년 여성창업경진대회의 지역별 참가자 수는 총 176개팀으로, 서울이 67개팀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경기도에서 23개팀이 참가하였다. 2012년 총 235개팀으로, 서울이 105개팀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기도에서 24개팀이 참가하였다. 2013년 총 274개팀으로 서울이 111개팀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에서 64개팀이 참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참가자 중에서 약 63%(2013년 기준)가 서울 및 경기도에서 참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3-24 |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역별 참가 현황(2013년도)

(단위: 개)

구분	서울	부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인천	울산	강원	경기	충북	전북	경남	제주	합계
참가 수	111	14	10	16	8	13	6	6	64	3	14	9	0	274

※ 자료 : 중소기업청, 여성기업 지원사업의 성과분석 및 평가, 2013

여성창업경진대회의 참가팀 수는 2011년 176개, 2012년 235개, 2013년 274팀으로, 2011년도 대비 5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수상팀 수는 2011년도 9개팀, 2012년도 9개팀, 2013년도 8개 팀으로 큰 변동은 없으나, 지난 3년간 수상팀의 약 70%가

창업하였다. 창업경진대회를 통한 창업은 대부분 검증된 아이템을 가진 기술창업으로 현재 일반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창업보다 성장가능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

표 3-25 |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원사업 성과

(단위 : 개)

구분	연도별 실적		
	2011년	2012년	2013년
참가팀수	176	235	274
수상팀수	9	9	8
창업업체수	8	5	5

※ 자료 : 중소기업청 여성기업 지원사업의 성과분석 및 평가, 2013

### 3) 차세대 여성CEO 양성교육

차세대 여성CEO 양성교육 지원사업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창업교육을 실시하여 차세대 여성기업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수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창업에 관심 있는 여대생이며, 공통경비, 장학금, 학점인정 등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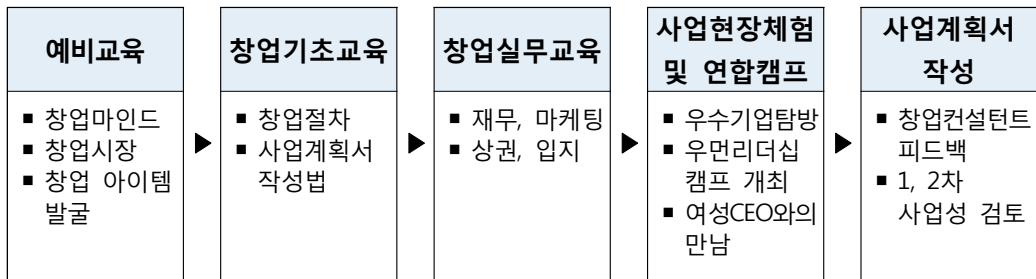
표 3-26 | 차세대 여성CEO 양성교육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창업에 관심 있는 여대생
지원사항	교육 공통경비 지원 (강사료, 교재비, 우수여성기업탐방, 리더십캠프 등) 참여대학과 MOU 체결을 통하여 학점 인정(2학점 이상)
문의처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376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69-0911

차세대 여성CEO 양성교육 지원사업 운영은 매년 상·하반기 연합 우먼 리더십 캠프 개최 및 우수기업탐방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입체적 교육을 제공하여 경영체험의 장을 마련하고, 창업마인드 고취, 창업분위기 확산, 여성창업가 배출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성공창업을 위해 창업마인드 및 창업시장에 대한 예비교육단계, 창업절차 및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창업기초교육단계, 재무 및 마케팅과 상권 및 입지분석에 대한 창업실무교육단계, 사업체 체험 및 CEO면담 등의 사업현장체험단계, 사업계획서 작성단계 등 교육과 실제 창업과정을 매칭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 그림 3-4 | 차세대 여성CEO 양성교육 지원사업 프로세스



2013년 차세대 여성CEO 양성교육의 수강생 수는 총 358명으로, 서울 29명, 부산 57명, 대구/경북 59명, 광주/전남 38명, 강원 52명, 전북 84명, 충북 39명 등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 교육수강생 수는 2011년 292명, 2012년 192명, 2013년 352명으로 2013년에는 2012년도 대비 83%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만족도는 2011년 83점, 2012년 85점, 2013년 86점으로 나타났다.

2011년 차세대 여성CEO 수강생 중 1명이 현재 창업을 하였고, 여성창업경진대회에서 5명이 수상하는 등 차세대 여성CEO 양성교육은 여대생 창업 마인드 고취 및 창업분위기 확산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표 3-27 | 차세대 여성CEO 양성교육 지원사업 성과

(단위: 명 점)

구분	연도별 실적		
	2011년	2012년	2013년
교육 수강생수	292	192	352
교육 수강생 만족도	83	85	86

※ 자료: 중소기업청, 여성기업 지원사업의 성과분석 및 평가, 2013

표 3-28 | 차세대 여성CEO 양성교육 참가자 현황(2013년)

(단위 : 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강원	전북	충북	합계
상반기	18	26	35	-	32	19	18	148
하반기	11	26	24	38	20	64	21	204
소 계	29	57	59	38	52	84	39	352

※ 자료 : 중소기업청 여성기업 지원사업의 성과분석 및 평가, 2013

#### 4)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여성창업보육 및 수요자 중심의 지원서비스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수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원센터 내 입주기업(창업 후 2년 이내의 여성기업 및 예비여성창업자) 및 여성경제인으로서, 여성기업 창업보육시설 및 전문가 컨설팅, 각종 인증획득 지원, 판로지원과 지원 정책 및 지원사업의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한다.

표 3-29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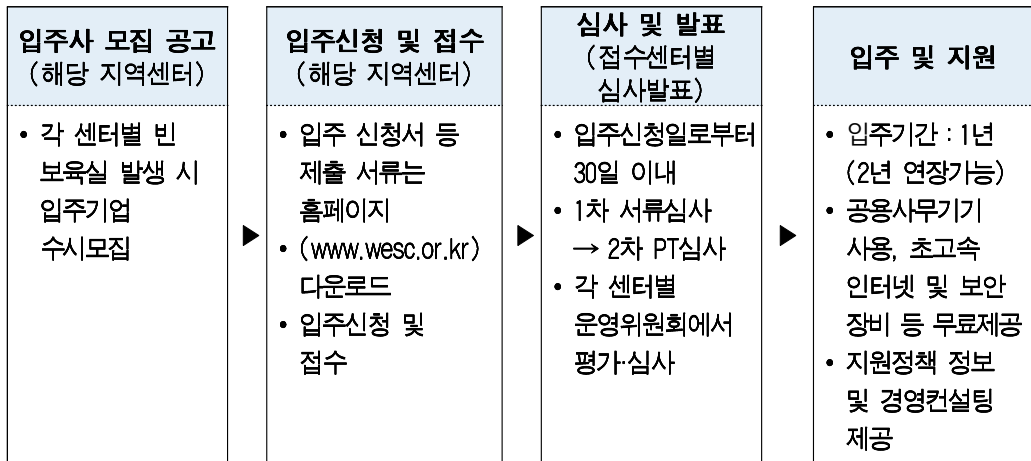
구분	내용
지원대상	전국 14개 지역센터 입주기업 및 여성경제인 창업 2년 미만의 여성기업
지원사항	여성기업 창업보육공간 및 지원시설(공동 사무기기 사용, 초고속 인터넷 및 보안장비) 제공 경영, 세무 등의 컨설팅, 산업재산권 등 전문가 컨설팅 제공 산업디자인 개발비, 산업지적재산권 및 각종 인증획득 지원 국내외 판로지원 중소기업청 지원시책·여성기업 지원사업 정보 제공
문의처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376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69-0915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은 보육실 운영, 입주기업에 대한 컨설팅, 시제품제작, 박람회 참가 등의 입주기업지원, 입주기업 간담회, 센터 홍보 실시, 직원 역량 강화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의 창업유망업종을 입주기업으로 선정하여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여성기업 경영활동 촉진을 위하여 여성경제인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 교육·훈련·연수, 경영 활동 및 판로지원, 애로상담,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 및 조사실시 등 여성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내 보육센터 입주하는 입주사 모집 공고, 입주신청 및 접수, 심사 및 발표, 입주 및 지원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현재 전국 14개 지역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총보육실 168개 중에서 139개의 보육실이 입주된 상태로서, 지역적으로는 인천지역센터의 보육실수가 19개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대구/경북과 충북이 각각 16개, 경남과 제주가 각각 15개 순으로 각 지역 센터 내의 보육실을 보유하고 있다.

| 그림 3-5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창업보육센터 입주프로세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보육실 입주 여성기업에 대하여 다양한 정보 및 시설,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IT, 패션 및 생활용품, 일반제조, 뷰티, 섬유 의류, 출판광고 등 다양한 업종에서 입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표 3-30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현황

(단위 : 개)

구분	보육실수	입주 업체수	보육실 입주여성기업 주요 업종
중앙	9	9	IT, 애니메이션 제작, 섬유직물 제조, 여성제화 악세사리 제작 판매, 영화·드라마콘텐츠 해외판매 등
서울	9	9	IT, 게임소프트개발, 주얼리, 의료기기 제조 등
부산	10	9	화장품, 의류, 미용용품 제조, 출판업, 컨설팅 등
대구/경북	16	15	섬유의류, 유아교재 제조 등
광주/전남	8	5	비누, 세정용품, 차량용품 제조, 영상 제작업 등
대전	10	10	광고대행서비스, 출판업 등
인천	19	16	의류, 악세사리 제조, 금형업, 소프트웨어 개발 등
울산	6	6	여행서비스, 조경업, 기계 제조, 소프트웨어 개발 등
강원	13	9	인쇄, 홈페이지 개발, 출판업, 의류 제조 등
경기	10	9	생활소품, 공작기계, 유아용품 제조, 광고기획 등
충북	16	12	공예품, 아동용품 제조, 소프트웨어 개발 등
전북	13	11	세정용품, 유아용품 제조, IT개발, 전시대행서비스 등
경남	15	13	공작기계, 조명기기, 의류 제조 등
제주	15	11	영상산업, 광고기획대행, 의류 제조 등
합 계	168	139	-

주) 충남센터 : 보육실(10개) 추가설치 예정임

※ 자료 : 중소기업청 여성기업 지원사업의 성과분석 및 평가, 2013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인큐베이팅 성과를 살펴보면, 입주업체의 매출액은 2011년 425억원, 2012년 500.4억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도에는 520억원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2011년 13.3%, 2012년 14%, 2013년 14.7%이며, 업체평균 매출액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3년을 주기로 신규업체가 입주되고, 기존업체가 졸업하면서 증가율 변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입주업체의 만족도는 2011년 88.3점, 2012년 91.8점, 2013년 92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다.



표 3-31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성과

(단위: 억원 % 점)

구분	연도별 실적		
	2011년	2012년	2013년
입주업체 총매출액	425	500.4	520
업체평균 매출액증가율	13.3	14	13.7
입주업체 만족도	88.3	91.8	92

※ 자료 : 중소기업청 여성기업 지원사업의 성과분석 및 평가, 2013

### 5)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 지원사업은 예비 여성창업자의 창업여건 마련을 위한 창업보육공간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수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확장수요가 있는 지역 센터로써, 건물 매입비 또는 임차비, 기타 부대비용 등을 지원한다.

표 3-32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확장수요가 있는 지역센터
지원사항	건물 매입비 또는 임차비 건물 개·보수에 소요되는 리모델링비, 취득등록세, 소유권 등기 등의 기타 부대비용 총 사업비의 60% 이내로 10억원 이내
문의처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376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69-0931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 지원사업의 내용은 추진위원회 구성, 현장 실사, 확장건물 계약, 보육인프라 구축 등이며, 여성의 창업수요 증대에 따라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창업보육공간을 확장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여성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제 활성화를 지향한다.

## 6)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 여성가장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위탁·수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창업을 희망하는 저소득 가장으로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이며, 연 3.0% 이자율에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표 3-33 |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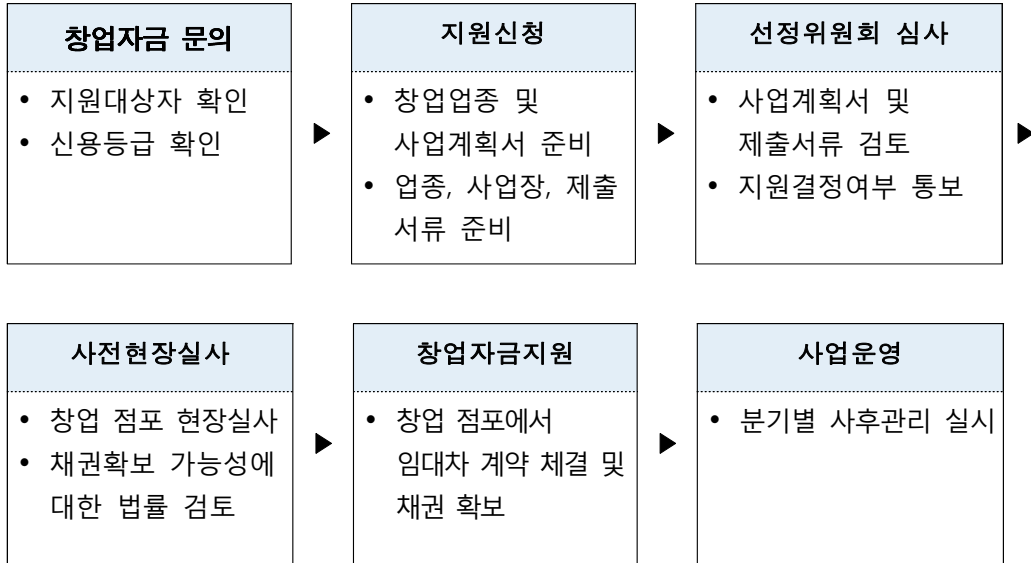
구분	내용
지원대상	<p>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 여성가장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p> <p>* 지원요건 : 차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50%)이하 및 신용등급 1~7등급 이내</p> <p>* 지원제외대상 : 주점업, 사치·향락업종 예비창업자, 신용관리대상자, 사업자등록 신고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 근로복지공단 및 아름다운재단과 소상공인진흥원의 지원자금을 받은 자 등</p>
지원사항	1인당 최대 5천만원 이내, 2년간 연 3.0% 이자율
문의처	<p>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376</p> <p>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12</p>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성가장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로 문의를 하여 지원대상자 및 신용등급을 확인하는 창업자금 문의단계, 지원신청단계, 선정위원회 심사단계, 창업할 점포에 대한 실사와 법률적 검토를 하는 사전현장실사단계, 창업자금지원단계, 창업자금을 지원한 점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사업운영단계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 신규지원으로는 19명에게 4.5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존연장으로는 6명에게 1.7억원을 지원하여 총 25명에게 6.25억원을 지원하였다. 2012년 신규지원으로는 17명에게 6.25억원을 지원하였다. 2012년 신규지원으로는 17명에게 4.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존연장으로는 15명에게 3.9억원을 지원하여 총 32명에게 8.2억원을 지원하였다. 2013년 신규지원으로는 10명에게 3.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존연장으로는 7명에게 2억원을

지원하여 총 17명에게 5.1억원을 지원하였다.

| 그림 3-6 |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프로세스



| 표 3-34 |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성과

(단위 : 명, 억원)

구분	연도별 실적					
	2011년		2012년		2013년	
	지원 인원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지원 금액
신규지원	19	4.55	17	4.30	10	3.10
기존연장	6	1.70	15	3.90	7	2.00
합계	25	6.25	32	8.20	17	5.10

※ 자료 : 중소기업청 여성기업 지원사업의 성과분석 및 평가,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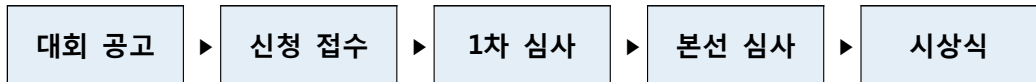
## 7) 여성발명진흥지원

여성발명진흥지원 사업은 여성발명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및 여성발명 저변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 우수발명 인력을 양성하고, 여성 우수발명인의 판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여성발명협회에서 위탁·수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여대생, 여성 과학기술인, 여성기업인 등이며, 발명인력 교육 및 워크숍 참석 기회를 제공하고, 발명한 사항에 대한 변리자문 서비스와 발명박람회 참가비용 등을 지원한다.

표 3-35 | 여성발명진흥지원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여대생, 여성과학기술인, 여성기업인
지원사항	발명인력 교육 및 워크숍 참석기회 제공, 변리자문 서비스, 박람회 참가비용 지원
문의처	특허청 : 042-481-5167 한국여성발명협회 : 02-538-2710

그림 3-7 | 여성발명진흥 지원사업(여성발명경진대회)의 프로세스



지원사업의 수혜자를 살펴보면, 2011년 13,449명에서 2012년 14,108명, 2013년 14,150명으로 2011년 이후 수혜자 수는 5%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예산에서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36 | 여성발명진흥 지원사업 성과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연도별 실적		
	2011년	2012년	2013년
지원사업 수혜자	13,449	14,108	14,150
지원사업 예산	1,553	1,623	1,623

주) 2013년은 예산 집행 추정치임  
※ 자료 : 여성가족부, 성인지 예산서, 2013

## 8) 이공계 여성인력 창업컨설팅

이공계 여성인력 창업컨설팅 지원사업은 예비 여성기술 창업자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아이디어 상업화에서부터 기술창업 지원 및 특허활용 기술창업 등 정부 각 부처가 제공하는 창업준비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며 2011년도부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에서 위탁·수행하고 있는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사업 중 하나이다.

| 표 3-37 | 이공계 여성인력 창업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과학기술분야 특허 또는 지식서비스 분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거나 창업아이템을 구상 중인 이공계 전공 예비 여성창업자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교육 희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창업전문교육을 알선하고 소요된 수강료의 80% 지원</li> </ul> </li> <li>• 창업컨설팅 희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아이템 구상 및 창업계획, 사업실행단계에 따라 해당분야 컨설팅 사업은 안내 또는 지원</li> </ul> </li> <li>• 기술특허 출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과학기술인의 기술창업을 위한 기술특허의 변리상담 및 특허 출원비용 등을 지원함</li> <li>- 국내특허 : 출원비용의 80%, 최대 100만원 지원</li> <li>- 국외특허 : 논의중</li> </ul> </li> </ul>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창조과학부 : 02-2100-6341</li> <li>•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 02-6411-1020</li> </ul>

※자료 : [http://www.wiset.re.kr/www/education/start\\_2012.jsp](http://www.wiset.re.kr/www/education/start_2012.jsp)

지원대상은 과학분야 특허 및 지식서비스분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예비여성창업자이며, 정부의 창업전문교육 알선 및 교육수강료의 80%를 지원하고 창업컨설팅 지원과 여성과학기술인의 기술창업을 위한 기술특허의 변리사 상담 및 특허 출원비용 등을 지원한다. 이공계 여성인력 창업컨설팅 지원사업은 신청서 접수단계, 심사·선정단계, 컨설팅 지원단계, 결과보고단계 등 총 4단계의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다.

| 그림 3-8 | 이공계 여성인력 창업컨설팅 지원사업 프로세스



이 사업은 2011년에 처음 시행된 지원사업으로써 수혜자 수는 총 22명으로 창업교육 5명, 특허출원비용 5명, 창업컨설팅 12명 등이 지원받았으며, 총 2천1백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2년에는 수혜자 수가 총 18명으로 창업교육 1명, 특허출원비용 3명, 창업컨설팅 14명 등이 지원받았으며, 총 8백만원이 지원되었다.

| 표 3-38 | 이공계 여성인력 창업컨설팅 지원사업 성과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1년 계획	2011년 실적	2012년 실적
지원사업 수혜자	10명 내외	22	18
세부내용	창업교육	-	1
	특허출원비용	-	3
	창업컨설팅	-	14
지원금액	10	21	8

## 나. 여성기업 육성(판로확대 및 기술개발) 지원사업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은 판로확대 및 기술개발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판로확대 지원사업으로는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및 구매 지원, 여성기업 전용관 운영 등이 있다. 그리고 기술개발 지원사업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중소기업 R&D 기획역량 혁신,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 창업 성장 기술개발 등이 있다.

### 1)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출여성기업에 대하여 해외박람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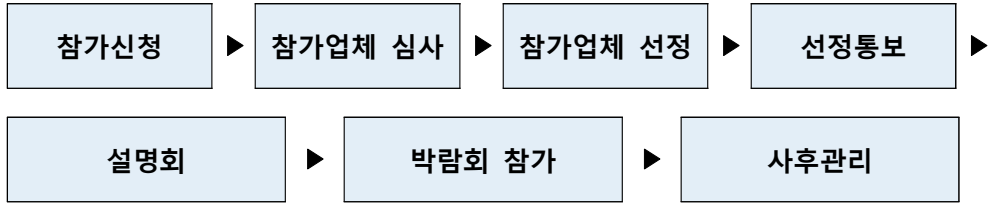
참가지원을 통한 여성기업의 성장과 수출활성화에 기여와 사전마케팅, 현장지원, 사후관리의 3단계 지원 시스템으로 사업성과 제고 및 여성기업의 해외판로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수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수출유망 여성기업으로서, 해외박람회 참가에 따른 공통 경비 지원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특히, 수출여성기업 지원사업은 수출초보 기업도 어려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출업무 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표 3-39 |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수출유망 여성기업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박람회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의 70%, 통역비 등 공통경비 지원</li> <li>- 참가비 30% 및 항공, 체재비 및 운송비 등은 자부담</li> <li>• 3단계 지원 시스템 추진</li> <li>- 사전마케팅 → 현장지원 → 사후관리, 3단계 지원 시스템을 통한 수출여성기업의 역량 강화</li> </ul>
2013년 참가지원 박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년 중국 상해 미용박람회 참가지원(미용분야 10개사)</li> <li>• '13년 중국 상해 유아용품 박람회 참가지원(유아용품분야 8개사)</li> <li>• '13년 홍콩 메가쇼 박람회 참가지원(생활용품 10개사)</li> </ul>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376</li> <li>•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69-0915</li> </ul>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은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부족과 수출경험이 부족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유명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참가신청, 참가업체 심사, 선정, 통보, 설명회, 박람회 참가, 사후관리 등의 과정을 통해 지원한다.

| 그림 3-9 |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사업 프로세스



해외박람회 참가지원사업의 참가업체 수는 2011년 30개사, 2012년 20개사, 2013년 28개사이며, 2012년도 대비 2013년도에는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계약액은 2011년 655만 달러, 2012년 434만 달러, 2013년 455만 달러를 달성하였으며, 2012년도 대비 2013년도에는 약 4% 소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참가자 만족도는 2011년 81.3점, 2012년 87.5점, 2013년 89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3-40 |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사업 성과

(단위: 개 만 달러 점)

구분	연도별 실적		
	2011년	2012년	2013년
참가업체 수	30	20	28
계약액	655	434	455
참가자 만족도	81.3	87.5	89

※ 자료 : 중소기업청 여성기업 지원사업의 성과분석 및 평가, 2013

## 2)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지원사업은 세계 여성기업간 무역·투자촉진을 위한 국가별 연대 강화 및 실질적인 비즈니스 거래촉진을 위해 매년 국제회의 및 국제적 수준의 여성기업인대회에 한국여성대표단을 파견하여 여성기업간 민간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위탁·수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여성기업 대표, 학계, 관련 정부기관, 여성문제 전문가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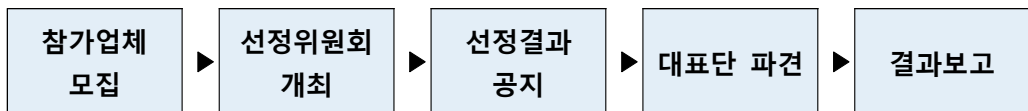
공통경비 일부와 본회의 및 세미나, 워크숍 및 간담회 등을 지원하며, APEC 여성과 경제포럼(APEC-WEF), 글로벌기업가정신 정상회의(GES), 세계여성경제인대회(FCEM) 등에 참가를 지원한다.

표 3-41 |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 대상	여성기업 대표, 학계, 관련 정부기관, 여성문제 전문가
지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비, 차량임차료, 통역비 등의 공통경비 일부 지원</li> <li>•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막식, 본회의 및 세미나 등 공식행사 참가</li> <li>- 주제별 워크숍 참가 및 발표</li> <li>- 네트워킹 런치 및 만찬 참가를 통한 해외여성기업인과 교류</li> <li>- 주최국 업무협약(MOU) 및 간담회 참여</li> </ul> </li> </ul>
2013년 참가지원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PEC 여성과 경제회의(인도네시아 발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 및 인원 : 2013년 9월 6일~8일</li> </ul> </li> <li>• GES(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 및 인원 : 2013년 10월 11일~12일</li> </ul> </li> </ul>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376</li> <li>•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22</li> </ul>

국제회의의 한국대표단 파견 지원사업은 대회 및 공식회의에 참가하여 한국여성기업 현황 발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주최국과의 업무협약(MOU) 및 간담회를 개최할 뿐만 아니라 참가업체모집단계, 선정위원회 개최단계, 선정결과 공지단계, 대표단 파견단계, 결과보고단계로 수행된다.

그림 3-10 | 국제회의의 한국대표단 파견 지원사업 프로세스



국제회의의 한국대표단 파견 지원사업은 국제 협력이 필요한 기업에게 유용하며 고급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여성경제인대회는 2006년 국내에 처음 유치한 이후, 2012년 재유치하는 성과를 얻었으며, 동 대회에서 아시아 지역 위원대표 및 운영위원회 부회장이 한국 대표단에서 선임된 성과도 얻게 되었다.

연도별 참가자 수는 2011년 12명, 2012년 12명, 2013년 16명이 참가하여 2012년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한국대표단 파견은 APEC 여성과 경제포럼에는 매년 참석을 하였으나 2013년에는 GES에 참석하였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회의가 증가함에 따라 참가회의의 선택의 폭이 넓어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42 |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성과

(단위: 명)

구분	연도별 실적		
	2011년	2012년	2013년
참가자수	12	12	16
APEC 여성과 경제포럼	제16회 회의	제17회 회의	제18회 회의
GES	-	-	제4회 회의
FCEM	제59회 총회	제60회 총회	제61회 총회(불참)

※ 자료 : 중소기업청, 2013년 여성기업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 3)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은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 및 유용한 경영정보, 통계 등 여성 기업인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공 및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하였다. 포털시스템 최적화로 온라인 사업 등록·신청 및 여성기업 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현황파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2014년 1월부터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물품·용역 5%, 공사 3% 이상 여성기업 제품 구매)의무화에 따라 여성기업 제품만을 홍보할 수 있는 사이트 구축하여 판로를 촉진하고 있다.

표 3-43 |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창업을 준비하는 여성 및 여성기업인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포털사이트를 통한 사업 지원 및 경영정보</li> <li>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를 통한 여성기업제품 홍보 및 구매문의</li> </ul>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376</li> <li>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18</li> </ul>

###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The screenshot displays the 'biz' portal interface. The top navigation bar includes 'biz' logo and search options. The main content area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초기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Provides support for new and early-stage businesses.
- 여성기업의 활발한 활동을 적극지원합니다**: Promotes active participation of women-owned businesses.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에 새롭게 오신 여러분입니다**: Welcomes users to the comprehensive information portal.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A dedicated section for public procurement of women-owned products, featuring a search interface and a list of participating companies like 'Tobacco Market' and 'Tobacco Market Co., Ltd.'.
- 여성기업제품 우수구매제도**: A program to encourage the purchase of high-quality women-owned products, offering incentives like 5% and 3% discounts.

At the bottom of the page, there are two call-to-action boxes: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사이트**: <http://www.wbiz.or.kr>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 <http://shopping.wbiz.or.kr>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계획은 수립단계, 사업수행단계, 사이트 운영단계, 결과보고단계로 수행된다.

| 그림 3-11 |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 지원사업 프로세스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은 3개년 추진 프로젝트로서, 1차년도(12년)에는 통합망 기반 구축단계, 2차년도(13년도)에는 통합망 고도화 단계, 3차년도(14년)에는 통합망 운영·개선 사업단계로 이루어진다. 그 결과 2012년도에는 대내 통합시스템인 사내인트라넷과 기업정보관리, 지원사업관리 부문, 대외 통합시스템, 여성기업지원정책정보, 온라인 기업 마케팅, 민원처리, 여성기업 관련 각종 자료를 제공하였고, 2013년도에는 포털사이트 업데이트 및 지원사업관리 기능개선을 위해 창업, 교육, 여성가장창업자금, BI 지원사업 등에 대한 신청접수, 심사 및 선정 시스템, 설문조사 및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 구축, 그룹웨어와 결제 연동 가능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사업비 관리를 하도록 구축하고, 통합관리 및 운영하도록 하였다.

#### 4)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사업은 여성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확대를 위하여 여성기업 확인증을 발급하여, 여성기업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경쟁입찰 시 도움을 제공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위탁·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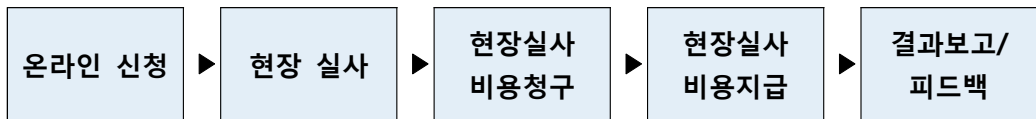
| 표 3-44 |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
지원사항	여성기업 확인증 발급에 따른 현장실사 비용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청 판로정책과 : 042-481-4376</li> <li>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10</li> </ul>

지원대상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으로써, 여성기업 확인증 발급에 따른 현장실사비용을 지원한다.

여성기업 확인접수는 온라인(www.smpp.go.kr)을 통해 진행되며, 접수 후 현장 확인을 거쳐 여성기업 확인증이 발급된다.

| 그림 3-12 |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사업 프로세스



여성기업 확인제도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증 발급건수는 2011년 2,921건 2012년 2,583건, 2013년 4,540건으로, 2012년 대비 약 76%가 증가하였다. 2014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공공구매 의무화로 인해 2014년도 이후에는 신청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표 3-45 |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사업 성과

(단위: 건)

구분	연도별 실적		
	2011년	2012년	2013년
확인증 신청건수	3,659	2,968	5,235
확인증 발급건수	2,921	2,583	4,540

※ 자료 : 중소기업청, 2013년 여성기업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 5)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및 구매 지원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지원사업은 공공기관 여성기업 제품 구매촉진과 여성기업 확인제도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위탁·수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확인증 발급업체 여성기업으로, 여성기업 확인증 발급 사이트를 통한 입찰정보제공 및 입찰실무 상담과 공공구매 홍보 설명회 및 안내 홍보물 배포 등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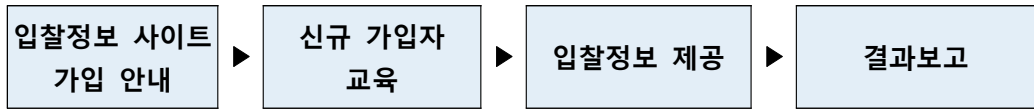
표 3-46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기업 확인증 발급업체</li> <li>공공구매 업무 담당자</li> </ul>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맞춤형 입찰정보 사이트 운영</li> <li>*실시간 공공기관 입·낙찰 정보제공, 예가산출프로그램 및 상담</li> <li>공공구매 홍보 설명회 및 안내 홍보물 배포</li> </ul>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청 공공구매관로과 : 042-481-4376</li> <li>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24</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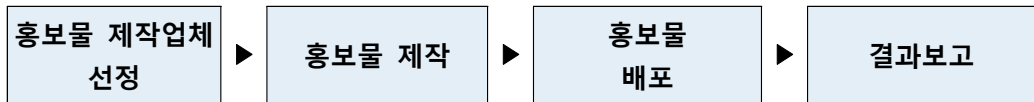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지원사업은 여성기업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여성기업이 공공기관 입찰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여성기업의 판로 확대에 기여한다.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지원 사업은 입찰정보 사이트 가입 안내, 신규 가입자 교육, 입찰 정보 제공, 결과 보고 등 총 4단계로 진행되고 있으며 공공구매 관련 교육과 함께 맞춤형 입찰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어 공공구매 입찰 담당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 그림 3-13 | 여성기업 맞춤형 입찰정보 시스템 운영 프로세스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지원사업의 홍보 브로슈어 제작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안내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여성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고 프로세스는 협회에서 홍보물 제작업체를 선정하는 단계, 홍보물 제작단계, 협회 및 운영기관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홍보물 배포단계, 홍보결과를 정리하는 결과보고단계 등 총 4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 그림 3-14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지원사업 홍보 브로슈어 제작 프로세스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지원사업의 홍보물 배포 수는 2011년 6,518부, 2012년 6820부로 나타났으며 입찰참여 여성기업 수는 2012년 413개, 2013년 433개로 나타나고 있다.

| 표 3-47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지원사업 성과

(단위: 부 개)

구분	연도별 실적		
	2011년	2012년	2013년
홍보물 배포수	6,518	6820	-
입찰참여 여성기업 수	-	413	433

※ 자료: 중소기업청 여성기업 지원사업의 성과분석 및 평가, 2013

중소기업제품 전체에 대한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은 2010년 104.4조원, 2011년 99.8조원, 2012년 106.3조원, 2013년 113조원이며 그 중에서 여성기업제품의 구매액은 2010년 2.36조원, 2011년 2.59조원, 2012년 3.4조원, 2013년 4.5조원으로 나타났다. 각 연도별

여성기업제품 구매비율은 각각 2.3%, 2.6%, 3.2%, 4.0%로 여성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비율은 전체 공공기관 제품구매에 있어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3-48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실적

(단위 : 조원 %)

구분	연도별 실적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총구매액	104.4	99.8	106.3	113조
여성기업제품구매액	2.36	2.59	3.4	4.5
구매비율	2.3	2.6	3.2	4.0

※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공공구매실적 2013

17개 시·도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실적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3년에는 경기도가 210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구매실적을 보였고,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153백만원, 경상남도 149백만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17개 시·도를 기준으로 2013년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실적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실적 34조 중에서 15,120억원으로, 여성기업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에서 4.8% 정도이다. 또한, 2012년도 대비 2013년의 여성기업 구매실적이 73.3% 대폭 증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3년도 총 구매실적 대비 여성기업의 구매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7개 시·도 평균이 3.5% 중에서 대전광역시 8.0%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세종특별자치도 6.4%, 제주특별자치도 6.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2012년 대비 2013년 여성기업의 구매 실적 증감율을 보면, 세종특별자치시가 283.3%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경상북도가 115.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49 | 17개 지자체 공공구매실적

(단위 : 백만원 %)

기관명	2012년 여성기업 구매실적	2013년 총구매실적(A)	2013년 여성기업구매 실적(B)	비중 (B/A)*100	여성기업 증감율
강원도	73,933	2,443,890	125,408	5.1	69.6
경기도	137,245	5,073,742	210,252	4.1	53.2



기관명	2012년 여성기업 구매실적	2013년 총구매실적(A)	2013년 여성기업구매 실적(B)	비중	여성기업 증감율
				(B/A)*100	
경상남도	90,894	3,448,337	149,268	4.3	64.2
경상북도	63,940	3,744,004	137,663	3.7	115.3
광주광역시	17,238	569,137	23,786	4.2	38
대구광역시	36,634	1,103,471	55,278	5.0	50.9
대전광역시	25,715	513,986	41,171	8.0	60.1
부산광역시	39,013	1,186,638	56,639	4.8	45.2
서울특별시	108,678	3,303,795	153,450	4.6	41.2
세종특별자치시	1,768	106,508	6,776	6.4	283.3
울산광역시	14,879	625,266	27,427	4.4	84.3
인천광역시	36,398	1,611,682	51,625	3.2	41.8
전라남도	87,070	3,524,285	140,368	4.0	61.2
전라북도	63,466	2,121,834	96,340	4.5	51.8
제주특별자치도	40,472	886,492	55,912	6.3	38.1
충청남도	59,993	2,342,969	107,361	4.6	79
충청북도	43,443	1,612,173	73,340	4.5	68.8
합 계	940,779	34,218,209	1,512,064	평균 4.8	평균 73.3

※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공공구매실적, 2013

#### 6) 여성기업제품 전용관 운영

여성기업제품 전용관 운영사업은 우수한 품질 및 저렴한 가격을 갖추고 경쟁력은 있지만, 판매처의 부족으로 제품판매에 어려움이 있는 여성기업을 발굴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운영 중인 여성기업제품 전용관에 입점을 지원하여 마케팅장소 제공 및 매장운영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패션주얼리 전용관 및 여성 신진디자이너 창업관 운영사업으로 구분되어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위탁·수행하고 있다. 패션주얼리 전용관 운영사업은 2010년까지 시행되었으며, 현재는 여성 신진디자이너 창업관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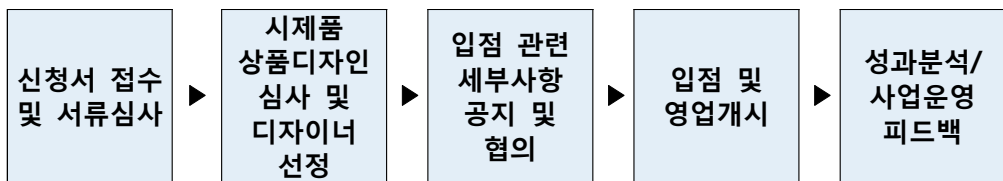
사업만 시행되고 있다.

표 3-50 | 여성기업제품 전용관 운영사업 개요

구분	사업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 또는 취업을 준비 중인 의류 및 패션 관련 디자이너</li> <li>• 대학 및 사설 여성 패션디자인 전공자</li> <li>• 예술 및 디자인계열 전공자</li> </ul>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패션주얼리 전용관 및 여성 신진디자이너 창업관 입주 지원</li> <li>• 상품전시 및 판매공간 제공</li> <li>• 판매사원 및 마케팅비용 지원</li> </ul>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376</li> <li>• 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지원팀 : 02-6678-9341</li> </ul>

지원대상은 우수한 실력을 겸비하고 창업 또는 취업을 준비 중인 의류 및 패션 관련 디자이너와 대학 및 사설 여성 패션디자인 전공자이며, 예술 및 디자인계열 전공자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다. 여성기업제품 전용관 운영사업은 자신의 디자인 상품을 현장에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이 필요한 기업에게 특히 유용하다.

그림 3-15 | 여성기업제품 전용관 운영사업 프로세스



여성 신진디자이너 창업관 운영사업의 지원자 수는 2011년 101명, 2012년 91명, 2013년 91명이며, 2013년부터 국내 대형백화점과 본격적으로 연계하여 신진디자이너 브랜드를 직접 백화점 신규거래처 등록하게하고 판매전을 전개하여 판로개척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2013년 42개 신진디자이너 업체가 백화점 거래처로 진출하여 18회의 판매전을 통하여 644백만원의 판매성과를 거두었다.

| 표 3-51 | 여성 신진디자이너 창업관 운영사업 성과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연도별 실적		
	2011년	2012년	2013년
지원자수	101	91	91
창업자수	36	30	18
취업자수	5	4	3
지원금액	500	314	224

주) 2013년 실적은 추정치임

※ 자료 : 중소기업청, 2012년 여성기업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 7)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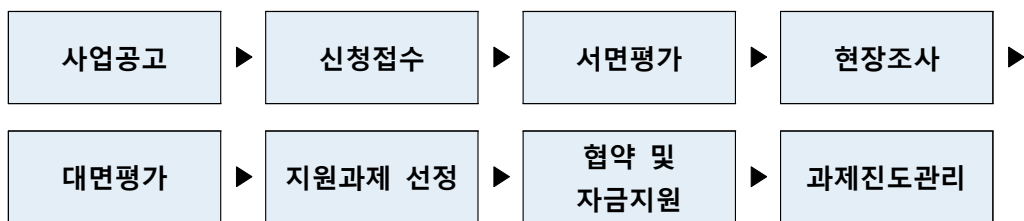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지원사업은 미래성장 유망분야에 대한 중소기업의 사업화 기술개발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제품화에 따른 시장개척 및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위탁·수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으로 하며, 총사업비의 60~75% 이내로 최대 5억원에서 10억원까지 기술 개발에 따른 정부출연금을 지원한다.

| 표 3-52 |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제외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오락업 및 문화업, 공공·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지원사항 및 지원분야	총사업비의 60~75% 이내, 최대 5~10억원의 정부출연금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과제, 투자연계과제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 서비스연구개발과제
문의처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5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042-715-2325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지원사업은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지원대상자를 선발한다.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내용의 적절성, 사업비 산정의 합리성 등이 중요 평가 기준이 된다. 평가는 서면평가, 현장조사, 대면평가 순으로 실시되며 최종 선발되어 협약된 이후에는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에서 기술개발 진도를 관리하고 있다.

| 그림 3-16 |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지원사업 프로세스



2013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지원사업에 있어서 여성기업 지원 수는 전체 지원기업 511개사 중에서 25개사로, 전체에서 4.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지원금액으로 보면, 총 2,220억원 중에서 여성기업의 지원금액은 108억원으로 전체 금액에서 4.9%를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여성기업지원실적을 보면, 지원기업수는 2011년 53개사, 2012년 24개사, 2013년 25개사가 지원을 받아 2011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지원금액으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3-53 |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지원사업 성과

(단위: 개, 억원, %)

구분	중소기업 대비 여성기업(2013년)			연도별 여성기업지원실적		
	총지원 실적	여성기업 지원실적	비율	2011년	2012년	2013년
지원기업수	511	25	4.9	53	24	25
지원금액	2,219.7	108.1	4.9	100	105.7	108.1

※ 자료: 여성가족부, 2013년 여성가족부 기술개발사업계획서 / 중소기업청, 사업실적자료,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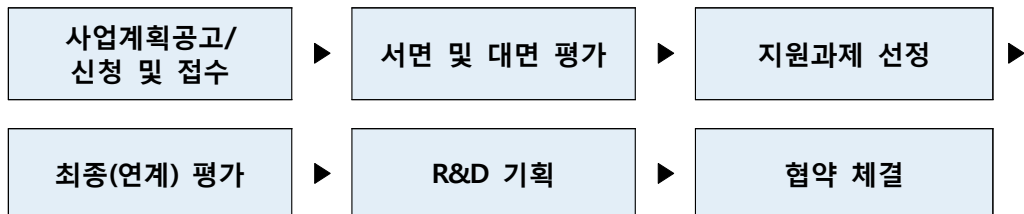
9) 중소기업 R&D기획역량제고

중소기업 R&D 기획역량제고사업은 사업성이 높고 발전가능성이 큰 분야로 기업이 R&D투자나 인력 확보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소기업의 R&D기획을 대신해 주거나, 향후 기술개발이 필요한 기술을 발굴해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위탁·수행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으로 총사업비의 75% 정도의 금액을 1년간 최대 2,250만원의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한다.

표 3-54 | 중소기업 R&D기획역량제고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R&D 기획지원 및 개별기업기술로드맵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과제발굴연구회 : 중소기업 관련 조합, 협회, 단체, 대학(산학협력단 포함) 및 연구소
지원사항 및 지원분야	R&D 기획지원 : 총사업비 75% 이내, 최대 2,250만원 지원 과제발굴연구회 : 총사업비 100% 이내, 최대 1,750만원 지원 개별기업기술로드맵 : 총사업비 75% 이내, 최대 2,250만원 지원
문의처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4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221

그림 3-17 | 중소기업 R&D기획역량제고사업 프로세스



2013년도 중소기업 R&D기획역량제고사업에 있어서 여성기업지원 수는 전체 지원 기업 258개사 중에서 11개사이며, 전체에서 4.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지원금액

으로 보면, 총 55억원 중에서 여성기업의 지원금액이 2.3억원으로 전체 금액에서 4.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여성기업지원실적을 보면, 지원기업수는 2012년 6개사, 2013년 11개사가 지원을 받았으며, 지원금액은 2012년 1.4억원에서 2013년 2.3억원으로 2012년도 대비 1.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55 | 중소기업 R&D기획역량제고사업 성과

(단위 : 개, 억원 %)

구분	중소기업 대비 여성기업(2013년)			연도별 여성기업지원실적	
	총지원 실적	여성기업 지원실적	비율	2012년	2013년
지원기업수	258	11	4.3	6	11
지원금액	55	2.3	4.2	1.4	2.3

※ 자료 : 여성가족부, 2012년 여성가족부 기술개발사업계획서 / 중소기업청, 사업실적자료, 2013

#### 10)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은 R&D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소기업의 제품·공정개선 분야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위탁·수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이며, 총사업비의 75% 이내로 9개월간 최대 5천만원까지 기술개발에 따른 정부출연금을 지원한다.

표 3-56 |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지원사항	총 사업비의 75% 이내, 9개월 이내 최대 5천만원 한도
문의처	1661-1357(내선번호:2)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은 건강진단연계형 사업으로, 건강진단 및 현장점검을 통해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에 적합한 과제를 선정하여 대면평가를 통해 사업주체의 역량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성을 검증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 그림 3-18 |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프로세스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에 있어서 여성기업지원 수는 전체 지원기업 674개사에서 78개사이며, 전체에서 11.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지원금액으로 보면, 총 402억원 중 여성기업의 지원금액은 38억원으로 전체 금액에서 9.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표 3-57 |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성과

(단위: 개, 억원 %)

구분	중소기업 대비 여성기업(2013년)			연도별 여성기업지원실적	
	총지원 실적	여성기업 지원실적	비율	2012년	2013년
지원기업수	674	78	11.6	16	78
지원금액	402	38	9.5	23	38

연도별 여성기업지원실적을 보면, 지원기업수는 2012년 16개사, 2013년 78개사가 지원을 받았으며, 지원금액은 2012년 23억원에서 2013년 38억원으로 2012년도 대비 43.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11) 창업성장 기술개발

창업성장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잠재역량은 보유하고 있으나 기술개발자금이 부족

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7년 이하) 및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위탁·수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및 1인 창조기업 등으로 하며, 총사업비의 최대90% 이내 또는 100%로 최대 1년간 5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기술개발에 따른 정부출연금을 지원한다.

표 3-58 | 창업성장 기술개발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함 • 창업과제 : 창업 7년 이하이고 종업원수 50인 이하인 중소기업 • 투자연계 멘토링과제 : 투자자로부터 투자계약서 또는 투자의향서를 받은 창업 7년 이내 기업 • 1인창조과제 : 사업자 등록 및 법인 등록을 완료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 이공계 창업꿈나무과제 : 이공계전공자, 타분야 재학 및 졸업생 등으로 구성된 창업팀(2인 이상)
지원사항 및 지원분야	총사업비의 90% 이내, 1년간 최대 2억원의 정부출연금 • 창업과제 (최대 90%, 최대 2억원 지원) - 수요자 선택형 건강진단 프로그램과 연계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투자연계멘토링과제 (최대 90%, 최대 2억원 지원) - 엔젤투자 및 벤처캐피탈의 투자참여와 더불어 1:1 멘토링을 조건으로 창업기업 기술개발 지원 • 1인창조기업과제 (최대 90%, 최대 1억원 지원) -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이공계 꿈나무과제 (최대 100%, 최대 5천만원 지원) - 이공계 대학(원)생의 연구개발 지원
문의처	1566-1357(내선번호:2)

2013년도 창업성장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있어서 여성기업지원 수는 전체 지원기업 856개사 중에서 51개사이며, 전체에서 6.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지원금액으로 보면, 총 1,261억원 중 여성기업의 지원금액은 77억원으로 전체 금액에서 6.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3-59 | 창업성장 기술개발 지원사업 성과

(단위: 개, 억원 %)

구분	중소기업 대비 여성기업(2013년)		
	총지원 실적	여성기업지원 실적	비율
지원기업수	856	51	6.0
지원금액	1,261	77	6.1

※ 자료 : 여성가족부, 2013년 여성가족부 기술개발사업계획서

#### 다. 여성기업지원 인프라 확충·재정비 지원사업

여성기업지원 인프라 확충·재정비 지원사업은 여성CEO MBA 교육,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여성기업 조사연구 지원, 여성CEO 멘토링 운영, 여성관리자네트워크 구축지원,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고급연구인력활용 지원 등이 있다.

##### 1) 여성CEO MBA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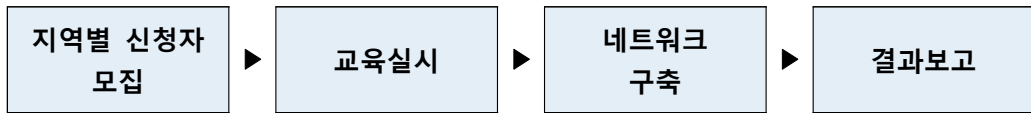
여성CEO MBA 교육 지원사업은 경영인으로서 필요한 종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여성기업 특성에 맞춘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위탁·수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여성CEO 및 임직원으로서 강사료, 교재제작 및 홍보비 등을 지원하며, 경영실무교육과 정부지원정책 설명 등을 교육 내용으로 한다.

| 표 3-60 | 여성CEO MBA 교육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여성CEO 및 임직원
지원사항	강사료, 교재비, 홍보비, 장소임차료 등 교육시간 : 3개월(12회, 36시간)
교육내용	경영실무 : 조직관리, 사업관리, 협상방법, 경영관리, 고객관리, 디자인, 브랜딩, 홍보, 법률, 세무, 특허, 마케팅 등 정부지원정책 : 정부의 여성기업활동 지원정책 홍보 및 설명
문의처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376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33

여성CEO MBA 교육 지원사업은 교육컨텐츠를 개선하여 여성CEO에게 맞춘 실무, 토론, 컨설팅 등의 실질적인 경영교육을 운영하고 성공한 여성CEO의 경영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있다. 경영자문위원단 운영을 통해 MBA 교육 중이거나 종료 후에 수강생에게 경영애로 등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절차는 지역별 신청자 모집단계, 교육단계, 결과보고단계로 수행된다.

| 그림 3-19 | 여성CEO MBA 교육 지원사업 프로세스



2008년부터 4개 지역(서울, 충북, 대전·충남, 강원)을 시작으로 하였으며, 예산은 2011년 160백만원, 2012년 216백만원, 2013년 251백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며, 2011년 지역별 개최 기간이 12주에서 2012년 8주로 축소되었으나 2013년에 12주로 늘어났다. 또한, 연도별 개최지역 수는 2011년 10개 지역, 2012년 11개 지역, 2013년 12개 지역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 표 3-61 | 여성CEO MBA 교육 지원사업 개최 현황

(단위: 백만원, 개, 주)

구분	연도별 실적		
	2011년	2012년	2013년
소요예산	160	216	251
개최지역 수	10	11	12
지역별 개최기간	12	8	12

※ 자료: 중소기업청, 여성기업 지원사업의 성과분석 및 평가, 2013

개최지역별로 참가자수를 살펴보면, 2011년에는 경기가 42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부산 41명 순으로 많고, 2012년에는 경남이 44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경기 36명, 부산 35명 순으로 참가자수가 많았다. 2013년에는 경남이 79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경기 43명, 인천 42명, 서울 41명 순으로 참가자수가 많았다.

한편 2012년도 대비 2013년 참가자 수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경남이 79.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다음으로 서울 36.7%, 대구·경북 30.4%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62 | 여성CEO MBA 교육 지원사업 지역별 개최 내역

(단위: 명 %)

지역	2011년	2012년	2013년	2012년 대비 증가율	
수도권	서울	30	30	41	36.7
	경기	42	36	43	19.4
	인천	30	34	42	23.5
대구/경북	26	23	30	30.4	
대전/충청	충북	27	30	30	-
	대전	-	25	32	28.0
	충남	-	-	-	-
광주/전남	30	30	37	23.0	
전북	30	26	30	15.4	
부산/울산/ 경남	부산	41	35	39	11.4
	울산	30	34	36	5.9
	경남	-	44	79	79.5
강원	18	-	22	-	
합계	304	347	461	27.3	

※ 자료 : 중소기업청 여성기업 지원사업의 성과분석 및 평가, 2013

여성CEO MBA 교육사업의 성과를 살펴보면, 교육 수강생수는 2011년 304명, 2012년 347명, 2013년 46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 수강생 만족도는 2011년 88점, 2012년 89점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2년 매출액 및 고용 성장률은 각각 5.44%, 4.2%로 나타나고 있다.

표 3-63 | 여성CEO MBA 교육 지원사업 성과

(단위 : 명, 점, %)

구분	연도별 실적		
	2011년	2012년	2013년
교육 수강생수	304	347	461
교육 수강생 만족도	88	89	-
매출액 성장률	5.5	5.44	-
고용 성장률	6.8	4.2	-

\*13년도 참가자 만족도, 매출액은 아직 집계 전임

※ 자료 : 중소기업청 여성기업 지원사업의 성과분석 및 평가, 2013

## 2)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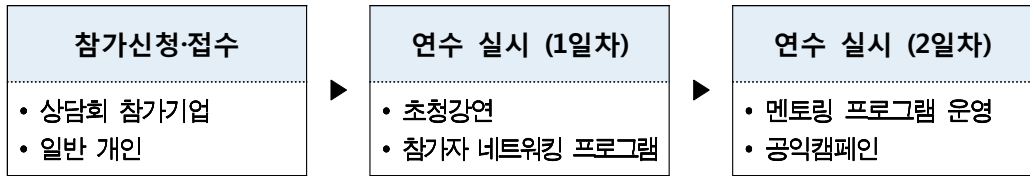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지원사업은 전국 여성경제인들에게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하여 정보교류와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위탁·수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여성CEO 및 여성기업 임직원으로서 강사료, 교재비, 홍보비 등을 지원하며, 초청강연, 멘토링 프로그램 및 공익캠페인 등을 실시한다.

표 3-64 |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여성CEO 및 여성기업 임직원
지원사항	강사료, 교재제작비, 홍보비, 장소임차료 등 공통경비 지원
연수내용	유명인사 초청강연 워크숍 및 패널 토론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공익캠페인
문의처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376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12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지원사업은 기업 간의 교류 촉진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초청강연이 제공되며 1박 2일 동안 멘토링을 통해 기업의 문제에 대한 심층상담을 제공한다.

| 그림 3-20 |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지원사업 프로세스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지원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을 실시하며 성공한 선배CEO와 차세대 리더들의 패널토론으로 여성CEO의 일·가정 양립 문제 등에 대해 토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공익캠페인을 실시하여 여성기업들이 사회적 공헌활동의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2013년 6월에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에서 ‘아이와 여성이 안전한 세상’ 캠페인을 전개하여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범시민이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아이와 여성이 안전한 세상’ 캠페인 선언문

우리 여성경제인은 「여성CEO가 함께하는 "아이와 여성이 안전한 세상"」 캠페인을 시작하여 4대 폭력에 해당하는 성폭력, 가정폭력으로부터 아이와 여성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음 몇 가지 실천사항을 밝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아이와 여성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 하나, 성폭력과 가정폭력으로부터 아이와 여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교육과 예방 활동에 앞장선다.
- 하나,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이와 여성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신고한다.
- 하나, 아이와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환경을 발견하는 때에는 즉각 개선할 수 있도록 앞장선다.
- 하나, 성폭력 범죄의 주요 원인인 음란물의 차단 및 근절에 적극 동참한다.

2013년 10월 26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원 일동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지원사업의 참가자수는 2011년 426명, 2012년 501명, 2013년 589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참가자 만족도는 2011년 85점, 2012년 89점, 2013년 91.5점으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표 3-65 |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지원사업 성과

(단위 : 명 점)

구분	연도별 실적		
	2011년	2012년	2013년
참가자수	426	501	589
참가자 만족도	85	89	91.5

※ 자료 : 중소기업청, 2013년 여성기업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 3) 여성CEO 멘토링 운영

여성CEO 멘토링은 다양한 지역 및 분야의 여성CEO가 예비/초보 여성창업자를 위한 멘토가 되어 자신의 경험이나 사업 노하우를 전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창업을 계획·준비 중에 있는 예비여성창업가나 창업한지 2년 미만의 초보 여성창업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약 500여 명의 여성CEO 멘토로 구성되어 있는 국내 유일의 여성창업 활성화 멘토링이다.

표 3-66 | 여성CEO 멘토링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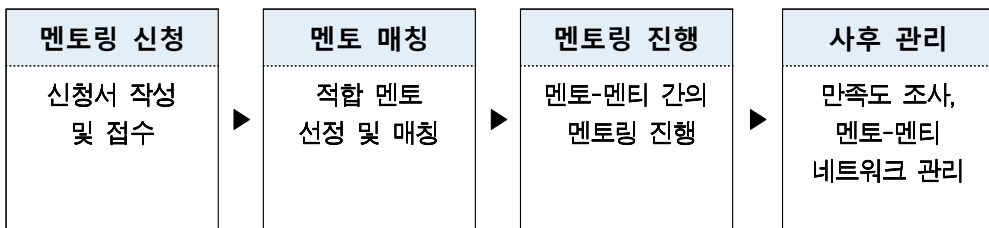
구분	내용
지원대상	창업을 계획, 준비 중인 예비여성창업가 또는 창업한지 2년 미만의 초보 여성창업가
지원사항	1:1 또는 1:N 형태의 멘토링 지원
지원기간	1년
비용	무료
문의처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376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93

여성CEO 멘토링이 다른 멘토링 프로그램과 다른 점은 성공한 여성CEO가 여성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직접 재능기부를 통해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특정 교육 커리큘럼을 따르는 과정이 아니라 멘티와 멘토가 자발적으로 만나 멘토링을 진행

하도록 되어 있어, 창업 준비 또는 사업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체계에 얽매이기 보다는 효율성과 자율성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멘티와 멘토 간의 매칭이 이루어지면, 편의에 따라 오프라인 만남, SNS, 이메일, 전화 등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내(www.wbiz.or.kr)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팩스로 송부하면 되며, 관심 창업 업종 및 지역에 맞춰 적합 멘토가 매칭되면 해당 멘토로 부터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 멘토링 지원 기간은 매칭 후 1년 이며, 비용은 무료로 진행된다.

| 그림 3-21 | 여성CEO 멘토링 진행절차



2013년 7월 여성CEO 멘토단 선포식 이래, 창업에 관심있는 여대생부터 중년층까지 다양한 예비, 초보 여성창업가들이 멘토링 신청을 하고 있으며, 1:1 멘토링 뿐만 아니라 패널토론식 멘토링, 지역별 멘토 만남의 장 등 다양한 형태의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다.

#### 4) 여성관리자네트워크 구축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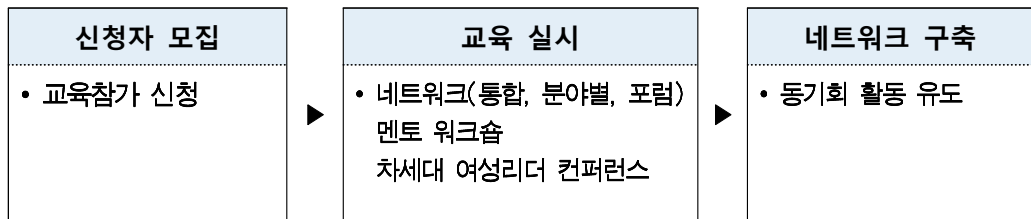
여성관리자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은 여성관리자 및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및 리더십 교육 등을 통해 범국민적으로 남녀평등 촉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며, 여성 기업인들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할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여대생, 재직 여성(관리자급 포함), 기업·기관 인사담당자, 여성기업인, 지역여성인재(NGO 리더, 마을공동체 지도자, 정부위원회 위원 등)이며, 리더십 역량강화 특강, 멘토 워크숍, 차세대 여성리더 컨퍼런스를 지원한다.

표 3-67 | 여성관리자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여대생, 여성중간관리자, 여성기업인 및 지역여성인재
지원사항	리더십 역량강화 특강 및 워크숍
문의처	여성가족부 : 02-2075-4663

여성관리자 리더십 교육 지원사업은 교육참가 신청자 모집단계, 교육 실시단계, 네트워크 구축단계 등 총 3단계의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다.

그림 3-22 | 여성관리자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프로세스



여성관리자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수혜자를 살펴보면, 2011년도 757명, 2012년 1,364명, 2013년 1,350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지원사업 예산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00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68 | 여성관리자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성과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연도별 실적		
	2011년	2012년	2013년
지원사업 수혜자	757	1,364	1,350
지원사업 예산	200	200	200

주) 2013년은 예산 집행 추정치임  
※ 자료 : 여성가족부, 성인지 예산서, 2014



5)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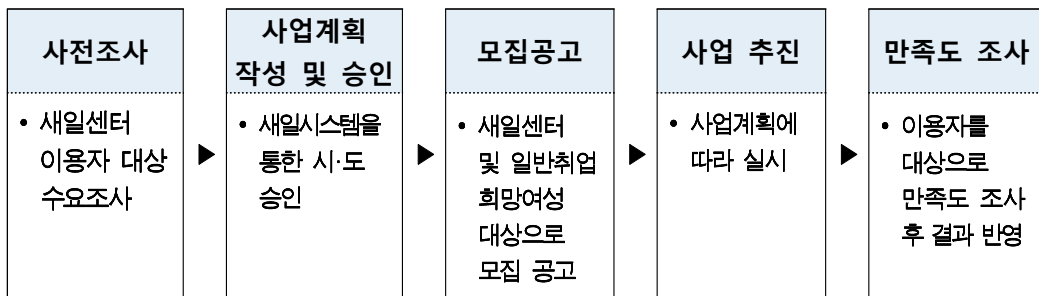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사업은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 새일센터)를 통하여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스톱 지원 사업이다.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경력단절여성으로 새일센터에 구직등록한 미취업 여성이며,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 알선, 사후관리 지원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표 3-69 |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경력단절여성 중 새일센터에 구직등록한 미취업 여성
지원사항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 알선, 사후관리 지원서비스
문의처	여성가족부 : 02-2075-4672 고용노동부 : 02-2110-7317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사업은 새일센터 이용자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조사단계, 새일센터 및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모집공고단계,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추진단계,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는 만족도 조사단계 등 총 5단계의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다.

그림 3-23 |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사업 프로세스



2009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추진 중이며, 취업 인원은 2011년 11만7천명, 2012년 12만2천명, 2013년 12만5천명으로 새일센터를 통하여 취업하는 여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직업교육훈련 교육인원은 508개 과정으로 평균 교육인원이 22명이다. 2011년 7천명, 2012년 9천명, 2013년 1만1천명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 3-70 |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사업 성과

(단위 : 천명)

구분	연도별 실적		
	2011년	2012년	2013년
취업인원수	117	122	125
직업교육훈련 교육인원	7	9	11

주) 2013년은 예산 집행 추정치임

※ 자료 : 여성가족부, 성인지 예산서, 2014

### 7)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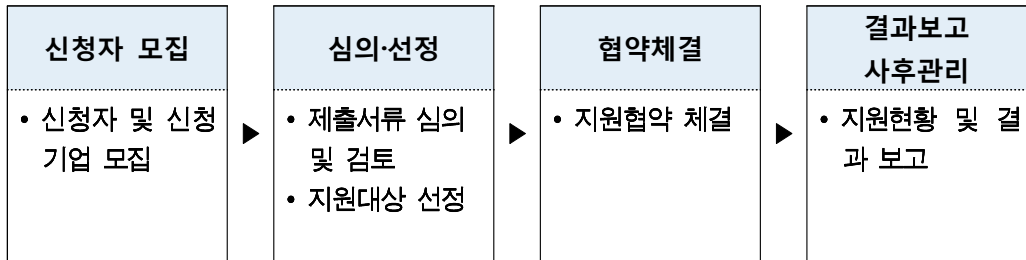
고급연구인력(석사·박사 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향상을 위해 고급연구인력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수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고급연구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이며, 석사 및 박사 학위취득 3년 이내의 연구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한다.(12년까지 경력연구인력 포함)

표 3-71 |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고급연구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사항	최대 3년간 4,050만원(석사), 4,950만원(박사)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02-6009-3000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은 취업희망 신청자 및 채용희망기업 모집단계, 제출된 서류를 심의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심의·선정단계, 지원에 대한 협약체결단계, 지원 결과에 대한 보고 및 사후관리단계 등으로 진행된다.

| 그림 3-24 | 고급연구인력 활용 지원사업 프로세스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의 전체 수혜자 중 여성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17.1%(148명), 2012년에는 16.4%(136명), 2013년에는 19.9%(146명)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전체 지원인력의 평균 약 18%가 여성인력으로 채용되었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수혜자수가 약 15% 감소되는 상황에서 여성수혜자수는 1%만 감소하여 남성보다는 여성의 감소세가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3-72 |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 성과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연도별 실적		
		2011년	2012년	2013년
지원 사업 수혜자	전체	863	828	733
	여성 (비율)	148(17.1)	136(16.4)	146(19.9)
	남성 (비율)	715(82.9)	692(83.6)	587(80.1)
지원 사업 예산	전체	12,000	12,000	12,000
	여성 (비율)	1,967(16.4)	1,864(15.5)	2,303(19.2)
	남성 (비율)	10,033(83.6)	10,136(84.5)	9,697(80.8)

※ 자료: 여성가족부, 성인지 예산서, 2014

### 3.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사업 성과



전국 17개 시·도의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자금지원사업과 여성창업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기업인을 위한 교육 및 연수지원사업, 여성기업의 판로지원사업도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금지원사업은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형태로 여성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자금지원과 여성창업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창업지원사업은 창업교육 및 멘토링,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교육 및 연수지원사업은 여성CEO를 위한 교육과 연수, 세미나, 여성경제인대회 등이 있으며, 판로지원사업으로는 여성기업제품공공구매, 국내외 전시회, 수출상담 및 수출판로개척 등이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산업특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지원사업에 있어서 여성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각 지부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각 지역센터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3-73 | 지방자치단체별 여성기업 지원사업 성과

지역	지원사업명	2012년	2013년
서울	여성창업 보육센터 운영	3개소	4개소
부산	여성기업 중소기업자금 우대지원	198업체, 377억원	-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1.4억원, 125개업체 창업	1.4억원, 120개업체 창업지원
	여성소자본창업강좌	0.11억원	0.11억원
	창업아카데미	0.34억원	0.34억원
대구	경영안정자금 지원 여성기업 이차보전지원	50개업체, 106억원	업체당 3억원, 이차보전 금리 3%
인천	여성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85업체, 354억원	1,500개업체
	여성창업지원센터운영	9개업체	9개업체
	여성친화기업 여성주직 지원사업	5개사	6개사
	여성기업 특례보증	10,053건, 2,014억원	보증로율 0.1% 감면

지역	지원사업명	2012년	2013년
광주	여성기업 육성 특례보증	7개업체, 1.2억원	6억원
	여성친화기업 고용환경개선 자금 지원	22개업체, 90백만원	20개업체, 90백만원
	여성창업촉진 및 여성일자리 창출	120명, 56명	120명, 30명
대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지원	114건, 114억원	2년간 이자 일부 지원 3%
	여성기업 교류프로그램 운영	대기업탐방 40명, 워크숍 1회	
울산	여성기업 창업교육	100개사	100개사
	여성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28개업체, 61억원	40개업체, 100억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 지원	6억원	-
강원	여성기업활동지원	68기업/156억원	105기업/266억원
	여성창업보육센터지원	10백만원	15백만원
	여성기업공공구매	739억원	1,247억원
	여성경제인(CEO)경영혁신 연수	3백만원	3백만원
	강원여성경제인대회	7백만원	7백만원
	여성기업 전용단지 조성	9기업 입주	9기업 입주
	중소기업 육성자금우대 지원	6억원	7억원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촉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0명
경기	여성기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1,072억원	1,406억원
	여성기업 신용보증우대 지원	3,026억원	3,949억원
	여성기업인 해외판로 지원	2억원	2억원
경북	여성경제인대회 개최	0.2억원, 500명	0.2억원, 500명
	여성기업 해외마케팅지원	중국 36명, 인도네시아 100명	1억원
	여성기업인 경영연수	101명	0.2억원, 100명
	중소기업 창업 및 운전자금 지원	44개업체, 194억원	
경남	맞춤형 창업교육	50명교육, 6명창업	50명교육

지역	지원사업명	2012년	2013년
	여성창업지원센터	26명	48명
	여성 CEO 포럼	175명	100명
	여성 CEO 양성 및 MBA 교육	85명	70명
전남	중소기업 육성자금 여성기업 우대지원	234개업체, 185억원	1억원 상향지원
전북	여성경영인 육성 리더십 스쿨	-	5회, 400명
충북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지원	55개업체, 203억원	1억원 상향지원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0.13억원, 12개업체	0.13억원, 12개업체
	내일 여성 CEO 육성교육	3회, 326명	4회
	CEO 멘토링 워크숍	40명	4회
충남	여성기업 경영안정자금지원	32개업체	여성기업 가산 3점
	여성기업 신용보증지원	782개업체, 129억원	보증비율 100%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 지원	-	3.5억원
제주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지원	4억원	-
	여성기업 전시·박람회 지원	5개업체	5개업체
	모바일웹구축	5개업체	5개업체
	여성 CEO 연수	1회	1회

※ 자료 : 각 지방자치단체, 2013년도 여성기업지원 실적 및 2013년도 지원계획

## 제3장 해외 여성기업 지원정책 현황

### 1. 미국의 여성기업지원

#### 가. 지원조직

##### 1) 정부 및 지방자치

##### 가) 중소기업청 여성기업국(Office of Women's Business Ownership)<sup>53)</sup>

1979년 행정명령에 따라 세워진 중소기업청 여성기업국은 역사적으로 제외되었던 여성기업들의 경제 참여를 육성하고 있다. 현재 여성기업국은 훈련 및 기술 지원, 신용 및 자금 조달, 정부계약에 관한 자문, 국제무역 기회증진을 위한 훈련 및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107개의 지방 여성기업센터와 온라인 여성기업센터의 사업을 관할하고 있으며, 기술, 회계, 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훈련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신용, 자본, 시장진출에 관한 사업 자문 및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나) 여성기업센터(Women's Business Center)<sup>54)</sup>

중소기업청은 1988년 의회의 승인으로 여성기업인이 겪는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여성기업센터 설립하였으며 오늘날 미국 내 모든 주에서 활동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민간 단체(Private organization)로서 여성기업국(OWBO)이 관리 및 감독으로 여성기업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보조금과 개인의 출자금(matching fund)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성기업센터는 중소기업청 지역 사무소 및 기타 중소기업청 파트너들과 함께 전국적으로 여성기업인들이 창업하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주요업무는 여성들의 성공적인 창업과 기업 형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촌·교외·도시 등 다양한 경제지역에서 여성경영인들을 대상으로 SBA프로그램<sup>55)</sup>과 서비스에 대한

53) 2003년에 제정된 여성중소기업 프로그램증진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정부기관으로서, 동법에서 OWBO의 활동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54) 이 센터는 미국의 여성기업소유법(Women's Business Ownership Act, 1988; WBOA) 제2장 제201조에서 명시된 비영리 민간조직이다.

안내 및 여성자문·멘토링 등을 제공하고 있다. 각 센터는 개별 지역사회의 요구에 서비스를 맞추어 교육과 상담, 금융 지원 및 연방정부의 조달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현재 미국 전역에 총107개의 여성기업센터가 여성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다) 전국여성기업위원회(National Women's Business Council)<sup>56)</sup>

연방정부 조달업무를 포함하여 각 정부 부처의 여성기업에 대한 정책과 관련된 주요 이슈 등을 검토하고, 매년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하며, 정책을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국여성기업위원회의 주요 활동범위는 첫째, 전국의 여성기업 현황 및 여성기업의 장애요인에 대한 조사와 둘째, 연방 주·지방정부의 여성기업지원역 할과 셋째, 여성기업 관련 자료수집 사항으로 나누어져 있다.

표 3-74 | 미국 WBC 현황

연번	지역	개소	연번	지역	개소
1	Alabama	4	28	Montana	1
2	Alaska	1	29	Nebraska	1
3	American Samoa	1	30	Nevada	1
4	Arizona	1	31	New Hampshire	1
5	Arkansas	1	32	New Jersey	1
6	California	11	33	New Mexico	6
7	Colorado	1	34	New York	8
8	Connecticut	3	35	North Carolina	2
9	Delaware	1	36	North Dakota	1
10	District of Columbia	1	37	Ohio	1
11	Florida	3	38	Oklahoma	2
12	Georgia	2	39	Oregon	2
13	Hawaii	1	40	Pennsylvania	4

55) SBA 프로그램에는 신용 및 자금 지원, 연방 정부조달 계약, 국제 거래 등이 포함되어 있다.

56) WBOA 제4장 제401조부터 제407조까지에서 전국여성기업위원회의 설립, 위원회의 직무, 위원의 구성, 위원회의 이사와 직원, 위원회의 권한, 보고, 업무위임사항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연번	지역	개소	연번	지역	개소
14	Idaho	1	41	Puerto Rico	1
15	Illinois	1	42	Rhode Island	1
16	Indiana	1	43	South Carolina	1
17	Iowa	1	44	South Dakota	1
18	Kansas	1	45	Tennessee	1
19	Kentucky	1	46	Texas	5
20	Louisiana	2	47	Utah	1
21	Maine	2	48	Vermont	1
22	Maryland	2	49	Virginia	3
23	Massachusetts	2	50	Washington	3
24	Michigan	3	51	Wisconsin	4
25	Minnesota	2	52	Wyoming	1
26	Mississippi	2			
27	Missouri	1	합 계	107	

## 2) 민간단체

국가의 여성기업정책과 더불어 민간부문의 노력도 여성기업이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여성기업 관련 민간단체는 사회적·경제적 역할에 관한 인식 제고와 더불어 신용 제공, 교육 훈련, 연구 등의 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여성기업 환경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가) 전국여성기업주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Women Business Owners : NAWBO) 및 여성기업 연구센터(Center for Women's Business Research)

1975년에 설립된 전국여성기업주협회(NAWBO)는 미국 경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1,000만개 이상의 여성소유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모든 산업에 걸쳐 모든 여성 기업인의 이익을 대표하는 유일한 회비 기반 조직이고 전국 5,0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

---

하고 있다. NAWBO는 경제, 정치, 사회, 정치 분야에서 여성의 자영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윈스톱 체제를 갖추고 있다. 또한 조직은 글로벌 사회에서의 여성기업인으로서의 자부심 강조와 여성기업인에게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예리한 논평을 제공한다. 궁극적으로 여성기업인의 폭넓은 커뮤니티와 네트워크 구축으로 더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내며 역동적 리더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여성기업연구센터는 NAWBO 부설 연구기관으로 여성소유기업인, 주요 기업, 정책 입안자, 금융기관, 미디어 등에게 여성기업과 관련한 다양한 보고서, 연구물,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여성 소유기업의 정치적·경제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을 부각시켜 여성기업인들이 활발하게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나) 여성기업센터연합(Association of Women's Business Center : AWBC)  
및 여성기업 자격증명 기관**

여성기업센터연합은 1998년 설립된 비영리 국가기구로서 교육, 훈련, 기술지원, 멘토링, 개발 및 자금조달기회 제공 등의 활동을 통해 여성의 기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미국 내 여성기업 자격증명 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1997년에 설립된 여성기업인 평의회(Women's Business Enterprise National Council : WBENC)가 있다. 이외에 자격증명 기관으로 엘파소 상공회의소(El Paso Hispanic Chamber of Commerce : EPHCC), 여성기업인조합(National Women Business Owners Corporation : NAWBOC), 미국여성 상공회의소(US Women's Chamber of Commerce : USWCC)가 있다.

**다) 여성영향공공정책기구(Women Impacting Public Policy : WIPP)**

WIPP는 2001년6월에 설립된 여성기업 단체 및 여성기업인의 연합단체로서 미국 입법 과정 및 정부정책기관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4백7십만명 이상 경제인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건강보험 정책, 연방정부의 조달 정책, 세금 정책, 에너지, 통신 등의 넓은 범위에서 정책 개발 및 연구를 실시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회원 대상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대안을 검토하며 법안 발의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한다. 또한 사업과 관련한 교육 및 의제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나.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 1)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연방 공공기관의 조달물품 구매 시, 여성기업 진출이 적은 83개 업종에 대하여 국가계약법상 여성기업간 경쟁제품에 관한 규정을 처음으로 시행하였다.(2011. 2. 4.) 미국 중소기업청은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 비율(5%)를 달성하고자 여성중소기업의 공공구매 추정가격 제한 조항<sup>57)</sup>을 삭제하였다. (2013. 5. 17)

#### < 참고 : 미국 여성기업제품의 공공구매제도 현황 >

- 미국 여성기업제품의 공공구매 실적이 최근 3년간 증가하다 감소하는 추세
  - 최근 3개년간 실적 : 2009년 3.7%(163억불) -> 2010년 4.04%(176억불)
  - > 2011년 3.98%(168억불)
  - 정부부처 24개 기관의 공공구매 목표대비 실적을 매년 발표
- 여성기업간 경쟁제품제도 시행은 오바마 행정부와 미국 중기청의 최우선 과제(미국중기청장 카렌밀스, 2011. 12. 1, 미국 중기청 보도자료)
- 여성기업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계약법상 여성기업간 경쟁제품에 관한 규정을 처음으로 시행(2011. 2. 4.)
  - 여성기업만이 공공구매에 참여할 수 있는 83개 업종을 지정하였으며, 참여를 위해서는 여성기업 확인을 받아야 함

### 2) 여성전용 사전승인대출 프로그램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여성전용 사전승인대출 프로그램(Women's Prequalification Loan Program)은 여성기업인이 은행에 가기 전에 25만 달러 이하에 대하여 사전에 보증을 제공하고, 융자를 희망하는 여성기업인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융자에 대한 자격을 부여받는 프로그램이다. 운영방식은 주로 중개인을 통해 여성기업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57) 낙찰가격이 제조의 경우 5백만불 이하, 기타의 경우 3백만불 이하인 경우에 한하는 제한 조항 삭제

---

중개인이 대출에 필요한 제반 양식에 관련한 조언 및 채권자를 찾는데 도움을 주며, 대출 양식이 모아지면 중소기업청으로 제출하고, 3일 내에 중소기업청은 대출보증을 진술하는 사전승인서(Prequalification Letter)를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대상자격은 평균매출액 500만 달러 이하, 종업원 수가 100인 미만인 여성에 의해 최소 51% 소유되는 기업 및 경영되는 기업이다. 대출을 위한 심사기준은 여성기업의 자산이 아니라 지원자의 경영능력, 신용 및 경험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 3) 소액금융지원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계층(저소득층, 재향군인, 소수민족기업인 등) 및 여성기업인에게 제공되는 평균 \$10,000 이하(최대 \$35,000)의 소액대출과 담보없이 제공되는 신용대출지원으로서, 창업자금, 운영자금, 원재료 또는 기계구매 자금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 4) 여성소기업 연방정부 계약 지원 프로그램

중소기업법 제8조에 제시된 여성소기업에 대한 연방정부 계약지원 프로그램(2000년 시행)은 여성소기업의 참여도가 저조할 경우, 정부기구로 하여금 제한경쟁을 허용하는 조치를 시행하며, 기존 여성기업인에게 일정률의 계약을 지원하던 조치의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시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이와 더불어 연방정부조달정책실과 중소기업청은 일괄 계약을 제한하는 법규를 제안하여 일괄계약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참여기회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시행되고 있다.

### 5) 연방정부 납품 계약 지원

재향군인, 상이군인을 포함하는 사회·경제적 약자(소수민족 포함)와 여성기업에 대하여 연방기구는 연방정부와의 계약(하도급계약 포함) 참여에 최대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58)</sup> 그리고 이들이 하도급계약자가 되었을 경우 원계약자가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는 것을 보장하는 절차를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1994년에 제정된 연방정부구매합리화법(Federal Acquisition Streamlining Act)에 의해 연방기구가 납품과 관련하여 여성소기업과 5%의 계약체결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58)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116.

## 6) 여성기업인훈련 네트워크 프로그램(WNET)

경험이 풍부하고 성공한 여성기업인과 경험이 적고 성공을 기대하는 여성창업가를 연결시켜 1년간에 걸친 프로그램으로 기업훈련을 수행하여 새로운 사업가가 실패하지 않도록 원조하고 사업경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프로그램에는 커뮤니케이션 기술, 성장관리, 네트워킹 방법 등이 포함된다.

## 7) 여성기업인 능력개발 프로그램(Women's Demonstration Program)

여성기업인을 대상으로 전국 대학이나 비영리단체 등의 협력기관에서 장기연수나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sup>59)</sup>

## 2. 유럽연합(EU)의 여성기업지원



### 가. 지원조직

## 1) 유럽연합 기업 및 산업 위원회(Directorate General Enterprises and Industry)

유럽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는 기업가 정신 및 중소기업을 비즈니스 역동과 혁신의 중요 요소로 여기고 있다. 또한 유럽위원회는 부족한 여성기업의 수를 늘리고 여성기업인의 잠재력을 발휘하고자 지난 10년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고 가장 활동적인 조직은 기업 및 산업부 위원회였다.

## 2) 유럽정보센터(European Info Centre)

기업 및 산업부 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는 유럽 정보 센터는 2006년도에 DEW-SET 프로그램을 착수했다. 이 프로그램은 여성 기업인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및 지원 서비스를 개발할 뿐만 아니라, 가상 네트워크 및 자가 진단 도구를 설정하여 과학, 공학 및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여성기업 관련 홈페이지

59) [http://m.konetic.or.kr/tech/view5.asp?sub\\_page=&gotopage=1685&query=view&unique\\_num=2713&tbl=BIZ](http://m.konetic.or.kr/tech/view5.asp?sub_page=&gotopage=1685&query=view&unique_num=2713&tbl=BIZ)

---

지를 링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3) 여성기업 연구센터(DG Research)

연구센터는 과학 및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 교육을 실시하며 과학 및 기술 전문 여성기업인이 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이에 따라 FemStart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성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와 과학 대학에서 여성기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2006년과 2009년 사이에 유럽의 6개 도시에서 6개의 사업을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독일 여성 창업 국립기관은 프로젝트의 전략적 파트너로 역할을 했다.

## 나.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 1) 유럽 여성기업인 네트워크(The European Network to Promote Women's Entrepreneurship : WES)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유럽 네트워크를 발족하여 31개 유럽 국가(EU 28, 아일랜드, 노르웨이, 터키)를 회원국으로 보유하고 있다. WES 회원들은 중앙 국가의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표하여 여성 기업가 정신을 촉진한다. WES는 기존의 지원 대책에 대한 회원의 조언, 지원, 정보들을 공유한다. 기존의 여성 기업인의 가시성을 높이도록 기존의 네트워크 대상국과의 협력으로 여성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자 한다. WES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뿐만 아니라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를 전략적 파트너로 삼아 여성기업인이 활동할 수 있는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여성기업 활동 조사를 통해 선진여성기업 사례를 발굴 및 정책 개발을 하여 연간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원국들에게 배포한다.

### 2) 여성기업 대사단(European Network of Female Entrepreneurship Ambassadors)

2009년부터 기업 및 산업 위원회 관할 하에 여성기업 대사단을 선출하여 유럽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여성기업인이 되고자 하는 여학생들의 전문성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0년 12월에 두 번째 여성기업 대사단이 선출되었다. 오늘날

네트워크는 22개 이상의 국가에서 880명의 대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는 컨퍼런스 참여자들과 대사를 롤모델로 삼고자 하는 60,000명 이상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 3) 여성 기업가 정신 포털(portal on female entrepreneurship)

여성 기업가 정신 포털은 여성 기업의 대표 조직, 네트워크, 프로젝트 및 여성의 기업가 정신 촉진과 관련된 이벤트 등의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목표로 하고 있다. 2011년 초에 설립되어 44개의 조직 및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다.

### 4) 북유럽 지역의 여성 기업가 정신 프로젝트

북유럽 지역의 여성 기업가 정신 프로젝트는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덴마크에서 여성의 기업가 정신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전통적으로 남성 지배 직업인 ICT 부문 및 모든 분야에서 높은 학력을 가진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여성 기업가 정신을 촉진시키고자 한다. 지역 파트너로 아이슬란드 혁신 센터로, 노르웨이 SINTEF와 혁신 노르웨이 센터, 덴마크 네스트 지역의 개발 회사 및 덴마크 농업 비즈니스 파크가 있다.

### 5) 혁신적인 여성기업인 장려 프로그램(WomEn2FP6)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여성 기업을 촉진하는 정책 중 하나는 혁신적인 여성기업인 장려 프로그램(WomEn2FP6)이다. 2004년에서 2006년까지 이 프로그램은 혁신뿐만 아니라 기술을 다루는 단체 및 여성이 창업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프로그램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젝트는 교환 지역 학습, 교육 및 여성기업인을 위한 세미나를 지원하며 여성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작업을 중점적으로 한다.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는 주제별로 나누어 다른 접근 방식을 소개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창업하는 여성들과 의견 교류를 목표로 한다. 유럽위원회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931,000 유로를 지원하였다. WomEn2FP6는 최소 450개 여성 기업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특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며 유럽의 혁신연구영역을 구조화한다.

## 6) 지역개발 위원회

지역개발 위원회는 지역 발전과 고용의 정책 목표에 따라 유럽 지역 개발 기금(the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 ERDF)으로 여성 기업이 정신 촉진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 지역 개발 기금의 공동 재정 프로젝트인 INTERREG는 공동작업 및 파트너 기관 사이의 국경 간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NTERREG 경제, 사회, 환경 문제에 대한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지역 파트너를 가능하게 지식과 경험을 공유한다. 여성 기업이 정신을 촉진 하는 INTERREG 프로젝트 중 좋은 예시는 다음과 같다.

### INTERREG 프로젝트

- 2004년에서 2007년까지 여성기업 회의인 FEM가 INTERREG III B 프로젝트로 진행하였다. FEM은 발트해 지역의 여성 기업인 회의 약자로서 협력과 정보 교환을 통해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며 참가 국가의 모범 사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여 국가는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이다. FEM은 지원 센터의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생성하고, 교육 및 자문, 멘토링 프로그램, 신용 그룹의 네트워킹과 여성의 기업이 정신의 국제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참여국들은 각국의 여성의 기업이 정신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한 INTERREG IV 프로젝트 사업은 여성의 창업 지원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젝트는 혁신, 개발, 여성에 의한 중소기업을 이끄는 성장을 주 쟁점으로 삼았다. 특히, 스카 게 라크 지역의 경쟁 조건을 강화하고자 한다. 활동은 여성 기업의 확장 및 개발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여성기업의 발전을 지역 당국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과 사례를 연구하였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유럽 연합 (EU)은 362,495 유로를 지원하였으며 노르웨이는 추가로 394,278 유로를 투자하였다.

결론적으로, 유럽 연합 (EU)은 유럽 내의 여성 기업이 정신을 촉진하는 지원 정책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와 프로젝트는 유럽 국가 간 협력을 위한 중요한 정책 프레임을 만든다. 유럽개발기금을 바탕으로 대사 네트워크, WES 네트워크와 여성의 기업이 정신 포털 등의 여러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통해 유럽국가의 여성기업활동을 촉진한다.



### 3. 영국의 여성기업지원



#### 가. 지원 조직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금, 교육 및 훈련 지원 등이 활성화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협조 또는 지원하는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기업에 대하여 중앙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은 잉글랜드 지역에 국한되어서 영국 중소기업청(SBS)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원 프로그램도 자금지원 프로그램으로 국한되어 지원되고 있다.

##### 1) 소수인종 및 여성기업부<sup>60)</sup>

영국 중소기업청 산하에 있으며, 여성기업의 지원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2) 프로위스(Prowess)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여성기업인을 돕기 위한 전국 조직이며, 여성친화적인 기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문화 형성 등을 지원하여 여성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제고와 기업 직원서비스 단체의 능력향상 지원, 기업 지원, 국가적·지역적 차원의 로비 및 정책제안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약 10만명의 여성들을 지원하여 1,000여 개의 창업을 유도하고 있다.

##### 3) 여성기업개발원

1990년에 영국의 중서부 지역에 설립되었으며, 여성창업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 성장단계에 따라서 경영상의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창업 프로그램과 후속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 외에도 taxa수당 지급, 여행비 보조 등의 독특한 훈련방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수민족과 사회·경제적으로 불우한 환경에 있는 여성들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60) 소수인종 및 여성기업부(EMWEU)는 여성기업만을 위한 주무부서이기 보다는 이들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계층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 지역 및 단체에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 4) 웰파크 기업센터

1996년에 Glasgow에서 설립되었으며, 30개의 탁아소와 22개의 사무실을 포함하여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지원 서비스는 사업장 및 사무실 제공, 육아시설, 사업에 대한 조언 및 정보제공, 재정적 지원, 창업 교육, 여성기업가를 위한 네트워크 지원, 혁신 여성 마이크로 크레딧 그룹에서의 자본조달 지원, 기존 창업 여성의 요구수준에 맞는 전문가 훈련과정 운영, 그리고 국제적인 연계를 통한 프로젝트 개발 등이 있다.

#### 5) 여성고용기업훈련단체

1987년 노위치에서 설립되었으며, Norfolk and Waveney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의 경제적인 안정과 지역 노동시장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단체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풀 서클(Full Circle) 프로그램으로서, 이 프로그램은 사업시작 전 훈련, 사업기술 훈련, 지속적인 지원과 대출자금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즉, 회계장부 기입 등의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가족생활은 물론 개인성장을 위한 사업 계획 등의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 6) 여성네트워크

여성네트워크는 여성들이 기업을 창업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장애요인들이 발생했을 때 이를 극복시켜 주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에 설립된 기관이다. 주요 업무는 워크숍, 전시회, 훈련, 카운슬링과 모니터링 등과 같은 네트워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 7) 영국 과학기술여성 인력센터

더 많은 여성들이 과학기술 분야의 진출과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관련 교육 및 인력양성과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 및 기업들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다.

## 나.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 1) 여성창업자금 지원프로그램

1996년 Glasgow의 시의회에서 설립되었으며, 해당 지역 내에 실업 상태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초기 창업비용은 최대 2,000파운드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이 비용내역에는 보육지원비도 포함되어 있다. 자금지원에 대한 우선대상자는 제조업에 속한 여성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 2) 피닉스 개발 기금(Phoenix Development Fund)

영국에서 사업운영 상의 어려움이나 불이익에 직면해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성된 기금으로서, 여성기업인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특별한 자격을 구분하지 않고 실업상태에 있는 여성들에게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여성기업지원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부직원을 배제시키고, 외부의 평가 패널들로 구성하여 지원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또한, 지원프로그램 관리에 있어서 보다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진행과정 및 결과 등의 모든 단계에서 피드백을 요구하고 있다.

### 3) RBS(Royal Bank of Scotland)

1964년 영국 최초로 여성 고객들을 위해서 여성지점을 설치하여 여성 직원을 배치하고 여성만의 공간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여성기업 중에서 기업을 창업하기 전에는 회사 설립 형태, 자금조달, 사무공간 마련, 세금문제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창업 후에는 수출입 업무, E-Business, 산업 및 기업 분석 등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유·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 4) 글래스고우 여성기업프로그램(Glasgow Women's Enterprise Programme : GWEN)

1996년 Glasgow에 설립된 웰파크기업센터는 지역사업 지원기관들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활성화려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다. 주요 지원서비스는 여성을 위한 창업 훈련과정, 이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기업성장 훈련과정, 지역 내 여성들을

---

위한 연구 프로젝트 설정, 지역 내 여성들과의 장기적인 프로젝트 추진, 지역 내 여성 소액 신용집단을 위한 잠재성 예비분석 등이 있다.

#### 5) WISE(Women Into Science and Engineering) 캠페인 프로그램

여성 및 여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과학 및 기술분야로 진출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적인 시책이며, 특히, 월별 역할모델 프로그램과 여성복귀 프로그램이라는 지원제도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월별 역할모델 프로그램은 과학 및 기술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서 실습 및 연구 중인 학생들 중에서 월별 WISE역할모델을 선정하여 홍보하는 목적의 제도이다. 또한, 여성복귀 프로그램은 과학 및 기술분야의 직장에 복귀하고 싶은 여성들에게 2년 간 재교육 실시 및 관련 기관과 연결하여 직업 복귀에 도움을 제공하는 목적의 멘토링 훈련제도이다.

## 4. 독일의 여성기업지원



### 가. 지원 조직

독일은 금융지원, 기업문화와 지식, 교육 등 세가지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연방여성창업청이 설립된 이후 여성기업활동 촉진 위한 중앙 집권화된 수단이 제도화되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정부부처들이 하나로 통합되었다.

#### 1) 연방여성창업청(National Agency for Women Start-ups : BGA)

2004년에 설립되었고 본사와 16개 지회로 구성되어 있는 연방여성창업청은 연방 교육 연구부, 가족부 및 경제기술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정부기관으로서, 여성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성의 경제적 잠재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교육, 연구, 정보제공, 정책건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주된 사업으로는 여성의 가업승계 지원관련 행사, 연구, 정보제공, 여성기업에 대한 소액 금융 지원, 창조산업 및 보건 분야 여성기업 진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연방여성창업청의 비전 및 목표는 첫째, 산업부문에서 여성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기회 활용을 도우며 여성의 창업을 장려, 둘째, 여성창업의 품질을 개선하여 사업 성공의 기회를 증대, 셋째, 모든 업종과 창업의 전체 단계에서 여성기업인들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조직은 정보센터, 자문서비스, 사업승계, 프로젝트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젝트 부문은 연방교육부, 가족부, 경제기술부 및 유럽사회기금(ESF)으로부터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주된 사업내용은 정보센터 운영(뉴스동향제공, 여성창업가이드, 포럼 운영, 각종 발간물 발행), 자문서비스(전문가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문 자문기관들과 제휴), 사업승계(가족기업의 여성상속 등 여성의 기업승계 촉진 및 지원), 프로젝트 수행(유럽의 여성창업 지원에 관한 우수사례 등 연구)이다.

연방여성창업청은 2004년부터 5,000여건이 넘는 협의를 해왔고 1,000명 이상의 여성 기업전문가 DB를 구축하였으며 445개의 여성기업 자문기구와 323개의 여성기업센터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8년 처음으로 ‘여성 가업승계의 날’을 지정하여 70회의 지역별 포럼 등 행사를 개최(여성 가업승계에 대한 조언, 컨설팅 등 제공)하였다. 또한 2006년에는 남성 중심 환경의 기업문화를 바꾸기 위해 대책 위원회가 건립되었다. 주요 대상은 리더쉽과 잠재적 여성이 기업을 주도할 변화를 머지않아 직면하게 될 기업들이다. 더 나아가 기업, 정부부처, 학계를 대표하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 분야의 여성기업인에 대한 월간 출판물을 발행한다.

연방여성창업청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조언과 지식을 전달하여 여성기업의 독립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한 자체 출판물, 직통전화, 네트워크, 회담을 통한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포럼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연방여성창업청은 이전 정책들에 대한 분석 및 평가하고 모범 사례를 발굴하며 정책을 개발한다. 2009년에 연방여성창업청은 유럽 최고의 관행 모델로서 유럽연합집행기관상을 받았다.

## 2) 평등권국(Abteilung für Gleichstellung)

여성의 기회균등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연방정부 내의 부처로 되어 있으며, 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여성직업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산하 조직으로 1989년에 조직된 ‘남녀 평등권

---

보장을 위한 자문위원회(Beirat zur Durchsetzung der Gleichberechtigung von Frau und Mann in der Gesellschaft)'는 여성문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3) 연방교육연구부(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으며, 특히 2004년 3월에 여성 기업인을 위한 중계사무소(Agentur)를 설치하여 여성창업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4) 여성경제노동부(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Arbeit : BMAW)

여성창업인을 위한 경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KfW(Kreditanstalt für den Wiederaufbau) 중소기업은행에서 여성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5) 연방여성창업인 중개사무소(Bundesweite Gründerinnenagentur)

연방차원의 최초의 여성창업인을 위한 기관으로서, 여성창업인에게 다양한 정보와 자문기능을 제공하며, 여성의 권리보호 및 교육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6) 정보 및 과학기술지원센터(Kompetenzzentrum)

민간지원기관으로서, 기술전문 분야에서 여성기업이 취약한 과학기술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연방교육관련 부처와 평등권국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매일 많은 기술정보를 제공하며 지원하고 있다.

## 나.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독일은 오래전부터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정책을 잘 발전시켜 왔는데, 1990년대부터는 여성기업을 위한 별도의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지원정책은 중앙부처간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춰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은 1950년 이전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지원이 집중

되었다.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이러한 지원정책에 힘입어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1세기 지식사회의 혁신과 고용(Innovation and Employment in the Knowledge Society of the 21st Century)’에 대한 연방 결의 프로그램은 여성기업 비율을 40%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방차원에서 기본적인 지원패러다임은 보다 조직에 기반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이 프로그램은 단지 정부 차원 뿐만 아니라, 상공회의소와 기업연합 등과 같은 조직과 함께 지원을 하는 통합된 성격의 지원프로그램이다.

### 1) KfW 중소기업은행 창업자금 지원 제도 및 여성기업 박람회

KfW(Kreditanstalt für den Wiederaufbau)는 독일재건을 위한 신용기금으로서, 이 신용기금의 은행그룹 중 하나인 KfW 중소기업은행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창업자금 지원 정책이자 대출프로그램이다. 일반은행은 소규모 투자를 꺼리기 때문에 부처 내 경제부와 함께 소자본을 투자하여 창업하고자 하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신용 평등 프로젝트”는 대형 은행과 협력하여 여성창업자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은행에서 대출받을 조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상담을 해주고 있다. 최근에는 은행과의 협력 하에 소자본 대출도 해주고 있다. 여성기업인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창업자에게 무료로 대출을 하며, 창업 전 신용대출도 지원하고,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판로연결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KfW 중소기업은행 창업자금에서 지원하는 판로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여성기업 박람회를 개최하고 지원하고 있다.

### 2) 중앙 핫라인 시스템

평등권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여성의 각종 창업에 대한 문제에 대해 여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이다.

### 3) 연방결의프로그램

평등권국, 연방교육연구부, 여성경제노동부 등 3개의 연방기관이 연계하여 효율적인

---

정책을 실행하고자 구축한 네트워크 체계이다. 이는 여성기업에 대한 연구 및 토론회 주제 발표, 강의, 추진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여성기업인에게 기업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4) 여성창업 지원 프로그램

연방결의프로그램 내의 교육 및 훈련지원제도로써,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코스로 여성의 창업과 경영을 위한 강의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법률과 세금, 회계 등의 전문지식을 실제 적용된 사례들을 제공하고 있다. 민간 여성기업인 단체를 통하여 위탁 실시함으로써 다양한 여성기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뿐만 아니라 독일은 여성창업센터를 설립하여 여성에게 필요한 탁아시설을 제공하고, 서로 유사하고 보완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함께 모아서 교육훈련도 제공하고 있다. 2007년부터 나노기술분야에서 여성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이템 개발, 우수팀 선정, 시상자에 대해 나노기업에서의 3개월간의 인턴십 기회를 제공한다.

#### 5) 주정부차원에서의 여성기업인을 위한 중개 역할

여성기업인들의 요구에 의해 주정부 프로젝트가 발의되면서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 이를 통해 여성기업의 상담과 설립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사회에서의 여성기업인 인식 제고와 함께 정치적인 상호간의 의견조정이 이루어진다. 이 네트워크는 상담과 창업강좌, 자격취득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한 상담이 자주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여성기업의 낮은 사회적 위치, 시간 및 자본금 부족, 불충분한 경영계획 등에 대처하는 여성기업의 위기관리에 관한 것들이 주를 이룬다.

#### 6) 통합 정보망

평등권국은 여성들을 위한 창업의 기회를 늘이고 창업환경의 개선을 위해 정부 공식 온라인 전상망(Regierung Online)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활발한 여성기업인들의 소개와 정부의 대책들이 전해지고 통계와 창업자료들이 공개되고 있다. 이 콘텐츠를 통해 독일



전역의 모든 여성 창업인이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 창업을 돕고 있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전산망이 구축되어 있다.

#### 7) 멘토링 프로그램

2001년에 창설된 민간 케이트 알만 재단(Die Kie Ahlmann Stiftung)은 멘토링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청년 여성창업인들에게 중요한 시기인 초기 여성기업 1년여 동안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멘토를 제공한다. 여러 사회단체의 지원과 정부의 보조로 진행하고 있다.

#### 8) 온라인 네트워크(u-netz.de)

여성기업의 상호 정보 교환과 교류를 위한 웹사이트로 여성기업이 기업간의 관계 문제에 대한 자문을 온라인 상에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돕는다. 여성기업 박람회 소개와 회의 및 토론회 주제, 전문분야에 대한 각 지역별 담당 소개, 여성기업의 성공사례 소개, 멘토링 등 4가지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멘토링 프로그램인 Twin-Two Woman Win은 처음 시작하는 청년 여성기업인과 성공한 여성기업인이 한 팀을 되어 청년 여성기업인에게 조언과 보조를 한다.

## 5. 스웨덴의 여성기업지원



### 가. 지원 조직

#### 1) 경제지역성장청(Tillvaxtverket)

경제와 지역 성장을 위한 스웨덴 국가기관으로 1994년에 설립된 NUTEK : The Swedish Agency for Economic and Regional Growth이 2009년에 Tillvaxtverket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사업자문가들에게 훈련 프로그램과 경험의 교환, 전통적 방법과 온라인으로 배포하여 정보를 공급한다. 이 기구는 지역문제에 여성의 경험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후 경제지역성장청은 스웨덴의 성 평등적 지역개발정책의 허브로

---

자리 잡게 되었다. 경제지역성장청은 여성 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정책에 도입하였다. 창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며 변화를 찾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가정신을 통해 기업의 지속성도 높ی겠다는 정책 의지가 엿보인다. 이 기관의 주요업무는 스웨덴 각 지역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 전반을 조정하는 것이며 여성단체와의 연계를 통해서 지역정책이 성 평등한 방향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신생기업의 증설과 기업의 성장, 그리고 스웨덴 내의 강한지역(strong region)을 증대시키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여성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자금과 마케팅,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역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 훈련 등 900여 개의 여성기업가정신 촉진과 사업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2) 여성지원센터

1998년에 설립되어 국가적, 지역적 수준으로 여성기업활동을 촉진해왔다. 이 센터는 직업 및 사업, 여성을 위한 경력 개발과 지역적 계획을 포함한 지역과 현지 발달이라는 넓은 범위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

## 나.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 1) 여성기업가정신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2007년에 시작한 “여성기업가정신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은 스웨덴에서 여성 기업의 지분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요소이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경제지역성장청에 의해 구현된다. 따라서 이 국가 기관은 정부의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화되었으며 최근 4년 연장되어 2014년에 종료될 예정이다. 이 정책 프로그램은 자금 조달 지식과 지식에 더하여 기업 문화까지 여성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이 세 가지 차원을 다룬다. 이 프로그램은 조사연구 모델의 세 가지 차원에 상응하는 다차원의 정책이다. 2007-2010년 예산은 총 45 백만 유로였다. 또한 2011-2014년에 책정된 예산은 매년 80백만 유로이다. ‘자금조달 기회’, ‘정보,조언과 사업 발전’, ‘존재하는 프로그램 내에서의 차후 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도와 롤모델’ 등의 4가지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식과 교육”의 차원은 여성 기업인

들을 위한 사업 발전, 사업 고문을 위한 멘토링과 교육, 그리고 여성 사업 네트워크 발달을 위한 계획에 의해 전달된다. 이 실행 계획들은 대학교 차원에서 여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을 강화시키는 것 또한 포함한다. 회담, 롤 모델, 출판물, 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들은 기업 문화와 태도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과 함께 지식을 전파하기 위해 출판되었다. 현대 미디어인 트위터와 유튜브는 여성의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이 실행계획들은 개인적이고 공적인 파트너들과의 파트너십 속에서 제정되었다.

## 2) 네트워크

여성의 경제활동 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인 스웨덴은 여성기업인 활동의 촉진도 정부의 우선과제 중의 하나이며 지난 10년 동안 많은 대책이 시도되었다. 그 한 사례가 ‘여성들을 위한 사업자문가 네트워크’인데 여러 가지 경험에서 여성 대부분은 창업에 관한 정보나 훈련, 자문이 필요할 때 여성과 접촉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여성기업을 위한 홍보 대사 프로그램

경제지역성장청(Tillväxtverket)은 “여성 기업을 위한 홍보 대사”<sup>61)</sup>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각각 다른 사업 영역, 사업 형태, 연령과 배경을 대표하는 여성기업인과 임원 900여 명으로 구성된 홍보대사는 온라인(www.ambassadorer.se)을 통해 네트워크를 만들고, 학교 등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한다. 대사들은 기업에 대한 지식과 교육을 증진하고 직업 선택으로서 창업을 권유하며 ‘여성도 기업인이 될 수 있다’는 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다른 네트워크, 비영리기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여성 기업들을 위한 새로운 수상 카테고리인 아름다운 사업상(www.beautifulbusinessaward.se), 올해의 서비스 혁신가(“Service Innovator of the Year”)가 출범되었다. 목표는 성공하고 혁신적인 여성 기업인들을 더 가시적으로 보이도록 촉진하고 서비스 부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이 상은 2009년부터 수여되었으며 부상으로 5,500유로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지금까지 총 5,300명이 넘는 여성 기업인들이 후보로 선정되었다.

61) www.ambassadorer.se

---

#### 4) 조사 및 연구

여성기업의 구조와 업무를 분석함으로써, 선진 정책 발굴 및 연구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한다. 대표적인 예인 VINNOVA는 연구 사업을 위탁받아 여성기업을 위한 새로운 연구를 한다. 이에 따라 여성들이 기업을 설립하고 시작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적합한 환경으로 개선하고 10개의 연구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며 자금 조달을 받았다. 국가적 실행계획에 더하여 다양한 다른 계획들이 지역적 수준에서 시행된다.

## 6. 핀란드의 여성기업지원



### 가. 지원 조직

#### 1) 여성기업기관(Women's Enterprise)

정부기관인 여성기업기관(Women's Enterprise)은 1996년도에 여성기업가 정신을 장려하고자 시작되었다. 이 기관은 핀란드 통상부, 교육부, 유럽연합 사회기금, 민간기관(민간회사, 은행, 보험회사, 비즈니스 기관)에 의해 자금지원을 받는다. 이는 자문, 교육 및 훈련,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멘토링 뿐만 아니라 다수의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영구적이고 전국에 걸쳐진 네트워크 기관으로써 자문 서비스 및 창업하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 2) 여성기업인 중앙협회(The Central Association of Women Entrepreneurs in Finland)<sup>62)</sup>

핀란드 여성기업인 중앙협회(The Central Association of Women Entrepreneurs in Finland)<sup>63)</sup>는 비정부기관으로 여성기업인에게 초점을 맞춘다. 1947년에 설립된 전국조직으로 운영 및 사업, 그리고 사회적 분야에서 여성기업인의 이익을 대표하고 전국에 있는 100개의 여성기업 지역 단체를 하나로 단결시킨다.

---

62) [www.yrittajanaiset.fi](http://www.yrittajanaiset.fi). (2010)

63) [www.yrittajanaiset.fi](http://www.yrittajanaiset.fi). (2010)

### 3) 농촌 발전을 위한 여성 자문 기관(Women's Advisory Organization for Development of Rural Areas)

농촌 발전을 위한 여성 자문 기관(Women's Advisory Organization for Development of Rural Areas)은 핀란드에 있는 커다란 중앙 조직 중 하나이다.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들과 지역차원에 있는 2,000여개가 넘는 협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자문기관은 16개의 지역센터에서 운영된다.<sup>64)</sup>

## 나.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 1) 본 글로벌 프로그램(Born Global TM)

본 글로벌 프로그램은 실질적인 글로벌 네트워킹을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프로그램은 글로벌 진출을 원하는 기업에게 요구되는 사항들이 기업별·업종별로 상이한 만큼 각 기업별·업종별로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들을 진단·분석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 단계별로 크게 3가지 형태의 패키지(준비단계, 글로벌 시장 침투, 자금조달)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은 입지에서부터 서비스 제공자들과의 계약, 자금 계획까지 포함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받게 되며, 서비스 비용의 67%는 정부 자금으로 지원된다. 첫째, 준비단계는 사업에 선정된 기업의 관점에서 글로벌 시장조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대상을 찾아주고, 각종 판매촉진활동을 지원하며, 계약과정의 지원을 위한 전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둘째, 글로벌 시장 침투단계는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지원 기업에게 가장 적합한 목표 시장이 어디인지를 선정하고 해당 시장의 사업타당성을 분석한 후 실제 시장 침투과정까지 지원한다. 셋째, 자금조달단계는 자금투자캠프를 설치하여 벤처캐피탈의 투자 절차를 수립하고, 잠재 투자자 명단 확보 및 협업체계 구성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이렇게 실질적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원을 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진출의 판로개척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 2) 고용, 기업가정신 및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

주요 정부 프로그램인 고용, 기업가정신 및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은

64) [www.maajakotitalousnaiset.fi](http://www.maajakotitalousnaiset.fi)

---

2007년도에 시작되어 여성이 창업을 하는 조건들을 분석하고 여성기업의 발전을 위해 적절한 방법들을 모색한다. 또한 작업그룹(working group)을 지정하여 여성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2004년부터 시작된 임시그룹(ad hoc group)은 고용경제부(Ministry of Employment and the Economy)를 구성하여 정책 개발에 몰두해 왔다. 2005년에 임시그룹은 다섯 가지 정책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첫째, 일하는 환경의 복지를 위해 더 나은 기업환경이 필요하다. 둘째, 금융 및 자본 접근성을 여성기업인에게 용이하게 하고 투자 자금의 새로운 구조가 필요하다. 셋째, 여성기업의 첫 고용인 임금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로 지식과 교육을 강조하였고 마지막으로 기업가 지도 및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스템 또한 중요시 하였다.

### 3) 여성 비즈니스 스쿨(Ladies' Business School)

1987년 이후에, 여성 비즈니스 스쿨(Ladies' Business School)이 설립되어 여성 임원과 중소기업에서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연합 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로 운영된다.

## 7. 호주의 여성기업지원



### 가. 지원 조직

#### 1) 정부여성사무소(The Australian Government for Women : OfW)<sup>65)</sup>

호주의 여성관련 정책기구인 정부여성사무소(The Australian Government for Women : OfW)는 가족·주택·지역서비스 및 원주민부(Department of Families, Housing,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에 소속되어 있으며 여성문제에 대한 정책자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여성기업 현황 및 정책자료를 포함하여 각 부문별 현황에 대한 통계 및 정책자료, 민간 여성단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65) 총리부 소속 여성지위청 "Office of the Status of Women's Affairs"비교

2) 호주여성상공회의소 (Australian Wome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AWCCI)

2011년에 출범한 호주여성상공회의소(AWCCI)는 여성을 위한 호주 유일의 국가사업 회의소이다. 여성기업 관련 연구, 무역과 상업 촉진 및 성평등 옹호 사업을 추진한다.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회원 기반의 조직이다. AWCCI는 여성기업의 자본과 시장에 대한 접근 뿐만 아니라 업계와 정부의 모든 수준에서 계약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성평등 정책을 내세운다.

## 나.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1) 소기업지원프로그램(SBAP)

호주정부는 여성 소기업 및 가정기반사업 경영자가 늘어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이 분야 사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소기업의 경우 총 160만개 중 여성기업이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호주정부는 지난 10여 년간 다양한 소기업 지원책을 실시해 오고 있다.

2003년에는 ‘소기업지원프로그램(SBAP)’을 마련하여 소기업경영인의 기술개발, 멘토링, 자문 서비스 등에 4년간 6000만 불을 지원하였다. 그 후 2차례에 걸쳐 프로그램을 연장하여 2009년 6월 30일 까지 총 1억 1500만 불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2) 소기업문화프로그램(Small Business Enterprise Culture Program)

2003년에는 소기업문화프로그램(Small Business Enterprise Culture Program)을 실시하여 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경영자의 기술개발에 더욱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동 프로그램의 8회중 5회는 여성기업인의 기술개발 지원에 초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이외에 ‘소기업기업 능력개발 프로그램’, SBAP, 호주관광개발 프로그램 등은 농촌과 지역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 중 많은 기업이 여성이 경영하는 곳이다.

3) 신기업 인센티브 계획(New Enterprise Incentive Scheme)

신기업 인센티브 계획(New Enterprise Incentive Scheme)은 실직자가 소기업을 창업

---

하도록 지원한다. 소기업을 위한 세금감면 제도로, 2005년 ‘기업인 세금감면 제도’가 도입되어 일정수준의 소기업이 사업소득과 관련해 최대 25%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75,000불의 사업소득이 있는 기업이 감면 대상이 되며, 소득이 50,000불 이하인 기업은 최대 25%의 세금 감면 혜택 받게 된다. 또한 정부는 소기업의 회계기록과 신고요건을 단순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소기업들이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4) 가정기반사업지원(Family-based Business)

호주에서 가정기반사업(family-based business)은 중소기업 부문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정부는 2005년 향후 4년간 2백만 불을 지원하여 지역별로 약 70여 회의 가정기반사업 관련 세미나 개최와 비즈니스 클럽의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가정기반 사업들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의 획득을 돕고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5000만 불의 ‘규제감소인센티브펀드(Regulation Reduction Incentive Fund)’을 통해 가정기반 사업자를 대상으로 복잡한 규제와 허가요건을 단순화 하도록 지방정부를 유도하고 있다.

#### 5) 국가연구프로젝트 (National Research on Women Business Owners & Female Entrepreneurs)

2011년에 호주 여성기업 소유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온라인 국가연구프로젝트를 시작했다. AWCCI의 연구를 통해 경제성장에 공헌하는 여성 자영업 및 여성기업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혁신적인 산업 및 비즈니스에의 진출을 도모한다.

## 8. 일본의 여성기업지원



일본의 여성기업 지원은 주로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성기업 지원정책은 중앙정부차원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다. 중앙정부차원의 여성기업 관련 정책은 주로 경제산업성과 보건국이 집행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 및 여성기업센터를 비롯하여 민간협회, 대학기관 등에서 활발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여성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여성창업 강좌 및 여성창업 콘테스트 실시 등을 통하여 여성창업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다.

## 가. 지원 조직

일본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협회, 대학 및 입법 차원에서 다양하게 여성기업 관련 지원제도가 집행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도 여성기업에 대한 일부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일본 여성기업 지원 정책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활발하다. 중앙정부차원의 여성기업 관련정책은 주로 경제산업성과 보건국이 집행하고 있으며, 경제산업성 노동성산하 여성국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

각 지자체 및 여성센터를 비롯하여 민간협회, 대학기관 등에서 활발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여성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제도를 갖고 있으며 여성창업강좌, 여성창업 콘테스트 실시 등을 통해 여성창업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는 주로 여성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창업지원 자금, 세미나 및 강연 개최, 인적 교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각 현에서는 여성을 위한 창업교육, 강연회, 교류회 등이 운영되고 있다.

### 1) 보건노동복지부(Th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의 산하 여성국 및 경제산업성(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 METI)

여성기업인과 직장 여성인을 대상으로 교육 및 네트워크, 리서치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며 지원하고 있다.

### 2) 경력개발센터

2000년 1월에 보건노동복지부 산하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창업을 위한 세미나, 멘토링, 기업 및 직장여성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 새로운 분야의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여성들이 보다 용이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위주의 교육 및

---

훈련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창업을 위한 세미나, 멘토링, 기업인 간의 네트워킹 구축 등이 포함된다.

### 3) 통산산업성

경제산업성과는 별개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금조달 및 기술 개발 등의 경영분야에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다.

### 4) 여성기업센터

각 지방자치체를 중심으로 약 130여개가 운영 중에 있으며, 여성기업 육성을 위하여 창업자금 지원, 세미나 및 강연 개최, 인적 교류 지원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여성정책 담당,상공정책 담당, 노동정책 담당 등 각 지자체의 도과에서 관련정책 연구 및 강습 실시, 강연회 및 교류회 실시, 융자 및 채무보증제도의 실시, 상담창구 설치, 매뉴얼 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문제 해결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요코하마시 여성센터는 창업 강좌, 매뉴얼 작성, 창업상담 창구 설치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참여 및 자기실현율 증가 차원의 주부층 참가자가 많았던 설립 초기에 비해 현직에 있는 여성고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원프로그램의 목적의식도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변화해가고 있다.

## 나.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 1) 여성기업가 사전승인대출 프로그램

여성기업가 사전승인대출 프로그램은 중앙정부 지원으로 여성기업을 위한 유일한 자금지원 프로그램이다. 55세 이상의 여성기업인 중 5년 이상 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출기간으로는 자금투자 목적의 경우 15년 이내(연장기간은 2년 이내), 운영자금 목적의 대출은 7년 이내(연장기간은 1년 이내)이며, 미국과 달리 담보와 공동보증인이 필요하지만, 직접대출에 한해 담보가 부족할 경우에는 일부 금액에 대해서 특별 면제가 가능하다.

## 2) 마루케이 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자금지원제도로써,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 전부터 상공회나 상공회의소의 경영지도원으로부터 경영 지도를 받아야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자금 신청은 상공회 및 상공회의소의 심사를 거쳐 추천을 받아 이루어지며 국민생활금융 공고에서 소규모사업자나 신규창업자에게 대출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경영지도원은 여성기업가에 대한 지도 및 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상공회나 상공회의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대출한도액은 550만엔이며, 거치기간은 6개월 이내로 무담보·무보증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 3) 설비자금 지원제도

설비자금 지원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여성기업인들에게 설비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 자금으로는 소요자금의 50% 범위 내에서 4,000만 엔 이하까지 대출해주는 제도로 대출 시 상환기간이 7년 이내이며, 무이자로 대출하고 있다. 단, 연대보증인 또는 물적 담보는 필요하다.

## 4) 판로지원제도

여성기업에 대한 판로개척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정부와의 계약 시 여성기업에 대한 우대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지자체 또는 민간기관에 속해 있는 다수의 여성센터에서도 여성기업인과의 계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여성기업을 위한 특별지원 제도를 설립하기 위해 정부조달(중앙 및 지방정부 포함)시 미국과 유사하게 여성기업에 5%를 계약하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각 대출 기관이 총 대출액 중 여성기업 대상 대출액으로 5%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제 전시회를 자주 개최하여 국제적으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이 전시회의 주관은 경제산업성(METI)나 일본무역협회(JETRO) 등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며, 해당 기관들을 통해 향후 전시 계약과 관련하여 여성기업들의 판로 개척에 도움을 주고 있다.

---

## 5) 교육 및 훈련 지원

일본은 창업이나 기업의 성장을 위한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이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는데, 여성기업 \*-대상 교육은 주로 ‘후생노동성의 일하는 여성을 위한 경력개발센터’에서 주관하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다. 여성들이 보다 용이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위주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창업을 위한 세미나, 멘토링, 기업인 간의 네트워킹 구축 등이 포함된다.

## 6) 멘토링 프로그램

중앙정부 차원의 멘토링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으나, 지방정부 차원의 프로그램은 다소 존재한다. 오사카 지역 개발 연구소(Osaka Industrial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의 경우 여성 대상 창업 세미나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구소 직원이 멘토로써 활약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외에도 개별적인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 소이치로 혼다, Konosuke Matsushia 가 좋은 예인데, 이들 기업의 경우도 공식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여성 기업인 대상 컨설팅 서비스 및 IT 교육은 존재하지 않고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도쿄 상공회의소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행하고 있다.

## 7) 여성기업인 네트워크

여성기업들 간의 네트워킹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이후 METI 내 Kanto District 에서는 여성 기업의 수를 늘리고, 여성기업간 네트워크 결성 및 경제발전에 있어 여성기업의 역할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차세대 여성 기업가를 위한 두 차례 토론회를 개최한 후, 매년 Japan Society of Venture Business 와 함께 여성기업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기업가들의 네트워킹 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외에 경제산업성(METI) 내 카노지역의 경우, 창업을 위한 교육과 더불어 여성 기업가들 간의 네트워킹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이후 여성기업 간 네트워크 결성 및 경제발전에 있어 여성기업의 역할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차세대 여성기업가를 위한 토론

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기업가들의 네트워킹 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 8) 여성창업지원

일본은 민간창업육성조직에서 활발하게 독자적인 커리큘럼으로 창업가를 육성시키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창업세미나는 여성창업 지원이나 여성창업자 교류 그룹 등 여성창업자에 대한 필요한 자질, 창업실현을 위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지역 내 선배 여성기업가의 체험담과 사례를 소개하여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1996년 설립된 후쿠시마 여성플라자(Fukushima Women Presidents' Plaza)에서는 여성대사 창업 세미나를 개최하여 젊은 여성기업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가족으로부터 사업을 인수받은 여성기업인 및 여성기업회장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대학 차원에서도 창업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무사시노 대학, 동경여자대학, 오차노 미즈 여대 등 다수의 대학에서는 여성기업 관련 강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호세이 대학은 일본벤처사업협회(Japan Association for Venture Business)를 설립하고 1999년 여성기업 클래스를 마련하고 있다.

## 9. 각국의 여성기업 지원정책 비교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선진국의 여성기업 관련 정책들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와 미국은 여성기업과 관련한 별도의 법을 구비하여 여성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선도적으로 여성 및 여성기업과 관련한 법-제도와 정책 등은 세계 최초로 구비하여 여성 및 소수자를 위한 매우 다양한 법체계와 함께 여성과 관련한 정책에서 약 8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국가이다. 삼나라라는 특성을 가진 영국과 일본의 여성기업 지원은 법률제정 보다는 민간주도로 여성기업 지원이 활성화되고, 그 이후 중앙정부가 관여하는 체제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유럽연합은 2009년 10월 '여성기업대사 네트워크 발대식'을

---

갖고, 여성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갖춘 여성기업의 역량강화를 통해 여성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유럽국가, 일본, 호주의 경우에는 여성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여성기업 지원정책을 세분화시키기보다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장애인, 소수인종 등)의 범주에 여성을 포함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EU·영국·독일·스웨덴·핀란드·호주·일본 등의 여성기업 관련 정책을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국가마다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내용과 방식이 다른 것은 각 국가의 정치적 특성과 사회적 분위기, 지리적 특성,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 등 다양한 변인들이 작용한 결과겠지만,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선진 각국은 법·제도의 구비 여부와 관계없이 여성기업을 국민 경제의 새로운 주체이며, 고용창출 등의 국민경제적 기여자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는 국민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여성기업을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여성기업지원에서 각국 정부는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민간조직인 여성기업센터(WBC)의 지원을 통하여 자국 내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현재, 여성기업센터(WBC)는 미국 중기청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 안내, 장기적인 훈련·자문·멘토링, 신용 및 자금 지원, 연방 정부조달 계약, 국제 거래 등과 관련된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의 경우도 자연발생적으로 조직화된 기존의 여성기업 관련 민간단체들이 서로 연계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민간단체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여 자국 내 여성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선진 각국의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은 자금지원과 같은 직접지원 형태보다는 경영자문, 전시회, 세미나, 멘토링, 기업경영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과 같은 간접지원 형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배경에는 여성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있어서 과도한 자금지원과 같은 직접지원 형태는 국제기구들에

의해서 반시장 친화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가 신용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은 간접지원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정책의 수혜범위 및 규모면에서의 자금지원은 소수기업들에 맞추어질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간접지원 형태는 다수의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원에 대한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기업가정신 고양 등과 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성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간접지원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넷째,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선진 각국은 여성기업(여성가장 창업 포함)들을 위하여 소액대출프로그램(예:Micro Credit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소액대출은 한화로 대략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내로 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다섯째, 각국은 여성기업을 남성기업과 대등하거나 우월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차원으로 다양한 시책들을 개발 및 연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과 영국은 여성이 남성보다 잘할 수 있는 분야의 개발(예 : 과학기술 및 연구 분야, IT 등의 인터넷 비즈니스)지원에 적극적이며, 이러한 성공모델을 전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각국은 미래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여성기업의 등장을 기대하고 있으며, 투자의 개념으로 여성기업에 대한 고부가가치 창출화와 더불어 경쟁 역량 강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성기업 관련 각 국가별 지원정책의 비교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75 | 여성기업 관련 지원정책의 국내외 비교 분석

구분	차이점	공통점
한국	정부 주도하에 여성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연도별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여성기업 지원사업을 실시 여성기업 확인제도의 실시 및 인증된 여성기업에 대한 판로확대 정책의 시행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여성기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고용창출 등의 국민 경제적 기여자로 인식
미국	정부기관과 민간기구 간에 유기적인 지원체계구축 여성만을 위한 전용 지원프로그램 실시 여성기업 확인제도의 실시와 여성기업제품에 대한 정부차원의 판로확대 정책의 시행 연방정부차원의 여성기업 계약프로그램 실시	직, 간접적으로 정부(지자체 포함)가 관여되어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상황

구분	차이점	공통점
EU	<p>여성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역할모델을 제공하는 여성기업대사 네트워크를 '09년 발족(22개국 250명)</p> <p>여성창업자 대상, 멘토링 지원 및 여대생대상 창업교육 실시</p> <p>유럽30개국 여성기업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원정보 제공, 우수사례 전파, 정책조언 제공</p> <p>여성기업 네트워킹 정보를 제공하는 포탈을 구축하고 여성간부비율 증대방안을 연구하는 네트워크 구축</p>	<p>여성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전시회, 세미나, 멘토링,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의 간접지원 형태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임</p>
프랑스	<p>민간조직을 중심으로 지원조직 구축</p> <p>여성기업인 간의 네트워크구축에 초점</p> <p>지역단위로 여성기업을 위한 전시회 개최 등 판로지원 실시</p> <p>여성사업가를 위한 5,000명의 비즈니스 멘토 모집 계획, 모집된 비즈니스 멘토는 여성기업인의 사업체 설립을 돕도록 교육될 예정</p>	<p>여성 소액대출(자금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p>
네덜란드	<p>여성기업의 기술발전을 위해서 전략적인 여성 인력 양성과 여성기업을 지원하고 있음</p> <p>주요 정부기관들의 효율적인 정책실행체계를 구축</p>	
스웨덴	<p>예비여성기업에게 컨설팅을 제공하는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시범사업 실시</p> <p>여성과학자협회는 이공계 여대생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시범사업 실시</p>	
핀란드	<p>운수통신분야 여성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 및 1:1일 멘토링 실시</p>	
영국	<p>직장여성기회 평등법을 개정('11.1)하여 기업은 자사의 성평등정책을 직장여성기회평등법에 의무적으로 보고(가족주거부)</p>	
일본	<p>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원체계 구축</p> <p>주로 창업을 위한 여성에 대한 교육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음</p> <p>판로지원의 경우, 정부와의 계약 시 여성기업에 의무적으로 일정수준 계약토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임</p> <p>정부차원의 세미나 등을 통해 여성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p>	



## 4부

# 여성기업 발전과제와 전략

## 제1장 여성기업 발전과제

1. 경제환경의 변화
2. 여성기업 발전과제와 전략방향

## 제2장 여성창업 촉진과제

1. 여성기업가정신의 정립과 사회적 확산
2. 여성기업의 유망창업분야 및 고부가가치 창업 유도
3. 준비된 창업유도로 성공률 제고
4. 전문 여성인력의 창업 촉진
5.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 촉진
6.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확대
7. 여성창업에 대한 홍보 강화

## 제3장 여성기업 육성과제

1. 여성기업 마케팅 플랫폼 구축 및 지원 확대
2. 여성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3. 여성기업의 네트워크 및 혁신역량 강화
4. 여성친화 전문분야로 구조전환

## 제4장 여성기업지원 인프라 확충 및 재정비

1. 여성기업관련 제도 및 법률 검토
2. 여성기업 통합 정보망 고도화
3. 여성기업 정책연구원 설립
4. 여성기업 정책자금 접근성 제고 및 공제조합 설립 운영
5.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장기 발전전략
6.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혁신전략



# 제1장 여성기업 발전과제

## 1. 경제환경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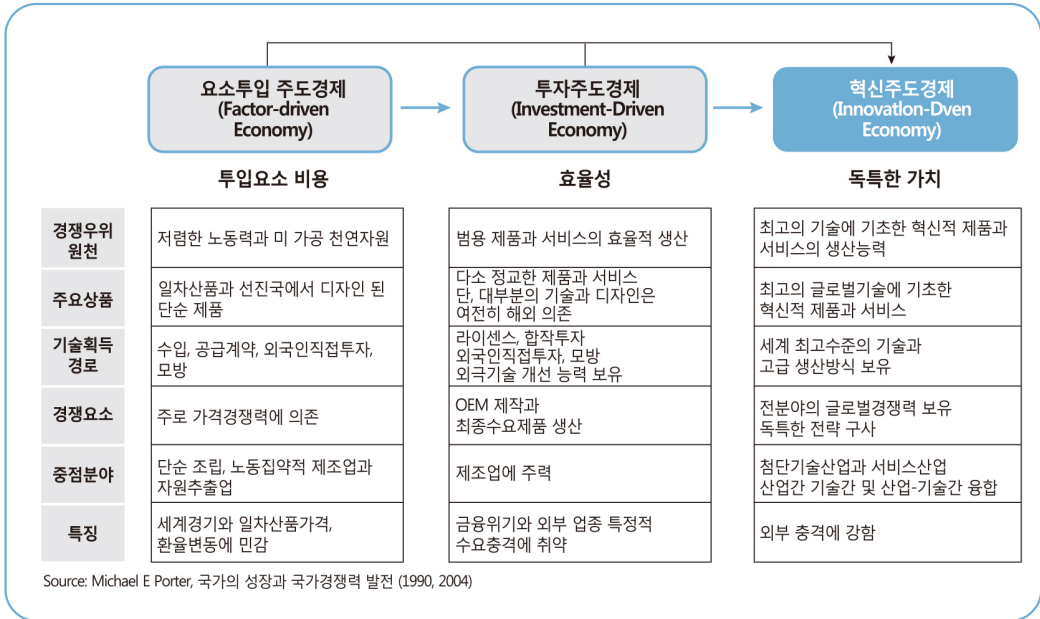
### 가. 글로벌 환경 변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는 중·장기적인 성장에 중요 요인으로 글로벌화 및 국제 분업의 진정, 신흥국들의 부상, 사업의 융복합화현상, 지식기반 경제화의 심화 등으로 인해 다양한 기업 활동의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한국경제는 성장 한계론에 봉착하여 투자부진, 성장부진, 고용감소, 소득정체, 불평등확대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첫째,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은 1981년부터 1990년도까지 8.1%를 기록하였으나 2009년에서 2013년 현재까지 3.7%로 지속적으로 하락중이다. 둘째,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수출·내수기업간, 제조업·서비스업간, 사회계층간, 소득 계층간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등이 점층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대기업 및 고성과 기업들은 유동성이 풍부함에도 신규 투자를 꺼리며 보수적 및 안정적인 기업경영으로 기업가 정신이 쇠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요소주도형 경제(factor-driven economy)에서 혁신주도형(innovation-driven)경제로 이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국가의 경쟁우위를 창출하기 위해서 기존의 Catch-up 전략을 탈피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여성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경쟁력을 키움으로써 새로운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 4-1 | 신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함께 여성기업의 기여도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창업과 여성기업 활동 지원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여성기업 지원 정책의 틀은 1999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기업 지원법)이 제정됨으로써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후 13여 년 동안 여성기업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고, 고용창출 규모도 성장하는 추세로 국가 경제성장에 여성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여성기업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여성창업과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여성기업을 일반 중소기업보다 우대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해왔던 것으로 여성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을 지원한다거나 여성기업제품에 대해 공공구매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같은 정책은 정부가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사회적 불평등과 불만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정부가 여성을 약자로 취급하여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여성

기업 육성을 이룰 수 없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정부가 가부장적 방식으로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지원에 그칠 뿐, 그 이상의 효과는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sup>66)</sup>

이에 따라 일방적 지원방식의 보호주의는 여성기업의 성장보다는 안주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향후 정책방향은 기존의 보호·지원에서 경쟁·육성 관점의 경쟁력과 자생력이 있는 여성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정책으로 선회할 필요가 있다.

## 2. 여성기업 발전과제와 전략방향



여성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기업의 특성과 차별점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기업의 발전방향과 전략과제는 본질적으로 여성 및 여성기업을 둘러싼 외부환경 변화와 내부 환경 간의 적합성(fitness)을 가져야한다.

그동안 여성기업 지원정책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선입견을 시정하는 한편, 여성을 사회적 취약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로 포착함으로써 많은 여성 기업들에게 균등한 혜택이 제공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여성 기업의 역할이 중요해 짐에 따라 여성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의 성장지원의 정책적인 패러다임(paradigm)전환이 요구된다.

서머스교수는 경제 불황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궁극적인 해답은 조지프 슈페터(J.A.Schumpeter)의 창조적 파괴와 기업가 정신에 있다고 하였다. 현재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도 혁신, 곧 창조적 파괴와 다름 아닌 것이다.

### 1)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방향성

여성기업 지원정책은 이 같은 기본적인 방향성에 바탕을 두고 혁신형 고부가가치형 창업 활성화, 혁신적인 여성기업의 육성 및 글로벌 강소기업형 여성기업의 육성, 그리고 혁신지향적인 여성창업과 여성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할 인프라와 생태계를 조성하

66) 김정화, 여성기업 육성에 관한 법제연구, 2011

는 방향으로 정책적 주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은 여성인력의 보유한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여성창업과 여성기업인들의 경제활동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양성평등 구현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의 주체로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림 4-2 | 여성기업 발전과제와 전략



이같은 여성기업정책 방향에 따라 여성기업의 창업활성화와 여성기업의 성장지원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분야별로 다음과 같은 전략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 가. 여성창업 촉진

여성의 창업촉진은 여성기업 정책의 한 축으로 창업에 필요한 자금지원이나 정보제공, 교육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성창업에 대한 장기적인 방향이나 창업인프라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여성기업은 성장성이 낮은 업종이나 음식점업, 숙박업과 같은 업종에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사업내용이 많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다.

여성창업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업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창업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정부는 개인이 창업하겠다는 것을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겠지만, 한계가 드러나 있는 업종에 진입하려는 창업자에게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향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의 창업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지원을 강화하여 여성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더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기업이 강점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된 감성·지식서비스 분야와 정부의 신성장동력 전략사업, 지역연고사업 등에 대하여 예비여성창업자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모델을 제시하고, 창업성공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것도 필요하다.

중앙부처 및 각 지자체에서는 여성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지원하고 있다. 보육실에 대한 지속적인 확장과 더불어 여성창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갖춘 창업 상담사를 배치하여 종합적인 상담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 여성인력의 창업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높고, 고용창출 효과도 높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전문 여성인력에 대한 창업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30~40대 여성들은 출산과 육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육아·보육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

그리고 여성가장은 심리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창업자금 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창업초기 사업 타당성 검토를 지원하고, 사업초기 운영안정화를 위한 지원정책이 병행되면 여성가장 창업은 조기 경영안정화가 가능할 것이다.

## 나. 여성기업 육성

여성기업은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선 확보 등 마케팅관리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해 홍보 및 광고 관련 지원, 시장조사 및 교육지원, 신제품 기획 및 개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현재 창업보육센터 운영 및 창업교육, 창업경진대회, 여성기업의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센터로서의 역할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성기업의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신제품 기획단계에서부터 판로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신제품 개발 지원, 감성중심의 서비스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리노베이션 지원, 공공시장 판매확대를 위한 공공구매 조달등록 및 입찰지원 등의 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수출여성기업육성 사업 중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은 여성기업들에게 있어 해외시장 개척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시간과 비용상의 제약 등으로 많은 여성기업들이 참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3D 사이버 전시장, 화상회의 등을 구축하여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현지 직접 마케팅에 어려움이 있는 수출초기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타겟 국가 선정과 시장조사,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상담지원까지 맞춤형 토털 전문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여성기업들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참여는 소기업보다는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더 많이 필요해지고 사업에 미치는 영향도 더 커지는 점을 고려할 때, 중소형 여성기업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여성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자금 등의 직접적인 지원도 필요하나, 경영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연수 등의



지속적인 지원 확대 또한 필요하다.

현재 중소기업청은 전문가가 중소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처방전(해법)을 제시하며 치유를 위한 정책을 연계지원하는 중소기업 건강진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기업들도 건강수준별 진단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맞춤형 치유와 정책연계가 필요하다. 특히 부가가치가 낮고 쇠퇴기에 접어든 여성기업은 여성친화 전문분야로 구조개선을 하여 미래형 기업으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앙부처 및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기업인 경영연수, 멘토링, 여성리더십 교육 등을 더욱 확대하여 여성기업인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다. 여성기업지원 인프라 확충 및 재정비

여성기업의 성장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정책 근거가 될 수 있는 정확한 분석 자료와 이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종합적인 정책수립 및 조사·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여성기업의 발전적 미래상 제시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이 부재한 상황이며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한 법적 제도나 규제 및 정책 등이 미비한 현실이다. 따라서 여성창업 관련 정책의 수립, 여성기업의 미래전략과 비전 제시, 여성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 경쟁력 향상 등의 역할을 수행할 여성기업정책연구원(가칭) 설립·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성기업정책연구원(가칭)은 중소기업연구원에서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는 여성기업의 다양한 실태 조사와 다양한 정책연구를 함으로써 1차적으로는 여성기업정책을 지원하는 정부와 여성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2차적으로는 여성기업 활동을 하는 관련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지원하고 3차적으로는 전 국민에게 경제발전을 통한 사회발전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한 여성기업의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여성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각종 자금대여와 보증 등을 시행하는 공제조합의 설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여성기업 정책의 기초가 되는 것은 여성기업에 대한 정확한 현황자료이다. 지금과 같이 2년마다 실시하는 여성기업 실태조사만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여성기업의 창업 현실을 정책에 반영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여성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조사체계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기업 정보를 한 곳에서 파악하고 여성기업 관련 지원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정보망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성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해에는 지역별로 여성기업 업종을 세분화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지역 내 유망업종에 대한 현황파악 및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성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여성기업 스스로도 목소리를 높이고 필요한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세계여성경제인대회, 아시아 여성경제인 글로벌 포럼과 같은 다양한 국제행사를 개최하여 한국여성기업의 위상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일을 위해서는 여성기업의 구심점이 되는 강력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기업 대표 단체는 법률적 지위가 확인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뿐이며, 협회의 뿌리는 19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연륜도 깊다. 향후 협회의 조직과 사업을 더욱 체계화하여 여성기업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순수 여성기업들이 여성기업으로서 보다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행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기업의 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과 더불어 여성기업의 인증가치를 제고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지원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성창업 적합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 및 보급기능을 강화하고, 여성기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 제2장 여성창업 촉진과제

### 1. 여성기업가정신의 정립과 사회적 확산

#### 가. 배경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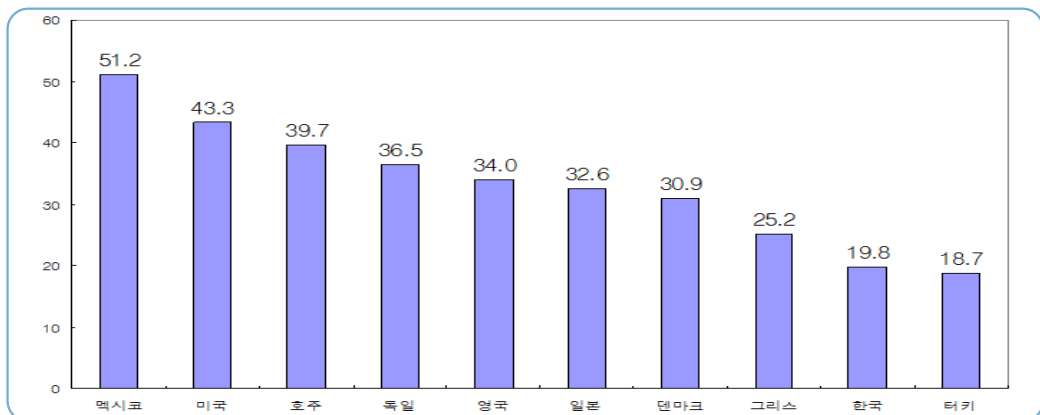
전 세계는 현재 고령화, 저출산 및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 산업구조와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 활동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경제의 활력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창업기업들이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최근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가 높아지면서 여성기업 활동과 여성창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사업체 수에서 여성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38.5%(117만 8,287개)에서 2012년 38.9%(130만 5,148개)로 연평균 3.5% 정도 증가하였으며, 신설법인 중에서 여성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21.7%(1만 3,098개)에서 2012년 22.6%(1만 6,747개)로 연평균 13.9% 증가하였다(중소기업청, 2013).

그림 4-3 | OECD 주요 국가의 여성창업 의향률 현황(2010년)

(단위 : %)



※자료 :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11.

---

우리나라도 여성 창업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OECD 국가와 비교한 우리나라 여성의 창업의지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도 한국 여성의 기업가 자질 비율은 19.8%로 멕시코 51.2%, 미국 43.3%, 영국 34.0%, 일본 32.6%, 그리스 25.2%와 비교하여 매우 낮게 나타났다(중소기업청, 201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전체 산업에서 여성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창업가의 특성 또는 여성기업가 정신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기업가 정신은 주도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고, 가치 창출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미래지향적 관점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기회를 모색하는 원동력으로 창업성공에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이다. 그러므로 여성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여성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여성 창업자들의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으로 여성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이슈화하여 여성창업에 대해 긍정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성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국가의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여성기업가를 대상으로 불굴의 도전정신을 강화시켜 여성창업지원을 질·양적으로 늘려야 한다. 또한 여성이 보다 더 접근하기 쉬운 개방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 친화적 창업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 나. 추진과제

- 1) 여성 기업가정신의 사회적 확산과 이슈화
- 2) 여성 기업가정신의 긍정적 이미지 부각
- 3) 여성 기업가정신 연구 활동 지원 확대

### 1) 여성 기업가정신의 사회적 확산과 이슈화

정부는 고령화, 청년실업,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고용 없는 성장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해 창조경제와 기업가정신을 활성화함으로써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청년창업, 시니어창업, 1인창조기업의 창업활동을 지원하며 각각의 대상에 맞는 맞춤형 창업지원 정책을 내놓고 사회적으로 각각의 이슈들을 크게 부각시켜 청년과 시니어 그리고 1인기업들의 창업활동을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다양한 세미나와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사회·제도적으로 양성평등이 강조되고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정책들이 만들어졌음에도 육아 등 여성의 책임으로 인식되는 가족 내 역할에 대해 사회적 지원과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창업은 개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다른 계층의 창업에 비해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까지 관습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남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여성들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대해 사회적으로 낮은 인식수준 상태로 여성들의 창업활동 및 기업가정신의 발휘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 참여는 국가경쟁력의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우리나라의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위해 여성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활동 참여는 필연적인 대세이다. 때문에 남성과 다른 여성 고유의 기업가정신과 창업 및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 여성들의 남성과 다른 차이에서 오는 창의성과 에너지를 기반으로 여성의 독자적인 기업가정신을 정립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의 특성과 가치가 반영된 여성 기업가정신을 연구하고 사례들을 수집하여 그 원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 기업가정신의 정립과 사회적 확산을 통해 여성 기업가정신의 이미지와 가치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2) 여성 기업가정신의 긍정적 이미지 부각

여성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할 당시 주된 롤모델(role model) 또는 멘토(mentor)가 누구였는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미 성공한 기업가라는 응답이 3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배우자(30.3%), 부모 및 친인척(11.0%), 대중 매체에서 소개되는 기업가 사례(1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들이 성공한 기업가가 되는 꿈을 가지고 도전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롤모델은 성공한 기업가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성CEO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제대로 성공을 이룬 여성 기업과 여성 기업가들의 사례를 확보하여 공유함으로써 여성 스스로 여성리더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신뢰 및 자부심을 갖도록 만드는 노력이 중요하다.

표 4-1 | 창업 당시 주된 롤모델 또는 멘토

(단위 : %)

		부모·친인척	배우자	성공한 기업가	대중매체 소개기업가	기타	합 계
전체		11.0	30.3	38.8	10.5	9.4	100.0
창업 연도	2006년 이전	9.7	39.8	24.7	14.0	11.8	100.0
	2006~2009년	14.2	26.0	37.8	13.4	8.6	100.0
	2010년 이후	9.4	28.3	46.7	6.7	8.9	100.0
사업 분야	제조업	11.6	35.5	35.2	10.3	7.4	100.0
	지식기반 서비스업	9.1	14.1	49.5	11.1	16.2	100.0

※ 자료 : 여성지식기술창업실태 및 활성화방안(양현봉), 산업연구원 2013

## 3) 여성 기업가정신 연구 활동 지원 확대

이제까지 여성기업과 여성 CEO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성은 새로운 경제활동의 주역으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게 하는 주요 인재의 관점으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최초 여성 대통령의 취임을 통해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활동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나 아직까지는 관련 자료들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많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여성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경제활동 참여의 인프라 등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여성창업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제반여건을 제시해야 한다.

## 2. 여성기업의 유망창업분야 및 고부가가치 창업 유도

### 가. 배경 및 필요성

여성기업의 주요 경영지표를 보면, 생산성은 종업원 1인당 매출액 기준으로 일반 중소기업은 231.5천원에 비해 여성기업은 51.5천원으로 약 4배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의 연도별 주요 경영지표

(단위:% 배천원)

구분	연도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생산성
		매출액대비 순수익률*	부채비율	자기자본 회전율	종업원1인당 매출액
중소 제조업	2008년	3.26	155.57	3.0	219.043
	2009년	3.97	148.13	2.7	231.497
	2008년대비증감율	21.8%	-4.8%	-10.0%	5.69%
여성 기업	2006년	12.3	40.5	1.7	44.870
	2008년	14.9	40.2	1.5	59.500
	2010년	22.1	52.8	0.9	51.470
	2008년대비증감율	48.3%	31.3%	-40.0%	-13.5%

※ 자료 : 중소기업청, 2010년 중소기업실태조사

또한 2013년 여성기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창업 후 31.4%가 3년이 넘도록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여성사업체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여성대표자 사업체수의 비중은 2012년 37.6%로 다소 증가하였다. 그러나 많은 여성기업들이 숙박 및 음식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와 도소매 등 부가가치가 낮은 노동력 중심의 산업에 편중돼있고, 5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사업체가 92.3%로 비제조 서비스업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 여성대표자 사업체수 구성비

(단위 : % %p)

산 업	여성대표자 사업체수 구성비		
	2007년(A)	2012년(B)	증감차 (C=B-A)
전 산 업	36.5	37.6	1.1
A 농업, 임업 및 어업	4.6	9.3	4.7
B 광업	6.8	10.6	3.8
C 제조업	17.3	19.0	1.7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5	3.1	1.6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1.6	14.2	2.6
F 건설업	10.4	14.5	4.1
G 도매 및 소매업	39.3	40.9	1.6
H 운수업	3.9	5.5	1.6
I 숙박 및 음식점업	66.6	64.2	-2.4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3.6	15.2	1.6
K 금융 및 보험업	10.2	13.2	3.0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28.4	32.3	3.9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0.0	12.7	2.7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1.5	24.1	2.6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3.1	4.7	1.6
P 교육 서비스업	53.1	53.7	0.6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7.8	44.8	7.0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1.2	42.1	0.9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39.2	42.1	2.9

※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3



이처럼 많은 여성 기업이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영세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경영능력이 취약한데다가 창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창업 업종 선택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해 여성의 창업역량 극대화를 위한 교육과 함께 여성유망 창업분야와 여성창업성공모델에 대한 연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이를 예비창업자에게 제시하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창업정책은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국가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의 필요에 의해 지원되고 있다. 때문에 사회적으로 부가가치가 크고 시장기회가 풍부한 분야인 녹색기술, 지식서비스, 글로벌 창업 등 다양한 이슈들이 부각되면서 창업관련 정책기관들은 이러한 이슈들을 반영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다.

2013년 여성백서에서 제시된 여성창업 적합분야는 사회·경제적 트렌드와 기술적 환경을 고려하여 여성창업자에게 유망분야를 제시하기보다 여성창업자의 개인적 특성과 성향에 맞춰 창업 적합분야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활발한 사회현실을 반영하여 도전적 성향의 기회를 추구하는 기회형 여성창업자를 고려한 고부가가치 유망창업분야의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생활형 여성창업 적합분야 등 두 분야로 이원화해 여성유망창업분야에 대한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나. 주요 선진국의 유망창업아이템 사례

### 1) 미국

Forbes(2008)는 민간 데이터를 기초로 고수익 사업 10개와 저수익 사업 10개를 분석한 바 있는데, 미국의 경우 회계, 법률, 디자인, 의료 및 병원 등의 지식서비스 창업 분야는 13.6% 내지 25%의 세전 평균수익률을 나타냈으며, 소매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음료 빵 및 떡 제조업, 소매업 및 숙박업 등 생계형창업 분야는 0.26%내지 -7.2%의 세전 수익률을 나타내는 저수익 산업으로 밝혀졌다. 포브스의 연구결과는 전문적인 지식기반 창업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저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여성창업 유망 아이템들도 저성장기에도 번성하는 창업 아이템들이 소개되고 있다. Powerhomebiz.com에서는 미국의 여성들이 어렵지 않게 틈새분야에서 재택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아이템들을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다.

표 4-4 | 고수익 및 저수익 창업분야의 평균수익률 비교

	고수익 창업	평균 수익률	저수익 창업	평균 수익률
1	회계서비스 (Accounting Services)	25.0%	공동체 관리시설업 (Community Care Facilities)	-7.2%
2	법률서비스 (Legal Services)	21.6%	기타 지원서비스업 (“Other Support” Services)	-2.6%
3	치과서비스 (Dental Services)	20.9%	음료제조업(Beverage Manufacturing)	-2.2%
4	특수 디자인서비스 (Specialized Design Services )	17.6%	부동산관련서비스업 (Real Estate Related Services)	-2.1%
5	기타 건강서비스 (“Other” Health Practitioners)	17.5%	빵 및 떡 제조업 (Bakeries And Tortilla Manufacturing)	-0.9%
6	외래환자관리센터 (Outpatient Care Centers)	16.9%	오락 및 레크리에이션서비스 (Amusement and Recreation Services)	-0.9%
7	보험중개인 (Insurance Brokers)	15.9%	자동차부품제조업 (Motor Vehicle Parts Manufacturing)	-0.7%
8	병의원 (Physicians’ Offices )	15.8%	특수소매업 (Specialty Retailers)	-0.5%
9	의료 및 진단실험실 (Medical And Diagnostic Labs)	15.3%	주류소매업 (Beer, Wine And Liquor Retailers)	-0.18%
10	신용중개업 (Depository Credit Intermediation)	13.6%	여행자 숙박업 (Travelers’ Accommodations)	0.26%

※자료 : Forbes. com. 2008.

| 표 4-5 | 불황기의 재택 창업유망 아이디어 15선

	아이템	내용
1	식품비즈니스 (Food Business)	음식은 불경기 동안에도 강하게 존속하는 비즈니스의 일종임. 경기가 나빠서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요리를 해먹더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셔야 할 필요가 있음. 불황기 음식 비즈니스의 핵심은 고객들의 예산삭감에 맞추어 식품 공급자의 상품의 적합성을 확보하는 것임.
2	재무자문 재택비즈니스 (Financial advisor home business)	퇴직금 감소, 부채증가, 투자수익감소 등 혼동과 불안의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지 가이드를 필요로 함. 소기업 경영자들은 예기치 않은 재무적 제약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문이 필요하며, 가계와 개인들은 새로운 예산 현실에 어떻게 재무관리를 해야하는지, 또한 은퇴투자자들은 어떻게 자기 자금을 보호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해야하는지 자문을 필요로 함.
3	홈 스테이징 (Home staging)	홈스테이저는 가구 배열, 조경관리, 심지어 악취제거 등 부동산 매수인들에게 집이 빨리 팔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전문가를 말함. 부동산 매도인들은 자신의 재산을 더욱 매력적이게 하고 매수인들을 찾는데 요구되는 모든 도움을 필요로 함.
4	자동차수리업 (Auto Repair and Maintenance)	불황기에는 사람들은 수익이 증가할 때까지 신차 구매를 늦추게 되며, 보유한 자동차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자동차 수리점에 돈을 지출하므로 자동차 수리업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함.
5	친환경 홈 비즈니스 (“Green” Home Businesses)	제조에서 패션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이 친환경적인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친환경제품에 대한 선호가 고객들의 소비심리 속으로 스며들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제품(서비스)들이 증가하고 있어 비즈니스 기회 증가.(예 : 친환경 유기농제품 등) 예컨대, 기업 폐기물처리 컨설팅은 기업이 어떻게 폐물 처리를 능률적으로 다루고, 그들의 폐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처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지 자문을 제공하는 성장 분야 비즈니스
6	가상지원사업 (Virtual Assistant)	가상지원은 숙련된 전문가들이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온라인 또는 이메일로 행정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 가상지원 사업은 기업들이 원가를 절감하고 일부 기능을 아웃소싱함으로써 증가하고 있음. 가상지원 사업은 행정지원을 제공하며 또 비즈니스 기업 임원 및 기타 정규직을 고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함.

	아이템	내용
7	노인돌봄서비스 (Eldercare)	고령화 베이비부머세대은퇴 등으로 성인 돌봄 서비스 등이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비즈니스 창업기회가 됨 하지만 노후를 퇴직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등 수익감소 등으로 어려울 수도 있음.
8	온라인비디오제작 (Online Video Production)	인터넷을 통해 비디오를 보는 것이 다반사가 되고 있으며, 많은 인터넷사용자들이 비디오 공유사이트로 가서 좋아하는 쇼나 비디오를 교환해서 보는 행태들이 증가하고 있음 Youtube같은 광고기반 비디오사이트가 증가하면서 비디오제작자들도 광고에 대한 View/Click당 지불받고 있음
9	화장품탐닉 (Cosmetics&little Indulgences)	불황기에도 화장품수요는 강력하게 존속하며, 여성들은 립스틱과 파우더를 구매하고 탐닉하는 것으로 보이며 화장품사업은 불황기 내성 사업으로 분석됨
10	거래지원 (Trading Assistants)	불황기에는 현금 확보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 온라인 경매 사이트인 e-Bay에는 한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의 아이템을 팔수 있도록 지원하는 e-Bay Trading Assistant가 있는데, Trading Assistant는 아이템을 사진 찍고, 상품설명을 적고, e-Bay에 리스트를 올리는 등 모든 판매를 지원하면서 판매 가격당 커미션 수익을 올림
11	쿠폰 및 세일사냥 (Bargain hunting and coupon websites and blogs)	세일 쿠폰사이트 사냥은 불경기는 물론 회복기에도 수요가 강력함. 전형적인 예는 세일사냥 또는 사람들에게 쿠폰, 할인 등의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비즈니스
12	블로그 광고 (Blogs monetized by ads)	재택근무를 통해서 돈을 버는 하나의 방법은 블로그를 만들어 광고를 클릭하게 함으로써 수익을 올리는 방법
13	재택 프랜차이즈 (Buy into a home-based franchise)	경기에 영향을 덜 받는 비즈니스로 Home-based Franchise사업이 가능함 환경친화적인 프랜차이즈사업이 큰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함.
14	방문판매 (Direct Sales)	Direct sales사업은 불경기와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도 높은 판매력을 보여줌 대표적인 예가 Mary Kay또는 Avon으로부터 비타민으로부터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판매

	아이템	내용
15	재택기반 학습지도 (Home-based Tutoring Business)	불경기에도 재무적 상황에 관계없이 교육분야는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분야로서 Online 또는 Offline 강의를 유력한 창업 기회가 될 수 있음

※ 자료 : www.powerhomebiz.com, 2014

## 2) 영국

영국의 유명 창업 사이트인 Startups.co.uk에는 창업을 하고자하나 이용할만한 창업 기회가 불확실한 경우 예비창업자에게 다양한 소규모 창업아이디어 등을 제공함으로써 여성 및 남성 창업자들의 창업 아이디어 창출에 영감을 제공하고 있다.

Startups.co.uk는 2014년 유망 창업 아이디어를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 창업사이트의 특징은 영국에서 유행하는 문화와 비즈니스 트렌드를 면밀하게 분석, 이러한 트렌드가 창업 아이디어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비교적 상세하게 소비 및 문화 트렌드와 창업트렌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표 4-6 | 2014년 유망 창업아이디어

	아이템	내용
1	소규모 양조장 (Microbrewery)	미국의 생맥주 열풍에 힘입어 영국에서도 소비자들의 호응에 따라 소규모 양조업이 성장하고 있음 2017년까지 주류산업이 45조파운드 규모로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분야 새로운 사업기회로 부상
2	개인트레이너 (Personal trainer)	비만위기가 가중되고 있으나 피트니스시장이 3조파운드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건강관리와 비만관리시장 둘다 개인트레이닝사업에 연료를 제공하고 있음. 올림픽메달리스트인 Victorian Pendleion선수가 개인트레이너가 되겠다고 선언
3	가상지원 (Virtual assistant)	온라인시장이 커지고 있으며, 2018년까지 5조달러 규모로 성장이 예상됨. 점점더 많은 전일제 지원자로부터 온라인 지원자로 전환되고 있으며 2014년은 가상지원자가 배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

	아이템	내용
4	틈새시장가격비교 사이트 (Niche Price Comparison Website)	소비자들은 모든 것에서 최선의 가격을 원하며, 틈새시장 가격비교 사이트는 2014년 큰 비즈니스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 시장규모는 약 1조 파운드 규모에 육박 전망
5	소형컴퓨터 (Raspberry Pi Accessories)	Raspberry Pi Foundation이 만든 신용카드 크기의 소형PC인 Raspberry Pi Microcomputer가 주목을 받고 있음 현재 200만대 이상이 판매됐으며, Google은 물론 언론과 공공의 주목을 받고 있음
6	빅토리아시대 복고풍비즈니스 (Victorian-themed Business)	Selfridges, Sherlock Homes 등의 인기에서 고무된 빅토리아시대의 부흥을 경험하고 있으며, 빅토리아 시대의 낭만주의가 박제술 패션 및 결혼 등 분야에 걸쳐 확산되고 있음 유명 디자이너 마르크 자콥스의 봄 컬렉션도 빅토리아 시대에서 영감을 얻음
7	BYOD IT 컨설턴트 (Independent BYOD Consultant)	비즈니스가 점점 IT전문분야로 변하고 있으며, 특히 'Bring Your Own Device(BYOD)트렌드가 부상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 전문화된 IT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8	모바일 음식제공업 (Mobile Catering)	모바일비즈니스 사업의 활성화에 따라 모바일 상에서의 음식 주문 어플리케이션 등 스마트폰을 활용한 다양한 모바일 음식제공업이 성장하고 있음
9	블로그 비즈니스 (Blogging Business)	전혀 새로운 사업 기회는 아니지만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블로그로 돌아와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블로그 비즈니스가 여전히 새로운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10	데이터 분석서비스 (Data Analytics)	지난 2년간 생성된 전체 웹 데이터의 90%를 차지하는 Big Data의 부상으로 공공정보 개방을 포함한 빅데이터의 의미를 찾는 비즈니스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 빅데이터를 사업화 하기에 역량 있는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것으로 분석
11	가상현실게임개발 (Oculus Rift game development)	2014년 후반에 세계 최초의 가상현실 디바이스인 "Oculus Rift"의 등과 같은 가상현실 등의 소프트웨어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

	아이템	내용
12	친환경창업 (Cleantech business)	2050년 인구는 약 5조명을 초과하고 천연자원 및 환경수요가 더욱 명백해짐으로써 정부는 예비창업자들에게 환경 친화적인 창업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전망돼 창업생태계 변화 예상
13	지역공동작업사무실 (Regional coworking office)	창업 클러스터가 영국 전역에 걸쳐 부상하고 있으며, 런던의 맨체스터, 뉴캐슬, 브리튼 등이 기술혁신을 위한 창업 공동작업의 주요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
14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Boutique care home)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 등으로 인해 전문적인 가정돌봄 서비스가 현실화 될 것으로 기대됨

※ 자료 : Startups.co.uk, 2014

4) 일 본<sup>67)</sup>

현재 일본 창업시장의 키워드(Key Word)는 절약, 건강, 환경이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건강은 일본 내에서 히트 창업테마로 부각되고 있다. 일본프랜차이즈협회에서 선정한 일본 내 여성창업 관련 틈새시장(혹은 소상공인) 사업아이템에 대한 Top 10은 다음과 같다.

| 표 4-7 | 2008년 일본의 여성창업 아이템 Top 10

연번	아이템	내용
1	천연 공정 식품 Nactory (Natural + Factory- 천연 공정)	천연 공정 식품 사업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천연재료를 사용하고 천연공법으로 식품을 만들어 유통하는 사업임
2	자연 레스토랑	자연 레스토랑은 요리를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닌 음식에 대한 안심감을 제공한다는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함 특히, 일본 전역에 건강식 레스토랑을 전개하고 있는 '가키 야스후텐'에서는 몸속의 독소를 빼내는 정화 방법인 디톡스(Detox)요리가 유행하고 있음 대체로 창작요리를 내세우는 이 음식점들의 가격은 대중음식점 가격보다 2배 가까이 되지만 고객이 꾸준히 늘고 있음

67) 이정섭,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진국의 여성창업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 방안 연구, 2008

연번	아이템	내용
3	3R비즈니스 (Reduce-감약, Reuse-재이용, Recycle-재활용)	방만한 소비 풍조에서 검소한 생활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반영한 사업모델로서 새로운 창업분야로 주목받고 있음 구두, 가방 등 피혁제품을 리폼하는 업체인 '지오텍'이 대표적이며, 이밖에도 신간 및 중고서적, 주얼리 명품 등을 대상으로 중고를 활용하는 서비스업이 활발하게 운영 중에 있음
4	라이프 코디네이터	라이프 코디네이터란 전문직의 젊은 층과 중장년층, 실버층을 고객으로 한 관광·레저·여행 등의 플랜을 제공해주는 직업임 역사, 문화 등 테마를 주제로 한 투어상품(여행가이드, 여행상품)이 컨설턴트를 통해 판매되며, 특히 고객맞춤 설계로 서비스를 강화한 것이 강점임
5	실내 생태 정원사업	콘크리트 아파트, 빌딩 등에서 생활하는 현대인에게 실내에서 자연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100% 자연에서 채취한 원료로 한 에코럭셔리 스파 및 자연 그대로의 생태 시스템의 실내 정원을 설치해주는 사업임
6	자동차 외형 복원사업	자동차의 외형을 수선해 주는 아이템으로 일본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으며, 자동차를 광택 내고 흠집을 제거하고 유리를 복원한다든가 부분용접, 범퍼수선이나 차 실내 클리닝 등이 이에 해당됨 친환경적인 사업을 강조하며 향후의 트렌드에 부합하고 수입품 위주의 장비를 사용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7	외국인 생필품 전용 쇼핑몰	다민족, 다문화 시대에 발맞추어 일본 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외국인을 위한 생필품 및 도서 콘텐츠 등을 온라인으로 공급하는 서비스임 본 사업은 총 4만여 가지의 아이템을 미국 또는 유럽 현지에서 수입하여 유통하고 있음
8	네추럴 테라피 Salon	가격과피형 피부관리실을 비롯하여 식이요법과 특수 개발한 운동을 결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여성전용 피트니스클럽(예 : 버터플라이)이나 남성 피부관리와 체형관리, 탈모관리해주는 남성 뷰티클럽(예 : 픽시레벨) 등 외모를 가꾸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뷰티사업을 말함
9	릴렉스 Café	만화, 온라인 게임, 족욕, 간단한 마사지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단순한 쉼터 이상의 문화공간 창출사업 아이템으로, 카페에는 고객의 필요에 맞추어 전실 개별 부스, 전석 하이스펙 PC 등이 구비되어 있음



연번	아이템	내용
10	요리 쿡 홈메이드	혼자서 아이를 돌보는 아버지를 위한 건강 이유식과 맛벌이 및 노년부부를 위한 홈메이드 요리 등을 제공하는 사업임

## 5) 중 국

중국 여성연합에서는 2009년 여성에게 적합한 창업업종을 전국단위로 공모하여 여성 적합 정도, 투자자본, 창업 용이성, 성장전망 등을 평가한 후 여성창업 유망업종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선정된 3개 분야 8개 유망업종은 다음과 같다.

| 표 4-8 | 2009년 중국의 여성창업 유망업종

연번	업 종	내용
1	여성전용세탁공정	전국여성경제인연합 및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운영 주체를 조직하여 전국세탁기계협회와 관련기술위원회의 협조로 여성만을 위한 세탁 사업을 진행
	수공친환경세탁 체인점	무료 창업교육을 지원하여 3~5일 교육만을 수료하면 관련기술 습득이 가능함 환경 및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세제를 사용한 세탁사업으로, 체인점 공통의 전용 세탁설비와 부품, 원료를 사용함
2	컬러열쇠전문점	요즘 유행하는 컬러열쇠는 생필품이지만,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장식용품으로도 인기가 높은 상품으로 하나의 열쇠를 만드는데 5분 정도면 충분함 창업을 위해서는 3시간의 기술교육이 필요
	꽃공예전문점	꽃공예전문점은 여성의 세심한 미적 감각이 요구되는 업종으로, 각종 꽃꽂이 이외에 꽃을 이용한 도자기 공예품의 취급도 가능함 최근에는 일반인 대상의 교육 강좌를 열어 DIY 제품을 판매하는 형태가 유행하고 있음
	디지털사진관	디지털카메라, 인화기, 컴퓨터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디지털이미지를 출력해주는 사업으로, 소규모 인원 및 간단한 컴퓨터 조작능력만으로 창업이 가능함

연번	업 종		내용
		선물포장업	기맹점 방식으로 운영하며, 선물이 깔끔하고 세련되게 보일 수 있도록 포장해 주는 사업
3	세차업	이동세차기업	일반 주차장 내에 간편하게 세차기구를 설치하여 자동차를 세차하는 사업으로, 설비투자 이외의 운영 경비 소요는 매우 적음
		생활용수 세차업	생활하수 및 빗물 등 생활용수를 이용하여 세차업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1톤의 생활용수로 약 20대의 세차가 가능함

#### 다. 여성창업 적합분야 발굴시 고려사항

최근 기술의 수명주기가 짧아지고 유망 사업 분야가 급변하는 환경에서 창업기업의 성장 방향과 목표는 기업 생존에 중요한 이슈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앞으로 여성창업에 대해서도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추진되는 고부가가치 지식·기술 창업에 대한 지원과 교육이 강조되고 창업자의 기업경영역량 개발을 통해 경쟁력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들의 창업 및 기업가정신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한편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핵심 산업과 창업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여성창업의 가이드를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창업성공에 필요한 기업가정신과 유망창업 분야에 대한 제시와 창업교육이 창업역량개발을 목표로 여성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여성에 맞게 새로 개발하되 일반적인 창업지원 목표와 패러다임에서 크게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선진국의 여성창업 동향을 살펴본 결과 여성창업은 소규모·소자본 창업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 여성들은 주로 설비투자나 기술개발(R&D)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도 여성의 섬세함·감성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에서 창업업종을 찾는 경향이 있다. 또한 국·내외 창업 트렌드를 보면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불황으로 알뜰 소비자를 위한 가치소비, 스트레스 해소 및 체험형 관광, 친환경, 안전과 보안 등이 창업의 중요한 테마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여성창업 흐름을 고려할 때, 향후 여성창업 촉진을 위한 적합분야를 발굴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 여성 적합분야 발굴시 고려사항 >

- 여성의 특성인 섬세함·부드러움 등 여성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를 다양하게 검토
- 현재 유행하는 업종이 아니더라도 정부의 정책방향, 미래사회, 수요 트렌드 등의 기회를 포착하여 수익모델화가 가능한 분야를 포괄적으로 검토

### 라. 추진방안

- 1) 여성창업 유망분야 제안
- 2) 생활기업형 여성창업 표준모델 개발
- 3) 고부가가치 여성창업분야 연구와 지원 확대
- 4) 고부가가치 여성창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멘토링

#### 1) 여성창업 유망분야 제안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성창업 적합분야를 찾고, 차별화된 틈새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외 여성창업 특성과 여성창업자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 여성창업 적합분야로 생활기업형 여성창업을 제안한다. 생활기업은 생활 속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정의한다. 생활기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요약하여 볼 수 있다.

### < 생활기업의 특징 >

- 가치소비 추구경향을 반영한 기업 : 인디비주얼 패션(Individual fashion)<sup>68</sup>, 맞춤형 식품 등 새로운 매력 포인트를 보유하며, 가격 이외의 차별적 효용을 제공
- 문화와 관광, IT기술을 융합한 기업 : 드라마와 영화를 관광산업과 연계한 아이টে็ม으로 영상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모바일 기기용 앱을 통해 서비스 등을 제공
- 안심소비 추구경향을 반영한 기업 : 식품, 생활용품 등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천연, 한방, 유기농 제품 개발
- 따뜻하고 감성적인 콘텐츠를 추구하는 기업 : 사용자의 감성적 체험과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및 콘텐츠 서비스 개발
- 전통을 보존하면서 현대화하는 기업 :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특색을 바탕으로 생활용품 등을 재창조하여 제공

이와 같은 생활기업의 특징을 고려하여 생활기업형 여성창업 적합분야를 다음과 같이 10가지를 제시한다. 감성기반 제조·서비스분야로는 천연/한방용품 제조, 맞춤형 유기농 식품제조, 인디비주얼 패션 및 생활용품 아이디어 디자인, 맞춤형 자녀교육환경 코디, 천연염색 및 전통공예 현대화, 영유아 전문 케어서비스를 제시한다. 지식기반 제조·서비스 분야로는 실내채소 재배기 개발·유통, 모바일 관광상품 기획/마케팅, 영유아 학습 콘텐츠 개발, 영화/방송/공연 등 문화 콘텐츠기획 및 제작을 제시한다.

| 표 4-9 | 생활기업형 여성창업 적합분야

구분	적합분야
감성기반 제조· 서비스분야	천연/한방용품 제조 (천연소재 화장품/여성 생리대/비누 제조)
	맞춤형 유기농 식품제조 (환자 맞춤형 식단 및 레시피 제공, 식품제조, 천연조미료 제조 등)

68) 인디비주얼 패션(Individual fashion)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유하면서도 독특한 패션을 말한다.

구분	적합분야
감성기반 제조· 서비스분야	인디비주얼 패션(Individual Fashion) 및 생활용품 아이디어 디자인 (유모차 디자인, 여성전용 차량용품 디자인 등)
	맞춤형 자녀교육환경 코디
	천연염색 및 전통공예 현대화
지식기반 제조· 서비스분야	영유아 전문 케어서비스
	실내채소 재배기 개발·유통
	모바일 관광상품 기획/마케팅
	영유아 학습 콘텐츠 개발
	영화/방송/공연 등 문화 콘텐츠기획 및 제작

또한 여성창업의 경우 고부가가치 유망분야의 기회형 창업과 생활밀접형 창업분야로 이원화해 여성에게 특화된 창업교육과 성공모델 및 지원사업의 확대가 중요하다.

여성지원기관들은 여성들에 특화된 독자적인 지원프로그램의 확대에만 관심 갖기보다 여성들이 기업경영에 필요한 경쟁력과 자신감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사회의 기존의 기회들을 남성들과 경쟁상황에서도 여성의 경쟁력에 의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여성들이 창업 및 기업경영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역할일 것이다.

## 2) 생활기업형 여성창업 표준모델 개발

창업의지와 역량을 개발하여 성취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기회추구형 창업과 별도로 취미형 내지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계형 창업분야를 선호하는 여성창업자를 위한 여성 창업적합 분야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다만 소자본 생활밀접 창업분야에 대해서도 창업성공 효과를 높이기 위해 탄탄한 창업교육과 지원활동이 필요하다.

여성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창업에 적합한 개별 업종을 선정하여 창업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창업아이템 전쟁이라 할 만큼 많은 창업아이템이 쏟아져

---

나오고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새로운 업종을 선정하여 발표하는 것과 더불어 기존의 창업기업 중 육성할 필요가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창업모델기업으로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업추진은 4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단계로 기존 업체 중에서 생활기업형 여성 창업 표준모델이 될 수 있는 기업을 창업전문가에게 추천을 받거나 공모를 통해 후보기업을 발굴하며, 후보기업에 대해 실사, 분석과정을 거쳐 최종 생활기업형 여성창업 표준모델 업체를 선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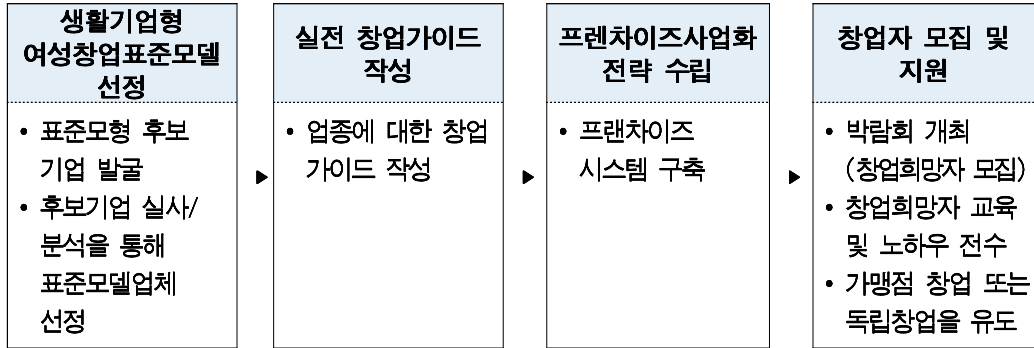
2단계로 생활기업형 여성창업 표준모델 업체의 사업특성, 고객구조, 운영방식, 재무특성, 투자내용 등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창업가이드를 작성한다. 모델기업이 해당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입을 수 있는 문제는 해당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해소(예 : 자금우 선지원 등)한다.

3단계로 선정된 생활기업형 여성창업 표준모델 업체에 대해서는 프랜차이즈 기업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4단계로 생활기업형 창업박람회(설명회)를 개최하여 창업희망자를 모집하고, 여성창업 표준모델 업체를 통해서 교육·노하우를 전수하며, 예비창업자의 선택에 따라 가맹점 창업 또는 독립창업을 유도한다.

이러한 단계는 잠재력 있는 업체를 기업형으로 육성하게 해주며, 예비창업자들은 창업 전에 실제 사업을 체험할 수 있으므로 향후 창업의 실패를 줄일 수 있다.

그림 4-4 | 생활기업형 여성창업 표준모델 발굴 및 창업촉진 프로세스



예시 : 실내채소 재배기 개발 · 유통업 창업가이드

1. 실내채소 재배기 개발 · 유통업 알아보기

- 실내채소 재배기 개발 · 유통업이란?
- 실내채소 재배기 개발 · 유통업의 특성
- 실내채소 재배기 개발 · 유통업 현황

2. 사업성 분석

- 사업성 분석 평가요소, 사업성 분석의 절차
- 실내채소 재배기 개발 · 유통업 사업성 분석

3. 창업절차

- 일반적인 창업절차
- 실내채소 재배기 개발 · 유통업 창업절차
- 개업을 위한 체크리스트

4. 인허가 절차

-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

5. 마케팅 전략

- 실내채소 재배기 개발 · 유통업 마케팅의 핵심요소
- 실내채소 재배기의 제품 구색 방법
- 실내채소 재배기 개발 · 유통업 홈페이지 만들기
- 단골고객 만들기, 개업 후 홍보방법

### 3) 지식·기술기반 고부가가치 여성창업 분야 연구와 지원확대

‘지식기술 창업’이란 용어는 혁신기술 분야의 창업 촉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 사업을 지칭하는 데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술창업’은 혁신기술 분야의 창업을 말하는데, 기술 분야의 제조업뿐만 아니라 지식기반의 서비스업을 포함시키는 정책적 입장에서 ‘지식·기술 창업’은 중요한 분야이다.

그동안 정규 교육과정에서 여성들의 교육과 진로모색이 기술 분야와 무관하게 진행되어 여성친화적 기술 분야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술은 IT, 바이오, 생명공학, 미디어 등 소프트한 분야의 기술들이 집중적으로 조명 받고 있다.

산업연구원에서 여성 지식·기술창업 실태조사를 위해 여성벤처기업협회회원사(703개사), 이노비즈협회 회원사 중 여성기업(565개사) 및 2013년 6월말 현재 여성벤처기업으로 인증 받고 있는 기업(2,282개) 중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중복된 업체를 제외한 3,212개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여성 지식·기술창업가를 대상으로 남성 창업과 비교한 여성 지식기술창업 여건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최근에 창업한 여성 창업기업일수록 여성이 불리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사업 분야별로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에서 제조업보다 불리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 유리하다는 응답은 지식기반서비스업에 비해 제조업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10 | 남성창업과 비교한 여성 지식기술창업 여건

(단위 : %, 5점 척도의 점수)

		-	매우 불리	불리한편	비슷	유리한편	매우 유리	합계
전체			6.5	39.2	42.0	11.5	0.8	100.0
창업연도	2006년 이전		6.5	37.6	38.7	17.2	0.0	100.0
	2006~2009년		5.5	38.6	43.3	11.0	1.6	100.0
	2010년 이후		7.2	40.5	42.8	8.9	0.6	100.0
사업분야	제조업		5.6	37.9	42.2	13.3	1.0	100.0
	지식기반서비스업		9.1	43.4	41.4	6.1	0.0	100.0

※ 자료 : 여성지식기술창업실태 및 활성화방안(양현봉), 산업연구원 2013



앞으로 <과학기술>과 <여성>이 미래를 여는 키워드로, 정책적으로도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생각되고 있다.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정책들은 여성 이공계 출신 및 기술에 관심 있는 여성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때문에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지원 기관들은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여성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과 연계해 여성이공계 출신 및 기술에 관심있는 여성들을 위한 지식·기술 분야의 창업교육과 방향제시를 위한 노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업자가 창업 의사결정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된다. 실태조사 결과, 여성 지식·기술창업자가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전문성이 있어 창업에 따른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라는 응답이 5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향후 목표시장의 성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라는 응답이 39.2%로 나타났음에 비해, 금융활용 등 정부지원제도(3.8%), 내부 여유자금(1.7%) 등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표 4-11 | 창업 의사결정에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동기부여 요인

(단위 : %)

		전문성 보유	내부 여유 자금	목표 시장 성장성	경기 호전 전망	금융활용 / 정부지원 제도	규제 완화	기 타	합 계
전체		53.0	1.7	39.2	0.5	3.8	0.5	1.3	100.0
창업 연도	2006년 이전	48.3	1.1	45.1	0.0	2.2	1.1	2.2	100.0
	2006~2009년	49.5	0.8	46.5	0.0	2.4	0.0	0.8	100.0
	2010년 이후	57.7	2.8	31.1	1.1	5.6	0.6	1.1	100.0
사업 분야	제조업	49.4	1.7	42.2	0.3	4.0	0.7	1.7	100.0
	지식기반 서비스업	63.7	2.0	30.3	1.0	3.0	0.0	0.0	100.0
대표 자 학력	고졸 이하	45.0	2.7	44.1	0.9	5.4	0.0	1.8	100.0
	전문대졸	59.2	1.9	35.2	0.0	0.0	3.7	0.0	100.0
	대졸	54.7	1.2	38.7	0.0	3.6	0.0	1.8	100.0
	대학원졸	56.7	1.5	35.8	1.5	4.5	0.0	0.0	100.0

※ 자료 : 여성지식기술창업실태 및 활성화방안(양현봉), 산업연구원, 2013

---

때문에 지식·기술기반 여성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여성에게 다양하게 질적으로 특화하여 제공하려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 4) 지식·기술 분야의 여성창업교육 개발과 전문멘토링

대부분의 기회들은 개인의 관심과 노력보다는 큰 그림과 방향을 만들어가는 정책지원 기관의 노력이 중요하다. 때문에 여성지원 기관들로부터 기존의 여성에 대한 관습적 인식에서 벗어나 좀 더 진취적인 여성의 도전과 기회에 대한 목표의식과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여성 창업지원 기관들도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여성의 입장에서 시장의 변화와 기회들을 해석하고 여성이 중심이 되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여성 지식·기술 분야의 다양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즉, 여성기업지원 기관들이 앞서 변화하는 시장기회에 대한 연구와 이해를 통해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여성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선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술창업과정은 성공 시에는 성과가 높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위험요소가 큰 분야로 다른 창업에 비해 창업자의 창업의지와 기술사업화역량과 더불어 기업경영능력도 꾸준히 높여가야 하는 분야이다.

이공계 출신의 여대생을 비롯해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여대생들의 지식·기술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기술창업 교육을 재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해하면서 잠재적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멘토링과 지원을 통해 여성지식·기술창업자의 성공모델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2010년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여성 적합 녹색직종 및 교육과정 개발'연구보고서를 보면 기후변화에 대비해 녹색산업 성장분야를 델파이조사와 전문가 워크숍 그리고 수요자 욕구분석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에 적합한 녹색직종을 조사하였다. 1단계에서는 총 3차례에 걸쳐 최초 756개 분야를 선정하여 61개 분야로 압축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27개 직종을 선정하였다.

녹색직종이란 기후변화와 에너지환경 분야의 녹색성장을 동반하면서 새로운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말한다.

표 4-12 | 여성 적합 녹색직종 및 교육과정

녹색직무	기초과정(이론)	중급과정(실습)
LED조명 디자이너	1. LED 조명 이해 2. 조명디자인 실무(70시간)	1. AUTO_CAD 실무 2. LED조명 디자인시뮬레이션 3. 포토샵 운영(250시간)
Gardening 디자이너	1. 생태환경 조성 2. 도면 이해	1. 오토캐드 실무 2. 포토샵 운영
녹색생활 지도사	1. 기후변화의 이해 2. 에너지 절약 3. 녹색생활 실천 4. 녹색생활지도 교육 교구개발 5. 녹색생활교육	
원예치료사	1. 원예치료 과정 2. 원예치료 입문 3. 원예치료 공간	1. 원예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2. 임상실습 3. 상담심리
친환경염색· DIY지도사	기초이론(이론+실습)	실습과정
	1. 친환경 재료와 생활환경 이해 2. 천연염색에 대한 이해 3. 염색재료 및 염색과정	1. DIY과정(MODULE식) - 생활소품공예 - 한지공예

※ 자료 : 여성부, 2010

여성창업의 경우도 기존 여성들의 창업 및 기업경영활동과 관련해 아직 접근하지 못했던 전문기술 분야가 많이 있다. 사회적으로 유망분야에 대해 여성 창업지원 기관이 해당분야 전문가와 산업계의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자문을 통해 여성들에게 향후 기회가 있는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학계 및 산업계와 연계해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하는 진취적인 시도가 필요하다.

여성창업교육은 산업의 미래 트렌드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시장에서 검증된 부가가치가 낮은 분야에 집중돼 교육 효과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향후에는 산업의 미래트렌드를 예측하며 학계와 산업계와 연계해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제까지 남성 영역으로 치부하며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분야에 대해서도 변화된 관점으로 특성화 고등학교나 전문대 및 이공계 여대생 등을 대상으로 한 욕구분석과 연구전문가와 현장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지식기술기반 여성유망 창업분야에 대한 교육 과정 및 워크숍의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3. 준비된 창업유도로 성공률 제고

#### 가. 배경 및 필요성

2013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성기업인의 창업준비 시 애로사항은 여전히 자금조달이 가장 큰 것으로 났으나 2010년 대비 그 비율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8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판로확보는 2008년에 9.4%, 2010년에 9.3%로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2012년에는 26.5%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예전에 비해 창업분야가 많아지고 소비자의 니즈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판로 확보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인력확보 및 관리는 2008년 2.9%에서 2010년 1.6%, 2012년 8.7%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 역시 판로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판로확보와 연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4-13 | 창업준비 시 애로사항

(단위 : %)

구분	자금 조달	판로 확보	사업 타당성 분석	인력확 보및관 리	기술 및 제품력 확보	행정 절차	기타
2008년	44.7	9.4	5.3	2.9	0.0	4.7	33.0
2010년	30.0	9.3	13.2	1.6	0.0	5.9	40.0
2012년	42.5	26.5	10.6	8.7	4.2	3.4	0.1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3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이와 같은 창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예비창업자의 자금조달 및 판로확보를 위해 사업아이디어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기술, 마케팅, 세무, 특허 등의 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비여성창업자들의 사업아이디어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창업준비 지원을 위한 창업 교육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실전창업스쿨 교육과정은 창업아이템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이러한 창업 애로사항들을 1회 교육에 모두 담아 설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실전창업스쿨 교육과정은 소상공인진흥원 등의 타 창업기관에서 진행 중인 교육과정(바리스타, 베이커리, 떡 카페, 파티플래너 등)과의 차별성 확립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진흥원의 창업교육을 살펴보면 음식점, 떡 카페, 인터넷 쇼핑몰, 커피전문점 등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교육하고 있는 대중적 교육과정이나, 일부 지역의 경우 지역특색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 점이 보인다. 각 지역별 실전창업스쿨 교육과정도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창업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차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실전창업스쿨 교육이 타 기관의 창업교육과정과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대중적 창업아이템 중심의 교육을 지역 특화와 연계한 여성창업 적합분야에 대한 실무 교육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창업교육은 여성창업의 저변확대를 위한 창업자 마인드 및 여성창업 적합분야 소개 중심의 기본교육과 창업실행단계에 필요한 체계적인 정보와 노하우를 제공하고, 성공사례, 현장실무를 병행하는 실무교육 등으로 단계별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실전창업스쿨 교육과정 관련 이미지



표 4-14 | 실전창업스쿨 교육과정

지역	2012년	2013년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제브레드&amp;샌드위치(2회)</li> <li>• 핸드드립 전문카페</li> <li>• 수제 쌀베이킹&amp;디저트전문점</li> <li>• 패션점포 / 홈패션 / 아트비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런치&amp;핸드드립 전문카페</li> <li>• 멀티미디어 출판전문가</li> </ul>
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본아트</li> <li>• 패션샵</li> <li>• 포크아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슈가크라프트</li> <li>• 실버케어PT샵</li> <li>• 온라인의류쇼핑몰</li> </ul>
대구 경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제타르트</li> <li>• POP전문가과정</li> <li>• 네추럴샌드위치브런치</li> <li>• 카페베이커리</li> <li>• 하이브리드형멀티커피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저트카페</li> <li>• 웰빙브런치</li> <li>• 한복대여점 1인 창조기업</li> <li>• 소콜라띠에 소자본창업</li> <li>• 디저트카페전문점</li> </ul>
광주 전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패션디자인</li> <li>• 다이어트푸드샵 / 웹디자인쇼핑몰</li> <li>• 천연화장품 비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인주얼리디자인</li> <li>• 하이엔드 브런치카페</li> <li>• 천연화장품 비누</li> </ul>
대전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꽃집 / 생활자수</li> <li>• 베이비드레스</li> <li>• 캘리그라피</li> <li>• 이벤트플래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자수</li> <li>• 파티플래너</li> <li>• 슈가크라프트</li> </ul>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페브릭 인테리어샵</li> <li>• 천연화장품</li> <li>• 브런치카페</li> <li>• 쿠키&amp;샌드위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베이킹지도사</li> <li>• 천연화장품</li> <li>• 웰빙푸드전문점</li> </ul>
울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요리지도사</li> <li>• 약세사리온라인</li> <li>• 목공예팬시관광기념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키즈파티플래너</li> <li>• 학습코칭</li> <li>• 수제초콜릿제작 / 커피&amp;브런치테이크아웃</li> </ul>
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떼아트</li> <li>• 플라워샵</li> <li>• 이탈리아레스토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IY목공예 인테리어숍</li> <li>• 콘텐츠제작 전문가</li> <li>• 규방공예 / 슈가크라프트</li> </ul>

지역	2012년	2013년
경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라워샵</li> <li>• 프레스티지 디저트</li> <li>• 온라인 쇼핑몰</li> <li>• 핸드드립&amp;로스팅카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코플라워아트</li> <li>• 핑거푸드</li> <li>• 온라인 쇼핑몰</li> <li>• 아트캔들 공방</li> </ul>
충 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무공방</li> <li>• 아동요리사</li> <li>• 플로리스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라워데코레이션</li> <li>• 아동요리지도사</li> <li>• 베이킹&amp;바리스타</li> <li>• 가구DIY공방</li> </ul>
경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미술실기지도사</li> <li>• POP예쁜글씨</li> <li>• CS강사(2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스테틱</li> <li>• 노인종이조형심리미술지도사</li> <li>• CS강사</li> </ul>
전 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떡카페 / 발표음식 반찬가게</li> <li>• 전통놀이(2회)</li> <li>• 원예심리치료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의놀이수학전문가</li> <li>• 전통놀이</li> <li>• 실내조경인테리어</li> </ul>
제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페창업(2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페창업</li> </ul>

※ 자료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2012~2013

## 나. 추진방안

- 1) 여성예비창업자의 창업역량강화 교육
- 2) 여성창업 적합분야에 대한 단계별 교육
- 3) 여성창업사관학교 운영
- 4) 여성비즈프라자 운영 및 타 기관과의 연계성 강화

### 1) 여성예비창업자의 창업역량강화 교육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여성의 정치·경제적 참여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경제침제로 인한 실업의 증가로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성창업은 남성창업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이처럼 여성기업이 양적인 면에서는 크게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여성기업들 대부분 진입장벽이 낮고 경쟁이 치열한 음식·숙박업 및 도소매업에 편중되어 있어 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에서의 여성창업의 성장기반은 취약한 실정이다.

국내 여성창업가의 특징을 조사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실태조사를 보면 많은 여성 창업자들이 경우 성공창업에 영향을 주는 경영경험, 창업경험 그리고 산업에서의 경험과 조직경험 등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규모 자본을 이용한 여성창업자의 경우 조직적 성장전략이나 외부지원 없이 창업가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해당분야의 실무경험 및 조직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때문에 여성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창업준비와 창업 후의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는 체계적인 창업교육이 필요하다. 창업은 자신의 돈과 기술을 투자하는 것으로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창업 전에 창업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이해와 창업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업자의 역량개발이 창업의 성공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전문적인 창업교육 기관들은 창업교육 과정에서 창업환경에 대한 이해와 사업타당성 분석과 사업계획서 작성 과정과 함께 마케팅 및 창업기업의 세무와 회계에 대한 교육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창업교육은 창업마인드 제고뿐만 아니라 창업에 따른 시행착오 해소 및 창업 자신감 고취, 창업전문지식 축적 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창업교육의 효과에 대한 실태조사한 결과, '창업에 관한 기초·전문 지식을 축적시켜주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창업 과정에서의 시행착오 해소'(32.0%), '창업아이템 선정 및 지원기관이 활용방법을 알려주기 때문(15.3%), '기업가마인드를 함양시켜주기 때문(1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업자들이 창업교육에서 기대하는 것은 단순히 창업아이템을 중심으로 한 기술적인 교육을 넘어서는 창업자의 종합적인 창업역량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여성경제인협회에서 진행되는 현재의 창업아이템 위주의 교육 과정은 예비여성창업자들로 하여금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창업에서 일어나는



경영상의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업자의 경영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할 필요가 있다.

표 4-15 | 창업교육이 필요한 주된 이유

(단위 : %)

	기업가 마인드 함양	창업기초/ 전문지식 축적	창업아이템 /지원기관 활용 정보	창업 자신감 고취	시행착오 줄여줌	합 계	
전체	11.2	38.0	15.3	3.5	32.0	100.0	
대표자 학력	고졸 이하	13.5	39.7	10.8	6.3	29.7	100.0
	전문대졸	3.7	38.9	20.4	3.7	33.3	100.0
	대졸	11.9	42.8	16.1	1.2	28.0	100.0
	대학원졸	11.9	22.4	16.4	4.5	44.8	100.0

※ 자료 : 여성 지식기술창업 실태 및 활성화 방안(양현봉), 산업정책연구원, 2013

## 2) 여성창업 적합분야에 대한 단계별 교육

창업은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자기 확신이 부족할 경우 시작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일방적인 지식전달 교육으로는 불충분하며 ‘나는 어떻게 사업을 성공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과 답을 교육과정에서 스스로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창업단계의 구체적인 실행표(worksheet)를 작성함으로써, 준비된 창업이 될 수 있도록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같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창업대학이나 전문교육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차별화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20회 이상 진행되어온 서울시 하이서울 창업스쿨 과정은 지식·기술창업 과정인 벤처융합과정과 일반창업과정 그리고 인터넷 프로셀러 과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유망창업분야의 트렌드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표 4-16 | 서울시 하이서울 창업스쿨 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육일
벤처 융합	IT/App창업	좌측 4가지 중 1개 분야에 대해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1단계 ▶ 공통과정   벤처창업 기초전반 2단계 ▶ 전문과정   분야별 시뮬레이션 3단계 ▶ 심화과정   개별 사업계획 구체화 4단계 ▶ 경진대회   팀별 아이템 배틀
	콘텐츠/ 지식서비스창업	
	아이디어 제품 창업	
	기술 제품 창업	
일반 창업	서비스 창업	미용, 여가, 교육, 인적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업 점포창업을 하려는 예비창업자
	패션 창업	의류, 액세서리, 가방, 신발, 기타 잡화 등의 아이템으로 매 장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외식 창업	3~6개월 이내 가계계약을 목표로 외식업(한, 중, 양, 분식, 레스토랑, 카페 등)오픈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인터넷 프로셀러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제작. 유통하는 예비창업자

그리고 담임제와 더불어 창업교육 이후 지속적인 동문커뮤니티의 지원을 통해 교육  
수료생들이 지속적으로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들인 동문모임을 유지하며 창업정보와 동향을  
주고받으며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육 이수자들에게  
추가적인 멘토링 및 자금지원과 더불어 서울시가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우선권을  
주어 교육을 통해 창업까지 이르는 창업성공률이 다른 교육에 비해 높은 편이다.

교육과정은 철저한 창업준비로 창업 성공률을 제고토록 하기 위해 단계별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단계별 교육과정은 창업을 구상하고 관련 이론을 습득하는 창업기본과정,  
창업모델 체험과정, 사업화과정의 3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표 4-17 | 단계별 학습체계도(안)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교육과정	창업기본과정	창업모델 체험과정 (여성창업 적합분야 10개 과정)	사업화과정
교육시간	30시간 내외	60시간 내외	30시간 + 상시 멘토링
교육인원	인원 제한 없음	700명	700명
교육비	무료	100,000원 내외	100,000원 내외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 자가평가</li> <li>• 창업관련 이론</li> <li>• 정부지원정책 활용방안</li> <li>• 여성기업가정신</li> <li>• 국내외 여성창업 적합 아이템 소개</li> <li>• 지역전략산업 활용한 새로운 창업트렌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개 업종별 창업 (업종별 이론, 성공/실패사례, 현장학습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서 작성</li> <li>• 사업계획서 수정/보완</li> <li>• 1:1멘토링을 통한 현장 창업 지원</li> </ul>
신청방법	제한 없음	심사를 통한 교육생 선정	

1단계 창업기본과정은 창업을 구상하고 관련 이론을 습득하는 과정으로서 창업전문가의 이론교육을 통해 창업과 사업의 기본기, 실무방법론을 습득하고, 창업아이템을 구상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강생은 창업에 대한 준비여건, 창업의지 등을 자가평가하여 마인드를 재점검할 수 있다. 2단계 창업모델 체험과정은 여성창업 적합 생활기업들과 제휴를 통해 현장 체험학습을 위탁하고, 예비창업자들이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의 업종 체험을 통해 실전 사업경험과 노하우를 체득하도록 설계한다. 3단계 사업화 과정은 예비창업자가 1, 2단계 교육과정을 통해 매력적인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며 사업화하는 과정이다. 예비창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는 창업전문가와 함께 수정·보완하며,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1단계 창업기본과정은 무료교육으로서 창업저변 확대를 위하여 창업에 대한 기본지식과 여성창업 적합분야를 소개토록 한다. 2단계 창업모델 체험과정 및 3단계 사업화과정은 유료교육과정으로서, 여성창업 적합분야에 대한 상세이론 및 사례교육과 현장실습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멘토링을 통해 교육생의 실전창업까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4-18 | 창업모델 체험교육 과정(예시)

NO	과정명	내용
1	실내채소 재배기 개발·유통	LED 기술 등 신기술과 융복합을 통한 가정원에, 조경 사업의 재해석, 새로운 시장창출 방법 및 사업화 프로세스, 현장학습
2	천연/한방용품 제조 (천연소재화장품/ 여성 생리대/비누 제조)	천연/한방용품 원료개발, 제조·유통·체험학습장 운영 방법, 지역전략 산업을 활용한 한방용품의 새로운 창업 트렌드, 현장학습
3	맞춤형 유기농 식품제조 (환자 맞춤형 식단 및 레시피 제공, 식품제조)	맞춤형 유기농 식품제조, 레시피 개발 방법, 환자식·영유아 식단 개발 시장, 농수산물 천연 조미료 원료개발 방법, 사업화 프로세스, 현장학습
4	인디비주얼 패션 및 생활용품 아이디어 디자인 (유모차 디자인, 여성전용 차량용품 디자인 등)	인디비주얼 패션시장 트렌드, 생활용품 아이디어 디자인의 특성 및 현황, 창업 사례, 사업화 프로세스, 현장학습
5	자녀교육환경 코디네이터	자녀교육시장의 특성 및 현황, 자녀교육환경 코디네이터 사업화 프로세스, 홍보방법, 현장학습
6	천연염색 및 전통공예 현대화	천연염색 및 전통공예시장 특성, 현대화를 통해 성공 사례, 지역전략산업을 활용한 사업화 프로세스, 현장학습
7	영유아 전문 케어서비스	영유아 전문 케어 방법, 영유아 전문 케어 민간자격증 소개, 사업화 프로세스, 현장학습
8	모바일 관광상품 기획/마케팅	관광상품 시장 및 현황, 모바일을 이용한 관광상품 시장, 모바일 관광상품 기획 사업화 프로세스, 현장학습
9	영유아 학습 콘텐츠 개발	모바일 앱을 통해 영유아 학습 콘텐츠 개발 방법, 창업 사례, 사업프로세스, 현장학습
10	영화/방송/공연 등 문화콘텐츠 기획·제작	문화콘텐츠 기획·제작시장 현황, 성공사례, 사업화 프로세스 및 해외시장 진출 방법, 현장학습

그리고 1단계 창업기본과정 수료생이 2단계, 3단계 교육 참여 시 우대를 하고, 3단계 교육은 1년 이내에 창업할 수 있는 소수 인원(차수당 15명 내외)으로 운영하여 창업을 밀착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단계 교육 수료자가 신규창업 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입주 우대뿐만 아니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사업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차별화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

타 기관의 창업교육을 살펴보면 서울산업진흥원은 창업구상에서 실전창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창업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의 특징은 창업의 준비단계에 따라 단순 아이템을 소개하는 수준에서 창업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실전교육에 이르기까지 수준별로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다.

| 그림 4-5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창업스쿨 교육체계도



※ 자료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서울산업진흥원은 1단계 창업구상단계에서는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e-창업스쿨과정에 55개 일반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단계 교육과정은 오프라인 학습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전문과정은 8개 과정이고, 3단계 실전창업으로 컨설팅 지원, 마크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표 4-19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창업본부 단계별 학습체계

구분		내용
e-창업 스쿨	창업일반	회원 가입한 누구나 상시학습 가능하도록 개방하여 운영 (연중 언제든지 신청하여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함)
서울시 창업스쿨	창업전문	업종별 창업전문교육으로 신청자 중 심사 후 교육생 선정

창업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에게는 1년간 3회까지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지원과 창업자 특별보증제도 신청 대상이 되며, 창업자의 사업장 및 홈페이지에 창업스쿨의 현판과 마크를 지원하여 창업스쿨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사업아이템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벤처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 우대 및 중소기업쇼핑몰(서울샵) 선발 우대 등을 제공하여 창업기업의 성공률을 제고하고 있다.

### 3) 여성창업사관학교 운영

#### 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현황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청년창업사관학교는 기술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준비공간 제공, 전문인력의 1:1코칭, 창업교육, 제품개발 보조금 및 마케팅 지원 등 창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단계 전 분야를 일괄 지원하여 젊고 혁신적인 청년창업 CEO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 < 2012년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개요 >

- 지원규모 : 1년간 최대 1억원, 총사업비의 70% 이내  
(신청인은 총사업비의 30% 이상 부담)
-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 기업의 대표자
- 지원업종 :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기술집약업종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
- 지원내용
  - 1) 창업공간(사관학교 창업준비 공간 제공)
  - 2) 창업코칭(전문인력을 전담교수로 1:1 배치하여 창업 전과정 집중코칭)
  - 3) 창업교육(경영역량과 창업분야의 전문지식 등 체계적 기술창업 교육)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1년간 중진공 연수원에 입주하여 교육과 제품 개발에 대하여 원스톱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1억원까지 지원받는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창업자가 제품 또는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본인이 원하는 기관, 기업, 사람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을 자유롭게 지원하는 등 창업자 본인에게 절실히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 있다. 창업자가 전문분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업을 섭외하여 지원단을 구성해서 필요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원단의 활동에 대해서는 현장실사 및 이용자의 의견수렴 등의 방법으로 평가한 다음, 그 결과를 공개하여 부실지원을 예방하고 있다.

#### | 그림 4-6 | 청년창업사관학교 거점



출처 : 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

#### 나) 여성창업사관학교 운영방안

중진공의 청년창업사관학교는 기술집약업종(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아이템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를 위한 육성사업으로, 여성창업에 적합한 감성기반 서비스업종에 대한 창업지원체계로는 다소 부적합하다. 그러나 창업아이템을 가진 예비창업자가 창업으로 일정한 사업성과를 낼 때까지 토털지원하는 중진공의 창업지원체계 방식은 매우 적절하다는 것이 중진공의 사업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창업보육실을 활용하여 여성창업 사업화교육과정

---

수료생 및 여성창업경진대회 우수생을 대상으로 창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단계 전 분야를 일괄 지원하는 창업사관학교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예비 창업자들의 창업역량 분석과 창업아이템에 대한 검증과 보완을 수행함으로써 실패위험성이 높거나 리스크 대비 전략이 부족한 예비창업자들이 창업계획을 보다 내실있게 수립하여 창업성공률을 제고할 수 있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여성창업사관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여성전문융합지원팀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전문융합지원팀(CFT : Cross Functional Team)은 예비 창업자들의 창업아이템에 대한 검증과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이끌어내는 창업전문가 조직을 의미한다.

#### < 여성전문융합지원팀(CFT : Cross Functional Team) >

- 제품개발 및 사업화를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업무 협의체가 단계별 문제를 즉각적으로 지원 및 해결
- 여성전문융합지원팀은 창업, 경영전반, 세무 및 법률, 기술 등 전문가로 구성되며, 창업 및 육성과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서비스 제공

여성전문융합지원팀의 핵심 업무는 예비창업자에 대한 선발에서부터 예비창업자의 애로사항을 분석 및 해결, 창업관련 절차의 안내와 필요한 사업네트워크를 지원,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 활용 안내, 필요 시 예비창업자와 투자자 연계 등이다.

여성창업사관학교 운영을 위한 예비창업자 선발은 여성창업 사업화 교육을 수료하고, 1년 이내에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및 여성창업경진대회 우수생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개별면담과 사업역량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발한다. 사업역량은 아이디어 우수성, 창업자 마인드, 추진역량, 미래성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를 위해 신청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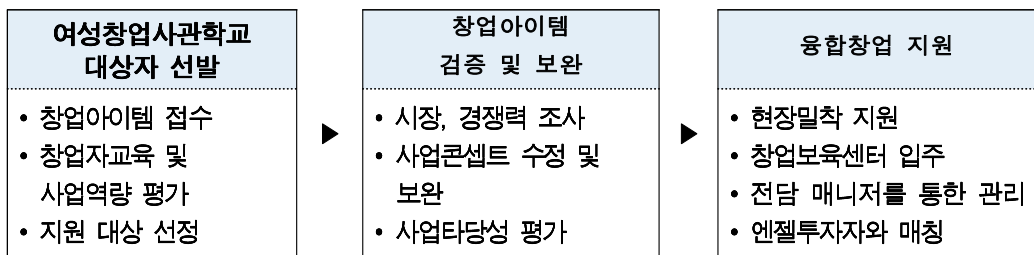
| 표 4-20 | 여성전문융합지원팀 구성(안)

분야	세부분야	분야별 업무내용
창업	아이템	아이템 개발 및 선정
	상권 입지분석	상권/입지 선정 및 타당성 분석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타당성 분석	사업계획 수립 및 작성, 비즈니스모델 개발
	자금조달	창업자금 조달 및 신청 준비
	점포개설	점포 선정에서 개점 준비
	인테리어	인테리어 공사
	디스플레이	상품진열
경영	디자인	상품 및 포장 디자인
	마케팅	마케팅, 판로개발, 판촉 및 홍보
	재무	자금관리 및 원가 분석, 엔젤투자자 연계
	인사	모집 및 종업원관리
	생산	공장혁신 및 생산성 향상
	품질	품질 및 기술 인증(KS, ISO등)
	무역	수출입 절차 및 통관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본부 시스템 구축
세무 및 법률	고객관리	CS(고객만족)
	세무 회계	장부기장 및 세무신고
	특허	특허 출원 및 등록
기술	법무	주식회사 설립
	인터넷 쇼핑몰	쇼핑몰 구축 및 운영
	디지털 콘텐츠	어플리케이션 개발(게임 개발 포함)
	S/W	프로그램 개발
	영상	사진 동영상 촬영 및 편집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자신의 창업아이템에 대해 목표시장, 수요층, 시장성 및 경쟁력 등의 시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콘셉트를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한다.

시장분석 방법은 여성전문융합지원팀의 전문가를 통해 개별적으로 지도를 받고, 시장조사실무는 예비창업자가 직접 수행하도록 한다. 그리고 시장조사에 따르는 비용은 센터를 통해 지원 받는다. 시장조사 자료와 함께 수정된 사업콘셉트를 제출하면 센터의 여성전문융합지원팀이 최종 사업타당성을 평가하여 창업 촉진대상자로 선정한다.

그림 4-7 | 여성창업사관학교 운영방안



채택되지 못한 과제는 문제점의 수정·보완을 통해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재평가가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공개 및 기술이전 등을 지원하고, 새로운 창업도전자를 모집하도록 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여성전문융합지원팀을 구성하여 사업단계별 현장밀착 지원을 실시하고,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실에 우선 입주기회를 제공하며,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전담 매니저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필요시 정부의 자금 지원 및 엔젤투자자와 매칭 기회를 주선한다.

#### 4) 여성비즈프라자 운영 및 타 기관과의 연계성 강화

많은 여성들이 잠재적으로는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제적 참여를 희망하고 있음에도 현실적인 상황은 취업과 창업 모두에 있어 정보부족 및 창업교육기회에 접근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여성의 창업지원에 있어 육아와 가사 등으로 창업정보 및 자신의 역량개발의 기회에 대한 몰입과 집중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현실이 고려되어야 한다. 때문에 여성들의 접근성이 좋고 부담 없이 창업 트렌드와 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개방형 창업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기존의 여성전용 창업보육센터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성들의 수가 너무 제한적이고 창업에 관심이 있으면서도 정보와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기능은 부족한 상태이다. 때문에 육아와 가사로 인한 경력단절이나 남성중심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창업을 통해 여성기업가의 비전과 꿈을 가진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역량과 가능성을 진단하고 부족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방형 창업지원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성기업의 경우도 독자적인 창업의지나 역량이 많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 실패를 줄이고 여성창업기업이 우리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차별화된 여성창업 지원 정책수립이 요구된다.

개방적인 형태로 여성들 중심으로 운영하는 여성창업지원기관인 여성비즈플라자를 통해 여성들이 편리하게 창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교육과 정보제공 및 창업상담이 가능한 공간이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성경제인협회에서 진행되는 창업교육은 여성들이 기업가정신에 의해 도전적인 창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창업교육 내용이 미래지향적 기회분야보다는 이미 창업교육시장에 많이 진행돼 경쟁력이 없어진 분야의 기술적 교육내용이 대부분이다.

현재의 창업교육 과정으로는 여성들에게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창업자로서 창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주도적인 문제해결역량을 높이고 성공한 여성창업을 육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여성경제인협회가 여성창업자와 여성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여성들을 경제의 주요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정책기관들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중요한 사회경제적 트렌드를 전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4. 전문 여성인력의 창업 촉진



### 가. 배경 및 필요성

2013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 여성기업인의 창업 당시 학력분포는 대졸 이상이 57.0%로 가장 많고, 고졸 이하가 30.2%, 전문대졸은 9.2%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여성기업인의 학력별 기업성과를 보면, 대졸 이상 집단의 평균매출액이 3,804백만 원으로 전문대졸 집단의 2,253백만원보다 68.8% 이상이 높다. 또한 평균 종사자수도 대졸이상 집단은 평균 22.3명인데 반해, 전문대졸은 18.5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결과로는 여성기업인의 학력수준에 따라 기업의 사업성과 및 평균종사자수는 차이를 나타낸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창업분야에 대한 창업자의 전문지식 및 전문성에 좌우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 또는 전문학교생 등의 경우 전공 및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보다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의 창업촉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4-21 | 여성기업인의 학력별 사업성과 비교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비중*	평균매출액	당기순이익	평균종사자수	
전체	100	3,504	144	21.7	
대표자 학력	고졸이하	30.2	3,325	136	22.0
	전문대졸	9.2	2,253	106	18.5
	대졸이상	57.0	3,804	155	22.3

주) 비중에서 무응답 3.6%는 제외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3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이러한 여성 전문인력의 창업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높고 고용창출 효과도 높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여성 전문인력에 대한 창업활성화 지원방안에 대한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대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생활 속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식·감성 기반의 창업이 이루어지도록 창업교육을 확대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멘토링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나. 추진방안

- 1) 여대생 창업 강좌 내실화
- 2) 여대생 창업 멘토링 운영
- 3) 비즈쿨 여성창업자 육성 및 특성화고등학교 창업교육 운영

### 1) 여대생 창업 강좌 내실화

이제까지 기업경영과 기업가 활동은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여성 기업가와 여성의 기업경영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사회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미래세대의 여학생들에게 창업과 창업자역량에 대한 교육은 미래의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중요한 활동이다. 때문에 미래세대들은 정규교육과정에서부터 자연스럽게 경제활동 참여와 여성창업 및 기업가교육을 통해 주체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명의식을 가지고 체계적인 준비와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인식 제고와 미래의 여성창업자 발굴·육성을 위해 창업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다.

표 4-22 | 창업실무와 창업자 역량 교육

구분	교육내용
창업실무 교육	창업의 이해 기업가정신(위험감수, 기회 활용, 도전정신) 창업 성공요인, 사업 아이디어 발굴 사업타당성분석(시장성, 기술성, 경제성) 사업계획서 작성 / 기술 및 상품개발 시장조사와 소비자 이해/ 경쟁조사 / 환경 분석 재무 및 회계 관리 / 마케팅 /조직 관리와 리더십 자원의 관리(자원의 조달, 집행, 운용 등) 비즈니스 모델의 이해 /사업기획 / 사업 경영 원리

구분	교육내용
창업자 역량교육	대인관계능력 / 의사결정 능력 / 위험감수 창의적 사고 / 문제 해결력/ 창업자의 역할 환경 분석력 / 협상능력 예측력 / 기획력 / 조직력 / 추진력 / 조정력 설득력 / 포용력 의사소통능력
정책 및 법률교육	정부의 창업정책과 창업지원제도 상법 및 특허법

특히 창업교육은 아이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창업강좌가 아니라 창업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원과 시스템을 조직화하고 창업 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통제할 수 있는 과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인관계능력, 의사결정, 도전을 통한 위험감수 등 여학생들이 창업의 주체로 여성 기업가 정신에 기반한 미래지향적인 혁신과 경영능력 등 창업자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종합적인 소양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학생들의 창업교육 과정은 창업에 성공한 여성기업인 소개, 기업가정신, 국내외 창업트렌드를 비롯해 창업자의 기업경영 역량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진로지도에도 창업부분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여대생 창업 강좌 시 발표된 창업아이템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방식을 도입하여 여대생 창업아이템에 대해 온라인 상에 웹을 만들고 방문자들이 가상의 시드머니를 제공하여 관심을 갖도록 하고, 향후 사업화 되었을 경우에 고객 및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실제 클라우드 펀딩은 자금이 부족한 기업들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주식투자자를 모으는 방식으로 최근 영화, 음악 등 문화 상품이나 정보기술 신제품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일례로, Crowd funding 사이트 중에서 유명한 Kickstarter는 사이트에 프로토타입(동영상, 그림 등의 미디어 형태가 많음)으로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모금 목표액을 올리고 일정기간 동안 기부를 받는다. 게임뿐만 아니라 영화, 그림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찾아 볼 수 있다.

예시 : 클라우드 펀딩(www.kickstarter.com)

The screenshot shows the Kickstarter homepage with the following elements:

- Navigation:** KICKSTARTER logo, 'Discover great projects', 'Start your project', search bar, 'BLOG', 'HELP', 'SIGN UP', 'LOG IN'.
- Header:** 'A NEW WAY TO Fund & Follow Creativity'. Logos for CNN, WIRED, GOOD, Pitchfork, NPR, and The New York Times.
- Blog Section:** 'Blog' link with text 'Interviews, updates, and tips from the Kickstarter team.' and a featured post 'Five Questions: Roy Germano of A Mexican Sound'.
- Project of the Day:**
  - TJ\* An Animatronic Puppet** by Jeff Kessler. Description: 'TJ\* is a miniature fiberboard skull and robotic puppet. But in reality, he could be your new best friend! His Arduino-based remote-control system allows for live control, or you can write your own software to make him do all sorts of cool things. be sure to check out the video!' Location: Palo Alto, CA. Funding: 966% FUNDED, \$24,751 PLEDGED, 17 DAYS LEFT.
- Graphic Design:**
  - Gremolata & Cancellaresca Milanese** by Russell Maret. Description: 'Help type designer and book artist Russell Maret make a new proprietary metal type family to use in his books.' Location: New York, NY. Funding: 182% FUNDED, \$45,566 PLEDGED, 16 DAYS LE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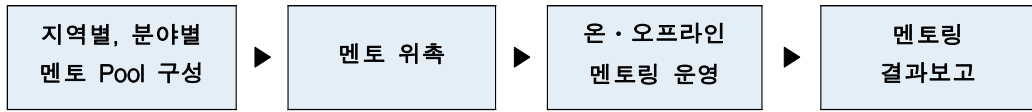
※ 자료 : <http://www.kickstarter.com>

2) 여대생 창업 멘토링 운영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창업관련 전문가를 구성하고, 창업관련 전문가들이 여대생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준비 과정을 지도하고 상담해주는 여대생 창업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별, 분야별 전문가 멘토 Pool(여성기업인, 창업 전공 대학교수, 창업전문 컨설턴트 등)을 구성하여 정보망을 구축하고, 차세대 여성CEO교육과정 수료생 및 예비 창업자들이 분야별 전문가와 온·오프라인으로 상담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다. 특히, 경영 마인드와 지식이 부족한 이공계 예비여성창업자에게 있어서 사업계획안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지원하는 창업 멘토링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 그림 4-8 | 여대생 창업멘토링 추진 프로세스



### 3) 비즈쿨 여성창업자 육성 및 특성화고등학교 창업교육 운영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은 지난 2002년 청소년들의 올바른 기업가 정신 및 비즈니스 스킬 함양을 위해 비즈쿨이라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비즈쿨은 비즈니스와 스쿨의 합성어로 2002년 5개에서 시작하여 2011년 현재 비즈쿨 100개가 선정되었으며, 세부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10개, 중학교 10개, 고등학교 80개가 운영되고 있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비즈쿨의 프로그램 중 창업캠프 운영 시 여학생들의 창의력을 증진하고, 미래 여성CEO 양성 및 발굴을 위하여 여성창업 적합분야 소개, 성공여성CEO와 네트워크 확대 기회 제공 등의 전문여성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생활 속의 아이디어에 IT 기술 등을 접목하여 틈새시장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국내외 기술트렌드 및 창업아이템, 여성창업 적합분야 등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토록 한다.

#### < 비즈쿨 지원내용 >

- 체험학습 및 참여프로그램 지원
  - 비즈쿨 학교 선정, 청소년 비즈쿨 캠프, 비즈쿨 페스티벌, 비즈쿨 전문교사 양성 교육 사업, 비즈쿨 표준교재 개발사업
- 비즈쿨 일반교육
  - 초등학교 : 어린이 경제, 금융 기초이론 교육 및 실생활과 연계한 실전적 비즈니스 체험 학습교육 실시
  - 중학교 : 청소년 비즈니스 마인드 함양을 위한 중급 이론 교육 및 올바른 경제관 확립을 위한 인식전환 교육 실시
  - 고등학교 : 비즈니스 마인드 함양을 위한 고급 이론 교육 및 실전 창업체험 학습을 통한 실무능력 배양



또한 비즈쿨을 통해 사업화를 준비중인 여학생들의 우수 아이템을 매년 선발하여 여성창업보육실 입주 및 통합관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전문고등학교와 MOU를 체결하고 전문고등학교 여학생들의 창업정신 고취 및 여성창업 저변확대를 위하여 여성창업 도전과 성공이라는 여성창업 특강교육을 개발하고, 매월 1회 전문고등학교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는 특성화고교, 특수목적고교, 마이스터고교 등 총 632개의 전문고등학교가 있다.

표 4-23 | 국내 고등학교 현황

(단위 : 개)

구분	특목고				특성화고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학교수	25	38	41	34	494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2013

## 5.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 촉진

### 가.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여러 조사에 의하면 이들 경력단절 여성들 중 경제활동 참여를 원하는 여성들이 상당하지만 실제 취업 기회와 여건이 열악한 상태에서 상당수가 창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의 차이는 30대 초반 연령대부터 급속하게 벌어져, 30대 초반연령대가 우리나라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대거 이탈하는 시기로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전체 수준을 낮추는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2년 3분기 지역별고용조사 잠정결과의 경력단절여성 규모에 따르면 2012년 15~54세의 기혼여성은 974만7천명이고, 취업을 하지 않은 여성은 404만9천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 중 결혼, 임신 및 출산 등 경력단절 사유가 발생하여 직장을 그만 둔 경력단절 여성은 197만 8천명으로 기혼여성 중 20.3%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별 경력단절 여성현황은 30~39세가 111만5천명(56.4%)을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40~49세가 51만1천명(11.2%), 50~54세가 13만 1천명(6.6%) 순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사유로는 결혼>육아>임신·출산>자녀교육 순으로 결혼이 92만8천명(4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육아는 49만 3천명(24.9%), 임신·출산은 47만9천명(24.2%) 순으로 나타났다.

많은 여성들이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하였다가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 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경력개발과정의 단절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여성인력의 경제참여가 육아와 출산으로 중단됨으로서 여성의 경제활동 단절로 인해 여성의 사회경제적 능력과 경쟁력을 낮추고 있다.

2013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성창업자의 창업 전 직업은 ‘일반기업 재직’(35.7), ‘개인사업’(32.4%), ‘가정주부’(19.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창업 전 직업 중에서 일반기업 재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개인사업도 2010년도 대비 27.6%p로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지만, 가정주부의 경우 2010년도 대비 49.5%p의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이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4-24 | 현 사업체의 대표를 맡기 전 종사한 직업

(단위 : %)

구분	가정주부	개인사업	일반기업 재직	기타
2008년	49.8	21.9	16.9	11.4
2010년	39.6	25.4	32.9	2.1
2012년	19.6	32.4	35.7	12.3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3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전업주부로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은 가장 큰 애로사항은 사회경험 부족과 가사와 사업을 병행해야 하는 문제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육아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을 떠난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활성화를 위해서는 육아 및 자녀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표 4-25 | 전업주부로 창업준비 시 애로사항

(단위 : %)

구분	육아/자녀교육	가사와 사업 병행	사회경험, 정보 부족	여성창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응답률	17.9	32.1	46.4	3.6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지원 정책 및 창업활성화 설문조사 결과, 2011

또한 창업보육시설은 예비창업자가 정보를 교류하고 창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를 늘려가고 있다. 이러한 여성창업자를 위한 여성창업보육시설도 전국적으로 15개가 설치되어 있다.

| 표 4-26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내 보육실수 현황

(단위 : 개)

구분	보육실수	구분	보육실수
본 회	9	울 산	6
서 울	9	강 원	13
부 산	10	경 기	10
대구/경북	16	충 북	16
광주/전남	8	전 북	12
대전/충남	10	경 남	15
인 천	19	제 주	15
합 계		168	

※ 자료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2013

그러나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을 제외하고 여성의 육아 및 자녀문제와 관련된 공간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없다. 여성창업에 있어서 가장 높은 편의성을 제공해 주는 여성창업보육센터에서는 여성의 이러한 창업애로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표 4-27 | 서울시 여성창업보육센터 현황

구분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	남부여성 창업보육센터	북부여성 창업보육센터
보육 실수	창업보육실(20㎡) 11개	창업보육실(24㎡) 15개	창업보육실(6.4~7.8㎡) 7개(개인사무실)
	창업준비실(6㎡) 20개	창업부스실(7㎡) 4개	창업준비실(52.4㎡) 12개(공동사무실)
입주 기업수	창업보육실 11개	창업보육실 14개	창업보육실 7개
	창업준비실 20개	창업부스실 3개	창업준비실 6개 (공실 6개)
지원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맞춤형컨설팅 및 멘토링</li> <li>• 전문 세미나 운영</li> <li>• CEO 아카데미 운영 (창업 관련 기초 심화)</li> <li>• 각 유관기관 MOU를 통한 사업지원 서비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분야 컨설팅 (마케팅, 세무회계 등)</li> <li>• 창업박람회, 전시회 등 외부행사 알선 및 참가비 지원</li> <li>• 비즈니스 전문교육 지원</li> <li>• 세무기장대리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 및 시설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집기</li> <li>- 초고속 통신망</li> <li>- 공동 : 휴게실, 회의실</li> </ul> </li> <li>• 경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 무료창업상담</li> <li>- 여성CEO아카데미 수강</li> </ul> </li> </ul>
지원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 및 회의실</li> <li>• 사무집기(책상 등)</li> <li>• 초고속통신망, 공동이용 기자재</li> <li>• 제품보관 창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미나실, 수면실</li> <li>• 스튜디오, 체력단련실</li> <li>• 자료실, 비즈니스 상담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개 실습실 운영 (반찬, 헤어, 피부관리, 네일케어, 의류수선)</li> </ul>

※ 자료 : 각 기관 홈페이지, 2013

## 나. 추진방안

- 1) 여성 중심의 사회적경제 모델 연구와 지원
- 2) 여성전용 창업보육시설 내 육아보육시설 설치

### 1) 여성중심의 사회적 경제모델 연구와 지원

결혼·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되었다 다시 참여하려는 여성들의 경우 경력단절 기간이 길수록 사회·경제적 변화와 기술적 변화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이 부족하고 자신감이 결여돼 있는 상태이다.

이같은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최근 사회적 경제구조(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의 확산은 여성친화적인 교육, 돌봄, 생활협동조합 등 여성들이 공동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 주제로 참여하여 비즈니스와 네트워킹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부상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생산, 소비, 교환, 분배라는 경제 활동의 네 영역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국내의 사회적 경제 조직은 크게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으로 구분된다.

표 4-28 | 국내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

사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정부 부처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주 참여자	취약계층 중심 (사회적기업육성법규정)	취약계층 중심 (수급자 및 차상위)	지역주민	일반시민
법적 근거	사회적기업육성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협동조합기본법
출발시기	2007년	2000년	2011년	2013년
개소	2013년 9월 913개	2011년 말 1,300여개	2012년 말 787개	2013년 8월 2,462개

※ 자료 :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활성화를 통한 여성일자리창출방안연구(여성부)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의 발효와 여성부의 여성가족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도입은 여성이 주도적으로 창업하고, 여성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 ICA)에서는 여성이 협동조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제개발과 사회변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ICA, 2012)

국내외 연구결과를 보면, 여성친화적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여성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높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확대되는 사회적 경제(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활동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효과를 보이지만 여성의 주도적 사회적경제 활동 참여는 아직 미흡하다. 앞으로 정책기관들이 정책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부족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를

---

높일 수 있는 사회적경제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모델의 연구를 통해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창업활성화와 여성고용창출을 위한 여성창업지원 분야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성 예비창업자들의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회적기업의 수익모델과 영업활동에 대한 연구를 통해 수익성이 적은 비즈니스모델을 지양하고 사회적 목적에 기여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수익창출의 비즈니스모델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① 협동조합 창업모델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1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3천개 넘는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 자원과 경쟁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뜻을 모아 5명 이상이 모여 능력에 맞게 출자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 금융과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일반기업과 동등하게 영리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협동조합은 일자리감소와 사회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경제를 제시하는 대안적 모델로 부각되고 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로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이다. 이는 주주가 소유자로 최대의 투자자가 운영권을 행사하며 주주의 수익을 가장 중요시하는 기존의 영리기업과는 대비되는 점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편익을 위해 영리회사와 경쟁하는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비영리 조직인 협회 조직과도 구별된다.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이 모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통제하는 사업체로 중요한 의사결정은 조합원 총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경제사업체임에도 출자액에 관계없이 '1인1표'의 권리를 행사하는 평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간의 존중과 믿음으로 운영되는 사람중심의 사업체라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의 이와 같은 성격은 관계 지향적이고 공동체지향적인 여성의 성격과도 일맥상통한 점이 있음에도 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학습이나 정보 부족으로 여성들의 협동조합 창업사례는 아직 많지 않다.

| 표 4-29 | 협동조합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사업범위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 그 사업의 종류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음(금융 및 보험 제외/제452조 제3항)
의결권/선거권	출자 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제
책임범위	조합원은 출자 자산에 한정된 유한책임
가입 및 탈퇴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는 자유로우나, 조합원의 동질성을 제한하기 위해 가입자격은 제한 가능
배당	정관에 의해 배당하되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을 이용실적 배당으로 하여 이용자 이익을 최대한 확보

최근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모델은 경쟁력이 부족하면서도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은 여성들이 함께 공동으로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비즈니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모델로 판단된다. 독자적으로 사업 아이디어나 추진력이 부족하지만 사업에 뜻이 있는 여성들이 5인 이상 함께 모여 공동출자하고 함께 책임과 운영의 부담을 나누며 함께 영리사업을 추구하는 협동조합 모델은 여성창업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여성창업 지원기관들도 앞으로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과 연구를 통해 여성예비창업자들에게 협동조합 전문가 교육기회와 창업성공 모델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② 사회적기업의 창업모델

우리나라는 2006년 12월 사회적기업 육성법안이 통과되어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어 NGO, 사회복지단체와 기업들의 사회적기업 참여가 확대되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한 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 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생산, 판매, 서비스 등 영리활동을 통해 수익창출을 도모하는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 추구'와 '영업활동'을 영위

---

하며 인증이라는 형식조건을 통해 완성됨을 알 수 있다.

사회적기업의 목적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나 그에 준하는 사회적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내면서 사회적 성과를 내는 기업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변화시키려는 혁신적 정신을 담고 있다.

정부는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한 창업비용과 창업 공간 멘토링을 제공하며 사회적 기업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사회적 서비스들은 여성에게 친숙한 분야로 여성들이 사회적기업의 운영원리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사회적 기업설립에 필요한 정보와 역량을 갖추고 사회적 기업 경영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면 여성들에게 다양한 기회가 만들어 질 것이다.

우리보다 앞서 사회적 경제 모델을 시도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유럽에서도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성공적인 여성리더와 참여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자적으로 비즈니스 아이디어와 추진력을 가지고 창업하기 어려운 여건을 가진 여성들이 초기에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모델을 통해 지역기반의 사회적기업의 운영과 참여를 통해 자신의 사회적 기반을 만들고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정부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함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진행하는 것은 단점도 있지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예비 사회적기업을 거쳐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게 된다. 예비 사회적 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나누고 있는데, 예비 사회적 기업이 수익구조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고용부가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하게 된다.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은 경영지원, 인건비·운영경비 등의 재정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조세감면, 연계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표 4-30 | 사회적 기업 지원제도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예비	인증
재 정 지 원	전문인력 인건비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시 인건비 지원	-	0
	인건비 지원	사회적 일자리사업 참여 인건비(최저임금 수준)	0	0
사업개발비 지원		-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R&D, 홍보 및 마케팅등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0	0
사회보험료지원		- 사업주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0
경 영 컨 선택 팅	기초 컨설팅	- 사회적기업의 설립(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 세무, 노무, 회계 등 정보 제공 등 지원	0	0
	전문 컨설팅	- 사회적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0
판로개척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기업 자생력 제고 지원	-	0
공공기관 우선구매권고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	0
시설및운영비 대부		사회적 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등 지원 * 미소금융 및 중소기업정책자금 등 활용	-	0
모태펀드		- 민간자본시장을 활용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 기제	0	0
세제지원제공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4년간 50% 감면	-	0
		- 사업수행을 위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면허세 50% 및 재산세 25% 감면	-	0
		- 사회적기업에 기부를 하는 연계기업에 그 기부금을 법인 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처리	-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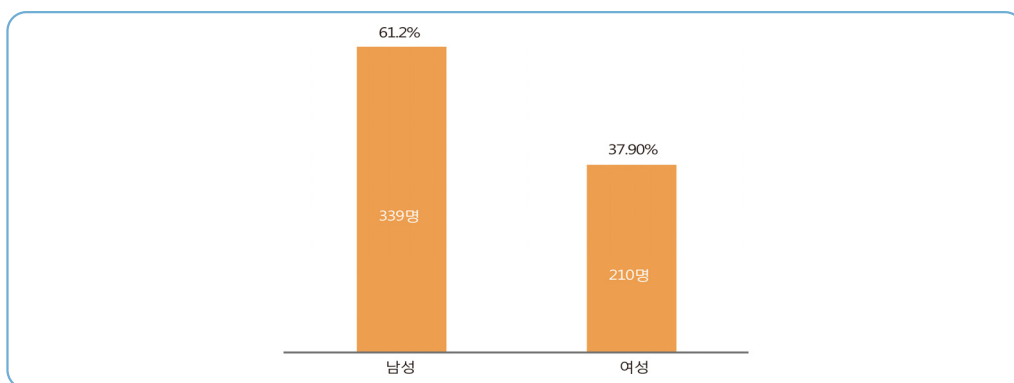
여성들이 모여 협동조합 법인을 설립하고 사회적 기업 비즈니스모델을 통해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여성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중요한 시장의 변화와 이슈에 대해 여성들이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기에 관련 분야 정보와 동향을 탐색하여 자신의 기회로 만드는 적극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여성창업지원 기관들이 이러한 제도의 교육과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성들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여성창업지원 기관의 교육프로그램에 사회적기업 창업에 대한 교육과 멘토링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서비스는 많은 여성들에게 익숙한 분야로 여성들의 강점이 있으며 사회적 문제해결에 기여하고자하는 이념도 여성들의 특성과 잘 맞는 점이 있다. 그러나 여성들에게 사회적기업 이슈에 대한 정보와 지식 및 접근성이 부족한 것이 문제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국내 사회적기업의 실태를 보면 사회적 기업가(대표) 가운데 남성은 61.2%(339명), 여성은 37.9%(210명)로 나타났다.

| 그림 4-9 | 사회적 기업가의 성별비율



※ 자료 : 여성가족부, 2013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한 여성일자리창출방안 연구’에서 여성친화적 사회적 기업 육성 계획수립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여성 사회적기업가(대표)를 위한 리더 육성 전략과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기업제도의 활용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2) 여성전용 창업보육시설 내 육아보육시설 설치

창업보육시설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창업보육시설 및 서비스의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창업보육시설 내 육아보육시설의 설치(3.8점)가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30대 응답자는 육아보육시설 설치에 대해 4.3점으로 나타나 기존의 창업보육시설에 영·유아 보육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것에 따른 기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성의 안정적인 사회활동을 위하여 여성창업보육시설 내 육아보육시설 설치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 표 4-31 | 창업보육시설 및 서비스의 중요도 평가(입주 대상자 설문결과)

(단위: 점)

	구분	중요도 평가
창업보육시설	화상회의 등 최첨단 IT인프라	4.2
	회의실, 휴게실 등 편의시설	4.6
	창업보육시설 내 육아보육시설의 설치	3.8
	물품 보관 창고	4.4

※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설문조사 결과, 2013

이에 대한 추진방안으로 여성창업보육시설 내 육아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여성창업 적합분야 교육 영유아 전문 케어서비스 과정을 수료한 여성 중 보육교사 자격증 보유 여부, 창업마인드 등을 평가하여 육아보육시설 운영관리권을 위탁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육아보육시설 운영 여성창업자는 저렴한 창업공간 마련과 함께 입주기업 임직원들의 자녀들을 고객화하면서 초기 안정적인 고객확보가 될 것이다. 또한 창업보육시설내 입주 여성기업 임직원들에게는 육아보육시설 이용 우선권이 제공됨에 따라 일터와 보육공간이 일치하여 육아를 하는 임직원들의 근무만족도가 증가되고, 고용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전용 창업보육시설 운영 및 육아보육시설 설치는 국가적으로 보면 출산, 육아 등으로 단절된 전문여성인력들의 창업 촉진 및 경력활용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영유아 보육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공공형 보육시설을 도입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는 취약계층만을 이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향후에는 국가적으로 공공보육시설 이용대상을 여성창업자까지 확대하여 영·유아 보육문제를 경감시켜서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 촉진 및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1년도 10월말 기준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수는 전국에 616곳에 이르는데,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는 각 지자체와 제휴하여 지자체 보조 하에 있는 어린이집 중에서 일부를 여성기업인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형 보육시설 이용우대 대상은 여성창업사관학교 입교생, 여성전용 창업보육시설 입주 여성창업기업으로 한다.

### < 공공형 보육시설 (예시 : 서울형 어린이집) >

- 서울형 어린이집이란 민간 어린이집을 서울시가 국공립에 준하는 보조를 해주고 그 만큼의 책임을 지워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 받으면 평균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의 10%가 기타 운영비로 주어지고 일정 조건에 부합 하는가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과 영아반 (만 2세 이하)교사는 인건비의 80% 유아반 교사는 인건비의 30% 취사인력은 인건비의 10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 자료 :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 아시아경제

또한 여성가족부는 양육자의 야근·출장·질병 등으로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수요유형에 따라 아동 양육 중심의 양육 돌봄 서비스와 취학아동 학습 지원을 위한 학습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여성경제인협회회원 및 창업보육시설 입주기업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업무조율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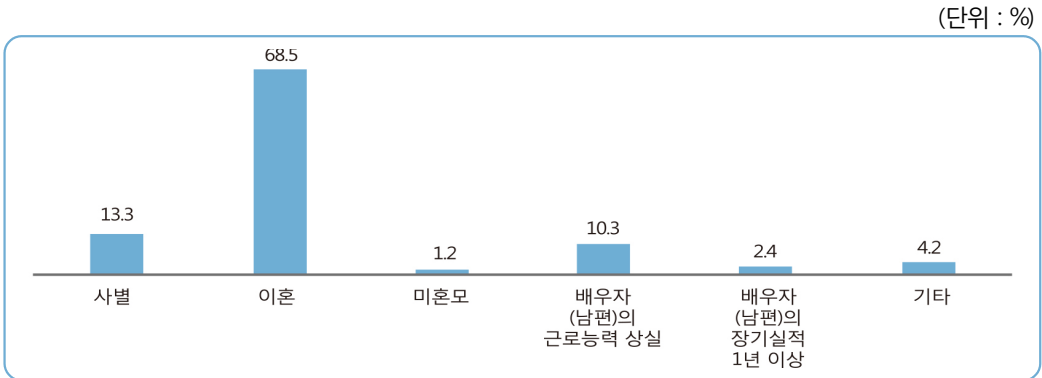
## 6.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확대



### 가. 배경 및 필요성

여성가장 창업자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가장의 창업자금 신청 동기는 이혼이 68.5%, 사별 13.3%, 배우자의 근로능력 상실 10.3%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창업자금 신청 동기로 이혼과 사별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여성가장은 배우자와의 이별이라는 심리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철저한 준비없이 내몰리다시피 창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림 4-10 | 여성가장 창업자금 신청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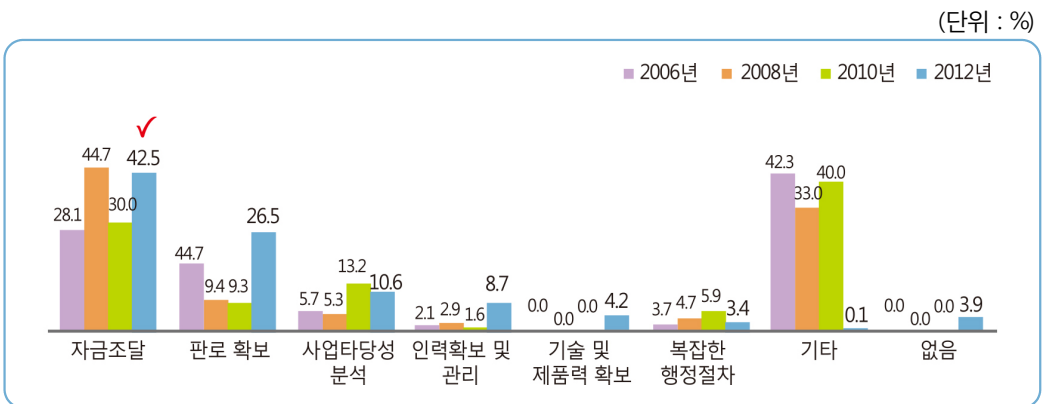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업체 실태조사, 2010

여성가장이 창업준비 시 겪는 가장 큰 애로는 자금조달 75.8%, 행정절차 10.3%, 입지 선정 및 확보 5.5%, 사업정보 획득 2.4%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장의 창업 자금조달 애로는 일반 여성기업이 창업준비 시 자금조달이 가장 어려웠다는 응답비율 30.0%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행정절차 어려움도 사회경험이 부족하여 필요서류 준비가 낯설고, 창업시 주변에서 상담할 수 있는 대상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높은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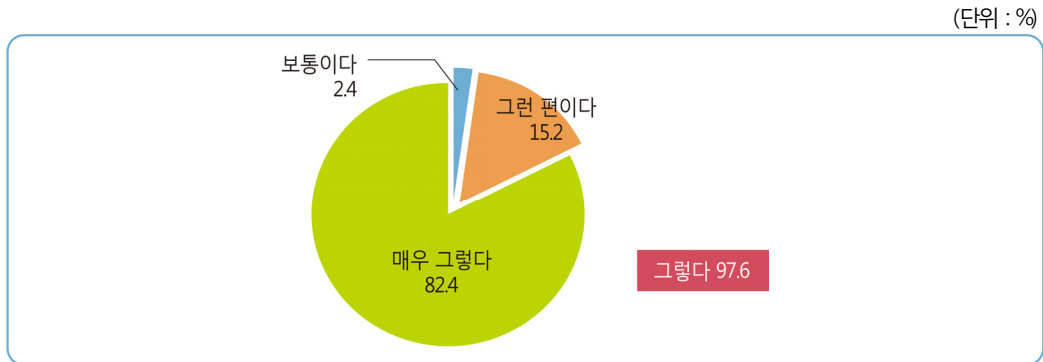
그림 4-11 | 여성가장의 창업준비 시 애로사항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 실태조사, 2013

여성가장 창업자들은 정부의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필요성에 대해 97.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여성가장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이 가계안정과 자활의지를 제고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효과를 증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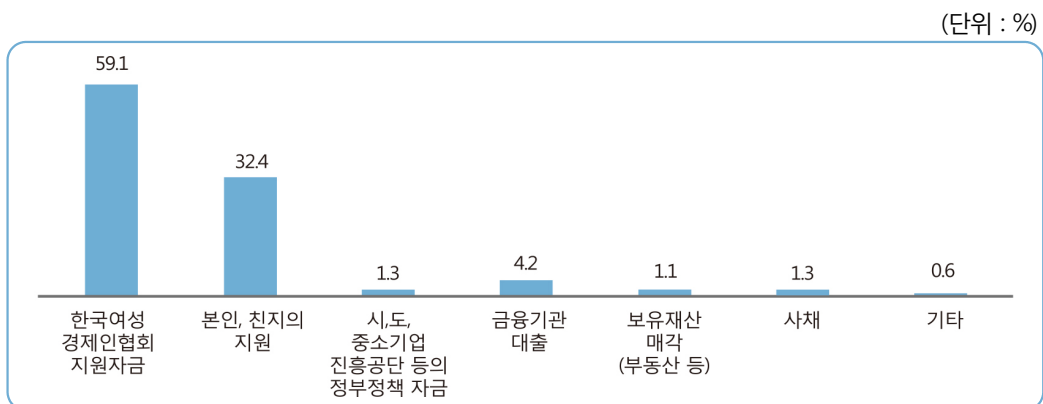
| 그림 4-12 | 여성가장 창업자금의 필요성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업체 실태조사, 2010

여성가장의 창업자금 조달경로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원자금 59.1%, 본인, 친지의 지원 32.4%, 금융기관 대출 4.2%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장은 경제적으로 미자립 상태에서 창업에 나서게 되므로, 창업자금을 지인으로부터 차용하거나 금융권에서 대출 받기가 쉽지 않다.

| 그림 4-13 | 여성가장의 창업자금 조달경로 종합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업체 실태조사, 2010

따라서 정부의 지원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를 통해 여성가장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창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창업지원금 이외에도 본인 또는 친지의 지원, 금융기관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정부지원금만으로는 창업자금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저소득 여성가장으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초기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지원받은 여성기업인은 389명으로 여성가장의 창업 수요에 비해 창업자금 지원규모는 부족한 실정이다. 여성가장 생계형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사업규모의 확대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점차적으로 늘림과 동시에 동일인에 대한 지원금액도 늘리는 것이 요구된다.

## 나. 추진 방안

- 1) 지원기간 및 지원대상 확대
- 2) 대출금액 증액
- 3) 여성가장 창업자금 사후관리 체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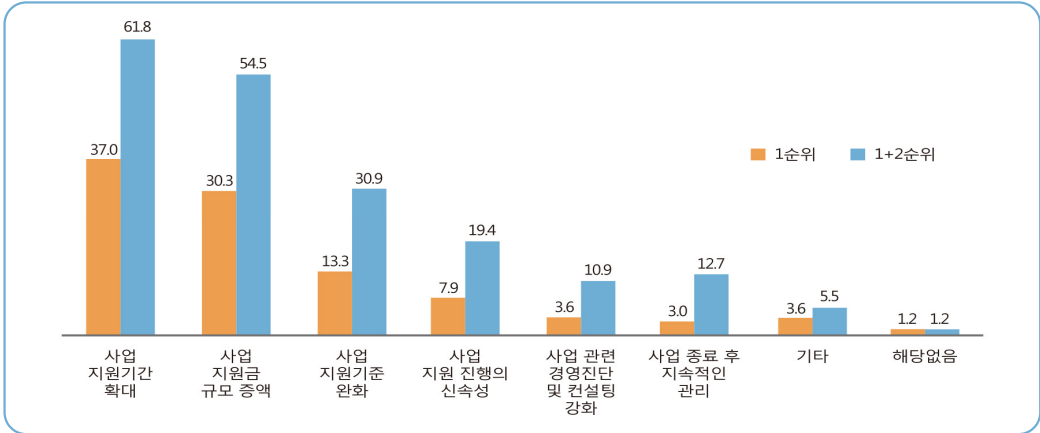
### 1) 지원기간 및 지원대상 확대

여성가장 창업자금의 개선점에 대하여 사업 지원기간 확대가 6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 지원금 규모 증액이 54.5%, 사업지원기준 완화가 30.9%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장의 창업 후 손익분기점 도달기간을 살펴보면, 1년 이상 2년 미만이 21.2%로 가장 높고, 2년 이상 걸린다는 비율도 14%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기간은 2년이고 1회 연장 가능하나, 여성기업의 손익분기점 도달기간에 비추어 볼 때, 여성기업이 창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원기간을 기본 3년, 추가 2년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4-14 |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제도의 개선점(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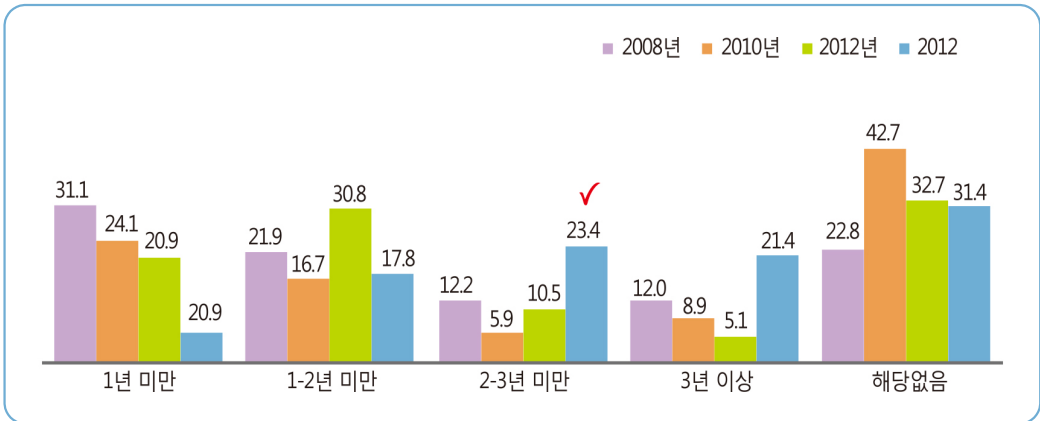
(단위 : %)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업체 실태조사, 2010

그림 4-15 | 여성가장의 창업 후 손익분기점 도달기간

(단위 : %)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 실태조사, 2013

또한,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총 13년 동안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신규지원자는 389명이며, 기간연장자는 115명으로 생계형 여성창업 수요에 비해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지원대상자 수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표 4-32 | 여성가장 창업자금지원 누적 현황

구분	현황
지원규모	20억원
지원연도	1999년 ~ 2011년 순환지원
지원자수	504명 * 신규지원자(389명) 및 기간연장자(115명) 포함
지원금액	110억원 * 신규지원금(85억원) 및 기간연장금(25억)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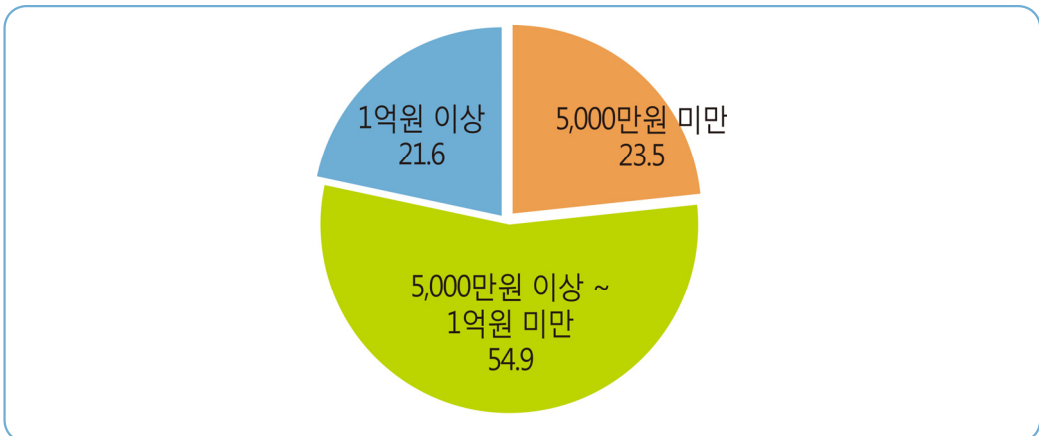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1999~2011

## 2) 대출금액 증액

여성가장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여성가장 창업자금 적정 대출 금액을 조사한 결과,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54.9%, 1억원 이상이 21.6%로 5,000만원 이상에 응답한 비율이 76.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희망하는 대출금액 평균은 6,319만원으로 나타났다.

| 그림 4-16 | 여성가장의 창업자금 희망하는 적정 대출금액

(단위 : %)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업체 실태조사, 2010

이것은 여성가장들이 창업을 위해 3,000만원의 임대지원금을 받더라도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애로가 있어 창업이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는 임차보증금 대출금액을 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장과 같은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인을 위한 소상공인지금 및 청년전용창업자금의 경우도 대출한도가 5,000만원에서 7,0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가정을 책임지는 여성가장에 대한 창업지원자금의 확대는 더욱 당위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4-33 | 창업자금 지원 사례

구분	자금신청 자격	대출한도
청년전용 창업자금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지식서비스 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하는 자	7,000만원 이내 (단, 제조업은 1억원 이내)
소상공인지금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5,000만원 (단, 창업 7년 미만 장애인 기업 1억원, 나들가게 1억원)

※ 자료 : 중소기업청, 2012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 3) 여성가장 창업자금 사후관리 체계화

여성가장은 창업자금 지원을 받아 어렵게 식당, 영세소매업 등을 개업했다가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더욱 큰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금보다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자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와 지원체계가 요구된다.

첫째, 현재 소상공인진흥원에서 발급되는 창업사업 타당성분석 이외에 창업초기 운영 안정화를 위한 현장지원 및 상담 등 창업성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생계형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여성가장 창업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도입하여 매 6개월 단위 경영상태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부실

우려가 있는 창업자에 대해서는 창업컨설팅 기관 등과 업무제휴 추진을 통해 현장으로 해결 전문가 등을 활용한 경영안정화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창업자금 지원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인력 및 추가예산이 필요하며, 별도의 추가 연구용역도 필요하다.

여성가장 창업자금을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준비 없이 생계형 창업에 나서는 여성가장의 창업애로를 현장에서 해결하여 사업의 내실화 촉진 및 창업성공률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자금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경쟁력 제고 및 조기 경영안정화로 자금회수기간의 단축이 가능하며 여성가장 창업 지원효과에 대한 실질적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 7. 여성창업에 대한 홍보 강화

### 가. 배경 및 필요성

여성창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더불어 여성들의 창업의욕을 고취하고, 창업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여성창업에 대한 성공사례 및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여성기업들은 정부의 여성기업활동 지원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이용경험도 낮은 상태이다. 2013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 창업지원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은 13.1%이다. 분야별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자금지원제도가 48.7%로 가장 높았으며, 인력지원제도 42.8%, 세제지원제도 41.5%, 기술지원제도 33.8%, 판로지원제도 22.9%, 수출지원제도 28.1% 순으로 나타났다.

### 나. 추진방안

- 1) 여성기업 성공 사례집 발간
- 2) 여성 창업성공 방송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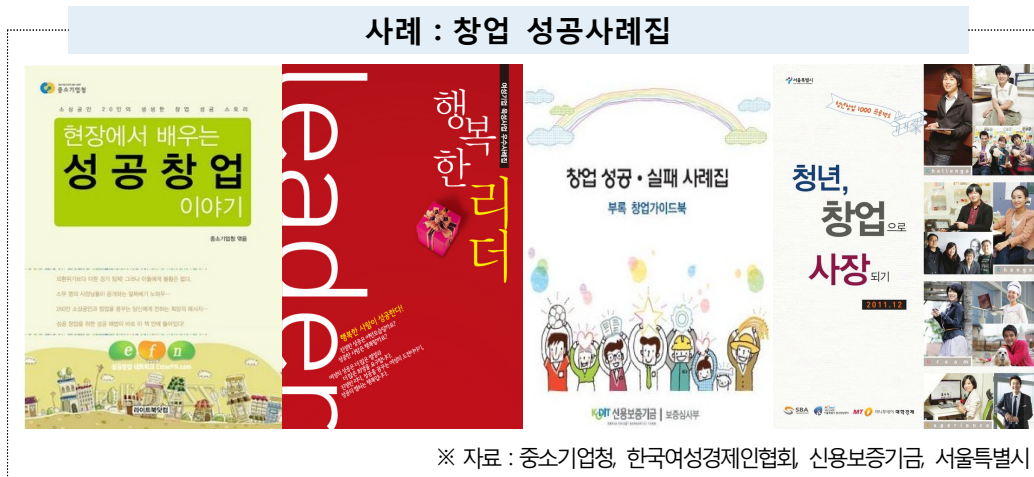
## 1) 여성기업 성공 사례집 발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창업 및 기업지원 정책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 기업으로 도약한 성공사례를 담아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적극적인 창업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한다.

신규창업, 가업승계, 업종전환 과정에서 진정한 리더, 성공을 꿈꾸는 여성들의 도전 이야기 등 여성창업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하고, 업종별 사례들을 담아 예비 창업자들의 마인드 제고 및 여성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한다. 발굴된 우수사례는 성공사례집으로 작성하여 책자뿐만 아니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정보를 공유하여 벤치마킹 모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1년, 2012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공동으로 여성창업 성공스토리를 담은 책자를 발간하였으며, 향후에도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 그림 4-17 | 여성가장 창업자금지원 누적 현황



## 2) 여성 창업성공 방송프로그램 운영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주요 언론사(예 : 글로벌 성공시대(KBS 1TV), 스카우트(KBS 1TV) 등의 공중파 방송) 등과 제휴하여 여성창업 성공 사례를 방영하고, 우수 내용에 대해서는 성공요소, 경쟁전략, 기업 성장 등을 제공하여 여성창업 붐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창업 성공사례는 해외수출, 국내확장, 신규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특히, 창업 재도전으로 성공한 사례의 경우, 기존사업과정에서의 어려움, 업종 전환 시 고려해야 할 점 등을 진솔하게 이야기 함으로써 방송을 보는 예비여성창업자들 뿐만 아니라 현재 사업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기업인들에게 시행착오를 줄이고, 창업성공률을 높여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성창업 Q&A 코너 등을 운영하여 창업관련 궁금증을 방송 외의 온라인 공간에서 상담해 주고, 창업 지원정책 소개 및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사업 등을 홍보한다.



방송을 통해 소개된 다양한 사례 중 투자자 모집이 필요한 곳은 투자공간을 따로 마련함으로써 엔젤투자자와의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여성창업 성공 수기의 내용은 향후 여성기업 성공 사례집과 함께 엮어 전국 여성창업 지원센터, 창업보육기관 및 제휴를 맺은 대학, 특성화 고등학교 등에 배포하여 창업상담 및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제3장 여성기업 육성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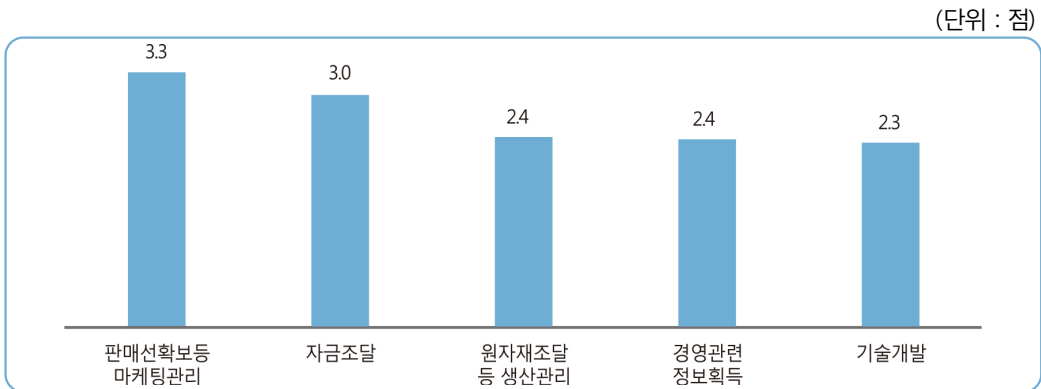
### 1. 여성기업 마케팅 플랫폼 구축 및 지원 확대



#### 가. 배경 및 필요성

여성기업은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선 확보 등 마케팅관리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금조달, 원자재조달 등 생산관리 및 경영관련 정보획득, 기술개발 순으로 나타났다.

| 그림 4-18 | 기업활동 애로사항



주1) 2010년 기준 상위 응답 5개까지 제시

주2) 5점 기준 : 5점 많이 느끼지 않는다 ~ 1점 전혀 느끼지 않는다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여성기업의 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홍보 및 광고관련 지원 12.9%, 시장조사 및 관련 정보제공 10.5%, 마케팅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지원 7.7%, 신제품 기획 및 개발기획 지원 4.5%, 공동물류시설 및 공동인프라 설치 등의 인프라 지원 1.5%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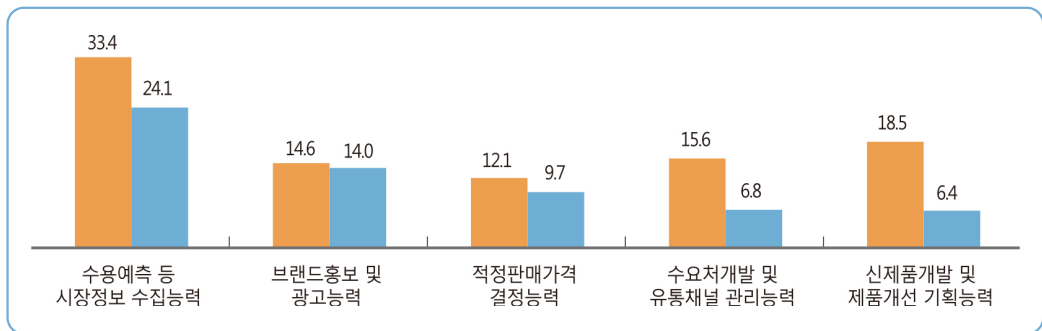
여성기업들은 중소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구조적으로 자금난 인력난 판로난의 3대 애로사항을 안고 있다. 특히 여성기업들이 경영활동 상 겪는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판로 및 마케팅의 문제가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기업실태조사보고서(2013)에 따르면, 여성기업들은 판로확보 등 마케팅관리와 자금조달 문제가 각각 53.7%를 차지, 경영활동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기업들은 신제품개발을 위한 시장정보수집부터 유통채널관리까지 전반적인 역량이 취약한 상황이다.

| 그림 4-19 | 여성기업의 마케팅 능력 취약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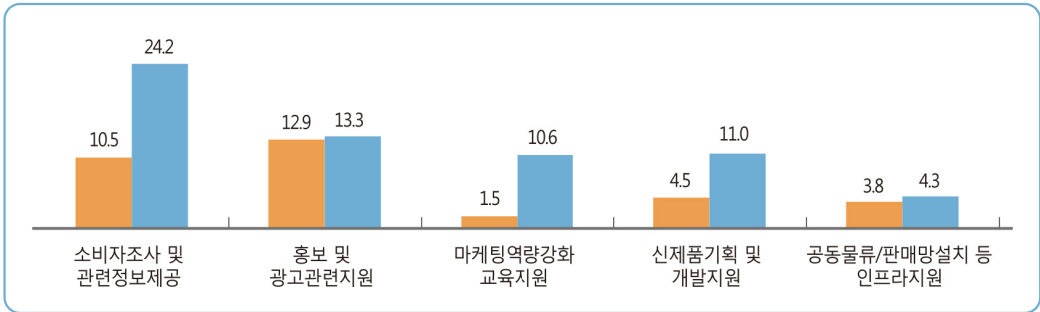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성기업실태조사보고서, 2013

특히 ‘수요예측 등 시장정보수집 능력이 취약하다’고 응답한 집단은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각각 23.5%와 24.2%로 유사하게 나타났고, 종사자 규모별로는 100인 이상(30.7%)에서, 권역별로는 수도권(26.2%)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기업들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시장트렌드 및 고객의 니즈 분석과 이를 근거로 한 신제품 콘셉트개발 등에 신제품 개발 초기 작업부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여성기업들은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분야 중 시장조사 및 관련 정보제공(24.2%)에 가장 큰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홍보 및 광고 관련정보(13.3%), 신제품 기획 및 개발 관련 지원(11.0%),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지원(10.6%), 및 공동물류 및 판매망 설치 등 인프라 지원(4.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경영자 대상 교육 중에서 마케팅 교육이 요구도가 45.5%로 가장 필요한 분야로 지목하고 있다.

| 그림 4-20 |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필요분야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실태조사보고서, 2013

이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여성기업들은 신제품개발을 위한 시장정보수집으로부터 소비자니즈 분석-신제품개발-제품컨셉트 개발- 4P Mix(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communication)활동-유통채널관리 등 전반적인 마케팅 프로세스에서 역량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여성기업들에게 교육과 컨설팅지원 등으로 마케팅역량을 지원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까지 이러한 마케팅 지원은 매우 일회적이고 산발적인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져 정부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여성기업에 공통되는 마케팅 프로세스는 마케팅 플랫폼(marketing platform)을 구축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즉, 향후 여성기업들의 마케팅 관련 활동 지원은 대부분의 여성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마케팅 프로세스와 개별기업 수준에서 추진해야 할 마케팅 프로세스를 분리, 공통 분야는 platform을 구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 나. 추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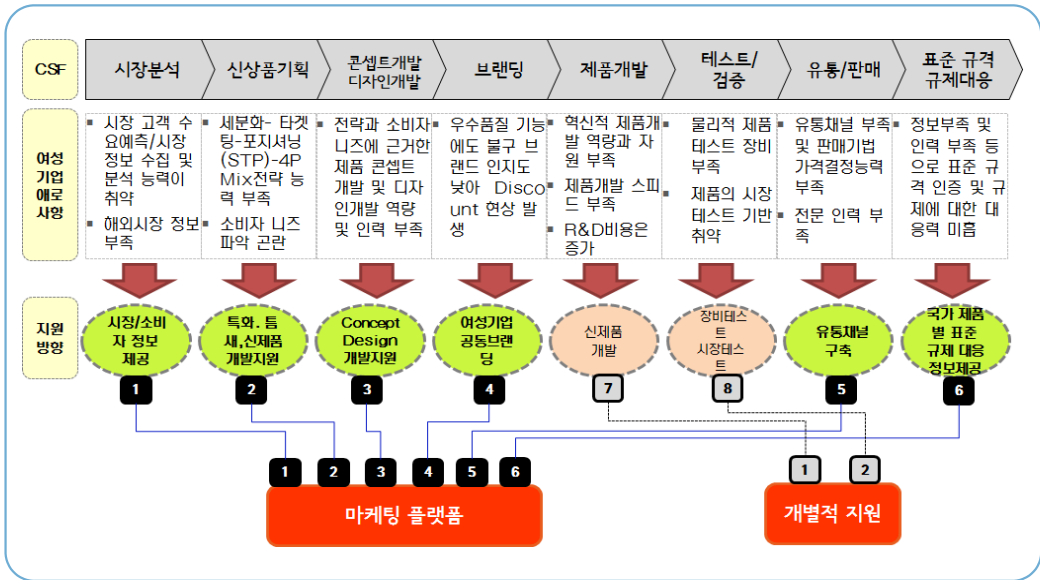
- 1) 여성기업 마케팅 플랫폼 구축
- 2)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 발굴 및 상품화 개발 원스톱(One-stop) 지원
- 3) 서비스 리노베이션(Service Renovation) 컨설팅 지원
- 4)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 제고



1) 여성기업 마케팅 플랫폼 구축

여성 기업들을 위한 마케팅 플랫폼(marketing platform)은 고객지향성, 시장지향성을 제고하고 신제품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더욱 신속한 시장대응 및 상품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림 4-21 |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Platform 전략



그동안 여성기업들은 시장 정보 수집 분석 능력이 취약하여 시장트렌드 및 소비자의 니즈 등을 효과적으로 포착하여 신제품을 기획, 혁신제품 또는 개선제품을 신속하게, 그리고 적시에 시장에 출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많은 여성기업들이 수요예측 등 시장 정보수집 능력이 가장 취약하고, 신제품 개발 및 제품 개선 기획 능력이 스스로 취약하다고 느끼고 이같은 역량을 개선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은 최근 몇 년동안 좀처럼 개선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러한 여성기업들의 취약성을 개선하고 마케팅 역량 강화를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마케팅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케팅 플랫폼의 핵심적인 기능은 여성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신제품 개발을 위한 마케팅 활동, 즉 시장 및 소비자의 니즈 분석- 신제품 콘셉트 개발- 신제품 콘셉트

---

구현- 공동 브랜딩- 혁신제품개발로 이어지는 일련의 공통적인 마케팅 활동을 플랫폼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사)한국여성경제인협회 내부에 별도의 조직 또는 센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조직은 마케팅리서치 전문가 및 상품기획 전문가, 콘셉트개발 전문가, 마케팅 전략전문가 등 각 분야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며, '마케팅 플랫폼'의 전 과정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때로는 외부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해서 여성기업들의 신상품 개발 또는 혁신제품의 개발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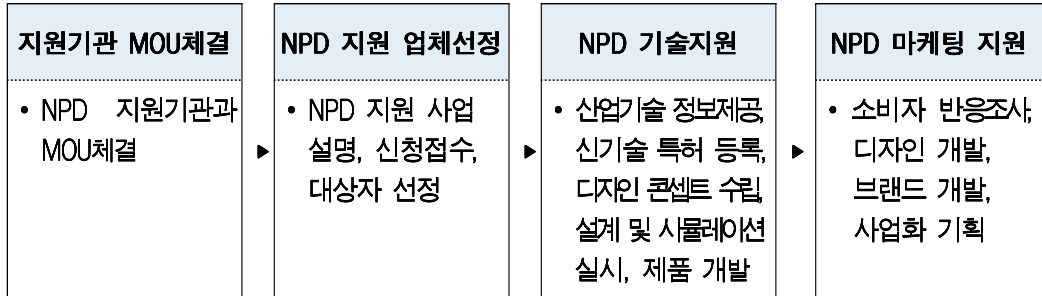
플랫폼 기반의 마케팅 지원은 여성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시장 및 고객 니즈에 기반한 상품기획 및 신제품 개발 상의 문제점을 크게 개선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개별적인 방식의 마케팅 지원에 비해 효율성과 효과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 2)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 발굴 및 상품화 개발 원스톱(One-stop) 지원

여성기업들은 판매관리에 애로가 있고, 이 부분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길 기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판매에 앞서 팔릴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마케팅을 지원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현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수출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해외박람회 지원 등의 일부 판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성기업들의 마케팅을 지원하는 체계는 미흡하다. 이를 위해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주체가 되어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상품화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NPD(New Product Development)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NPD 사업에 필요한 국책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컨설팅 회사와 MOU체결을 통해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여성제조업의 신제품 기획단계에서부터 판로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그림 4-22 | NPD 지원사업 추진 프로세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의 지원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지원대상은 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창업 후 3년 미만) 국내 여성기업으로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고, 바로 상용화가 가능한 성장 유망한 아이디어로 한다. 특히 생활가전, 화장품/미용용품, 식료품/음료, 섬유/의복/가방/신발 등 여성적합 제품분야를 집중적으로 선택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여성기업 육성뿐만 아니라 여성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여성종사자 비중이 높은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

표 4-34 | NPD사업관련 각 기관별 주요 역할

주요 기관	주요 역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맞춤형 기술지원, 제품모형 시뮬레이션 실시, 산업기술 정보제공 등
한국디자인진흥원	중소기업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지역지식센터	신규 브랜드 개발, 제품 디자인의 산업재산권 창출 도모
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 촉진 지원사업을 연계 활용(중소기업 공동 A/S센터,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 여성기업제품 전용관, 중소기업 제품홍보 지원 등)
컨설팅 회사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조사 및 사업화 기획

선정된 예비여성창업자 및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상품화 제작 프로세스를 통해 원스톱으로 지원하되 지속적인 산업기술 정보제공 및 기술 검토, 신기술 특허등록 등을 지원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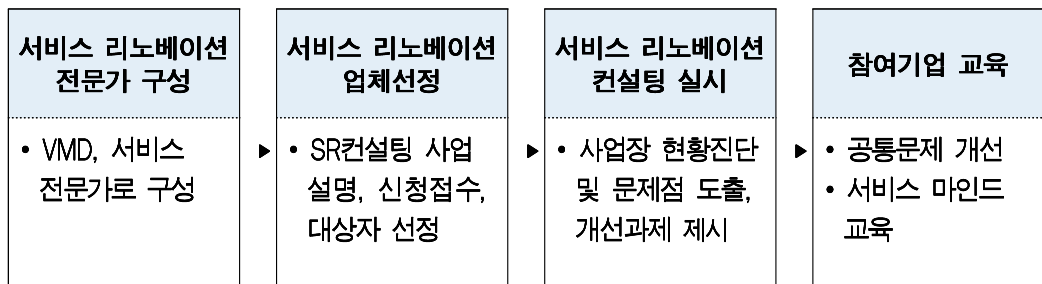
디자인 콘셉트 개발, 설계, 시제품 개발 등을 단계별로 지원한다. 또한 제작된 시제품에 대해서는 상품의 목표시장, 수요층, 시장성 및 경쟁력 분석을 위한 소비자 반응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디자인을 완성하고, 브랜드 개발을 지원한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구체성, 기술의 독창성, 경쟁우위성, 마케팅전략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하여 사업 성공률을 제고한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NPD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협약체결, 사업비 집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 3) 서비스 리노베이션(Service Renovation) 컨설팅 지원

여성기업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음식 및 숙박업이 33.8%, 도매 및 소매업이 28.1%로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이 두 업종은 서비스 경쟁이 치열한 분야로 고객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서비스 리노베이션(Service Renovation) 컨설팅 지원사업을 운영하여 국내 여성기업의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 도출 및 개선과제 실행을 지원하며, 교육훈련 등을 통해 여성 서비스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한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서비스 리노베이션 전문가 집단(Pool)을 구성하고, 창업 후 6개월이 지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서비스 리노베이션 컨설팅을 지원토록 한다. 서비스 리노베이션 컨설팅은 사업장 현황진단, 문제점 도출 및 개선과제 제시 순으로 실시한다. 사업장 현황진단은 해당 사업장이 제품 및 서비스 콘셉트에 적합한 곳에 위치해 있으며, 상권 내에서 경쟁력 있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지 입지 및 상권분석을 실시하고, 상품 특성 및 매출현황, VMD(Visual Merchandising), 고객관리 및 판촉현황 등을 분석한다.

| 그림 4-23 | 서비스 리노베이션 지원사업 추진 프로세스



서비스 리노베이션 컨설팅 지원대상은 여성들의 구매율이 높고, 제품을 직접 보거나, 서비스 체험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감성적인 요소가 구매에 강하게 작용하는 분야로 의류판매 및 액세서리 판매점, 산후조리원, 노인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등을 집중 지원하도록 한다. 위의 지원대상 업종 중 분기별로 1개 업종씩 선정하여 지원사업 완료시점에 업종별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참여기업간 서비스 수준 비교 및 공통문제점 발견사항, 우수한 사항에 대한 벤치마킹, 서비스 마인드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

사업장에 대한 진단은 고객이 사업장에 들어와 나갈 때까지의 고객동선과 상황에 따라 점장 및 점원이 어떻게 고객을 응대하는지 고객접점(MOT : Moment of Truth) 분석을 하고 사업장별로 고객응대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도록 한다.

표 4-35 | 사업장 진단 체크리스트(예시)

구분		사업장 진단 체크리스트
1단계	입지 및 상권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 위치는 상권의 핵심부위에 위치해 있고 찾기 쉬운가?</li> <li>• 사업장 주변 상권의 유동인구는 충분한가?</li> <li>• 사업장 주변 상권의 집객시설 및 경쟁사업장의 고객은 어떠한가?</li> <li>• 사업장의 표적고객과 상권의 유동객의 특성이 일치하는가?</li> </ul>
2단계	운영현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사업장의 주력 상품은 무엇이며, 주요 콘셉트는 무엇인가?</li> <li>• 주력 상품의 가격대 및 시즌별 매출은 어느 정도인가?</li> <li>• 해당 사업장의 손익구조는 어떠한가?</li> <li>• 협소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상품을 보기 좋게 연출하고 고르기 쉽게 진열하고 있는가?</li> <li>• 사업장 방문고객에 대한 이력사항을 관리하고 있는가?</li> <li>• 사업장 방문고객의 유형을 분류하고 있는가?</li> <li>• 방문고객 유형에 따른 고객관계관리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가?</li> <li>• 목표고객에 적합한 홍보나 이벤트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가?</li> <li>• 홍보나 이벤트 활동 시기나 횟수는 적당한가?</li> <li>• 홍보나 이벤트 활동에 따른 성과를 모니터링 하고 있는가?</li> </ul>
3단계	고객접점 (MO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객을 가장하여 사업장의 서비스 실태조사(미스터리 쇼퍼)방법활용</li> <li>• 고객접점 및 서비스 실태조사 방법 설명 후, 사업장당 2인의 미스터리 쇼퍼 투입 (사업장별로 시간과 날짜를 달리하여 투입)</li> <li>• 미스터리 쇼퍼는 인테리어 및 디스플레이, 고객접점 서비스, 기타 고객 클레임 대응 현황 등을 조사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li> </ul>

#### 4)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 제고

2013여성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기업의 83.8%가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구매 제도에 대해서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여성기업 공공구매 활용도도 낮은 수준이다. 이 조사에서 90.7%의 여성기업이 공공구매 납품경험이 없으며, 납품경험이 있는 기업은 불과 9.3%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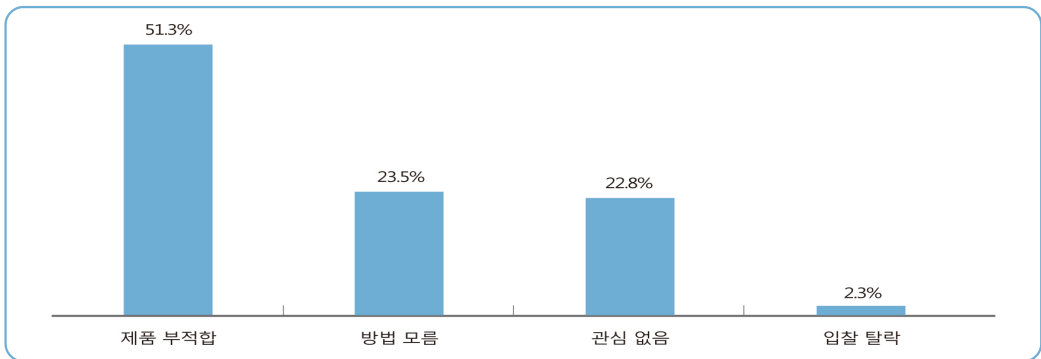
| 그림 4-24 | 공공기관의 의무구매에 대한 인식과 구매활용 현황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3여성기업실태조사보고서

여성기업제품의 공공구매를 활용하지 못한 이유에 관해서 방법을 모르거나 관심 없는 기업이 46.3%, 제품/서비스의 부적합이 51.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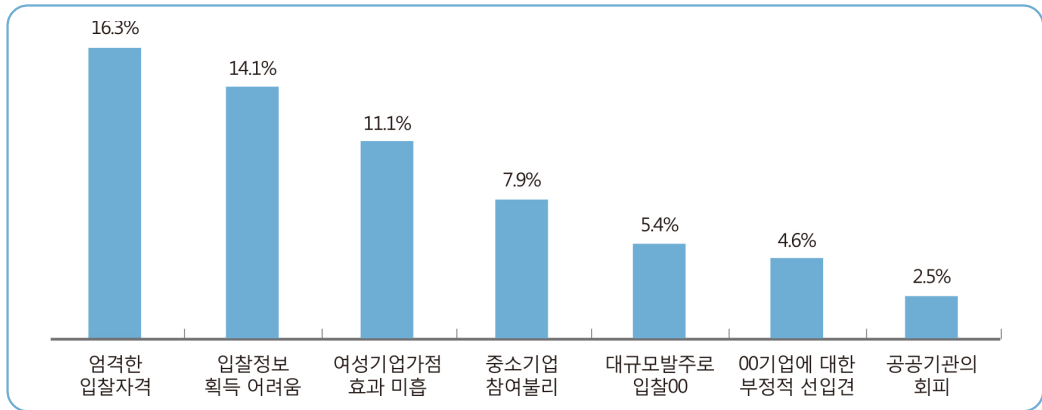
| 그림 4-25 | 그 공공기관 납품 경험 없는 이유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3여성기업실태조사보고서

또한 공공구매 입찰시 까다로운 자격기준(16.3%), 정보입수의 어려움(14.1%), 가산점 제도 미흡(11.1%)등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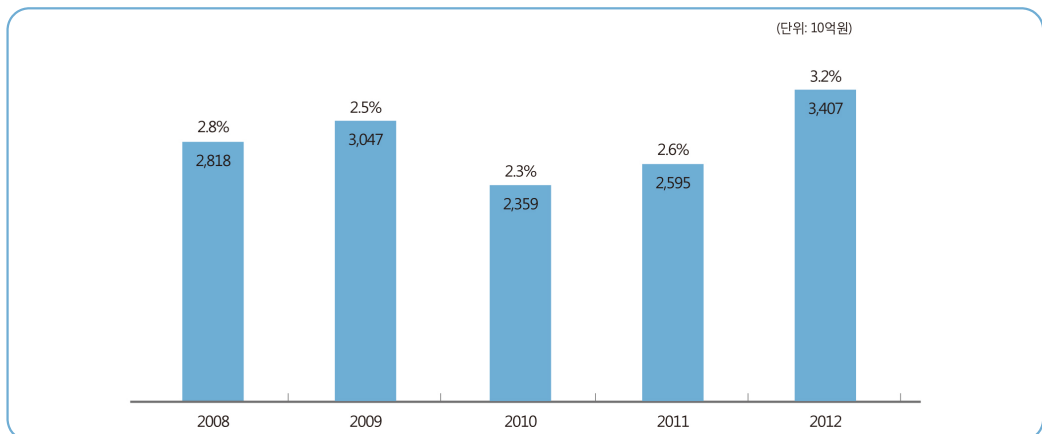
| 그림 4-26 | 공공기관 구매 입찰시 애로사항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3여성기업실태조사보고서

이같은 어려움과 진입장벽 등으로 인해 여성기업제품 구매액은 2013년 공공기관의 총구매액 106.4조원 중 3.4조원으로 전체의 3.2%에 불과하고 5년간 평균 2.8조원(2.7%)로 다소 증가한데 그치고 있다.

| 그림 4-27 | 공공기관 여성기업제품 구매실적 추이



※ 자료 : 공공구매 종합정보, [www.smpg.go.kr](http://www.smpg.go.kr)

---

여성기업이 전체 중소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에 비하면 여성기업에 대한 공공 구매 비중은 매우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성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수 3,354,320개 중 1,306,148개를 차지, 38.9%비중을 보이고 있다. 2012년 공공기관 총구매액 106.4조원 중 중소기업제품 총구매액은 71.9조원으로 67.7%를 차지하는데 비해, 여성기업제품 구매액은 3.4조원으로 전체의 3.2%에 불과하다.

이같은 실적은 여성경제인들이 중소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구매액으로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이러한 현상에 비추어 볼 때 여성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공공기업 의무구매비율을 상향 조정했음에도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로 인해 공공구매 활용실적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여성기업의 판로지원의 핵심수단인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보완과 여성기업계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 나. 추진과제

- 여성기업의 공공구매에 대한 인식 확대
- 공공구매의 수요와 공급 간 원천적 불일치 현상 해소
- 공공구매 수요 적합형 제품 개발 및 협동조합 등 설립 지원
- 공공기관 구매입찰 진입장벽 완화

### ① 여성기업의 공공구매에 대한 인식 확대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우선구매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들은 이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하고 업무 프로세스 이해도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공공기관에서 소요되는 물품 및 용역의 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은 복잡한 절차와 방법을 통하여 계약하며 실제 계약단계별 제출서류 작성, 전산입력 오류로 인한 서류반려, 수정, 재작성, 출장 등의 애로가 발생한다.



### < 참고 : 조달청 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 제도 >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품질, 성능, 효능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3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써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의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하고 고객이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

사업초기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 있어서 관련 법령 적용 착오, 절차 위반은 업체의 손실로 귀결됨으로 이에 대한 숙달된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이다. 따라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국내 여성기업 중에서 조달청에 기존 등록업체, 등록희망업체를 상대로 여성기업의 물품 및 용역의 조달등록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입찰참여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구매 MAS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다수공급자계약 실무교육 강사, 조달청 근무 경력 등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구성하고,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MAS 지원사업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며, MAS 지원사업을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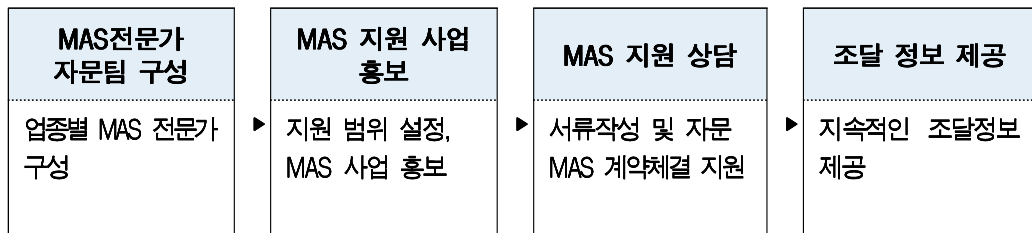
### < 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 지원사업 범위 >

- 다수공급자물품 구매참가자격 지원 (조달청 업체등록 / 제조물품등록)
- 적격성 평가 지원 (실적증명발급방법 및 계약물품 인-허가사항검토)
- 협상물품등록 지원 (목록화 요청 및 제품별 표준규격서 작성)
- 가격자료 작성방법 지원 (매출원장, 계약서, 세금계산서 검토)
- 나라장터 조달업체 업무 온라인 운영방법 지원
- 규격추가, 단종처리, 가격관리, 조달물자 품질관리 및 사후 관리 지원
- 기타 행정업무 지원 등

MAS 지원사업은 사업초기 주간단위 상담체계를 운영하여 전문가가 주간단위로 지정 요일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상주하면서 공공구매에 대한 서류작성을 지원하고,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여성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토록 하며 향후 상시지원체계로 전환하도록 한다.

| 그림 4-28 | 공공구매 MAS 지원사업 추진 프로세스



또한 공공구매 상담지원 뿐만 아니라 여성기업들이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우선구매제도에 관심을 갖고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기업 통합 정보망을 통해서 지속적인 조달정보를 제공토록 한다.

정확한 서류작성, 숙달된 계약행정업무 수행지원 등의 공공구매 MAS 지원사업을 통해 여성기업은 업무 효율성이 증대되고, 계약진행의 원활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신속한 계약추진, 최신 조달정보 습득으로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시장 판매확대가 가능 할 것이다.

## ② 공공구매의 수요와 공급간 원천적 불일치 제거

전체 중소기업 대비 여성기업 비중이 38.9%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여성기업제품 공공 구매가 수년째 3.4조원(3.2%)수준에서 맴도는 것은 공공구매의 수요와 공급 간의 원천적인 불일치(mismatching)현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공급자인 여성기업은 적합한 제품이 없거나 제품 등을 구매해주는 공공기관이 없다고 보는 반면, 공공기관은 구매할만한 적합한 여성기업 제품 등을 찾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4-36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상	분포	원인	개선 방안
제품특성상 공공구매에 적합하지 않음	5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기업의 업종 특성상 공공기관의 수요와 사용용처에 부적합한 물품 용역 또는 공사가 있을 수 있음</li> <li>- 공공기관의 수요와 용도에 전혀 적합하지 않거나(제조업41.3%, 비제조업53.5%),</li> <li>- 제품 카테고리에는 적합하더라도 공공기관의 구체적 용도에 부적합한 경우</li> <li>- 공공기관의 수요 및 용도와 여성기업 제품의 공급간의 원천적 불일치를 해소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의 수요와 여성기업의 공급간의 원천적 불일치(mismatch)현상을 제거해야 함.</li> <li>- 공급자인 여성기업은 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여성기업의 생산/공급 물품 및 용역, 공사 리스트를 작성해서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수립을 지원</li> <li>- 수요자인 공공기관은 기관별 구매 가능한 물품 및 용역, 공사 리스트를 작성해 여성기업의 공급능력 확충 및 준비 필요</li> <li>- 공공구매 활용 절차와 공급가능 제품 목록과 구매가능 물품 목록을 포함한 공공구매 활용가이드북 제작 배포</li> </ul>
공공구매 판매 방법을 모름	2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력부족 등으로 적극적으로 공공구매 입찰정보를 탐색하지 못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지원센터 사이트 공지의 메일링 리스트를 통한 입찰정보의 제공</li> </ul>
정보입수의 어려움	14.1%		
공공구매에 관심이 없음	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기업의 업종특성상 최종소비재 또는 중간재의 경우 공공구매가 불가능할 수 있음</li> <li>- 섬유, 의복, 가방, 신발 등 경공업제품의 경우 무관심(47.5%) 높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별 또는 품목별 협동조합을 결성하거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수요와 용도에 적합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공공구매 수요개발 필요</li> </ul>
높은 입찰 참가 자격기준	1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도한 실적, 품질보증, 입찰 자격요건 등의 자격기준으로 인한 탈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완화 필요</li> <li>- 여성기업 공공구매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찰자격기준과 절차미련 필요</li> </ul>
중소기업의 참여 불리	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입찰 참가자격장벽을 높게 인식</li> </ul>	
여성기업 가점 제도 효과의 미흡	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가점제도가 미흡한 것으로 인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을 상향조정할 필요</li> </ul>
대규모 발주에 따른 입찰 곤란	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능력부족 등으로 전체 조달입찰 물량을 충족하지 못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품목 생산자간 컨소시엄 또는 품목별 협동조합 설립 등으로 생산능력 확충을 통한 돌파 필요</li> </ul>
공공기관이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회피	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허 등의 제품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납품 추진 필요</li> </ul>

※ 자료 : 2013여성기업실태조사보고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표 4-37 | 공공기관의 유형별 현황

(단위 : 조원, %)

유형	하위유형	예시(지정공공기관 286개)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등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마사회,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신용보증, 기금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기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력거래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기타 공공기관		기초전력연구원, 인천종합에너지(주), (주)강원랜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표준협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전KDN, 한전KPS(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등
비지정기관		군인공제회, 한국해양전략연구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 자료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법제처(2014년)

이러한 수요와 공급 간 원천적 불일치 현상을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는 현재까지 개발되지 않은 공공구매 가능 아이템을 찾아내는 것이다. 즉 공공구매 활용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하여 공급자인 여성기업과 수요자인 공공기관 간의 물품 등의 수급에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여성기업은 표준산업분류기표를 기초로 여성기업의 생산/공급 물품 및 용역, 공사 리스트를 작성해서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수립을 원활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 반면, 수요자인 공공기관은 기관별 구매 가능한 물품 및 용역, 공사 리스트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여성기업의 공급능력을 확충할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 간의 근본적인 불일치와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구매 활용가이드북 제작 배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가이드 북에는 공공구매 활용 절차를 포함하여 여성기업의 공급가능 제품목록과 공공기관에서 구매가능 물품 목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공공구매 수요 적합형 제품 개발 및 협동조합 등 설립 지원

여성기업 제품의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 확보는 법적 제도적 보완만으로는 가능하지가 않고 여성기업계의 자구적인 노력도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물품 용역 및 공사에 구체적인 용도와 규격에 적합하도록 규격 또는 모델 변경을 포함한 신제품 개발, 품질개선 노력도 필요하다.

여성기업의 업종 특성상 일부 제품 등의 경우 공공기관의 수요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공공구매의 최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조업 부문과 일부 비제조업부문에서는 세심한 관심을 갖고 공급기회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여성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저변확대와 실효성 확보는 제품 특성상 공공구매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와 공공구매에 관심이 없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로 보인다. 즉 공급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적절하게 기회가 발굴되지 못한 숨은 아이템을 추가로 발굴하는 것이 공공기관 의무구매제의 확대와 실효성 확보의 첩경으로 인식된다. 공공구매 제도를 잘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경우와 공공구매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공공구매제도를 모르는 경우 교육과 정보제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예를 들어, 제품 특성상 공공구매와 부적합이 기존의 제품 카테고리와는 적합하나 제품 규격과 용도가 적합하지 않는 경우라면, 공공기관의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용도에 적합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거나 제품을 개선함으로써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공공구매 제품과의 부적합이 제조업 41.3% 및 비제조업 53.5%로 비중이 매우 높아 이 부분의 개선 없이는 여성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공공구매에 무관심인 경우에도 산업별 또는 품목별 협동조합을 결성하거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수요와 용도에 적합한 제품개발을 지원하여 공공구매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남동발전(주)의 경우 현장작업복을 구매하는데,

---

섬유원단 제조업체와 봉제업체, 의류업체들의 개별적 대응으로는 이러한 수요에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작업복 제조 납품에 관한 가치사슬(value chain)상의 여성기업을 통합하여 협동조합 설립이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서 대응가능하다.

셋째, 개별기업 수준에서 생산능력부족 등으로 전체 조달입찰 물량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이와 마찬가지로 동종품목 생산자간 컨소시엄 또는 품목별 협동조합 설립 등으로 생산능력 확충을 통한 돌파할 필요가 있다.

여성기업의 자구노력은 여성기업 자체 노력과 동시에 구체적인 사실과 문제를 파악하고 전문 상담자 또는 현장 컨설턴트들의 맞춤형 문제해결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 ④ 공공기관 구매입찰 진입장벽 완화

여성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서는 각종 자격기준과 요건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여성기업들의 공공구매시장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들로는 과도한 납품실적요구, 과도한 품질보증, 엄격한 입찰자격요건 등의 엄격한 자격기준으로 인해 소기업이 대부분인 여성기업들이 탈락하는 사례가 많아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이는 여성기업의 자구적인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진입장벽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실적기준의 완화 등 입찰자격기준은 완화하고 여성기업 가산점을 높여 여성기업의 공공기관 구매 입찰 참여를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일반 중소기업 입찰과는 별도로 독립적인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입찰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경쟁의 범위를 전체 중소기업간의 경쟁 수준에서 여성기업간의 경쟁수준으로 낮추어 여성기업 공공구매 비율을 높일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여성기업 제품 중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구매액이 23,090,629백만원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이 2,113,336백만원(9.2%)인데 이중 여성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의 비중은 정확하진 않으나 공공기관들이 우선구매를 기피, 구매비율이 낮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청에서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은 '10년

1.37조원, '11년 1.68조원, '12년 2.1조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반면, '10~'12년 까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대비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비율은 평균 8.37%로 목표치에 다소 모자라는 현실이다.

기술 혁신형 여성기업의 육성과 여성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활성화가 절실하다. 여성기업은 창조경제의 실천 주체로서 기술개발에 성공하고도 신뢰성과 자금력 부족으로 사업화 초기에 시장 진입에 애로를 느끼는 여성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 2. 여성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 가. 배경 및 필요성

전 세계 국가간 무역 장벽이 완화되고, 인터넷 발달로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하나의 거대한 글로벌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거대한 준(準)내수 시장이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의 해외수출비중 및 해외수출참여는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여성기업 실태조사(2013)에 따르면, 여성기업의 수출참여비율은 전체의 5.7%에 불과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기업들의 해외진출이 부진한 원인은 시장정보부족(16.7%), 무역전문 인력부족(9.4%), 바이어발굴의 어려움(8.5%)을 꼽고 있다. 여성기업들은 효과적인 해외마케팅 수단으로는 시장개척단 및 전시회참여(16.5%), 무역회사활용(9.8%)을 주목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들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제조업분야의 여성기업의 수출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내수시장 중심의 매출구조를 유지하고 있어서 여성기업들을 수출지원을 통해 매출구조의 다변화와 FTA의 기회요인을 활용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차세대 글로벌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중국 인도와 글로벌 생산 및 소비의 중심지로

---

부상할 아시아 태평양 시대에 적극 대응하여 FTA로 형성될 준내수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장기적인 저성장기조로 인해 내수매출의 감소를 상쇄하고 수출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외 매출비중을 증가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성기업의 수출 기업화 지원을 위하여 수출 잠재력이 있는 유망기업을 발굴 및 선정하여 글로벌형 강소 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내수중심 기업의 해외진출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대행기업의 선정 및 활용이 필요하다.

## 나. 추진방안

- 1) 여성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One-stop형 지원
- 2) 글로벌 강소기업형 여성기업의 집중 육성

### 1) 여성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One-stop형 지원

수출초기의 여성기업은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과 비용문제로 현지시장에 대한 이해 및 바이어 발굴 등의 마케팅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현지 직접 마케팅에 어려움이 있는 수출초기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타겟 국가 선정과 시장조사,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상담지원까지 맞춤형 토탈 전문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여성기업 전 업종에 대한 지원은 인력, 비용, 시간 등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에 사업 초기에는 여성기업들의 수출품이 많은 이·미용품, 생활용품, 패션용품, IT 등의 업종으로 시작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지원내용은 1단계 수출잠재력 있는 여성기업의 발굴 및 선정, 2단계 여성기업 수출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3단계 해외 현지시장 진출 지원 등으로 단계적으로 나누어 집중적인 원스탑형을 지원할 수 있다.

글로벌 강소기업형 여성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출잠재력이 있는 유망 기업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수출기업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내수 중심의 여성기업



가운데 제품의 수출 적합성 및 글로벌 수출역량 등을 평가하여 성장 유망한 여성기업을 발굴하고 선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선정 대상은 수출잠재력 있는 내수기업과 기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기업 들은 일정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시장잠재력, 경영자 특성, 수출물입도 및 수출역량과 보유자원 등을 감안한 평가지표들을 활용하여 선정한다.

선정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는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해 집중적인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실전 단계로 해외로 진출하는 과정을 지원하는데, 카탈로그는 물론 전문 대행업체를 통해 실제 필드에서 수출 초보 여성기업이 경쟁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대부분 여성기업들이 해외수출을 원하지만 시장정보부족, 전문인력부족, 바이어발굴의 어려움으로 인해 해외시장 진출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내수 중심의 여성기업을 수출기업화하기 위해서는 글로벌화 초기 기업들에게는 전문 무역대행기업이 필요하다. 무역관련 인적자원과 수출역량이 부족한 초보기업들이 제 발로 걸어서 해외시장을 진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정수준의 수출경험과 수출역량을 축적하기까지 전문 수출대행기업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떤 기업도 글로벌화 1단계는 간접수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다양한 여성기업들의 수출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또는 국가별 전문 수출 대행기업을 공개모집하여 여성경제인협회와 MOU를 체결하여 협력 파트너를 확보해야 한다.

최근 산업통상부에서 현재 약 8만 7천개에 머물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수를 10만 수출중소기업으로 육성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있는데, 여기에도 여성기업들에 대한 별도의 수출기업화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 글로벌 강소기업형 여성기업의 집중 육성

FTA체결 확대에 따른 준(準)내수시장의 확장은 수출기업들을 둘러싼 외부 기회요인 중에서 가장 우호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

FTA 체결 즉시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며, 일부 보호산업 분야의 품목에 대해서만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인증 규격 등 비관세장벽도 상호인정협정 등을 통해서 절차가 간소화되거나 철폐된다. 그래서 FTA가 체결된 시장을 준내수시장이라고 할만하다.

중국 등의 해외에서 끌어당기는 요인(full factor)과 한국에서 밀어내려는 요인(push factors)을 최적의 조합으로 활용하여 많은 여성기업들을 글로벌 시장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

또한 수출 초보기업들을 위한 산업별 또는 품목별 전문무역 대행기업을 활용, 초보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출잠재력이 있는 수출유망 여성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수출전문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계획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구체적인 육성 로드맵(Roadmap)과 정책 목표를 갖고 추진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치기 쉽다. 기존의 히든챔피언육성, World Class 300 등 글로벌 전문기업육성 계획이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계획에 여성기업들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3. 여성기업의 네트워크 및 혁신역량 강화

#### 가. 배경 및 필요성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기업은 2010년 0.4%로 2008년 2.1% 대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여성기업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즈니스에 필요한 각종 네트워크 참여에 있어서는 불리함이 더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회원으로서 기대되는 혜택은 마케팅, 홍보 등 판로지원 31.4%, 여성경제인 상호 네트워크 구축 30.7%,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 22.2% 순으로 조사되었다.

| 표 4-38 | 여성기업인의 불리한 점에 대해 느끼는 정도

(단위 : 점)

내용	평균	
	2008년	2010년
가사, 자녀보육 추가 부담	3.85	3.45
남성 중심의 비즈니스 관행(접대 문화 등)에 적응 곤란	3.22	3.16
남성 위주의 네트워크 운영으로 여성의 참여 제한	3.02	3.06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여성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	3.06	2.99
소극적, 위험회피 성향 경영으로 인한 사업 기회 상실 우려	2.99	2.98

주1) 5점 기준 : 5점 많이 느낀다 ~ 1점 전혀 느끼지 않는다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5인 미만 기업은 제품 마케팅, 홍보 등 판로지원 혜택을 32.7%로 가장 기대하고 있는 반면, 5인 이상 기업은 여성경제인 상호 네트워크 구축혜택을 34.9%로 가장 기대하고 있다. 비즈니스 네트워크 참여는 소기업보다는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더 많이 필요해지고 사업에 미치는 영향도 더 커지는 점을 고려할 때, 여성이 비즈니스 네트워크에서 불리함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표 4-39 | 여성경제인협회 회원으로서 기대되는 혜택(중복응답)

(단위 : %)

구분	5인 미만 기업	5인 이상 기업	전체
제품 마케팅, 홍보 등 판로지원 혜택	32.7	27.9	31.4
여성경제인 상호 네트워크 구축 혜택	29.1	34.9	30.7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 혜택	20.9	25.6	22.2
국내,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혜택	14.5	11.6	13.7
없음	2.7	-	2.0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지원 정책 및 창업활성화 설문조사 결과, 2011

한편,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 여성경영자 교육 및 연수 참가경험이 있는 기업의 경영성과는 참가경험이 없는 기업보다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 등의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경영자 교육 및 경영자간 교류 확대 등 경영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표 4-40 | 교육 및 연수참가 집단별 경영성과 비교

(단위 : % 천원)

구분		응답 비중	매출액	당기순이익
전체		100	147,206	32,619
여성경영자 교육 및 연수 참가경험	있음	7.8	233,703	36,017
	없음	92.2	139,900	32,332

주) 창업이전 경력은 현재 창업한지 7년 미만 응답자(1,171명)만 대상으로 조사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매년 여성CEO MBA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참가 인원도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여성기업들의 교육 및 연수 참가 경험은 저조한 수준이다. 이는 여성기업들이 규모가 작다보니 인력·시간 등의 제약으로 저조할 수 있으나, 지역 내 홍보 부족으로 여성CEO 교육에 대한 여성기업들의 인지도가 낮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기업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교육사업을 홍보해야 하며,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수립하여 만족도 및 경영성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나. 추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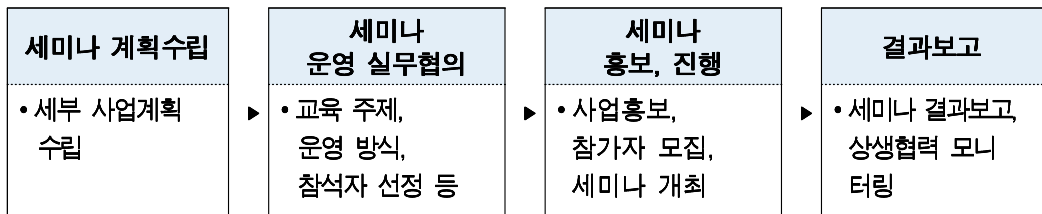
- 1) 기업간 협력 네트워크를 위한 중소기업 융복합 세미나 개최
- 2) 여성CEO 교육 내실화 및 홍보강화
- 3) 여성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을 위한 멘토링 기능 강화

1) 기업간 협력 네트워크를 위한 中企 기술 융복합 세미나 개최

감성기반의 사업아이템을 가지고 있어도 기술력이 부족하여 사업 확장에 애로를 겪고 있는 여성기업들이 있다. 이러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융·복합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타 분야와의 결합을 추진하여 새로운 성장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기업 뿐만 아니라, 남성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상생협력 공감대 확산을 통해 성장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감성아이템과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사업기회를 만들기 위해 한국여성경제인 협회는 지역별, 분기별로 지역 내 산학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中企 기술 융복합 세미나’를 개최하여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토록 한다. 융복합의 관점에서 Value chain(벨류 체인)상 원료, 제조, 유통관련업체, 이업종 간 교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 그림 4-29 | 中企 기술 융복합 세미나 추진 프로세스



또한 세미나 전후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협업, 기술 융복합 커뮤니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여성기업들의 DB확보와 공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여성기업 DB에 대한 통합 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 지역별, 업종별로 여성기업 일반현황, 생산제품 및 보유기술에 관한 정보를 상시 제공하도록 한다.

여성기업들은 융복합 세미나를 통해 이업종, 중소기업간 교류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고 공동기술개발, 신제품개발, 원가절감 등 실질적 협력방안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구매 및 구매(납품)협력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 등의 방법으로 상호협력 해 갈 수 있다.

---

## 2) 여성CEO 교육 내실화 및 홍보강화

여성CEO 교육 성과평가결과 최신 트렌드 습득 및 네트워크 형성 기회 등으로 만족도는 높으나, 경영현장 및 일선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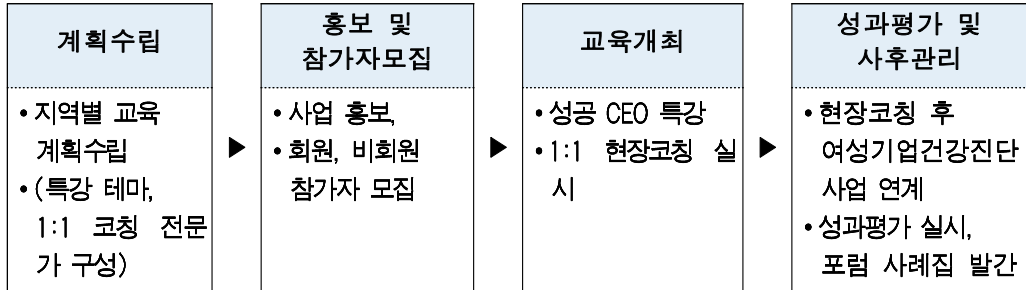
여성기업인들의 경영능력 향상 및 경영혁신 마인드 제고를 위해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경영기법, 현장사례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토록 한다. 또한 성공 CEO 특강을 통해 경영의지 고취 및 노하우가 전수될 수 있도록 한다. 성공 CEO 특강은 최근 1년 내 코스닥 등록기업, 신기술 융복합 성공제품·서비스 사례, 신제품 개발 & 서비스 리노베이션, 공공구매 지원사업 성공기업 등 여성기업인 사례 위주의 강연도 바람직하다.

### < 여성CEO 교육 프로그램 예시 >

- 국내외 경제전망과 소비 트렌드의 변화
- 고객의 마음을 여는 체험마케팅 성공노하우
- 협업, 융복합을 통한 사업의 변화
- 유망기술로 살펴본 미래 산업 트렌드
- SNS를 활용한 마케팅 성공전략
- 신제품 개발 성공전략
- 소비자 욕구에 관여하는 제품디자인의 역할

그리고 국내외 경제 및 소비트렌드 변화, 정부의 지원 정책변화 등의 강연을 통해 여성기업이 시대에 맞추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성CEO 교육은 매월 전국 순회 개최하고, 교육 후, 분야별 전문가가 1:1 현장코칭을 실시하여 여성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그림 4-30 | 여성CEO 교육 추진 프로세스



여성CEO 교육에 대한 지역 내 여성기업들의 관심도 및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 내 주요 신문광고 및 현수막 게재, 홍보물 제작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한다. 강의 내용 및 사례는 강연 참석자뿐만이 아니라, 여성기업이 공유할 수 있도록 특강이후 강연별 자료를 취합하여 포럼 사례집을 발간하고, 여성기업 통합 정보망에 강연 동영상 자료를 게재하여 공유토록 한다.

### 3) 여성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을 위한 멘토링 기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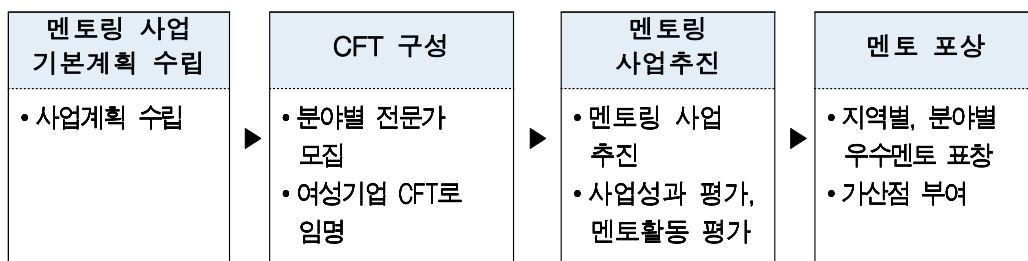
여성기업의 성장단계는 일반적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 창업 후 3년 미만의 진입기 기업, 창업 후 3년 이상 기업으로 매출액 또는 시장점유율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성장기 기업, 매출액 또는 시장점유율이 정체되고 있지만 높은 수익성을 확보하는 성숙기 기업, 뚜렷한 매출성과 없이 기업활동이 위축되거나 재도약을 준비하는 쇠퇴기 기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창업 후 3년 미만의 진입기 단계에 속하는 여성기업의 경우 자금조달, 판로개척, 네트워크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성장단계별 지원을 위해 선배 여성CEO, 전문가 등과의 연계를 통한 경영노하우, 경영기법 등을 전수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멘토링 사업을 위한 지원사업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전문가 Pool 구성이 어렵고, 선배 여성CEO의 참여도 저조한 상황으로 여성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 사업이 발전되지 못하는 상태이다.

따라서 각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여성기업

전문융합지원체계(CFT : Cross Functional Team)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현장밀착 지원을 통해 여성기업의 경영성과를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그림 4-31 | 멘토링 추진 프로세스



멘토링을 위한 CFT 멘토는 재능기부 봉사개념으로 모집하고, 멘토링을 위한 교통비는 지원하며, 멘토의 연간 봉사활동을 평가하여 봉사실적에 따라 협회장이 표창하고, 향후 협회사업에 참가 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한다. 멘토의 연간 봉사활동은 멘토 활동 건수, 업체 만족도, 업체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CFT 멘토를 재능기부 봉사개념으로 추진할 경우 적은 예산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Pool 구성이 가능하며, 분야별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성과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4. 여성친화 전문분야로 구조전환

### 가. 배경 및 필요성

여성기업의 조직형태는 개인사업자 96.8%, 법인사업자 3.1%로 대부분의 여성기업이 개인사업 형태를 보이며 평균 종사자수도 2.86명으로 영세하다. 또한, 여성기업은 자신의 사업이 성숙기 또는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6.9%에 달하고 있으며, 진입기라고 인식하는 기업은 7.3%에 불과하다. 일반 중소기업은 성장기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2009년 48.4%로 높은 반면, 여성기업 전체는 25.8%, 여성 제조기업은 23.7%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표 4-41 |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의 성장단계별 위치 비교

(단위 : %)

구분	연도	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중소제조업*	2008년	9.8	46.7	35.1	8.4
	2009년	9.7	48.4	36.0	5.9
여성기업 전체	2010년	7.3	25.8	37.1	29.8
여성기업 제조업	2010년	6.3	23.7	37.3	32.7

주) 1. 진입기 :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으로 제품/서비스 개발단계

2. 성장기 : 매출액 또는 시장점유율 등의 지속적으로 증가, 양적·질적으로 발전 단계

3. 성숙기 : 매출액 또는 시장점유율이 정체, 지속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확보하는 단계

4. 쇠퇴기 : 뚜렷한 매출성과 없이 기업 활동이 위축되거나 재도약을 준비하는 단계

※ 자료 : 중소기업청, 2010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이는 여성창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쇠퇴기에 접어든 기업에 대한 업종전환 등의 구조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 제조기업의 45.3%는 스스로 제품에서 뚜렷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응답하여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제품개발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여성기업은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쇠퇴기에 접어든 기업이 많으며 제품의 기술(기능)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조적 개선을 통해 미래형 기업으로 재도약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나. 추진방안

- 1) 여성기업 건강수준별 맞춤지원
- 2) 여성친화 전문분야로 사업전환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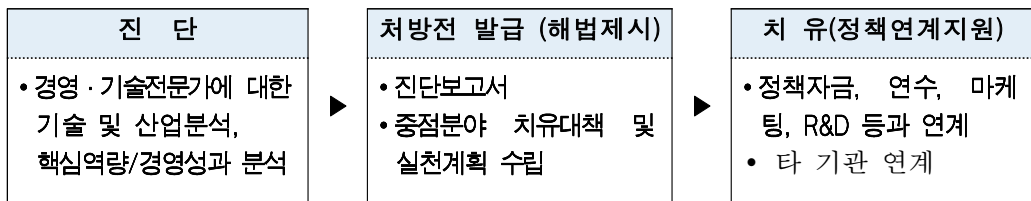
## 1) 여성기업 건강수준별 맞춤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중점사업인 중소기업 건강진단사업은 중소기업의 건강과 성공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하여 업종 전문가가 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정책을 연계·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는 중소기업청 차원에서 확대 추진된다. 중소기업 건강진단사업은 기본적으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개발된 진단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창업 후 2년 이상 및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전략산업 등 중소기업 4,000개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처방전에 따라 금융, R&D, 마케팅,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한다.

그런데 국내 여성기업은 93.4%가 5인 미만 기업으로 좋은 취지의 중소기업 건강진단 사업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환경이다. 따라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건강진단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여성기업의 현실에 맞는 진단도구를 개발하고, 중소기업청의 전문가 Pool을 활용하여 건강수준별 맞춤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여성기업들이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건강진단 사업 상담 및 신청을 하면 경영 및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진단팀이 기업을 방문하여 외부 경영환경과 기업내부 역량 등을 진단한다.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목표를 재설정하고, 기업과 공동으로 경쟁력향상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경쟁력향상 실천계획에 의해 정책자금 융자, 연수, 수출 마케팅, 컨설팅 등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을 해당 기업에 맞추어 연계 지원한다. 구조적 경영애로기업(쇠퇴기 기업)에 대해서는 여성친화 전문분야로 사업전환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 그림 4-32 | 여성기업 건강수준별 맞춤지원 프로세스



2) 여성친화 전문분야로 사업전환 촉진

건강진단사업을 통해 쇠퇴기에 접어든 여성기업은 국가 전략 및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를 통해 여성친화 전문분야로 사업 전환을 유도하여 여성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여성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IT, 바이오, 신소재, 대체에너지 등), 마케팅, 자금, 교육 등 분야별 사업전환 전문가팀을 구성한다. 경영여건의 변화로 인해 현재 영위 업종에서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여성기업, 건강진단사업 결과 새로운 성장동력 모색이 필요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전환 예비진단 신청서를 접수받고, 교육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트렌드 및 신기술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사업전환 전문가의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해 여성친화 전문분야로 사업전환을 하고,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통해 여성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4-33 | 사업전환 촉진 프로세스

1단계	사업전환 전문가 구성	기술(IT, 바이오, 신소재, 대체에너지 등), 마케팅, 자금, 교육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2단계	사업전환 예비진단 신청접수	경영여건의 변화로 인해 현재 영위 업종에서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여성기업, 건강진단사업 결과 새로운 성장동력 모색이 필요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전환 예비진단 신청서 접수
3단계	CEO 대상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비즈니스 트렌드 이해 및 신기술 동향 정보 제공</li> <li>• 사업전환 사업에 대한 설명, 성공사례 등을 제시하여 사업 마인드 전환 및 동기 부여</li> <li>• 교육 대상자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마련</li> </ul>
4단계	전문가 진단 및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방문 실시 및 진단</li> <li>• 신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사업 제안(신제품 개발, 사업 구조전환 등)</li> <li>• 사업 방향, 구조전환 방법, 사업 비용 등을 제안</li> </ul>
5단계	사업전환 계획 승인 및 지원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기업과 전문가가 사업전환 제안 내용 협의</li> <li>• 사업전환 승낙한 여성기업은 사업전환 신청서 작성</li> </ul>
6단계	시책 연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기술 접목 사업전환 실시, 마케팅 컨설팅 추진</li> <li>• 자금 및 수출, 판로개척, 제품 디자인 개발 등 연계지원</li> </ul>



## 제4장 여성기업지원 인프라 확충 및 재정비

### 1. 여성기업관련 제도 및 법률 검토



#### 가. 배경 및 필요성

여성기업과 관련된 법률로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3.7.30)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가 의무화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동 제도의 혜택을 받고자 소위 ‘위장 여성기업’의 출현이 예상됨에 진정한 여성기업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기업의 정의를 강화하고, 구체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 정의함에 따라 양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성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여성이 대표(대표이사)로 등록(등기)될 것만을 요구함으로써 소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첫째, 상위법과 하위법간 위임 불일치문제가 발생하며, 둘째, 여성대표로의 인정요건이 낮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 중소기업법의 여성기업 정의를 참고하여 여성의 소유경영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여성기업을 육성함에 있어서 진정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sup>69)</sup>

최근 여성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비율이 의무화됨에 따라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한 지원제도로서 공공구매제도가 주목되고 있다.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를 기반으로 공공기관에게 일정비율 이상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성기업제품을 일정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하여 여성기업제품의 실질적인 판매확대 효과를 제고하도록 한 것이다.

69) 김정화, 여성기업 육성에 관한 법제연구, 2011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10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자금지원 시 우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아 보다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의 위임을 통해 법률의 구체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성기업 육성을 위해 현재의 여성기업 확인제도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향후,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 검토에 대해서는 법 규정을 구체화하고, 세부적인 법률검토를 추진하여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 나. 추진방안

-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 검토
- 2) 여성기업 확인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인증고도화

###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 검토

#### ① 여성기업의 정의와 범위의 구체화

법률 개정안의 방향으로, 현행 법률에서는 여성기업을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고 하여 소유와 경영 분리의 원칙에 입각하여 여성기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에 소유와 경영이 일치된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성기업, 특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상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수혜대상인 여성기업은 여성대표자가 소유 및 경영을 동시에 하는 기업으로 정의될 필요가 있다. 현행 법과 같이 규정하는 경우에는 여성이 대표자로 등록(등기)된 경우에는 기업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여성기업으로 인정된다는 결과가 도출된다. 최대주주인

---

남성이 쉽게 여성을 대표자로 등록(등기)할 수 있으므로 여성이 대표자로서 최고 경영자에 해당하더라도 소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성기업의 범주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시행령 개정안의 방향으로, 앞서 살펴본 미국의 여성기업 정의와 같이 지분율을 기준으로 여성기업 요건의 정립이 필요하다.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여성기업의 정의기준인 여성 소유에 부합하도록 여성대표의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기업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지분율 50% 초과요건은 여성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비롯한 경영권을 타인의 의사에 좌우되지 않고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볼 수 있다.

## ②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의 보완 및 실효성 강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보면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여성기업제품을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성기업제품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과 같은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결국 여성기업제품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 말이 되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의 인정을 위한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하게 된다.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여성기업까지 고려한다면, 여성기업제품은 여성기업의 제품으로서 여성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이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제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구매 목표비율을 법정하고 있다. 여성기업 제품의 공공조달을 통한 판로지원을 위해서는 목표비율을 향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나, 상향조정은 오히려 남성기업과의 차별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 법적구매비율 준수에 대한 공공기관에 대한 소극적 문책성 법규보다 적극적 장려성 법규의 제정을 통하여 여성기업제품에 대한 구매실적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여성기업제품 구매 실적 우수 공공기관이나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의 추가가 요구되며, 이를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 ③ 법 규정의 구체성 확보

현행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가 여성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적 체계를 갖추고는 있으나, 지원체계에 대한 법적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다소 법률의 구체성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동법 제3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0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3조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사실상 당연한 의무인 그들의 책임만 선언하고 있을 뿐, 동조의 별다른 법적인 의미를 찾아볼 수 없다. 동법 제10조의 자금지원 역시 여성기업을 우대한다고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거쳐 우대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명시되지 않아 법률의 구체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sup>70)</sup>

기업에서 자금 지원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현재, 자금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이자율 감면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여성의 창업 시, 자금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법률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자금지원의 체계성 및 실효성 확보에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법률이 구체적으로 지원 프로그램 및 해당기관 등을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지원정책들이 있는지 여성기업이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 여성기업 육성 프로그램 및 제도가 관련 법령에 구체적·명시적으로 규정된다면, 수요자를 위한 법률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며 정책의 이행성과 지속성이 담보될 것으로 본다.

또한 이러한 법제적 정비작업을 통해 법과 정책에 대한 수요자의 접근성 및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70) 김정화, 여성기업 육성에 관한 법제연구, 2011

---

## 2) 여성기업 확인의 실효성 제고 및 인증고도화

여성기업 확인제도는 여성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2조 및 제8조에 근거한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위한 여성기업 확인요령」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기업인들이 효과적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행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기업의 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과 더불어 여성기업 확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백서에서는 미국의 여성기업 확인제도와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여성기업 확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인증을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① 한국의 여성기업 확인제도

공공기관은 정기적으로 경영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경영평가 항목에는 여성기업제품의 구매실적이 포함되어 있다.<sup>71)</sup> 이는 공공기관이 출산하여 여성기업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실적은 여성기업 확인제도를 통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여성기업제품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여성기업 확인요령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업무는 중소기업청에서 위탁을 받아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수행하고 있다.

여성기업확인 요령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조는 목적으로 법 제9조 및 제 10조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여성기업에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성기업확인제도를 운영함을 명시하고 있다. 제3조는 여성기업확인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로 정하고 있으며, 확인기관의 장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무담당자를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확인제도의 본격적인 내용은 제4조부터 제9조로 볼 수 있다. 제4조는 여성기업 확인을 신청하는 자 즉, 확인제도의 수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g.go.kr)관할 확인기관에 확인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주주명부를

---

71)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제출하도록 명하고 있다. 여기서 기업은 크게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로 나뉘는데 따라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법인은 등기부를 통해 설립일을 비롯한 대표권 임원, 주식발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합자·합명회사의 경우에는 대표권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의 주식 소유 현황까지 파악할 수 있다. 다만, 합자·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주지하다시피 기업규모가 작은 관계로 등기부를 통해 회사대표의 주식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지만, 좀 더 큰 규모인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등기부를 통해 회사대표의 주식소유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가적인 서류의 요청이 필요하다. 요령에서도 이를 감안하여 주주명부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다만, 주주명부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만, 존재하는 것이어서 유한책임,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주가 아닌 사원이 실제이므로 기본적으로 주주명부가 없고, 정관 및 사원명부를 통해 회사대표의 지분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대표자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법적성질이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여 諾成、不要式 계약에 해당하여 계약당사자가 합의로 지분관계를 불특정양식에 의해 당사자의 임의로 기재할 수 있으므로 법인과 같이 주식 또는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서류가 없다는 점이 지적된다.

제5조에서는 확인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하고 있다. 동조 제1항에서는 업무처리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그리고 필요한 경우 7일 이내에 확인하도록 정하며, 제2항에서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사전공문을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제2항의 연장은 예컨대, 천재지변, 신청인 또는 평가위원의 불의의 사고 등과 같이 예측 불가능한 사유 발생의 경우를 의미하며, 대부분의 규정은 처리기간 설정 시, 이와 같은 연장규정을 정하고 있다.

여성기업확인제도의 핵심은 현장실사로 볼 수 있으며, 제6조에서 현장실사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여성대표자가 해당기업의 의사결정 및 경영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을 여성기업으로 확인하게 되는 데, 이를 위한 조사·평가의 방법을 제6조에서 정하고 있다. 여성기업의 확인을 위해서는 위원으로 하여금 직접 사업장에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업장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정하고 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의미하며, 사업자등록증상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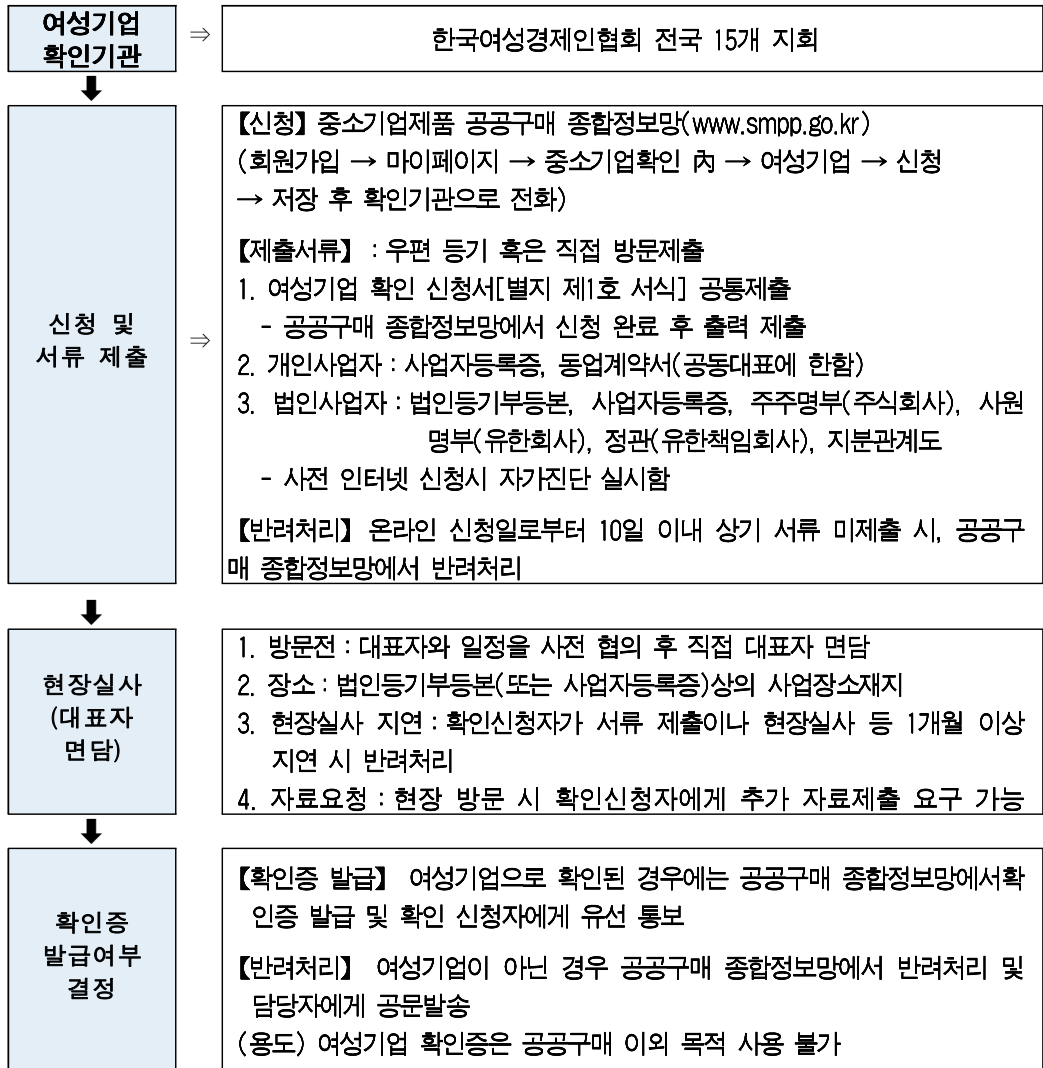
사업장 소재지는 개인사업자의 영업장을 의미한다. 최근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아, 상법 제35조에 따라 지점 소재 관할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를 하게 되는데, 지점이 개설되어 상업등기하거나 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지점 소재지에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진행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과는 달리 지점을 설립할 수 없으므로 상기와 같은 예외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동조 제4항에서는 여성대표자가 현장실사 및 전화·면접에 직접 응하도록 정함에 따라 여성대표 이외의 남성, 남성대표의 동석 및 참관을 배제하고 있다. 제7조는 현장실사의 결과를 우선으로 통보하고, 현장실사에 따른 비용을 일절 징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벤처확인,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여성기업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내에 대표자의 변경 등 확인기준이 상실된 경우에는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확인효력이 상실 되도록 제8조에서 정하고 있다. 확인기준의 상실사유로서 요령은 대표자의 변경 등으로 정하고 있어 예시적 규정에 해당하므로 이와 준하는 사유 예컨대, 남성과 공동대표로 변경등기(등록)하였으나, 주식(지분)의 소유가 적은 경우, 또는 기업의 인수·합병으로 인해 업체의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도 확인기준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제9조 및 제10조는 이의신청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신청기업의 여성대표자 또는 신청자, 이해관계인이 현장실사의 반력처리 또는 확인효력의 상실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확인기관의 장이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관리기관의 장에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관리기관의 장은 심의요청을 받은 경우, 심의를 위한 여성기업확인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정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여성기업 대표, 중소기업관련기관·단체의 지역대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11조는 여성기업으로 확인받은 업체에 대해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사후관리는 주로 여성기업확인증 기발급 업체가 위장여성기업으로 판단될 수 있는 입증이 있는 경우 또는 타 업체에서 위장여성기업으로 제보한 경우 등에 실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34 | 우리나라의 여성기업확인 신청절차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4년 확인업무 운영 및 관리지침

마지막으로 제12조는 확인기관으로 하여금 관리기관의장에게 확인결과를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관리기관의 장이 확인기관의 업무 실태 및 교육실적을 조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확인기관 장은 확인업무를 위해 지정·운영하는 확인업무 담당자에 대해 확인업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확인업무교육은 주로 여성기업의 정의, 여성대표의 경영판단, 확인실적 처리 등 현장실사 및 확인업무 처리에

---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 ② 미국의 여성기업 확인제도

미국의 여성기업 확인제도는 우리나라와 달리 신청자격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성기업 확인신청이 가능한 자는 미국시민 또는 합법적 영주권자인 여성 1인 또는 다수, 최소 6개월 이상 경영을 한 자, 1인 이상의 여성이 최소 51%의 기업을 소유(공개된 기업의 경우 주식의 51%)하는 1인 이상의 기업으로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자 등이 있다. 미국의 여성기업 확인업무는 중소기업청(SBA)의 WOSB (Women-Owned Small Business)프로그램 하에 자신이 직접 인증(Self-certification)하는 경우가 있으며 다음과 같이 4개의 기관에게 맡겨 확인업무(Third party certification)를 수행할 수도 있다.

### < 미국의 여성기업 확인업무 수행기관 >

EPHCC : El Paso Hispanic Chamber of Commerce

NWBOC : National Women Business Owners Corporation

USWCC : US Women's Chamber of Commerce

WBENC : Women's Business Enterprise National Council의 14개 지역 파트너 기관

인증절차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수행기관을 통한 확인업무는 모두 현장 확인을 원칙으로 하는 점은 동일하지만, 확인신청 후 인증서 발급까지의 소요기간은 90일로 미국이 한국보다 더 오래 걸린다. 또한 우리나라는 여성기업의 확인을 요청할 때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전혀 없지만, 미국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확인 수수료 등의 비용이 부과되고 있다. 확인 수수료는 각 확인기관에 따라 다르며, EPHCC에서는 \$225, NWBOC는 일괄적으로 \$400, USWCC는 회원기업에는 \$275이며, 비회원기업에는 \$350, WBENC는 확인기업의 소재 지역 및 기업의 매출규모 등에 따라서 다르게 부과하고 있다. 여성기업 재확인 시 확인 수수료 역시 확인기관 및 각 지부별로 책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차등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 표 4-42 | WBENC Southwest의 여성기업 확인 수수료

매출규모 (백만 \$)	수수료 (\$)	비고
1 이하	300	매출규모에 따른 수수료 차등 적용
1 ~ 5	500	
5 ~ 10	750	
10 이상	1,000	

인증을 받은 여성기업은 최신의 supplier diversity 및 인증제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대우하는 수백 개의 미국 내 기업들과 연방, 주, 지방 정부들의 조달업무담당자에게 대한 목록을 열람할 수 있다. 그리고 멘토링, 교육 및 역량강화 기회 등의 참여자격을 부여받는다. 예를 들면, Dorothy Brother's Scholarship의 Tuck School of Business at Dartmouth과 WBENC의 워크숍 등의 행사, 그리고 WBENC 인증 여성기업간 지원커뮤니티 (Community of Support) 가입 등이 있다.

WBENC에서 인증받은 여성기업은 Women's Business Enterprise Star의 국내 표창, WBENC's Applause Award 표창, International Luminary Award 표창, William J. Alcorn Leadership Award 표창 등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리고 WBENC에서 인증한 여성기업이라는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WBENC의 보도자료 템플릿을 사용하여 새롭게 인증된 기업임을 알릴 수 있다.

또한, WBENC의 행사 후원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을 뿐만 아니라, WBENC 웹사이트에 위치한 WBE Power Profile에서 60초 분량의 영상홍보 자격과 WBENC의 Social Media Profile에서 홍보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 ③ 한국과 미국의 여성기업 확인제도 비교

우리나라와 미국의 여성기업 확인제도는 확인신청 후, 인증서 발급까지의 과정이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확인제도의 운영측면에서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비해 엄격한 인증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인증받은 여성기업에 주어지는 직·간접적인 지원혜택이 매우 다양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기업 확인증을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확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공공기관 조달업무 확인과 여성기업관련 워크숍 및 교육 참석 시 자격확인, 여성전용 소액금융지원, 사전승인대출 등과 같은 자금 지원 신청 시 확인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성기업 확인 수수료를 업체가 부담하지 않는 반면에, 미국은 여성기업이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미국이 발급일로부터 1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년으로 차이가 있다.

표 4-43 | 한국과 미국의 여성기업 확인제도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인증 절차	온라인 가입 → 신청서 및 필요 서류 해당 기관 제출 → 현장 실사 → 결과 통보 및 확인증 발급	
필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li> <li>• 법인등기부등본 1부 혹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li> <li>• 주주명부 사본 1부(법인에 한함)</li> <li>• 기타 확인기관이 요청하는 서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일반정보</li> <li>• 소유자 성별 증빙 서류</li> <li>• 재무상태 증빙 서류</li> <li>• 여성소유자의 소유권 증빙 서류</li> <li>• 직원 현황 증빙 서류</li> <li>• 지배구조 현황 증빙 서류 등</li> </ul>
확인 수수료	• 별도 확인 수수료 없음	• 확인 수수료 있음(확인기관별 상이, 신청기업의 매출규모 및 지역별 차등)
확인 용도	•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기업 활동 참여 (교육 참여, 표창, 홍보 등)</li> <li>• 공공기관 조달업무 확인</li> </ul>
인증서 유효기간	• 확인일로부터 3년 (만료일 1개월 전 확인 신청)	• 발급일로부터 1년 (만료일 75일 전 확인 신청)
소요 기간	• 서류 제출 후 5~8일 소요	• 온라인 신청 후 90일 소요

#### ④ 여성기업 확인의 실효성 제고 및 인증고도화

여성기업 확인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순수 여성기업들이 여성기업으로서의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중인 여성기업 확인제도의 운영방식을 미국과 같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현장실사를 강화하여 실제로 해당 기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철저히 점검하고, 순수하게 여성이 사업주체인 경우에만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여성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미국처럼 혜택을 다양화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백서에서는 여성기업 확인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인증고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현장실사의 전문화이다. 현재 여성기업 확인 반려율이 12% 내외인 수준을 감안할 때, 현장실사를 통해 서류상 여성기업인 업체를 가려내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2013년 기준 국내 여성기업 확인 요청건수는 5,23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의무화가 본격 시행되는 2014년에는 확인신청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증가하는 여성기업 확인신청의 처리와 진정한 여성기업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현장실사의 전문화가 요구된다. 현재, 현장실사는 확인기관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평가위원들에 의해 진행되나, 이들은 주로 협회 내 여성경제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경제인들이 현장실사를 진행함에 따라 누구보다 경영권행사 여부를 잘 파악할 것으로 생각되나, 앞으로는 이들에 더해 전문성과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자들에 의해 현장실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신청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위원 수 또한 광역시도별로 10인 이상은 보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전국에서 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서울과 경기지역은 여성기업 확인업무의 행정 지원을 위한 인력 1명씩 보유하고 있다. 타 지역의 경우에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비해 신청 건수가 적으나, 여성기업 확인업무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 직원이 겸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여성기업 확인업무의 중요성과 향후 활용 가치가 증대됨을 고려할 때, 확인업무만 전담하는 인력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여성기업 확인제도의 실효성이다. 국내의 여성기업 확인제도는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위한 여성기업 확인요령에 의거하여 본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반면, 미국은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 시 확인뿐만 아니라, 교육신청, 정보 활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여성기업의 확인용도를 현재의 공공구매

---

조달용에 국한하지 말고, 자금지원 우대, 정부 및 지자체, 협회의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발급한 여성기업 확인증을 첨부하도록 하여 인증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여성기업 인증제도의 고도화이다. 현재는 모든 여성기업을 하나의 인증체계에 따라 확인해 주고 있다. 그러나 여성기업 중에서 우수기업을 선별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회원을 기업규모, 성장성, 혁신성 등으로 평가하여 우수기업은 여성프런티어 기업(가칭)으로 구분하여 인증하고, 선정된 여성프런티어 기업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인증패 수여 및 시상, 성공기업사례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홍보 영상물 제작을 지원하고, 통합 정보망을 통해 이달의 여성기업인으로 매월 1개 업체씩 홍보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⑤ 여성기업확인요령의 문제점 및 개선안

##### (a) 여성기업확인증의 용도 및 요령의 목적

현행 요령의 명칭은 ‘여성기업 확인요령’이며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여성기업확인증은 공공구매용 및 자금지원 또는 대출용으로도 사용된다. 현재, 금융관련 기관인 지역 신보에서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받기 위한 요한 요건으로 확인증을 요구하고 있다.<sup>72)</sup> 이는 확인증의 용도 외의 사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과 령 및 요령은 여성기업의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자금지원을 위한 확인증의 사용을 차단할 것이 아니라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에서 이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b) 여성기업 확인대상

요령의 목적은 여성기업의 공공구매를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므로 여성기업의 확인대상은 법 제9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여성기업을 여성기업으로 확인하는 것이 당연하나, 현행 요령은 여성기업 확인대상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기업, 중견기업의 경우에도 여성기업 확인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요령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여성기업으로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72) 현재, 경기 및 강원신용보증재단은 여성기업확인증 소유 업체에 대해 자금지원 시 일정비율의 금리인하를 지원하고 있다.



**(c) 여성기업 확인기관**

현행 확인요령 제3조 제1항은 확인기관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지회)로 정함에 따라 현재, 확인업무를 협회의 각 지회에서 관할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인해 확인업무의 통일성을 저해할 수 있다. 예컨대, 지회별로 접수하는 서류가 다르거나, 심사기준이 다른 경우와 같은 지역별 이질적 업무의 수행으로 인해 신청인이 차등처우를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 따라서, 확인기관을 지역 분권하를 단일화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d) 확인업무담당자**

현행 요령 제3조 제2항은 확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확인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확인업무담당자는 확인업무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 예컨대, 신청접수 및 요청, 서류확인, 실적처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본 확인제도의 핵심인 현장실사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현장실사를 진행하는 자에 대한 명시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현장실사를 진행하는 '전문평가위원과 같은 제도의 도입을 통해 현장실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 확인신청의 처리**

현행 요령 제5조는 여성기업의 확인업무를 서류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고 있으며, 필요 시 3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3일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여성기업확인인 현장실사가 진행됨에 따라 신청기업의 여성대표와의 일정조율 문제가 처리기간 준수에 애로사항으로 작용될 수 있다. 예컨대,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신청 후 10일 이후에 현장실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에 벗어나게 되며, 이와 같은 사유를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부득이한 사유는 예컨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처리기간 이외의 날짜에 실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처리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 발생시에는 처리기간의 미준수로 인정되므로 이는 현실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처리기간의 설정이라고 볼 수 있다.

---

#### (f) 현장실사

현행 요령 제6조 제1항은 여성기업의 확인기준으로 ‘여성대표자가 해당기업의 의사결정 및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는 현장실사 시 직접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장소는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로 정하고 있다. 규정은 상기의 이행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예외가 인정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규정에서 원칙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예외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행 요령은 원칙만을 정하고 있고,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칙 및 예외를 동시에 정하든지 아니면, 반드시 하여야 하는 의무조항을 정하든지 규정에서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한편, 현장실사 시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로 방문할 것을 정하고 있으나, 예컨대, 본점에 사무실과 같은 업무공간이 없거나, 공장 또는 사업장은 지점 또는 지사에 있는 경우 등에는 여성대표의 경영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본점보다는 지점을 방문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지점을 방문할 수 있는 사유의 명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g) 신청기간의 제한

현행 확인요령 제6조 제5항은 특별한 사유 없이 여성대표자가 추가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현장실사에 응하지 않는 양으로 인해 확인업무의 처리가 1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반려처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연된 경우의 반려 처리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으므로 예컨대, 반려 후 즉시 재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제한 조치가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여성대표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귀책사유로 반려된 경우에 즉시 재신청하는 것을 반복하는 경우, 확인업무담당자의 업무가 과다하게 되므로 타 신청기업에 대해서도 불편을 끼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제한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h) 조사의 중단

현행 요령에서 조사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예컨대, 현장실사를 진행한 자에 대해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폭력, 협박을 가하거나, 뇌물을 공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상기의 경우에는 형법의 위반에 해당하는 각 각 관련 죄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나, 형법의 목적은 일반예방주의에 있으므로 조사의 중단 사유를 명시함으로써 신청기업에게 위하를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와 관련된 규정은 고시에서 정할 문제는 아니며, 법에서 이를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i) 확인증의 재발급 및 재신청

현행 요령은 확인증의 재발급 및 재신청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예컨대, 상호의 변경 또는 사업장의 이전의 경우에는 확인증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을 요하므로 재발급 규정을 마련하여 위의 사유 발생시에는 확인업무담당자가 이를 수정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타 여성대표자로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또는 회사의 인수·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체와 존속사업체간의 동질성이 상실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기존사업체의 확인증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존속사업체의 대표자로 하여금 재신청을 통해 확인증을 발급받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이와 같은 규정의 부재로 인해 대표자의 변경과 같은 사유발생 시에는 해석으로 재신청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그 근거는 재신청의 사유는 결국 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을 초래하게 되므로, 확인증 상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상이하게 되어 조달참여 또는 자금대출 시, 확인증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게 됨에 따라 해당기업의 대표자가 재신청을 요청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 (j) 확인증의 효력상실

현행 요령 제8조 제2항에서는 대표자의 변경 등 해당 확인기준의 요건이 상실되는 경우에 확인 효력이 상실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효력상실에 대해서만 규정할 뿐 효력상실 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효력상실 시점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문제가 된다. 따라서 현행 요령 제8조 제2항은 존재의 의미만 있을뿐이며, 절차로서의 의미는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효력상실에 대해 규정하는 경우에는 상실이란 효과를 초래하는 처분이 당연히 수반하게 된다. 예컨대, 폐지, 취소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한편, 효력상실 사유로는 대표자의 변경 등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본 규정은 예시적

---

규정이라 할 수 있어 해석을 통해 효력상실 사유를 파악할 수 있는데, 대표자의 변경 이외에 허위자료 제출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확인, 자진하여 확인증을 반납한 경우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대표자의 변경 중 대표자가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바로 효력상실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남성대표와 주식 수를 비교한 후, 상실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k) 이의신청

현행 이의신청절차는 i. 신청기업 관계자의 이의신청, ii. 확인기관의 장의 검토, iii. 확인기관장이 수용하지 않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심의 요청, iv. 여성기업확인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심사, v. 결과통보로 진행된다. 생각건대, iii의 확인기관장이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은 경우에 관리기관장에게 심의은 절차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의신청자의 신청 후, 확인기관의 장이 이를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한 후, 이의신청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경우에 신청자가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한 절차라고 생각된다. 확인기관의 장은 1차 심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신청자가 수령하여, 자신이 결과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의신청처리절차에 부합한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1차 검토 시에는 확인기관의 장이 해당 평가를 한 위원 이외의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재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확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2. 여성기업 통합 정보망 고도화

### 가. 배경 및 필요성

현재 국내 여성기업은 전체사업체 수 대비 38.9%(130만개)로 '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sup>73)</sup> 그러나 여성기업의 개체 수 증가 등 지속적인 여성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부족하며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미흡한 상황이다.

---

73) 중소기업청, 2013 중소기업통계

현재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는 2012년 여성 기업 대내외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였다. 이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로 기업 만족도 향상 및 지원 업무를 효율성을 제공하고자, 수요자 중심의 표준화된 분류 체계를 마련하고 지능형 검색포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한 곳에서 손쉽게 습득하고 안내받을 수 있도록 고객지향적 로드맵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에 근거하여 ①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을 위해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 나. 여성기업 통합 정보망 현황

### a.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

온라인 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지원사업 공고, 신청, 진행 현황관리, 사업평가 및 결과 통보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시스템화하여 참여이력 및 성과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현재 실전창업스쿨, 여성창업 경진대회, 여성가장 창업자금, 여성 CEO MBA교육, 전국 경영연수, 차세대 여성CEO 양성교육, 국제회의 여성대표단 파견, 창업보육시설 운영을 통합 정보망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화 개정<sup>74)</sup>에 따라 여성기업제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를 구축하여 여성기업제품을 등록<sup>75)</sup>하고 있으며 2014년 1000개의 업체를 등록할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b. 그 외 다양한 여성기업 정보

여성기업 통합 DB구축 및 검색시스템 도입으로 여성기업에 대한 유형별, 생산제품별, 산업분류 등을 통한 여성기업을 검색할 수 있으며, 사내 인트라넷 구축으로 통합로그인, 전자우편, 전자계시판, 일정관리, 설문조사, 전자결재, 문서함, 주소록 관리, 회계 관리

74)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시행 2014. 1.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 11967호, 2013. 7. 30., 개정)

75) 여성기업수 420개, 물품등록수 3,400개 (<http://shopping.wbiz.or.kr>, 2014년 1월 15일~3월 14일 현재)

---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기업애로사항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메일 및 SMS등을 활용한 민원 진행상황 알리미 기능을 구현하였다.

## 다. 여성기업 통합망 발전 방향

여성기업 통합망은 정부가 제안한 여성기업 활동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판로개척을 용이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이를 통해 여성기업의 경영 활동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여성기업인들이 정부지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제 성장에 이바지 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여성기업 통합망을 활용하기 위한 두 가지 고도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 a. 지원사업에 대한 매뉴얼

전 사업에 대한 사업 매뉴얼을 작성하여 인수자가 없어도 매뉴얼만 보고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15개 지회에서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업무 미숙함을 나타내지 않고, 공백기를 만들지 않을 수 있다. 이 사업 매뉴얼을 바탕으로 현재 구축된 사업 프로세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지원 사업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수요자에게는 더 큰 만족도를 줄 수 있다.

### b. 여성기업 지원정책 통합정보 제공

『2013년 여성기업실태』 조사결과 여성기업이 정부 정책을 활용하는 데에 있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으로는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이 전체 37.7%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에 따라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 제공 시스템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 유관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인 기술, 자금지원, 유망기술동향, 신제품 자료 및 각종 정책정보에 및 온라인 콘텐츠를 연계·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기업의 해외 판로를 위하여 외국어 온라인 제품 사진 및 기능 홍보를 할 수 있는 페이지를 구현한다. 또한 국내 여성기업제품을 위해서 공공구매 홍보사이트에 등록하지 못하는 여성기업을 위한 여성기업 정보 제공, 홍보 및 광고를

지원할 수 있는 페이지를 구현해야 한다.

여성기업 통합 정보망 고도화는 여성기업 통계조사, 사업관리, 정부정책을 일원화함으로써 여성기업 정책의 실효성 제고할 수 있으며, 산재된 여성기업 정보가 통합 DB구축을 통해 한 곳에 취합됨으로써 정보 탐색이 쉽고 편의성이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문가를 통한 사이버 멘토링으로 기업애로의 실시간 상담 및 관리가 가능하며, 최신기술의 기업홍보 전시관 제공으로 기업서비스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협회의 본회 및 각 지회 직원 간에 원활하고 신속한 정보 교류 및 공유로 기업지원 협업 활동기능이 강화됨은 물론 자동화된 회비관리 및 체계적인 사업지원관리, 민원관리로 업무생산성 또한 높아질 것이다.

### 3. 여성기업 정책연구원 설립

#### 가.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여성정책과 여성이슈 개발에 관해서는 그동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도적인 역할과 기여를 해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능력개발, 여성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증진 및 여성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82년 12월 31일 『한국여성개발원법』 제정을 통해 설립되었다. 그리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본래 명칭이 ‘한국여성개발원’으로 2007년 5월 11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되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으로 주요 연구분야는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연계강화와 미래전략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성정책연구원’이 추구하는 핵심가치는 여성능력개발, 여성고용 및 복지향상, 여성의 사회정치적 참여확대, 여성인권과 안전 등에 관한 정책과 이슈개발로 여성의 지위 및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성기업 육성과 여성기업인의 경제활동 등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는 체계적이고 중점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여성의 사회적 역할 변화에 따른 경제인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즉, 여성창업, 여성기업인의 육성과 리더십 개발, 여성기업인의 경제활동 등의 다양한 정책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 범위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표 4-44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향

중점연구사업목표	중점연구사업 운영방향
<p>국가정책의 성평등성제고를 위한 성별 영향분석 평가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령과 계획, 사업에 대해 성 인지적인 관점을 통합하여 성평등한 국가정책을 개발 확산하기 위한 연구 강화</li> <li>-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 연구 및 인프라 강화</li> <li>- 성평등한 국가정책의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정부의 책무성 강화</li> </ul>
<p>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제고 및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확 대·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효과성 분석 등 입법평가를 통한 실효성 제고 방안 및 법령의 성 인지성 제고를 위한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확대 및 강화</li> <li>- 성평등 정책 추진 강화 및 여성·가족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단기 입법 과제(제·개정안) 마련 및 추진</li> <li>- 법령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현행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통한 법령의 성인지성 제고</li> </ul>
<p>성인지 예·결산제도 운영 확산 및 내실화를 통한 성평등 수준의 실질적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지예·결산제도 시행 5년에 따른 지속적인 양성평등 관점 확산과 제도 운영 성과의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과 정책 연구 강화</li> <li>- 성인지예·결산제도의 의의와 중장기 효과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li> <li>- 양성평등 우선순위에 따른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으로 제도의 효율적 운영 강화</li> </ul>
<p>성평등 실현과 성 주류화를 위한 성인지 통계 생산 및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평등 실현과 성 주류화 정책의 수행을 위해 성인지 통계의 생산 및 활용이 지속적으로 요청됨. 성인지 통계의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기존 통계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li> <li>- 성인지 통계의 기반 확충을 위한 법제도 정책 연구</li> <li>- 성 주류화 정책의 수행을 위한 부문별 성인지 통계의 생산과 활용</li> </ul>



중점연구사업목표	중점연구사업 운영방향
<p>다양한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성평등 실현과 여성 역량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의 기술양식 변화, 결혼이나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직장 문화의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변화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 전략을 개발- 정보통신 기술혁명에 따른 여성의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과 가정 문화 변화에 대응한 성평등 의식 제고와 문화 확산</li> <li>-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정치역량과 대표성 강화</li> <li>- 생애주기별, 직종별 맞춤형 여성건강 증진 정책</li> </ul> </li> </ul>
<p>한국 ODA 정책에 성 주류화 정착 및 성 인지적 ODA 사업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시아의 신흥 공여국으로서 개도국의 양성평등 추진을 선도할 책무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ODA 정책에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시키고 수원국의 성평등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제를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시아 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를 위한 사업 개발</li> <li>- 아시아 지역 양성평등 확산과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공동작업과 여성 정책 네트워크 확대</li> <li>- 아시아 개도국과 한국 여성정책 발전 경험의 공유 및 확산을 통한 양성평등 전략 모색</li> </ul> </li> </ul>
<p>여성인재양성과 여성리더십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리천장 극복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따라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여성인재풀 확보 및 여성 리더십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문별 여성인재 양성과 대표성 강화 방안</li> <li>- 조직내 여성인력의 리더십 강화와 인적자원 관리</li> </ul> </li> </ul>
<p>여성 고용-복지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과 복지의 연계 강화에 따른 여성 생애주기별, 가구구조별, 지역별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해소함으로써 대상자 특성에 기반한 통합적인 정책 추진에 기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여성, 고령여성, 이주여성 등 취약여성의 정책 사각지대 발굴</li> <li>- 1인 가구 등 가족 다양화에 따른 정책 사각지대 발굴 및 제도 개선</li> <li>- 일·가정 양립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체 근로방식 개선</li> <li>-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여성 통합</li> </ul> </li> </ul>
<p>여성 고용지원서비스 확대 및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율 70% 목표 달성을 위하여 여성고용이 획기적으로 증가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여성일자리 창출 및 고용지원을 강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직업능력 강화 및 고용 지속성 유지</li> <li>- 협동조합, 창업 등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한 여성 고용 확대 방안 및 시간제 근로, 일자리 나누기 등 일자리 확대 및 직종 발굴 연구</li> </ul> </li> </ul>

중점연구사업목표	중점연구사업 운영방향
<p>여성폭력예방 정책의 통합적 추진 및 관련 정책의 실효성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폭력 관련 추진체계 효율성과 피해자 지원 방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피해자 및 가해자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도출함.</li> <li>-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대상 정책의 효과성 분석 및 정책방향의 지속적인 수정·보완</li> <li>- 여성폭력 실태 파악 및 정책의 효과에 대한 시계열적 변화 추적</li> <li>- 여성 및 아동 인권 보호 관련 법적 정비 및 정책 실효성 제고</li> <li>- 여성폭력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을 위한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li> <li>- 부처 간에 분산되어 있는 여성안전 업무를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li> </ul>
<p>미래지향적 가족·다문화정책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환경 및 사회변화에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는 가족·다문화정책 개발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통한 정책의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li> <li>- 미래지향적 가족·다문화정책 패러다임 설정과 정책의제 개발</li> <li>- 생애주기를 고려한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의 실효성 강화</li> <li>- 남성의 돌봄 참여를 통한 성 평등한 가족생활 조성</li> <li>- 위기·취약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가족생활 지원</li> <li>- 다문화가족의 변화에 부응하는 사회통합 전략 개발</li> <li>- 국가-기업-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가족친화 사회 환경 구축</li> </ul>

※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산업연구원이나 중소기업연구원 역시도 포괄적인 산업과 기업에 대한 연구가 주요 연구분야이며 일부 여성기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서는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의 육성정책 개발, 여성경제인의 리더십개발에 관한 전문지식과 전담 여성기업 정책개발 연구팀이 부재한 채로 일회적으로 단발성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경제성장 저하에 대비하기 위해 여성창업활성화와 여성기업의 육성 등 여성경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여성고용과 경제활동참여를 위한 정책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여성창업 활성화와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에 관한 정책개발과 전략제시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수요와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여성기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여성기업정책연구원(가칭)’설립이 필요하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여성기업정책전담기관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1989년 여성기업연구센터를 설립, 여성기업에 대한 통계생산, 정책이슈개발 등 여성기업 활동에 대한 활발한 연구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정책개발과 권고 등을 실시함으로써 여성기업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 사례 : 미국 여성기업소유자협회의 여성기업연구센터

미국 여성기업소유자협회에서 여성기업연구센터와 교육재단을 각각 설립하여 연구센터의 연구결과를 매년 고성장여성기업 육성 수립에 반영하고 있다.

### 나. 설립방안

여성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중 38.9%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기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수의 25%로써 여성경제인의 경제활동 참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경제인과 여성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전담연구기관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더욱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가족구조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노동력 부족과 경제성장 동력이 약화되면서 여성 및 여성기업인들의 앞으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여성기업의 경제활동과 다양한 사회적 현상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전담연구기관의 전문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이러한 전문적인 기관은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연구와 정책개발을 위한 싱크탱크(think tank)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향후 경제발전을 위한 여성기업 정책을 제시하고 그 근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기업정책연구원(가칭)의 설립은 효과적인 정책 기반을 만들기 위해 3단계를 거쳐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성기업정책연구원(가칭)의 3단계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기업정책연구원(가칭)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정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소상공인진흥원, 창업진흥원 등 기존의 여성정책 및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그리고 창업과 관련한 정책연구기관과 차별화되는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둘째, 설립 근거 법령 체계가 확립되기 전까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또는 (재)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일부 조직으로서 전담연구팀 단위 또는 센터 단위로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조직 내에 실태조사 등 조사연구 및 정책평가, 여성기업백서 작성, OECD여성지표 비교 등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경제활동에 조사 및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가 제도 및 정책설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되고 있으나, 인적자원과 기능 측면에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팀제의 조직을 보충하고 기능을 더욱 보강하여 여성기업정책전담연구팀을 구성해야 한다.

셋째, 3단계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설립 근거를 둔 한국여성기업정책연구원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 단계에서는 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확장하여 국가성장 전략의 관점에서 여성기업의 비전과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여성창업, 여성기업의 육성과 발전, 글로벌 강소기업형 여성기업육성 및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표 4-45 | 여성기업정책연구원 설립 방안

단계	단계별 설립 방향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기업정책연구원의 설립 타당성 검토</li> <li>여성기업정책연구원(가칭)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정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당성 검토 및 역할과 기능 정의</li> </ul>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기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조직 내에 전담연구팀 단위 또는 센터 단위로 조직을 운영</li> <li>현재의 조직 인력 및 기능 보강하여 여성기업정책 전담연구팀으로 보강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연구 및 여성기업육성 정책평가, 여성기업백서작성 등</li> <li>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및 연구 등 여성기업특성 및 여성기업 정책에 관한 기초연구</li> </ul>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여성기업정책연구원으로 발전</li> <li>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확장하여 국가성장전략의 관점에서 씽크탱크 기능 수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기업의 비전과 전략과제 제시</li> <li>여성창업, 여성기업의 육성과 발전, 글로벌 강소기업형 여성기업육성 및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기관으로 발전</li> </ul>

여성기업정책연구원은 연구과제 기획, 국내외 조사연구, 정책방향 설정,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등을 위해 유기적 협조체계를 갖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때 여성기업정책연구원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운영지원본부, 글로벌연구실, 경영정책실, 홍보실로 구성하되, 세부적인 수행업무 등에 대해서는 향후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를 통해 구체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4-46 | 조직기능

구분	구성팀	수행업무
운영지원본부	경영지원팀	인사, 총무, 운영기획 업무
	기획운영팀	비전, 목표, 추진과제 기획업무
글로벌연구실	글로벌조사팀	여성정책 자료조사, 현황조사
	글로벌연구팀	자료 분석, 종합 연구업무
정책평가실	성과평가팀	성과평가 지표 개발, 성과개선 연구
	제도개선팀	여성기업제도 연구
경영정책실	경영정책팀	기업 경영운영, 정책방향 설정
	공공정책팀	공공구매 정책현황, 방향 조정
홍보실	대외홍보팀	간행물 발행, 대회 홍보업무
	대외협력팀	유관기관간 업무협력, 지원 업무

## 4. 여성기업 정책자금 접근성 제고 및 공제조합 설립 운영

### 가. 배경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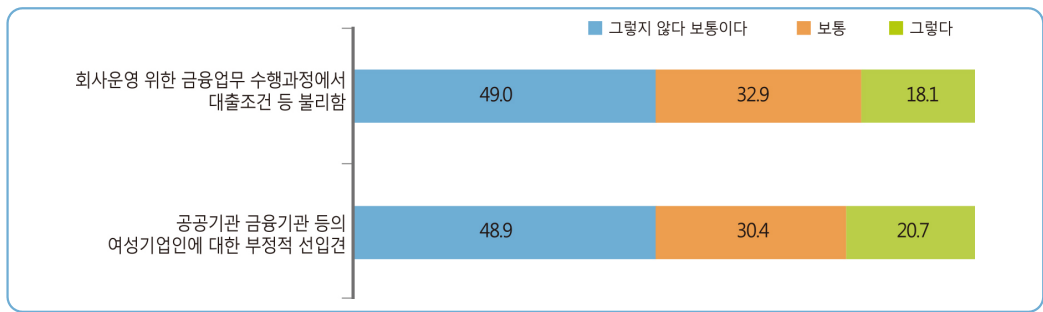
여성기업들의 경영애로 중 정책자금 및 보증기관 금융기관 등의 정책자금지원은 일반 중소기업들에 비해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성기업실태조사보고서(2013)에 따르면, 여성기업들은 자금조달 문제가 53.7점으로

판로확보 등 마케팅 관리와 함께 기업경영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기업들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겪는 불리함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또한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의 여성기업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으로 인해 불리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20.7%며, 회사운동을 위한 금융업무 수행과정에서도 대출조건 등에 있어서 불리하다고 느끼는 여성기업도 1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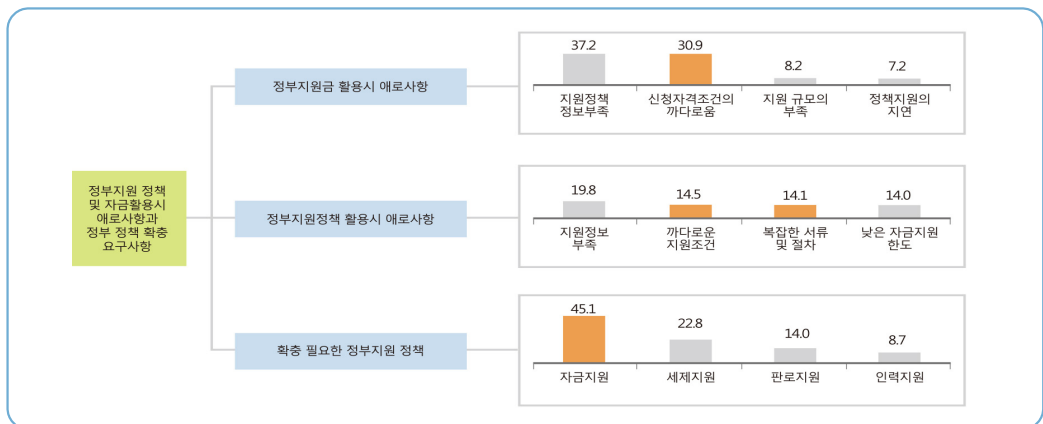
그림 4-36 | 일반중소기업 대비 여성기업인의 불리한 정도



※ 자료 : 2013여성기업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3

한편, 여성기업들은 정부지원정책활용 및 정부지원자금 활용시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이 너무 높고 까다로워서 정책활용 및 자금지원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7 | 정부정책 및 자금활용시 애로사항과 지원요구사항



※ 자료 : 2013여성기업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3

정부지원 정책을 활용하는 경우 신청자격조건이 까다롭다고 느끼는 여성기업들은 30.9%에 달한다. 또 정부지원 자금을 활용하는 경우 까다로운 지원조건(14.5%)과 복잡한 서류 및 절차(14.1%)로 인해 정부지원 자금 활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기업들의 이같은 인식은 실제로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정책자금지원 실적 및 신용보증 및 기술신용보증 등 보증기금운영 실적에서도 잘 나타난다.

표 4-47 | 여성기업 정책자금 지원실적

(단위 : 억원, %)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정책자금규모	48,116	30,984	29,565	31,493
여성기업지원실적(기업수)	4,023(1,309)	2,393(718)	2,759(819)	3,326(1,283)
여성기업 지원비율(%)	8.4	7.7	9.3	12.5

※ 자료 : 2012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여성가족부

2012년 여성정책연차보고서(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여성기업들은 중소기업청에서 운용하는 정책자금 중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규모를 보면, 2012년도에는 1,283개 업체에 3,326억원을 지원하여 총 규모의 12.5%를 지원하고, 보증지원도 78,330억원을 지원하여 총 보증규모의 12.2%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기업 특성상 사업규모가 작고 신청 기업 수가 적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같은 운영실적은 전체 중소기업사업체 중 여성기업 비중(38.9%)을 고려할 때 여성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자금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여성기업들에 대한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들의 차별적인 관행 속에서 정부정책활용은 물론 정부자금지원 및 보증기금 활용시 엄격한 자격조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지원정책 및 지원자금 활용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책활용 및 자금활용, 그리고 보증기금 활용에 있어서 일반 중소기업보다 여성기업들의 정책자금지원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4-48 | 여성기업 보증기금 지원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신용보증	387,810	38,755	10.0	387,083	40,906	10.3	394,915	43,274	11.0
기술신용보증	169,336	9,913	5.9	166,271	10,346	6.8	178,588	12,062	6.8
지역신용보증	67,940	23,810	35.1	60,801	20,207	33.2	67,526	22,994	34.1
합계	625,086	72,478	11.6	614,155	71,459	11.4	641,029	78,330	12.2

※ 자료 : 2012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여성가족부

이러한 여성기업들과 다른 별도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 여성기업들의 정책자금 지원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나. 추진방안

- 1) 여성기업에 대한 특별 정책자금 심사기준의 도입 및 적용
- 2) 여성전용 창업지원 펀드 조성
- 3) 여성기업 공제조합 설립 운영

### 1) 여성기업에 대한 별도의 정책지원자금 심사기준 적용

최근 들어 여성의 창업촉진과 여성기업 경제활동 지원 등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및 여성 고용률을 제고하고, 여성의 잠재적 능력개발을 통하여 신성장 동력 창출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기여자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여성 및 여성기업인들에 대한 화려한 구호만 난무할 뿐 정작 여성창업자 및 여성기업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자금난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 여성기업인들이 정책자금과 신용보증기금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성장잠재력을 저평가 받고 자금접근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여성 및 여성기업인들의 책임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여성기업인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창업기에는 아예



자금접근이 소외되고 기업 성장기에는 가부장제 하의 담보부족, 사업규모의 영세성, 기술력의 취약, 적은 매출규모에 따라 자금접근의 배제 또는 제한 때문에 자금난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사회적, 제도적인 구조가 유지 강화되는 가운데 파격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여성의 창업촉진과 여성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려는 정책적 의도들은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성차별적 대출관행을 금지한 일련의 입법 이후 여성기업의 대출액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여성기업의 수와 매출액이 급격하게 증가한 사례에서 여성 및 여성기업의 자금난 문제 해결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성에 근거한 대출업자의 차별적 관행을 금지한 평등신용기회법(The Equal Credit Opportunity, 1974)와 여성기업인이 대출을 얻기 위해 배우자 또는 남성 친척의 서명을 요구하는 법을 금지시킨 여성기업소유권법(The Women's Business Ownership Act, 1988)의 제정이 그것이다. 특히 여성기업소유권법 제정 이후 여성기업인들의 은행 대출 비중이 1992년부터 2002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된다(양인숙, 강민정, 2012).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성차별적인 제도 및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입법적 보완과 정책을 마련하는 경우 여성 및 여성기업의 자금조달 문제가 비로소 개선되고 여성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여성특유의 감성과 재능을 통해 혁신 주체로 우뚝 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첫째,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정책지원자금 및 보증기금, 그리고 금융기관의 자금지원 심사기준의 차등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둘째, 여성기업의 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은 여성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여성기업의 공제조합은 여성기업의 기술개발자금 시설자금 운전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하는 경우 보증 또는 여성기업의 공사 판매 용역 등에 참여시 이행보증서를 발행하는 것이 핵심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여성기업들의 자금 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49 | 정책자금 및 보증기금의 차등적 심사기준 방향

구 분		일반 중소기업과 차등적인 심사기준 방향
정책자금	중소기업청	R&D자금, 시설자금, 운영자금 등의 지원시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완화된 기준 마련 필요
보증기금	신용보증	보증서 발급시 일반 중소기업과는 차등적인 심사기준으로 여성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창의성과 성장 잠재력 등을 평가하여 심사 필요
	기술신용보증	
	지역신용보증	
금융대출	금융기관	기존의 여신심사기준과는 상이한 기준 마련 필요
보완제도	여성기업공제조합 설립과 운영	여성기업의 기술개발자금 시설자금 운전자금 대출시 보증 또는 공사 판매 용역등 의무이행시 이행보증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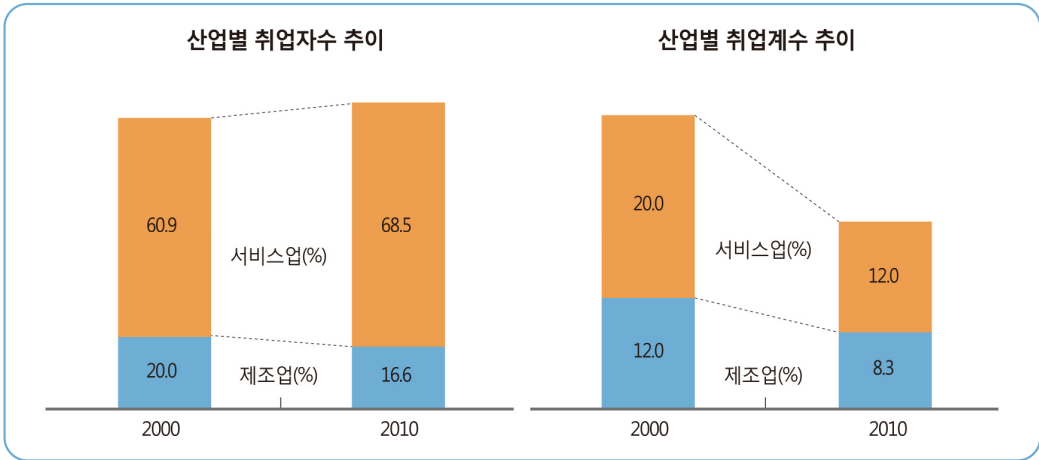
## 2) 여성전용 창업지원 펀드 조성

2014년 1월 박근혜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핵심성과지표로 ‘474비전’ 즉, 오는 2017년까지 4%의 잠재성장률 확보(현재3.6%(KDI)~4%대(IMF,OECD), 70%의 고용률 달성(현재 58.5%),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 4만불(현재 1인당 GNI 22,708달러)을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2010년 기준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2000년 60.9%에서 2010년 68.5%로 늘어나 서비스업 고용은 OECD선진국처럼 증가하고 있다. 제조업은 같은 기간 취업자수는 20%에서 16.6%로 점점 감소, 탈공업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취업계수(산출액 10억원 생산에 소요되는 취업자 수)를 보면, 서비스업은 같은 기간 20명 →12명으로, 제조업은 12명→8.3명이며, 전 산업에서는 14.2명→7명 수준이다. 전체적으로 10억원의 상품을 생산하는데 취업자 7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기존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 생산이 확대되더라도 취업자 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규 고용창출은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결국 창업지원을 통해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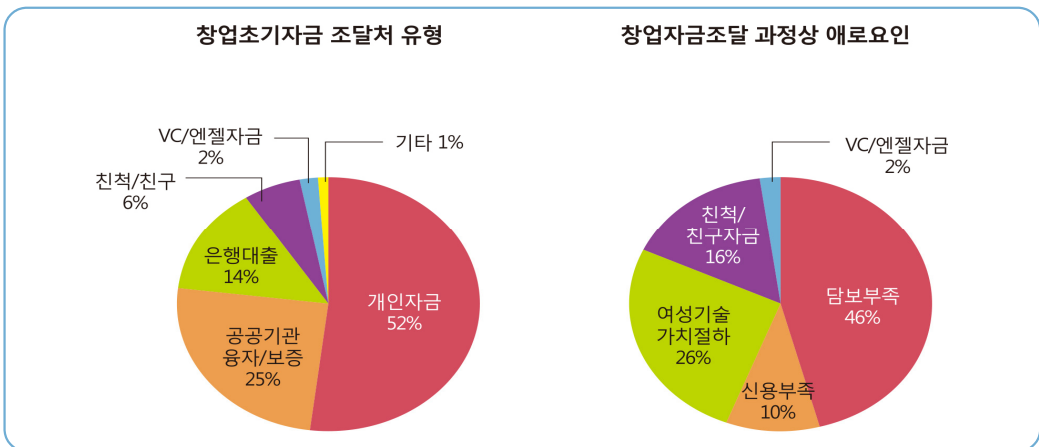
그림 4-38 | 산업별 취업자구성과 취업계수 추이



※ 자료 : 2010년 기준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2014

창조경제 하에서 창업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 창업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많은 창업자들은 그동안 창업자금조달에 가장 큰 애로를 겪어왔다.

그림 4-39 | 창업초기 자금조달처와 애로사항



※ 자료 : 여성 지식기술창업 실태 및 활성화방안(양현봉), 산업연구원 2014

---

산업연구원의 여성지식기술창업실태 및 활성화 방안(양현봉,2014)에 따르면, 여성 창업자들은 개인자금의존도가 51.7%로 매우 높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보증(25.7%) 등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은행대출(14%), 벤처캐피털 또는 엔젤캐피털(2.0%) 자금에는 거의 접근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창업 후 3년까지 자금사정이 어려웠다는 응답이 7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 초기 자금조달 및 창업 3년차까지 자금조달문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여성 창업전용펀드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여성전용 창업지원펀드 조성은 대기업, 중견기업, 여성기업 및 정부가 매칭펀드(matching fund)방식으로 여성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여성전용 창업지원기금을 조성, 지식기술 분야 등에서 혁신적인 여성창업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창출 등 여성의 경제, 사회적인 기여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대기업 중견기업 여성기업의 출연 및 정부의 공동 출연으로 여성전용 창업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을 활용하여 엄격한 창업계획검증을 거쳐 창업 준비단계에서부터 글로벌화 단계까지 단계적으로 인큐베이팅 및 성장을 지원(투자)하고 창업 성공시 자금을 회수함으로써 창업 지원과 회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여성기업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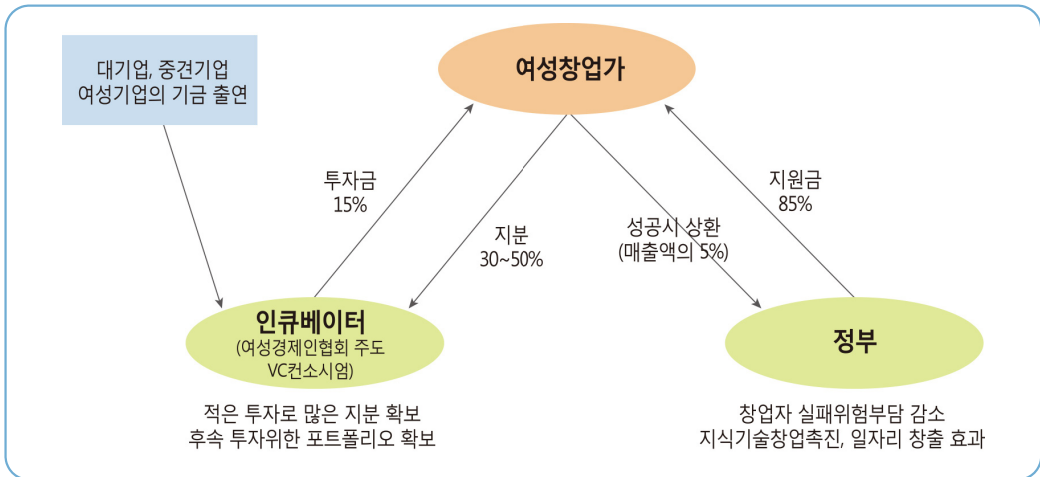
지식기술기반의 여성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첫째, 대기업, 중견기업, 및 여성 기업들의 기금출연이 요구된다. 여기서 모금된 기금을 바탕으로 정부와 매칭펀드 형식으로 혁신형 여성 창업가들의 아이디어를 지원하고 성공시 투자 기금을 회수함으로써 또다시 재투자 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둘째, 여성 전용창업펀드의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인큐베이터 운영자는 창업 지원체계가 잘 구축된 이스라엘 또는 실리콘 밸리의 경우 주로 벤처캐피털 주도의 컨소시엄 또는 벤처캐피털 단독으로 운영된다.

셋째, 여성전용 창업 지원체계는 사전 인큐베이팅 지원-인큐베이팅단계지원-사후 인큐베이팅 지원 등 3단계로 운영한다. 인큐베이팅 또는 투자대상 선별 전 단계에서는 개인 또는 5년 미만의 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과정에서 종자돈, 협력사, 벤처캐피털 등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 이전단계의 자금등을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아이디어 발전

지원, 기술적 지원,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분석 등을 지원 등을 통하여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제고한다. 사업지원 대상의 선정과정은 각계 현장 전문가와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통해 기술력, 시장잠재력 규모, 창업자의 역량 및 전문성, 혁신역량 등 전반적인 창업계획 또는 사업계획을 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평가, 인큐베이팅 대상을 엄격하게 선별한다.

| 그림 4-40 | 여성 창업활성화 생태계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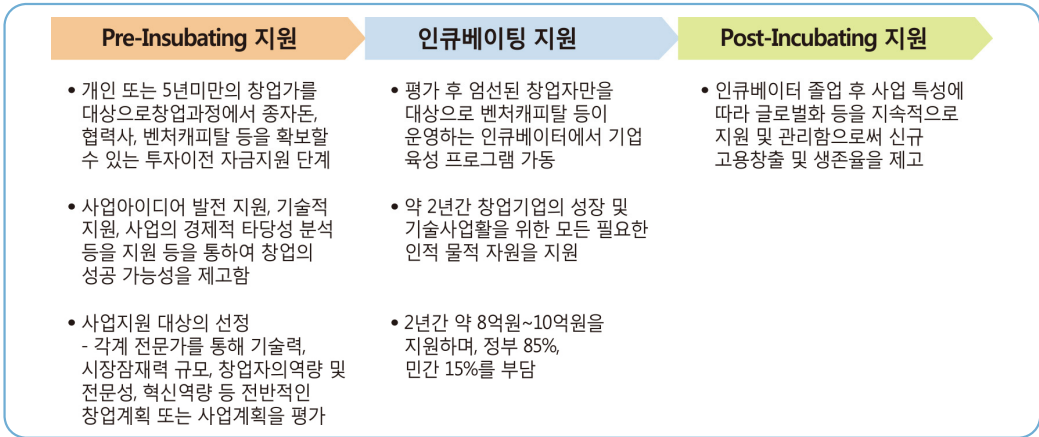


인큐베이팅 단계의 지원은 평가 후 엄선된 창업자만을 대상으로 벤처캐피털 등이 운영하는 인큐베이터에서 기업 성장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약 2년간 창업 기업의 성장 및 기술사업화를 위한 모든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한다. 2년간 약 8억원~10억원을 지원하며, 정부 85%, 민간 15%를 부담한다.

인큐베이터 졸업 후 사후단계 지원도 중요한데, 사업특성에 따라 글로벌화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 및 관리함으로써 신규 고용창출 및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제고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한다.

이 같은 여성전용창업자금확보 및 인큐베이팅 시스템은 지식기술 기반의 혁신형 여성 기업의 창업동기를 촉발하고 여성 특유의 감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획기적인 성과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림 4-41 | 여성전용창업펀드의 운영 및 지원체계



### 3) 여성기업 공제조합 설립 운영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지속성장과 신성장 동력의 대안으로서 여성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성기업은 담보력이 취약하여 기존의 금융제도 하에서는 자금이나 보증 이용 시 어려움이 많아 사업규모화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성기업의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여성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각종 자금대여와 보증 등을 시행하는 제도적인 기반마련이 필요하다.

여성기업체의 85.7%는 각종 자금대여 및 보증 등을 시행하는 공제조합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보통 이상 응답자 포함)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 ① 설립 방안

여성기업공제조합 추진을 위한 근거 법령은 별도의 법을 만들거나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내에 관련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여성기업공제조합의 주요사업은 여성기업의 제품개발과 기술향상,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투자, 여성기업의 제품개발과 기술향상,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할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 여성기업 사업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등으로 한다. 이러한 여성기업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가칭) 여성기업공제사업기금을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공제조합 설립에 필요한 운영자금은 정부자금 지원과 여성기업인들의

각출금으로 마련한다. 시행된지 30년이 지난 중소기업공제사업도 정부출연금과 회원의 공제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 표 4-50 | 여성기업 정책자금 지원실적

(단위 : 억원, 개)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정책자금 규모	30,394	29,565	31,493	37,125
여성기업 지원실적 (업체수)	2,33(718업체)	2,759(819업체)	3,326(1,283)	4,186(1,850)
여성기업 지원비율	7.7	9.3	12.5	12.8

자료 : 여성가족부(2013), 「2013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 표 4-51 | 여성기업 보증기금 지원실적

(단위 : 억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신용보증	397,083	40,906	10.3	394,195	43,274	11.0	416,273	45,587	11.0
기술신용보증	166,271	10,346	6.2	178,588	12,062	6.8	193,539	13,322	6.9
지역신용보증	60,801	20,207	33.2	67,526	22,994	34.1	142,719	55,496	38.8
합계	626,166	71,459	11.4	641,029	78,330	12.2	752,531	114,405	15.2

자료 : 여성가족부(2013), 「2013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공제조합의 의사결정은 이사회를 통해서 하되 조합의 대표는 이사장이 하며, 업무 총괄은 상근이사 담당으로 한다.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또한 상근이사의 총괄 하에 경영기획부와 사업운영부의 설치 및 운영을 한다. 경영기획부는 경영지원팀, 기획홍보팀, 재무회계팀으로 나누어 경영지원팀에서 조직 및 인사, 규정, 경영방침 각종 업무의 총괄 조정 등을 담당하고 사업운영부는 사업총괄팀, 공제사업팀, 자산운용팀, 회원관리팀으로 나누어 사업총괄팀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필요 사항을 지원하며 공제사업팀은 공제사업의 개발, 추진 및 수행을 담당한다. 또한 자산운용팀은 기금 및 재원 조상 및 자산 운용을 하며 회원관리팀은 회원가입 및 탈퇴와 회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2)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SW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SW사업자에게 자금대여, 채무보증, 이행보증, 자금 투자 등 고유목적 사업을 하기 위하여 1998년 1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설립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 <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주요사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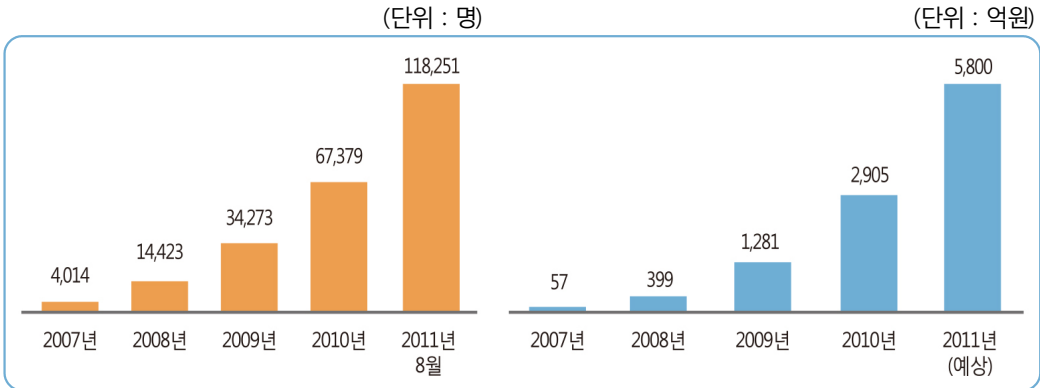
- 소프트웨어개발 및 기술향상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투자
- 소프트웨어개발 및 기술향상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할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
- 소프트웨어사업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 (3) 노란우산공제회

노란우산공제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2006년 9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수를 보면 2007년 9월 도입된 노란우산공제는 그해 가입자 4,014명에서 2008년 1만4,423명, 2009년 3만4,273명, 2010년 6만7,379명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2011년 8월 기준 11만명이 넘었으며, 노란우산공제 운용자산은 2011년 5,8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림 4-43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추이 및 운용자산 현황



※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내일신문 2011.8.24

#### < 노란우산공제회 주요특징 >

- 법령으로 보호받는 사회안정망
-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 연 300만원 추가 소득공제
-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 무료 상해보험 가입

#### ③ 추진방안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국내외 공제조합 관련 사례분석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운영 유형, 공제상품개발, 적정사업규모 등 여성기업 공제조합설립의 타당성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공제조합사업은 주무부서 장관의 인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타당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추진에 필요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성기업 공제조합(가칭)의 주요사업은 여성기업의 제품개발과 기술향상,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투자, 여성기업의 제품개발과 기술향상,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할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 여성기업 사업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등으로 한다. 공제조합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출자금·공제부금·예탁금 또는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되, 정부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제조합 회원 증대를 위해서는 통합 정보망에 공제사업의 목적, 특징 등을 홍보하고 필요서류와 함께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기업 공제조합 설립 및 운영은 영세한 국내 여성기업에 있어서 자금 조달이 확대되고, 여성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5.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장기 발전전략

### 가. 배경 및 필요성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의 활동지원과 관련한 정책은 여러 정부 부처에 걸쳐 얽혀있다.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및 특허청, 그리고 여성가족부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또한 각 정부부처 산하에 여러 여성단체가 설립되고 거의 예외 없이 지휘감독기관으로부터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4-52 | 정부부처 산하 여성기업 관련 단체현황

관련단체	소관부서	회원수(명)	설립연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청	2,000	1971년
(사)한국여성벤처협회	중소기업청	610	1999년
(사)21세기여성CEO연합	기획재정부	108	2003년
(사)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산업통상자원부	179	2001년
(사)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산업통상자원부	800	2004년
(사)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	210	1993년
(사)한국여성발명협회	특허청	500	1993년

※ 자료 : 각 단체 홈페이지 및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14

---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지원 관련 사업과 자금이 분산되고 위탁사업으로 운영되다보니, 차별성 없는 사업과 자금이 중복적으로 집행돼 지원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으며, 지원정책에 대한 여성기업들의 인지도 역시 낮은 상태이다.

여성기업 협회들은 특정 법률 또는 민법에 설립 근거를 둔 법인으로서 회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 간 교류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발전을 꾀할 목적으로 조직된 것으로, 협회는 많은 회원의 확보와 회원들이 협회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 발전할 수 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법률적 지위가 확인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성기업 단체로, 협회의 뿌리는 1971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연륜도 깊다. 그러나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여성경제인 단체로서 대표성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회원을 확대하고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지원과 더불어 여성기업도 스스로 목소리를 높이고 필요한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 또한 중요하다. 세계여성경제인대회, 아시아 여성경제인 글로벌 포럼과 같은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통하여 한국여성기업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도 필요하다. 이런 일을 위해서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대표적인 여성경제인단체로서 리더십을 강화하고 여성경제인단체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여성경제인단체의 협의체구성을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단체가 정부의 재정지원으로부터 자유로운 조직으로 거듭나는 것은 여성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자체 수익사업을 통한 재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기업을 더 이상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여성기업들이 사회적 공헌활동의 실천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나눔경영 활동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표 4-53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법정기능 및 협회 본래의 기능

기능구분	협회의 업무(법제14조)	지원센터의 업무(시행령제12조②)	비고
법령에 의한 수탁업무 기능	여성경제인에 대한 연수 및 전문 여성경제인의 양성	여성경제인에 대한 교육 훈련 연수	교육기능
	여성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여성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정보제공기능
	-	여성기업 애로상담실의 운영	정보제공기능
	여성의 창업에 대한 지원 및 촉진활동	여성의 창업지원	창업기능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 지원	여성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판로지원기능
	여성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	판로(수출)지원기능
	외국여성경제인단체와의 협력	--	국제협력기능
	기타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위한 업무	-	기타 기능
	-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 및 조사기능	연구 및 조사기능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여성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타 수탁기능
법인 본래의 기능	협회정관에 의한 회원간 교류 및 회원의 이익 증진 등에 관한 사업	기타 여성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기청장 지지체장 또는 협회장이 위탁하는 사업	기타 수탁기능
			협회 고유의 사업기능

※ 자료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법률 및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정관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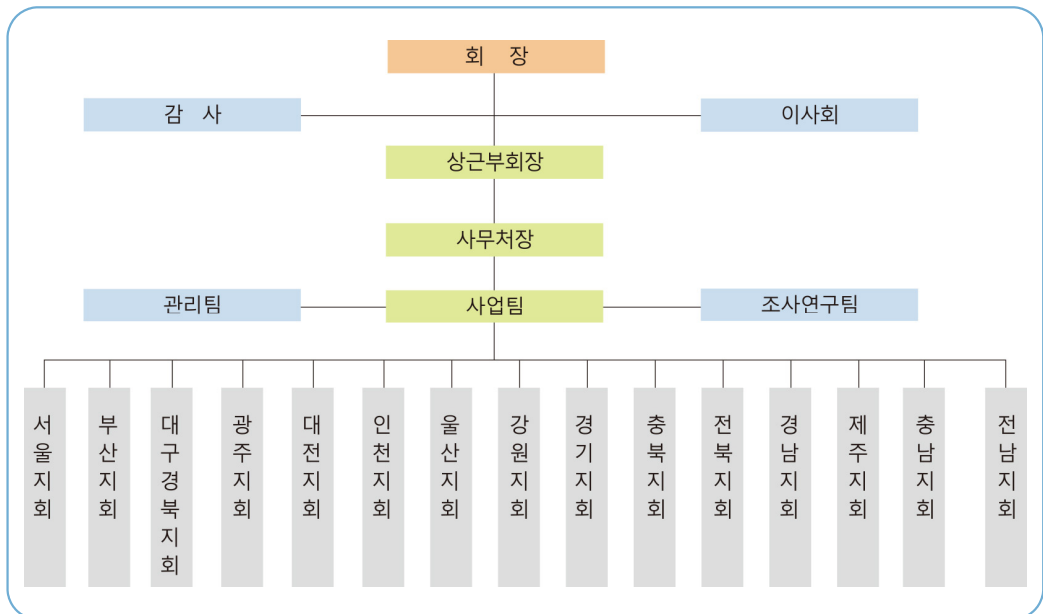
## 나. 추진과제

- 1) 협회 회원관리 및 서비스 강화
- 2) 여성기업 및 유망업종 지역 실태조사 추진
- 3)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자체 사업재원 확보
- 4) 여성기업 단체 협의회 구성
- 5) 멘토링 등 나눔경영 실천을 위한 사회적 활동 확대

### 1) 협회 회원관리 및 서비스 강화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본질적으로 여성경제인들의 결합체인 특별법인으로서 안으로는 회원들 간의 교류확대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회원들 간의 이해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협회는 보다 체계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서비스 개발 및 제공을 위해 회원서비스 전담팀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 그림 4-44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현 조직도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첫째, 협회는 여성기업 단체의 대표성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신규회원의 발굴 및 등록, 회원이탈방지, 및 회원서비스 강화 등 회원관리를 원활히 할수 있도록 내부조직을 혁신, 각 조직간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협회 회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여 신규 회원 확대는 물론 이업종 회원간 학습조직이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성화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산파역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기능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관리팀, 사업팀, 조사팀 이외에 회원서비스팀을 신설, 조직을 혁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4-54 | 회원지원팀의 주요활동(예시)

주요기능	세부활동
회원확대 홍보	- 미가입 여성 대상 협회DM발송 - 우수 여성기업 대상 회원유치활동
여성기업확인	- 여성기업확인을 위한 현장실사 전담관리
여성기업 통합DB구축/관리	- 업종별 규모별 지원사업별 여성기업 현황정보 관리
여성기업회원 교류 지원	- 업종별 협의회 구성 및 활성화 - 이업종여성경제인간 네트워크 구성 및 학습조직 구축 - 각 지회교류 및 활성화 지원

한편, 협회의 회원증가에 따른 여성기업의 복리증진과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보다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제공을 위해서는 회원들에 대한 정확한 니즈 조사 후 회원들의 다양한 니즈를 정의한후 다른 유사단체의 회원서비스 등을 벤치마킹 한후 신규 서비스 개발과 운영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회원들에게 제공할 서비스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회원서비스 예시>

- 제휴를 통한 할인 제공 서비스
- 정부정책 참여 우선기회 제공
- 기업경영전반에 대한 상시자문
- 각종 교류회 교육 등을 통한 네트워크 참여기회 제공
- 각종 문화, 체육, 레저, 관광 등 관련 회원권 이용 서비스
- 경조사 관련 편의제공
- 각종 보험 인증 인허가 관련 대행
- 원자재 공동구매 등
-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선발 기회제공 등

협회의 회원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 가령 기업경영전반에 관한 상시자문과 같은 서비스의 경우 협회 자체에서 수행하기 어렵고 외부전문가나 전문기관을 선정하되, 선정된 전문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에 대해 협회의 발전기금으로 기부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을 상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세무 회계 법률 마케팅 수출관세 등 전문비즈니스 서비스 기업과 서비스제공 및 기부협약을 체결, 협약기업은 서비스제공 및 수익창출시 일부분을 협회의 발전기금으로 기부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 2) 여성기업 및 유망업종 지역 실태조사 추진

여성기업 실태조사는 우리나라 여성기업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정부의 여성기업 정책지원활동에 대한 효과와 실효성을 평가하는 조사이다. 1999년에 여성기업 실태 및 차별적 관행조사를 처음 실시하였으며, 2003년에 통계법 제82조에 의한 지정통계로 승인되었다. 실태조사는 중소기업청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위탁하여 2년마다 시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여성기업 육성 시책 등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실태조사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사업체를 영위한 여성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방법은 일대일 방문면접조사, 온라인조사, 팩스 및 e-mail조사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여성기업 실태조사는 여성기업의 경영현황, 재무구조, 생산형태 등을 파악하여 여성기업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해왔으나, 각 지역별 여성기업의 창업업종, 신규 창업자수, 기업규모, 경영환경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각 지역별 특성 및 전략산업을 반영한 정책의 수립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여성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해에는 지역별로 여성기업 업종을 세분화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지역 내 여성기업 비율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심층자료 조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유망업종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지원정책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16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여성기업 및 유망업종 지역 실태조사 주요 내용 >**

- 16개 지역별 여성기업의 창업특성, 경영성과, 문제점 및 애로사항, 정책 요구사항 등 객관적 자료 도출
- 지역 특성에 따른 여성기업 창업 업종 비교분석
- 일반여성기업과 전략산업분야에 속한 여성기업의 특성비교
- 지역별 여성기업의 상대적 경쟁 우위 요소 도출
- 지자체별 여성기업지원 현황과 연도별 사업규모 추이 조사
- 지역별 여성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정책요구 특성 변화 등

이러한 여성기업 및 유망업종 지역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여성기업에 대한 정확한 현황 자료를 수집하고, 발전단계별 차별적 정책대안을 모색하여 향후 법률적, 정책적 방향 설정 및 실질적 지원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 실태를 반영한 여성기업 창업교육 아이템 선정 및 경영자 교육 프로그램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창업교육의 효율성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55 | 지역 전략 산업 및 연고 산업

지역	전략 산업	연고 산업
서울	비즈니스 서비스, 관광, IT융합, MICE (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 바이오메디컬, 디지털콘텐츠, 디자인, 패션	바이오분야, 애니메이션분야, 디자인분야, 녹색성장 등
부산	항만물류산업, 관광컨벤션산업, 기계부품 소재산업, 영상·IT산업	해양바이오산업, 수산·가공산업, 섬유·패션산업, 신발산업, 실버산업 등
대구	메카트로닉스산업, 전자·정보기기산업, 섬유산업, 생물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비즈니스서비스업, 안경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전시·컨벤션산업, 출판·인쇄산업 등
울산	자동차산업, 조선해양산업, 정밀화학산업, 환경산업	울산축산업, 울산농산물, 산악·산업·해양 관광산업 등
대전	정보통신산업, 바이오산업, 첨단부품·소재산업, 메카트로닉스산업	영상·게임산업, 웰빙산업(실버벤처산업), 대덕구 공예산업, 동구포도주 가공산업, 첨단섬유소재산업, 안경산업 등
광주	광산업, 정보가전산업, 자동차·첨단부품소재산업, 디자인·문화산업	김치산업, 화훼·원예산업, 떡산업, 금형산업, 한복패션산업 등
인천	물류, 자동차, 기계, 금속, 정보통신, 생물(바이오)분야	생물산업, 메카트로닉스, 텔레메틱스, 자동차산업, 전자정보기기산업, 정밀기기, 신소재 산업, 소프트웨어, 정보통신서비스산업, 산업디자인업 등
강원	바이오산업, 의료기기산업, 신소재·방재·플라즈마산업, 관광문화산업	생명농어업, 건강채소·화훼산업, 토종동물 산업, 목재·산림산업, 유기농업, 한방·약초산업, 기능성식품, 수산가공산업
경기	전시문화, 화훼산업, 향토자원진흥, 방송 영상산업, 의료관광산업, 정보화 전략산업	친환경 에너지 산업, 여가관광, 관광/레포츠, 친환경농업, 도자기산업 등
충북	바이오산업,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 반도체산업, 차세대 전지	석회석신소재산업, 옥천모목, 옷산업, 태양광 산업, 에코세라피건강산업, 약초산업, 보은 문화산업, 바이오농업 등

지역	전략 산업	연고 산업
충남	전자·정보기기산업, 첨단문화산업, 자동차·자동차부품산업, 농·축산바이오산업	금산인삼산업, 공주자카드섬유산업, 계룡군 문화엑스포, 청양칠갑산 그린투어, 서산육쪽마늘일류화사업, 예산사과가공·유통산업, 보령머드산업 등
전북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 생물산업, 방사선 융합기술 및 대체에너지 산업, 전통문화·영상·관광산업	익산귀금속·보석산업, 익산니트산업, 남원 옷칠산업, 순창장류산업, 남원목기·허브산업, 진안홍삼·한방산업, 고창북분자산업, 임실 유가공산업 등
전남	생물산업, 신소재·조선산업, 물류산업, 문화관광산업,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부품·소재	기능성식품산업, 토종약초생산·가공업, 나비디자인·천연염색산업, 도자기(삼강청자) 산업, 전통애견(진돗개) 산업, 양식어업, 수산물가공 및 저장처리업, 차류가공업, 과일·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등
경북	전자·정보기기산업, 문화·관광산업, 신소재·부품산업, 생물·한방산업, 신재생에너지, 로봇산업	섬유기계산업, 한방산업, 인삼가공산업, 문화 축제이벤트산업, 농산물가공·시설채소산업, 신재생에너지, 로봇산업 등
경남	지식기반기계 산업, 로봇 산업, 지능형 홈 산업, 바이오 산업	석재가공산업, 축산사료유통산업, 하동녹차 가공산업, 약초·자연건강식품산업, 남해마늘 가공산업, 통영진주가공업, 창녕양파산업, Silk산업 등
제주	관광산업, 친환경농업생명산업, 디지털컨텐츠산업, 건강·뷰티 생물산업	축산업, 수산업, 스포츠산업, 향토음식산업, 화훼산업 등

※ 자료 : 중소기업청

### 3)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자체 사업재원 확보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정부의 위탁사업 이외에 특별법인으로서 회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독자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자금확보 방법을 활용, 자체 사업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협회가 독자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협회가 회원의 권익증진 또는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목표가 명확히 정의되고 이에 적합한 수단으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정을 위해서는 정관 규정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감과 동의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업이 무엇이든간에 몇가지 독자적인 재원확보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협회회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성공한 경우 성공보수로서 연간 0.1% 내외의 금액에 대해 협회의 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협회 회비의 현실화에 관한 것으로서 회원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창업 초기단계의 여성기업이 협회를 통해 여성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하고자하는 경우 연회비 부담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방식은 벤처기업협회 등의 회원규모별 회비 운영방안이 적합한 방안인 것으로 보인다. 벤처기업협회의 경우 협회 가입비는 30만원 이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연회비를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표 4-56 | 벤처기업협회의 가입비 및 연회비 운영사례

회원 유형	전년도 매출액	가입비	연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회원</li> <li>- 대한민국에서 활동기반을 갖는 기업으로서 협회의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 있는 기업</li> </ul>	창업 6개월 미만	30만원	면제
	50억원 미만		2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회원</li> <li>- 협회발전에 지대한 기여가 기대되는 기업으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한 기업</li> </ul>	50억~100억원 미만		50만원
	100억원 이상		100만원

셋째, 여성기업 확인증 발급시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수 있다. 확인수수료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원과 비회원을 차등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가령 (사)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등에서 관세경감확인서 발급수수료에 적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협회의 독자사업을 위한 수익 재원을 확보하고, 또한 결정된 사업 용도와 회원서비스 강화 등에 활용할 경우 신규 회원 확대 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서비스로 회원만족도가 개선될 것이다.

#### 4) 여성기업 단체 협의회 구성

우리사회의 여성 및 여성기업과 관련한 핵심 이슈는 일과 가정의 균형,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여성의 창업활성화, 및 여성기업의 육성 지원등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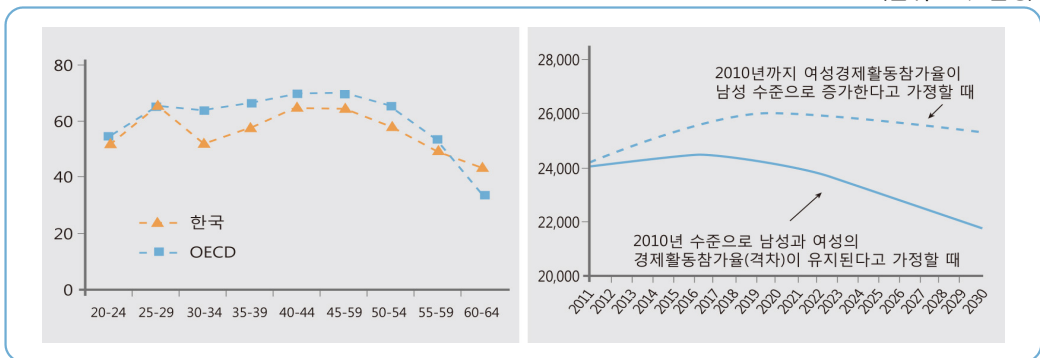
여성기업 관련 정책은 비단 어느 한 부처에 한정된 이슈가 아니라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정책설계 및 집행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여성기업 관련 단체 간에도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여성기업 관련 정책의 기획과 집행이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 노동고용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에 걸쳐 얽혀있고, 관련 여성기업 단체도 지휘감독청이 상이하다.

하지만 현재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여성기업 지원정책이 새 정부 출범이후 폭넓게 접근될 것으로 전망될 뿐만 아니라 향후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노동력감소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참여율 제고를 위해서도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그림 4-45 | 연령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 2030노동력규모 추계

(단위 : %1천명)



※ 자료 : Closing the Gender Gap, OECD, 2014

따라서 관련 부처의 정책들을 연계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부처 산하의 여성기업 관련 단체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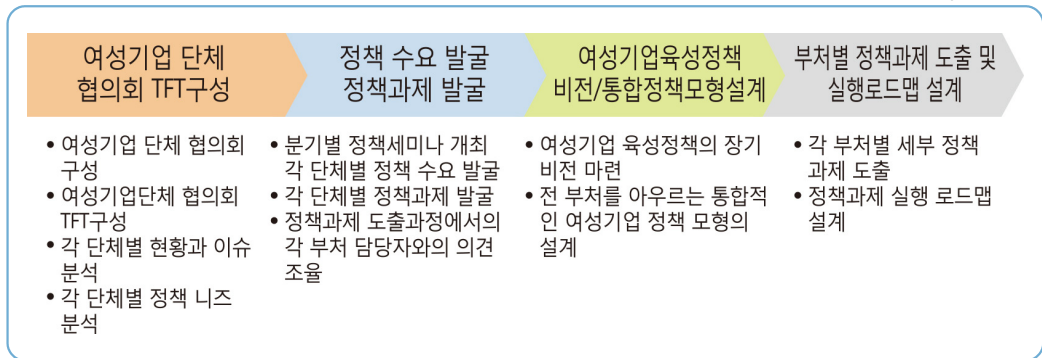
이러한 여성기업 관련 단체 협의체계 구성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협력체계 구축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연혁적으로 가장 오래된 여성경제인 단체일 뿐

아니라 회원 수 기준으로도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기업 단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여성기업 성장과 지원정책에 관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여성기업 육성정책 모형이 설계되고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로드맵이 설계되고 집행되도록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그림 4-46 | 한국여성기업단체 협의회 구성과 운영 (예시)

(단위 : 1천명)



※ 자료 :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2020 비전 및 발전전략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2013

### 5) 멘토링 등 나눔경영 실천을 위한 사회적 활동 확대

여성기업을 더 이상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여성기업들이 사회적 공헌활동의 실천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나눔경영 활동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그동안 여성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실시해 오던 사회공헌 활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여성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2006년도에 여성기업이 꿈과 미래가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13개 지회가 자율적으로 사회적 공헌 활동을 실천하여 왔다.

지회별 대표적 사례로는 서울지회의 전문계여고생 장학금 지원, 대전·충남지회의 여성가장 및 소상공인 불우이웃돕기 지원, 광주·전남지회의 장애우 사랑의 봉사 및 여고생 장학금 지원, 강원지회의 여고생 장학금 지급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대구·경북지회는

소녀가장 및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지역 내의 여성기업이 장학금 지원 졸업생을 채용하여 근무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2011년 6월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주관이 되어 그 동안 각 지회에서 실천해오던 사회적 공헌 활동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여성기업인들이 꿈과 미래가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고 사회적 공헌 활동의 실천을 다짐하기 위한 '여성기업 행복한 동행 발대식'이 이루어졌다.

또한 2013년 7월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여성 창업 활성화를 위한 성공한 여성CEO와 여성 창업을 꿈꾸는 대학생 등 예비 CEO와의 1:1멘토를 통해 선배 여성 CEO의 따뜻한 동행 선언이 이루어졌다.

여성기업 멘토링을 토대로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고,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및 일자리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존경받는 여성기업이 되도록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구심점 역할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멘토링 선언문>

우리 여성CEO 멘토-멘티는 여성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조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 우리 500인의 멘토는 후배여성 CEO에게 창업과 경영노하우를 적극 전수하여 여성기업인 양성과 고용창출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 멘티는 선배 여성경제인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미래CEO로서의 창업의지와 도전적 기업가정신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하나. 우리 500인의 멘토는 여성기업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물은 제거하여 후배 여성 CEO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데 앞장선다.

하나. 우리 멘티는 변화된 환경속에서 미래 CEO로서 글로벌 시장의 리더가 되려고 노력한다.

하나. 우리 멘토-멘티는 나눔과 봉사의 정신으로 여성과 사회, 국가의 발전을 항상 생각하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2013. 7.10.

여성CEO 멘토-멘티 일동

---

## 6.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혁신전략

### 가. 배경 및 필요성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한 각종 정보 및 교육, 훈련, 연수,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전국 15개 지역에 센터를 갖추고 있고, 지역별 센터 간 긴밀한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체계적·효율적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여성기업종합센터는 처음부터 정부의 여성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기관으로 태동되었기 때문에 센터 자체적으로 여성기업에 대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수행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지역 여성창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하고, 센터 스스로 여성기업에게 필요한 정책을 발굴·수행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 나. 추진방안

- 1) 여성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가칭) 설치
- 2)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시설 현대화
- 3) 지역 여성창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위한 시스템 강화
- 4) 여성기업 지원사업 성과관리 개선 및 사업개선

#### 1) 여성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가안) 설치

2012년 현재 전국 14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168개의 창업보육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창업기업 중 지식·기술집약적인 창업기업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지원기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여성 지식·기술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중기청),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교과부), 한국여성경제진흥원(기재부) 등의 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관련 기관간



연계 및 체계적 지원 기능이 수행되지 못해 여성기업 지원에 따른 실효성이 미흡하다. 따라서 여성 기술창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여성창업보육센터 설치를 제안한다.

재단법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확충하여 거점지역별 (가칭)여성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하여 여성 (1인)창조기업 활성화 도모한다. 기존 여성창업보육센터와 차별화된 '전문' 여성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를 설치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에 재단법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산하의 여성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별도로 설치하고 초기 창업자뿐만 아니라 예비 창업자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 <(가칭)여성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의 운영 원칙>

- 지식기술창업 분야의 수익창출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입주기간을 최대 5년까지로 연장
- ※ 현재 여성기업종합센터의 보육실 입주 기한은 최대 2년임.
- 여성창조기업 비즈센터에 입주하는 (1인)여성기업인은 일정 시간의 창업교육 이수 (이전 이수자 제외)를 의무화함.
- 여성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입주 기업의 창업
- 성공률에 대한 중장기 목표치를 설정하고 성장단계별 지원계획을 수립
- 여성의 감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지식·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필요한 지식·기술을 개발하여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념검증센터(proof-of-concept center) 운영
- ※ 지식·기술분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첨단기술뿐만 아니라 전통산업에서의 융합, 여성친화적 지식서비스업종에서도 창의적 아이템 발굴을 위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개념검증센터를 설치하고 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 테스트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 2)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시설 현대화

최근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여성창업 지원 및 시설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문성을 갖춘 여성창업보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도 창업보육 기능 못지 않게 시설의 현대화가 시급한 과제이다. 현재 전국 14개 지역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산하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서울시 산하 여성능력개발원/여성발전센터 등의 여성창업보육 시설에 비추어서도 인프라가 미흡한 실정이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현대화 기본계획 수립은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작업공간 및 환경을 제공하여 여성창업 기업간 교류와 여성창업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공간 및 시설의 현대화 추진한다. 향후 시설, 전문성, 여성창업 성공률에 있어 글로벌 수준의 전문 여성창업보육센터로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한다. 글로벌·강소형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세미나 및 워크숍 등에 필요한 연수시설, 여성기업 커뮤니티 활동(모임) 공간 배치한다. 국내외 여성기업 동향,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 대상 정부 지원 사업, 여성기업 통계 및 정책자료, 각종 세미나/워크숍 정보 등을 제공하는 여성기업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한다. 전문화된 여성창업보육 코칭 시스템 도입 : 영역별로 재무코치, 전략코치, 운영코치, 정보기술코치, 인적자원코치, 특허코치, FTA 코치 등 체계적 이고 전문화된 코치제도를 도입한다. 따라서 핀란드의 전문화된 창업보육코칭 시스템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표 4-57 | 핀란드의 여성기업 육성 체계

단계	내용
여성창업가 발굴 단계	여성창업경진대회와 교내 로켓피치 대회 등을 통해서 창업마인드가 형성되어 있고, 발전가능성이 높은 여성창업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함.
Pre-Incubation 단계	발굴된 여성창업가를 중심으로 아이템을 구체화시킴. 아이템 구체화 단계에서는 기존의 생계유지형 창업아이템(음식, 교육 등)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전공이 융합된 융합형 서비스 아이템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둠(특히, 서비스, 바이오, IT, 우주항공 등).
Incubation 단계	전문 멘토링 시스템을 통하여 초기창업자금조달에서, 제품디자인, 제품생산, 특허 등 제품 실현화하는데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Acceleration 단계	투자유치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필요한 전문 기관과 전문 컨설팅을 제공함.
BornGlobal 단계	글로벌 진출시장조사, 파트너 체결, 협약, 자금지원 등을 지원하여 글로벌 강소형 여성기업을 육성함.

자료: 양인숙·강민정(2012). 『여성기업 육성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p.97.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현대화 기본계획 내용 >

- 컨퍼런스 콜, 화상회의 등이 가능하도록 최첨단 IT 인프라와 CCTV 등의 안전보안 시설 완비
- 회의실, 상담실, 자료실, 휴게실, 카페, 샤워실, 물품 창고, 전용 주차장, 영유아 보육시설 등 여성친화적인 시설 및 환경 조성
- ※ 어린 자녀의 돌봄 서비스 수요가 있는 센터를 중심으로 보육시설 설치 및 확대, 또는 인근 보육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보육지원 시스템 확보
- ※ 자녀양육과 가사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여성 특성을 고려하여 교통 편의성(지리적 접근성), 주차장 시설 등에 대한 세심한 배치 필요

3) 지역 여성창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위한 시스템 강화

여성기업의 양적성장뿐만 아니라 지역 내 여성창업의 질적 성장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전국 14개 지역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성창업자의 기업 생존율 제고를 위해서 경영지원 체제를 마련할 방안으로 여성창업보육센터에 전문지식을 갖춘 창업 상담사를 배치하여 예비창업자 및 보육센터를 졸업하는 여성기업인에게 종합적인 상담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지역의 특화산업 및 신기술 창업에 대한 기술타당성 분석 등 상담·자문을 통해 여성창업 적합 분야로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창업활성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여성창업기반 강화를 위하여 지역 특화산업 및 여성적합 창업 사례 등을 연구·조사하여 공유하고, 지역 특화와 관련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보육센터 졸업기업에 대해서는 졸업 후 준비해야 할 사무실 임대, 사업소재지 등기이전, 인력 확충에 따른 사회보험과 세무관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상담창구를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 4) 여성기업 지원사업 성과관리 개선 및 사업개선

여성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평가 착수시기의 조정, 통합정보망을 통한 사업 참여신청,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성과지표 중 매출액 산정기준 합리적 조정필요, 창업성공률 관리를 위한 생존률 조사 등이 주요 개선사항으로 지적됐다.

첫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성과지표 중 매출액산출기준은 센터가 지속적으로 보육실수를 확장하여 입주기업을 늘린다고 해도 신규 창업업체가 많이 입주하는 해는 매출액이 감소할 수 밖에 없으므로 매출액, 평균매출액 지표를 매년 상향하는 것은 불합리해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돼 왔던 것이다.

둘째, 신생기업의 평균 생존율이 창업 2년 뒤 49.1%에 불과, 창업생존률이 낮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창업기업에 대한 생존율 관리는 창업성공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일 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에 대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지원기업에 대한 휴·폐업 조사 통한 창업후 생존률 지표의 조사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셋째, 센터 졸업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기업에게 필요한 연구개발, 자금, 인력, 지원사업 등을 찾아서 매칭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 경우 청년창업센터 졸업기업에 대한 추적관리와 함께 우수 졸업기업에 대한 지속관리로 성공창업 사례를 확산해 나가고 있다. 청년창업센터에서 1년간의 인큐베이팅이 끝난 후, 졸업기업 중 우수팀 150여 개를 선정해 지원하여 지속가능성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용산구 청사에 마련한 ‘청년창업플러스센터’에 1년간 추가로 입주 및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1년 후엔 이중 50개팀을 선발해 1년간 추가로 지원, 최장 3년간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표 4-58 | 여성기업 지원사업 성과관리 개선

성과관리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평가가 연말에 시작되서 익년 연초에 마무리 되므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곤란</li> <li>• 실전창업스쿨의 경우 참여자 이력관리가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관리 문제 발생</li> </ul>	<p>* 사업관리 기준의 표준화</p> <p>① 여성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시기 및 종기의 변경필요</p> <p>- 성과평가가 12월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10월로 조정 필요</p>

성과관리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신규 창업업체가 많이 입주하는 해는 매출액이 감소할 수 밖에 없으므로 매출액, 평균매출액 지표를 매년 상향하는 것은 불합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사업참여 신청자를 통합정보망으로 통합 관리하여 조사 신뢰도 향상</li> <li>③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성과지표 중 매출액에 대한 산정기준을 입주기업 전체가 아닌 1년 이상 보육업체로 산정기준 변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업지원 성공을 위한 첫번째 단계는 성공률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창업 성공률 관리체계는 매우 중요한데, 창업기업에 대한 졸업후 생존을 관리하는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기업의 사후 성장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받은 기업에 대한 후·폐업 조사 통한 생존률 지표 관리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졸업기업의 생존율 조사필요</li> <li>- 또한 센터 졸업기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창업성공 확산이 필요</li> </ul> </li> </ul> </li> </ul>

또한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기존 사업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창업보육실의 효율적인 공간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창업준비단계의 예비창업자는 공간수요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므로 개방형 공동보육실을 활용 토록하고, 공간수요가 높은 성장단계의 창업기업들은 대형보육실 및 소회의실 등을 제공하여 창업보육실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둘째, 실전창업스쿨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수강생의 수준 및 창업예정 시기 등을 고려하여 창업기초과정과 전문가과정인 모의창업 과정으로 분리하여 수강생 모집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초과정은 처음으로 실습을 해보는 수강생 위주로 기본 실습을 익히도록 과정을 구성하고 모의창업 과정은 기본 실습을 익힌 수강생 위주로 사업계획서 작성, 모의창업시뮬레이션 위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여성CEO MBA과정은 경영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정으로 재편성할 필요가 있겠다. 여성CEO들은 이 과정을 경영실무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전문화하고, 다양하고 전문적인 강사진으로 구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강사/수강생 간의 네트워킹을 구축하길 희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집합교육은 경영실무(마케팅, 인사관리, 자금 관리, 사업트렌드 등)중심의 강좌로 재편성하는 한편, 전문성/실무경험을 갖춘 강사를 섭외하여

질적수준 제고하는 대신 교양강좌는 온라인 강좌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다. 강의진행방식은 이론보다는 팀 토론 방식으로 수강생 간 토론을 통한 네트워킹 시간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 작업을 거칠 필요가 있겠다. 이 사업은 여성기업들의 선호도가 높고 사업의 유효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분야로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한국여성경제인 협회 회원에 대한 품목별 여성기업 DB를 사전에 확보하여 수출 준비 지원단이 박람회 특성과 여성기업 제품 간의 수출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해외니즈를 감안한 제품 및 포장의 현지화, 샘플제품준비, 외국어카탈로그 제작 등 참가 준비를 사전에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표 4-59 |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번	사업명	현황 및 문제점	개선과제
1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창업기업보다는 성장기업의 보육센터 공간수요가 높아 보육실 공간이 협소하여 성장단계별로 입주 공간 재배치가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준비단계의 예비창업자는 개방형 공동보육실을 활용토록하고, 공간수요가 높은 성장단계의 창업 기업들은 대형보육실 및 소회의실 등을 제공하여 보육실 공간의 효율화 제고 필요</li> </ul>
2	실전창업스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문조사 결과, 수강생의 수준에 따라 교육과정 난이도 편차가 발생하여 수강생의 수준에 맞게 기본 과정과 전문가 과정으로 분리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습능력, 창업예정 시기 등을 고려하여 기초과정과 모의창업과정으로 분리하여 수강생 모집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과정은 처음으로 실습을 해보는 수강생 위주로 기본 실습을 익히도록 과정을 구성</li> <li>- 모의창업 과정은 기본 실습을 익힌 수강생 위주로 사업계획서 작성, 모의창업 시뮬레 이션 위주로 진행</li> </ul> </li> </ul>

연번	사업명	현황 및 문제점	개선과제
3	여성창업경진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창업경진대회에서 우수 창업 아이템으로 선정된 수상자가 창업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li> <li>현재 여성창업경진대회 시상금 예산은 1억원으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부족</li> <li>-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창업경진대회 : 수상자 창업률 100%; 예산 : 6억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업경진대회는 사업아이디어, 창업아이템 등 우수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단체와 창업 후 2년 미만의 여성창업기업을 구분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음</li> <li>시상금 형태로 자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본선진출 10개 팀에게 평가위원들이 사업 우수성을 평가하여 각자 창업자금을 직접 배팅하는 방식으로 운영</li> <li>- 자금은 사업자등록증을 내거나, BI 입주 후 2차에 걸쳐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li> <li>수상자에게 사업화 자금 지원, 창업보육실 우선 입주, 성공CEO 멘토 지원, 경영컨설팅 등 지원</li> </ul>
4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박람회 참가자금 및 사전준비 부족 등으로 해외박람회 참가를 위한 기업 모집 애로</li> <li>부스임차 장치, 통역지원 등 박람회 참가시 현장지원에 대한 만족도도 높지만, 해외박람회 참가를 위한 수출준비 업무활동 지원을 희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박람회 참가는 사전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여성경제인 협회 회원 중 각 아이템별 DB를 사전에 확보하여 수출준비 지원단이 수출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참가준비를 사전에 지원 필요</li> </ul>
5	여성CEO MB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만족도, 필요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내용의 전문성을 더 높여 주는 것을 요구</li> <li>- 여성CEO들은 실무경영위주의 교육 과정으로 전문화하고, 다양하고 전문적인 강사진으로 구성되길 희망</li> <li>- 강사/수강생간의 네트워킹 구축 확대 희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경영교육과정으로 재편성 필요</li> <li>- 집합교육은 경영실무(마케팅, 인사관리, 자금 관리, 사업 트렌드 등)중심의 강좌로 재편성하고, 전문 성/실무경험을 갖춘 강사를 섭외하여 질적수준 제고하는 대신 교양강좌는 온라인 강좌로 대체필요</li> <li>강의진행방식을 이론보다는 토틀론 진행방식으로 수강생간 토론, 네트워킹 시간을 확대</li> </ul>

※ 자료 : 2013 여성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등, 2014





## 별첨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개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소개

유용한 지원사업 100% 활용하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발전기본법

## 표목차

## 그림목차







## 가. 설립목적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창업을 촉진하여 경제영역에 있어서 실질적 기회균등을 실현하며, 여성기업의 활동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조성하고 여성경제인의 능력향상에 이바지함으로써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이 국가경제발전에 공헌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나. 주요기능

- 여성창업 및 여성경제인 경영능력 향상 지원
- 여성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여성기업제품 판로확대 지원
- 해외시장개척 및 외국 여성경제인단체와의 교류협력 등

## 다. 협회 CI



여성경제인들이 햇불을 높이 들어 주위를 밝히고, 하나가 아닌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여 척박한 땅을 비옥한 양지로 만들겠다는 여성경제인들의 의지와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모습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유니크하게 형상화 하였다. 또한 여성경제인의 단합된 결속력을 바탕으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며, 여성경제활동을 통한 복리증진 및 회원의 권익옹호에 앞장서고자 하는 협회의 설립이념과 21세기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고자 하는 경제인들의 발전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

## 라. 연혁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1971년에 대한여성경제인협회라는 명칭으로 설립된 이후, 1999년에 중소기업청의 설립인가를 받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여 이어져오고 있다.

### ■ 1990s

- 1999 0205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공포(법률 제5818호)
- 0611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발효
- 0614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공식 출범, 창립총회 개최
- 0624~0709 서울, 부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인천, 강원, 경기, 전북, 경남, 제주 11개 지회 창립총회
- 0727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1차 정기총회, 장영신 초대회장 선출
- 1020 충북지회 창립총회 개최
- 1022 전국 여성기업인 경영연수 실시(도고증권연수원)
- 1206 임시총회 개최 및 제2대 신수연 회장(코리아스테파)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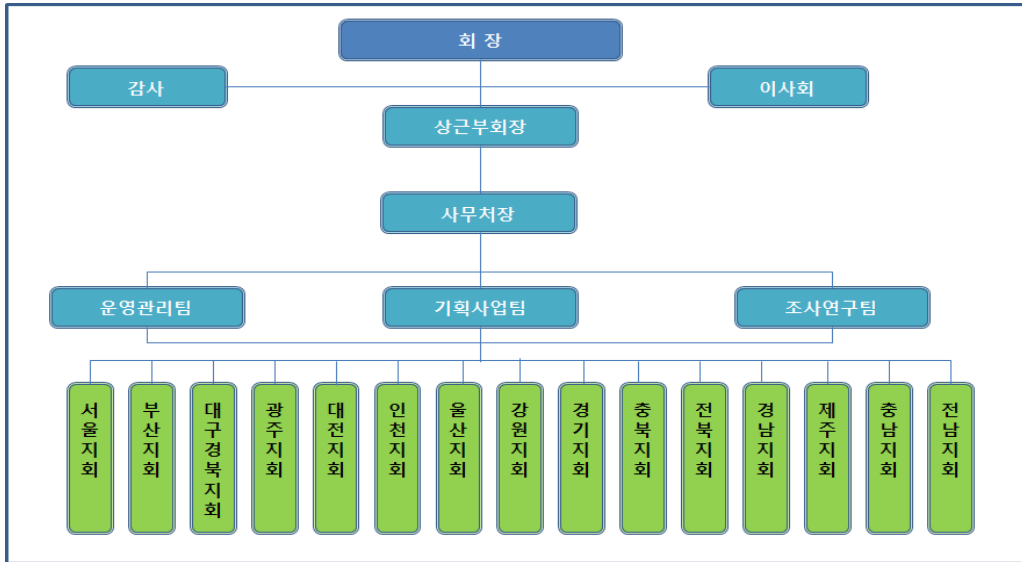
### ■ 2000s

- 2000 0127 정기총회 개최
- 0407 상반기 전국 여성기업인 경영연수 실시(부산 그랜드호텔)
- 0614 『제4회 여성경제인의 날』기념식
- 0920 하반기 전국 여성기업인 경영연수 실시(제주 그랜드호텔)
- 2001 0130 정기총회 개최
- 0706 『제5회 여성경제인의 날』기념식
- 1024 전국 여성기업인 경영연수 실시(서울 올림픽파크텔)
- 2002 0129 정기총회 개최 및 제3대 이영숙 회장((주)코모도호텔) 선출
- 0316 울산지회 창립총회
- 0319 제3대 이영숙 회장((주)코모도호텔) 취임

- 2002 0705 「제6회 여성경제인의 날」기념식  
 0710 여성최고경영자 경영연수  
 1025 전국 여성기업인 경영연수 실시(강원 현대설악콘도)
- 2003 0128 정기총회 개최  
 0523 전국 여성기업인 경영연수 실시(대전 리베라호텔)  
 0704 「제7회 여성경제인의 날」기념식  
 1218 제4대 정명금 회장(대구중앙청과(주)) 선출
- 2004 0228 정기총회 개최  
 0702 제4대 정명금 회장(대구중앙청과(주)) 취임  
 「제8회 여성경제인의 날」기념식 및 리셉션 개최  
 1026 전국 여성기업인 경영연수 실시(경주 현대호텔)
- 2005 0127 정기총회 개최  
 053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 개정  
 (여성경제인 범위확대 : 여성기업의 임원 → 모든 기업의 임원)  
 0706 「제9회 여성경제인의 날」기념식  
 1021 전국경영연수 개최(경기 라비돌 리조트)
- 2006 0120 정기총회 개최  
 0706 「제10회 여성경제인의 날」기념식 개최  
 1027 전국 여성경제인 경영연수 실시(인천 하얏트호텔)  
 1220 제5대 안윤정 회장((주)사라) 선출
- 2007 0124 정기총회 개최 및 제5대 안윤정 회장((주)사라) 취임  
 0705 「제11회 여성경제인의 날」기념식 개최  
 0913 전국 여성경제인 경영연수 실시(경주 코모도호텔)  
 1001 재단법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허가  
 (중기청 허가번호 제 2007-7호)
- 2008 0129 정기총회 개최 및 여성경제인 경영혁신 워크숍  
 0703 「제12회 여성경제인의 날」기념식  
 0925 2008 아시아 여성경제인 대회 개최

- 
- 1107 전국 여성경제인 경영연수 실시(부산 코모도호텔)
- 2009** 0205 정기총회 개최
- 0406 「제13회 여성경제인의 날」기념식
- 0507 전국여성경제인 경영연수 실시(상반기-경남 씨티풀만호텔)
- 052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공공기관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시 법제화)
- 0916 2009 아시아 여성경제인 대회 개최
- 1016 전국여성경제인 경영연수 실시(하반기-충북 라마다호텔)
- 1119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1항)  
(공공기관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 물품 및 용역 5%, 공사 : 3%)
- 1229 제6대 전수혜 회장((주)오리엔트마린) 선출
- 2010** 0127 2010년도 정기총회 개최 및 제6대 전수혜 회장((주)오리엔트마린) 취임
- 0329 「제14회 여성경제인의 날」기념식
- 0903 2010 여성경제인 워크숍
- 1029 전국여성CEO 경영연수 실시(목포 현대호텔)
- 2011** 0222 정기총회 개최
- 0422 전국여성CEO 경영연수(제주 해비치호텔)
- 0621 「제15회 여성경제인의 날」기념식
- 2012** 0221 정기총회 개최
- 0907 전국여성CEO 경영연수(전북 변산리조트)
- 0710 「제16회 여성경제인의 날」기념식
- 2013** 0101 제7대 이민재 회장 선출
- 0130 정기총회 개최
- 0710 「제17회 여성경제인의 날」기념식
- 1025 전국여성CEO 경영연수(The-K 서울호텔)

## 마. 조직도



## 바. 지회 소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는 전국에 총 15개가 구축되어 있으며, 본회 및 지회 간에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각 지역 내에 있는 여성기업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기업인 및 여성임원들에게 경영가로서의 자질향상 및 혁신마인드 형성을 위한 여성CEO MBA교육과 전국경영연수 실시하고, 여성의 사회진출과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고자 여성친화적인 업종으로 전문화된 실전창업스쿨 운영, 여성기업의 공공구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기업 확인제도를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여성기업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젊고 유능한 여성인력의 창업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여성창업경진대회와 차세대 여성CEO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유관기관장과의 정책간담회, 글로벌 경영흐름에 따라가기 위해 산업시찰단 파견, 해외박람회 참여, 해외여성기업인과의 국제교류 등의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산악회, 골프, 다도 등 회원들의 단합과 여가 활동을 위한 클럽활동 운영과 여성기업의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 내 봉사활동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지회명	설립일	주소	연락처
본회	1999.07	(135-514)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3-24 4층	02-369-0900
서울지회	1999.07	(133-010)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866-2 삼협빌딩 6층	02-702-4244
부산지회	1999.07	(601-837) 부산시 동구 초량동 1158-8 극동빌딩 4층	051-465-1492
대구경북지회	1999.07	(706-803) 대구시 수성구 만촌1동 1341-5 5층	053-756-0006
광주지회	1999.07	(500-040) 광주 북구 신안동 133-1번지 (재)여성기업합치원센터 2층	062-523-6028
대전지회	1999.07	(305-500) 대전시 유성구 용산동 533-1 미건 테크노월드 2차 C동 223호	042-526-2862
인천지회	1999.07	(405-817)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36번지 인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2층	032-260-3600
울산지회	2002.03	(683-805) 울산시 북구 연암동 758-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052-998-8585
강원지회	1999.07	(200-959)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726-3 2층	033-241-3475
경기지회	1999.07	(442-83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15-3 DSD빌딩 3층	031-211-0292
충북지회	1999.11	(361-818)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890 4층	043-236-6561
충남지회	2012.04	(331-858)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43-5 충남테크노파크 종합지원관 1층 1200호	041-589-0570
전북지회	1999.07	(560-82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70-4 2층	063-272-9973
전남지회	2013.12	(534-821)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970 전남중소기업지원센터 4층	061-281-2612
경남지회	1999.06	(641-200) 경남 창원시 대원동 123번지 창원컨벤션센터 502호	055-212-1240
제주지회	1999.06	(690-836) 제주도 일도1동 1276-5번지 4층	064-726-4467





## 가. 설립목적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보육,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하며,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나. 주요기능

- 여성기업창업 보육공간 및 지원시설 제공, 정보 및 자료제공, 교육·훈련·연수, 경영활동 및 판로지원, 애로상담,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 및 조사 실시(전국 15개 지역센터 운영)
- 여성창업률 향상 사업(실전창업스쿨, 여성창업경진대회)
- 수출여성기업 육성(해외박람회 참가지원)

## 다. 재단 CI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심벌마크는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Corporate Branding의 핵심요소로서 'WE(우리)'의 콘셉트로 개발되었다. 각각의 사각형의 조합으로 'W(woman)'와 'E(enterprise)'를 형성하여 WE를 상징한다. 창업을 꿈꾸고 있는 여성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간의 정보교환의 장이 되는 '우리'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21세기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 시대에 많은 여성경제인들이 국가경제의 축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

## 라. 연혁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1999년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정에 의해 2001년 국회에 센터 설립관련 예산이 최초로 반영된 이후, 2007년에 중소기업청의 설립인가를 받아 현재의 명칭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 ■ 2000s

2007	1001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주무관청 : 중소기업청)
	1009	2007년 정기이사회
2008	0819	2008년 정기이사회
	1130	부산센터 확장완료(임대확충)
	1230	경기센터 확장완료(임대확충)
2009	0224	2009년 정기이사회
	0601	중앙센터보수공사(강의실 및 회의실 등 교육시설 구축)
	1116	대구경북센터 확장완료(건물매입)
	1218	전북센터 확장완료(건물매입)
	1216	경남센터 확장완료(임대확충)
2010	0127	2010년 제1차 임시이사회
	0130	전수혜 이사장 취임
	0204	2010년 정기이사회
	0223	강원센터 확장완료(건물매입)
	0413	2010년 제2차 임시이사회
	0724	인천센터 확장완료(임대확충)
	1007	2010년 제3차 임시이사회
2011	0222	2011년 정기이사회
	0131	충북센터 확장완료(건물매입)
	0630	대전충남센터 확장완료(건물매입)
2012	0326	광주전남센터 확장완료(건물매입)
2012	12.	울산센터(건물매입), 제주센터 확장완료(건물매입)
2013	01.	이민재 이사장 취임
	12.	충남센터 확장완료(건물매입)
2014	02.	2014년 정기이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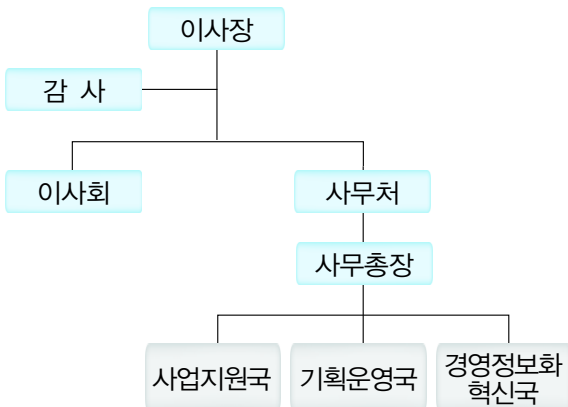
## 마. 조직 및 기구현황

### ■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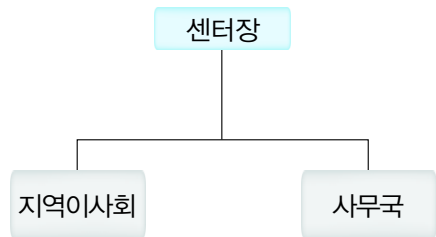


### ■ 기구

#### ① 중앙



#### ② 지역센터



## 바. 지역센터 소개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전국에 총 15개 지역센터를 두고 있으며, 여성의 창업활성화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보 제공, 판로, 애로상담, 창업보육 등의 지원을 통해 종합지원체제를 구축, 여성기업 지원기관의 메카로써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 경영활동 촉진을 위하여 각 지역센터 내에 여성창업보육센터를 설치·운영중이며, 차세대 여성기업인 조기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차세대 여성 CEO양성교육,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여성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전창업스쿨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예비여성 창업자들의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조기에 발굴 육성하고, 창업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여성창업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와 수출경험이 부족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유명박람회 참가를 지원하여 수출저변의 확충에 힘쓰고 있다. 또한 센터 확장사업을 통해 여성의 창업수요 증대에 비해 부족한 창업보육 공간을 확장하여 여성창업 활성화, 여성일자리 만들기 및 녹색성장 기업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센터는 여성경제인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One-Stop 지원하여 여성의 창업활성화 유도과 여성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데 앞장 설 것이다.

센터명	설립일	주 소	연락처
중앙	1999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3-24	02-369-0900
서울센터	2002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866-2 삼협빌딩6층	02-702-4244
부산센터	2000	부산시 동구 초량동 1158-8 극동빌딩 4층	051-465-1001
대구경북센터	1999	대구시 수성구 만촌1동 1341-5 5층	053-742-5193
광주센터	1999	광주 북구 신안동 133-1번지	062-527-1612
대전센터	2000	대전시 유성구 용산동 533-1 미건테크노월드2차 0동 223호	042-526-2862
인천센터	2001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2층	032-260-3600
울산센터	2002	울산시 북구 연암동 758-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052-998-8585

센터명	설립일	주 소	연락처
강원센터	2000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726-3번지 2층	033-241-3475
경기센터	200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15-3 DSD빌딩 3층	031-211-0292
충북센터	2001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1동 890번지 4층	043-236-6561
충남센터	2012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43-5 충남테크노파크 종합지원관	041-589-0570
전북센터	200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서로 477 2층	063-272-9906
전남센터	2013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970번지 전남중소기업지원센터 4층	061-281-2612
경남센터	1999	경남 창원시 대원동 123번지 창원컨벤션센터 502호	055-212-1241
제주센터	2001	제주시 일동1동 1276-5번지 2층	064-726-4467



- ④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 청년전용창업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용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의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용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용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단, 기업 당 1회로 한정 지원
  - 부지매입비 및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과의 납품계약(계약서 등)에 근거한 제품 생산비용 등 소요자금
    - \* 단, 구매기업의 계약이행능력,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여 용자를 제한할 수 있음

### 용자 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15%p차감(기준금리)
  -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9% 고정금리
- 대출기간 :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의 대금지급일 이내(최대 180일)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 운전 구분없이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 대출한도

- 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용자한도’
  -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단, 재창업자금은 운전자금 연간 10억원
  - \*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회전한도내에서 계약금액의 90% 이내(최대 5억원)
  -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 용자 방식

- 창업자금지원 : 중진공이 자금 신청, 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보증서 포함) 대출
- 재창업 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청, 접수와 함께 기업평가 및 도덕성 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단, 기업편의에 따라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가능)
  - \* 단,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심사(신용회복위원회)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대출
- 청년전용창업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용자상환금 조정형) 또는 취급은행(우리은행, 기업은행)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대출
  - \* 용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용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 \* 민간금융 매칭형 : 지역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부로 지원

## 2)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 신청 대상

- 전략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아래의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경우
  - 전략산업 : 녹색 · 신성장동력산업, 뿌리산업, 부품 · 소재산업, 지역전략, 연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바이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RLDJQD,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자체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 중소기업청 소관(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합회 등)R&D 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 또는 성공판정 신청 기술

### 용자 범위

- 시설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 용자 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0%p 차감(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 용자 방식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용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 3) 신성장 기반자금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을 위한 생산 시설 개량 또는 투자에 필요한 자금과 초기 가동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

## 신청 대상

신성장기반,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협동화자금으로 구분지원

\* 최근 3년 이내 신성장기반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용자 제외

● (신성장기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단, 업력 7년 미만 기업 중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용자

●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 기업평가등급 우수기업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 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용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가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위 시설자금을 용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30% 이내)
    - \* 혁신형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시설자금의 50% 이내에서 초기가동비 지원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영위기업, 협동화(협업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국토해양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은 제품생산비용, 제품개발비용 및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용자 가능(단,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은 시설자금과 별도 용자 불가)

### 용자 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4%p가산(기준금리)
  - \* 시설자금(시운전자금 포함)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제외)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 : 15년 이내 (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용자한도'(운전자금 연간 5억원)
  - \*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10억원

### 용자 방식

중진공 자금 신청. 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4) 긴급 경영 안정자금

수출중소기업·재해피해기업·일시적 경영애로기업 등의 생산 및 판매활동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긴급경영안정사업과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 긴급경영안정사업 : 재해 피해를 입거나 일시적 경영대로 상태에 있는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 용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의 생산품(용역,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이용기간(약정기간)이 5년을 초과한 기업은 용자제외(단,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은 신청 가능)

##### 용자 범위

구분	내용
긴급경영 안정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재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함)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복구비용</li><li>•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금융기관의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li><li>- 전국은행연합회"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계획인가 기업, 중진공 집중관리기업, 자본잠식 기업 중 강력한 지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li><li>-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을 통한 기업 구조개선 진단 추진기업</li><li>- 수출비중이 30% 이상인 기업 중 환율 변동에 따른 피해로 직전년도(또는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li><li>- 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업</li><li>-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li><li>- 대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협력 중소기업</li></ul></li></ul>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동기(동월)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서, 전년도말 또는 직전 분기말 당시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li> <li>- 주요거래처의 도산 또는 결제조건 악화에 따른 매출채권 회수 지연기업</li> <li>- 기술유출 피해기업</li> <li>- 부당하도급 피해로 공정위의 심결을 받았거나, 법원의 판결을 받은 기업</li> <li>- 중소기업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li> </ul> <p>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lt;1.공통사항&gt; 마. 용자제한기업 ①항, ②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기업은 용자제한)</p>
수출금융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li> </ul>

### 용자 조건

#### ① 긴급경영안정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9%p 가산(기준금리)
  - \* 재해중소기업은 연 3%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은 연간 10억원 이내
- 용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 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용자대상을 결정한 후 직접 대출

#### ② 수출금융지원사업

- 대출기간 : 180일 이내
  - 수출계약기준 : 수출품 선적 후 수출환 어음 매입시 정산
    - \* 단, 수출계약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 수출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 상환
    - \* 단, 수출실적 등을 감안하여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

- 대출한도 : 기업당 10억원 이내

-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및 중소 Plus+ 단체보험 가입기업, 해외수요처 연계 R&D 성공제품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 UN 및 UN산하기구, WTO정부조달협정 양허기관, FTA정부조달 협정 양허기관의 조달계약에 입찰하여 낙찰받는 기업
- \* 글로벌강소기업 : 수출성장 잠재역량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수출 5천만불 이상의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선정
- \*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수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선정
- \* 수출계약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일반기업은 최대 10억 원,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은 최대 30억원) 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 이내
- \* 수출실적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2 이내
  - 수출실적 기준 이용기업은 10억원(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은 30억원) 한도 내에서 수출계약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9%p가산(기준금리)

### 융자 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 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 5) 사업전환자금

중소기업이 새로운 유망 사업 또는 업종의 추가 등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생산시설 투자,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 신청 대상

-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현 영위업종	전환 진출업종
모든 업종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제외)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단, 정책자금 공고상 용자 제한 업종은 제외)

- \*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전체 매출액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사업이고, 향후 축소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업전환의 대상이어야 함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경우, <1.공통사항> 마.용자제한기업 ⑥항, ⑧항 적용에서 예외

### 용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동 공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기타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과 관련한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용자 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15%p차감(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용자한도'(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 \*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 나. 기술개발 지원

### 1) 기술개발자금 지원

#### 가)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이를 상용화하거나 판매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기술개발단계부터 판로를 보장해주는 사업이다. 수요처(정부·공공기관·대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신제품에 대해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수요처에서 이를 일정기간 구매한다.

**지원 규모** 약 300개 과제(전체 예산 665억원)

\* '13년 지원현황 : 신청과제 613개 중 신규 297개 과제 선정(1.9억원)

####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제외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오락업 및 문화업, 공공·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내용과 동일

### 지원 내용

- 수요조사 과제 : 수요처(대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개발을 제안한 과제
  - 일반과제 :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 또는 단일 과제에 다수의 수요처(조합, 각종단체, 병원 등)가 참여한 공동구매 과제
  - 전략과제 : 국방·기상·소방 등 공공분야의 외국산 장비 및 부품의 국산화계획에 따른 전략과제 또는 하나의 완제품 생산을 위해 다수의 부품개발이 필요한 과제(예 : 완제품 1+부품 5개)
- 중소기업제안과제 :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나 개발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여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제안한 과제

### 신청·접수 '14. 1월부터 자금소진시까지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http://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현장평가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성 : 필요성, 기술개발 과정 및 방법의 적절성, 목표달성도의 평가방법
- 사업성 : 시장규모, 시장의 성장성, 시장진입가능성,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등
- 주관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구매계약관련 서류 등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근거 서류(우대사항 근거 포함)

---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게재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서식 참고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44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042-715-2327, 2334, 2335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02-368-8744~6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1661-1357(중소기업 R&D 고객센터), 기업마당(www.bizinfo.go.kr)

### 나) 해외수요처 연계기술개발사업

해외수요처(바이어)로부터 신제품개발 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이 성공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고부가가치 시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 약 100개 과제 내외(전체 예산 150억원)

\* '13년 지원현황 : 신청과제 214개 중 신규 98개 과제 선정(1.5억원)

### 지원 대상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① 해외바이어와 상호 출자지분 관계에 있는 기업
- ②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③ 채무불이행, 의무사항불이행 등에 해당되는 기업
- ④ 해외수입처(바이어) 신용등급이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외수입자 신용등급조사 결과 E등급 이하인 경우
- ⑤ 해외수입처(바이어)와의 구매계약 체결이 6개월을 경과한 경우

### 지원 내용

- 글로벌 협력과제 : 글로벌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 · 신제품 개발수요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과제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원과제를 발굴하며, 지정공모를 통해 개발 중소기업을 선정
- 기업제안과제 : 해외수요처(바이어)로부터 신제품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과제

### 신청 · 접수 '14. 1월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온라인 접수
  - 현장평가시 재무재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심사·평가 주요내용
- 해외수요처와의 계약내용·구매규모, 사업화 가능성, 기술개발 목표수준 등

### 제출서류

- 과제제안서, 구매계약 관련 서류, 신용등급보고서, 사업계획서 등
-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게재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서식 참고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44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평가팀 : 042-715-2327, 2334, 2335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02-368-8744~6
- 전화상담은 1661-1357(R&D 고객센터), 기업마당(www.bizinfo.go.kr)

---

## 다)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지원자금(협력펀드)을 미리 조성한 후, 투자기업이 과제를 발굴·제안하고 정부는 개발에 적합(국산화 또는 신제품 개발)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200개 과제(전체 예산 500억원)

\*'13년 지원현황 : 신청기업 180개사 중 153개사 선정지원

### 지원 대상

- 투자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과 함께 신제품개발·수입대체·공정개선 등을 위하여 지원과제 유형별로 신청한 과제 중 최종 선정된 과제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지원이 안되는 기업 내용과 동일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 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제외대상에 해당

### 지원 내용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Main-R&D) 및 제품화 과정(Post-R&D)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수요조사과제 : 투자기업에서 개발을 제안한 단일 과제 또는 투자기업의 미래전략 과제에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하는 복수의 과제
    - 중소기업 신청 시, 협력펀드 구성에 참여한 투자기업의 추천을 받아야 함
  - 미래전략과제 : 투자기업에서 선정한 미래 전략형 과제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지원(컨소시엄 방식)
  - 기업제안과제 :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를 투자기업에 제안하여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제출한 과제의 연구개발 비용 지원

- 직접사업화과제  
대학·연구기관(기술출자)과 투자기업(자본출자)이 공동투자자로 설립된 신규창업 법인의 직접사업화 과제
- 협력펀드 조성 참여 투자기업

**신청·접수** 공고 시점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 내용입력

**제출서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추천서 및 구매협약동의서 등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44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기획부 : 042-388-0221,222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02-368-8713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http://www.smtech.go.kr)(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1661-1357(R&D 고객센터),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2) 기업간·대학·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

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인력, 장비, 기술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규모** 200개사(전체 예산 500억원)

---

##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첫걸음기술개발 :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
- 도약기술개발 : 기술혁신 역량 부족, 성장정체를 겪는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신설 필요 기업 등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 ②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인 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 ③ 부채비율 1,000% 이상인 중소기업
- ④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중소기업
- ⑤ 세무당국에 의한 세금 체납처분을 받은 중소기업 등

## 지원 내용

- 첫걸음기술개발 :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소재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하여 기술개발 지원(지방비와 매칭, 예산 390억원)
  - 지원한도 : 1년간 1억원(정부 50%, 지방비 25% 이내)
- 도약기술개발 : 기술혁신 역량 부족, 성장정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국의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하여 혁신역량 제고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예산 999억원)
  - 지원한도 : 1년간 1억원(정부 75% 이내)

**신청·접수** 매월 1일~10일(1월~9월까지)

- 중소기업 건강관리 신청서와 기술개발 사업신청서(3쪽)를 작성하여 관할소재지 건강진단 기관(지방청, 중진공, 신보, 기보 등)에 방문 접수

### 문의처

- 전화상담은 1661-1357(R&D 고객센터), 비즈인포(www.bizinfo.go.kr)
- 중소기업청 공정혁신과 : 042-481-4453
- 각 지방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 (서울)기술혁신지원과, (제주)제주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 (사)한국산학연합회 : 042-720-3300

### 나)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산-연) 또는 중소기업간(산-산)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융·복합형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융·복합기술개발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지원 대상

813억원(신규과제 148과제, 계속과제 161억원)

### 지원 대상

- ① 융·복합과제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기업부설연구소(개발전담부서 포함)를 보유한 기업
  - 공동개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사업관리 역량 등이 있는 공공기관·대학
- ② 이전기술과제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기업부설연구소(개발전담부서 포함)를 보유한 기업
  - 공동개발기관 : 기술개발 및 사업관리 역량 등이 있는 공공연구기관·대학

### ③ 센터연계형과제

#### - 일반기술 유형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기업부설연구소(개발전담부서 포함)를 보유한 기업
- 공동개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기업부설연구소(개발전담부서 포함)를 보유한 기업

#### - 농공상용합 유형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공동개발기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의거 설립된 농어업법인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지원이 안되는 기업 내용과 동일
- 한국산업표준산업분류 중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 제외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오락업 및 문화업, 공공·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 지원 내용

#### ① 융복합기술과제(신규과제 74개)

- 기술수요조사, 연구용역, 융·복합지원센터 등에서 발굴·기획된 중소기업형 미래유망 첨단융합기술 분야의 과제
-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산-연) 공동기술개발 형태의 첨단 융합기술과제

#### ② 이전기술과제(신규과제 40개)

- 공공연구기관의 상용화되지 않은 특허기술 등 보유기술 이전과제



-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산-연) 공동기술개발 형태의 융합이전기술과제
- ③ 센터연계형과제(신규과제 34개, 기획지원 180개)
  - ‘중소기업 기술융복합지원센터’를 통해 평가 후 추천된 첨단 융합기술 분야의 우수 기획과제
  - 중소기업기술융·복합지원센터에서 발굴·기획된 과제 중에서 추천된 우수 과제

**과제 지원조건**

구분	개발기간 및 정부출연금	총사업비		신청방식
		정부 출연금	총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융복합기술력과제	최대 2년, 6억원	60%이내	60%이내	지정공모
이전기술과제	최대 2년, 6억원	60%이내	60%이내	자유응모
센터연계형과제	최대 2년, 6억원	60%이내	60%이내	자유응모

**신청·접수**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를 접수

**제출서류** 현장확인시 다음 서류 제출

- 주관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해당기업)
- 벤처기업 등 우대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해당기업)
- 주관기관의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추정 재무제표 가능)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50, 4452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488-0223, 0224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tech.go.kr(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다)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의 중소기업 공동활용을 지원하여 국가 연구장비 활용도를 높이고 중소기업의 장비부족 애로를 해소하여 기술경쟁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 1,600개사(전체예산 165억원)

#### 지원 대상

- 주관기관 :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도입금액 1천만원 이상)를 10대 이상 보유한 대학 및 연구기관, 비영리기관
-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기업의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및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등

#### 지원 내용

-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이 R&D 목적으로 공동 활용시 장비이용료에 대해 연간 5천만원 한도 내 최대 70%까지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지원

구분	대상	지원한도
창업기업	업력 7년 이하 기업	70% 범위 내 1년간 최대 3천만원
일반기업	업력 7년 초과 기업	60% 범위 내 1년간 최대 3천만원

**신청·접수** 주관기관 신청(참여기업은 자금소진 전까지 연중 상시 접수)

#### 제출서류

- 참여기업 :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장비활용 계획서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정혁신과 : 042-481-4460, 4443
- (사)한국산화연합회 : 042-720-3300, 3350, 3358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 비즈인포(www.bizinfo.go.kr)

#### 라) 뿌리산업 기술협력 강화사업

중기청과 대기업 및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뿌리산업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향상하고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 600개사(전체예산 20억원)

#### 지원 대상

- 뿌리산업인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뿌리기술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지원 내용

- 영세한 뿌리산업에 현장 애로 기술지도,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무향상 아카데미 및 현장 방문 교육,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운영

● 세부사업 내역

구분	내용	지원 한도
품질혁신지도 (전문가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량요인 해소를 통한 품질향상 지도</li> <li>• 작업표준화 및 작업환경개선 지도</li> <li>• 싱글PPM, KS, ISO9001, 대기업 품질인증 획득 지도 등</li> <li>• 지도위원 수당 및 비용(총 40만원/1일 기준) 부담은 정부 50%, 기업 45%임 - 시외 출장비 등은 기업부담</li> </ul>	업체당 20일 이내
품질혁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혁신 마인드 함양 및 품질개선을 위한 전문교육</li> <li>• 대기업과 공동으로 협력 중소기업 및 뿌리산업 업종별 특성에 맞는 품질혁신 교육 등</li> </ul>	전액 정부지원
싱글PPM 품질인증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싱글PPM 품질인증획득 신청기업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 등</li> </ul>	인증비용 (전액 기업부담)

**신청·접수** 신청서 작성 후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제출서류**

- 품질혁신지도·교육 : 신청서,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 싱글PPM 품질인증 : 신청서(불량률 현황 자료 포함), 추천서(모기업이 있을 경우),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 \* 신청양식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품질혁신팀(싱글PPM품질혁신추진본부)의 홈페이지 (<http://sppm.korcham.net>)에서 관련 서식 다운로드 사용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정혁신과 : 042-481-4582,3996
- 대한 상공회의소 중소기업 품질혁신팀(싱글PPM품질혁신추진본부)  
02-6050-3851~6

## 다. 판로확대 및 수출 지원

### 1) 중소기업에 유리한 공공기관 납품제도

#### 가) 직접생산 확인제도

중소기업이 직접생산 확인을 받으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및 1,000만원 이상의 소액 수의계약 등에 있어서 납품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 지원 규모

- ('11)13,468건, ('12)25,451건, ('13) 16,555건

#### 지원 활용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품목에 한하여 직접생산확인후 증명서 발급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품목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품목과 동일

#### 신청·접수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처리기간 : 14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3개월 이내 발급분)
- 생산인력 증빙서류 : 4대 보험 중 택일하여 사업장 가입증명(가입자명 명기)
- 생산설비 증빙서류 : 필수장비의 경우 구입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 전기 사용실적 증빙서류 : 전기료 납부 영수증
- 생산공장 관련서류 : 공장등록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임대차 계약서 등(임차시)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제도과 : 042-481-8918

- 
-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지원팀 : 02-2124-3151~7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pp.go.kr](http://www.smpp.go.kr)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나) 성능인증제도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인증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지원 규모

- 성능인증 발급 누적건수 : ('11)972건, ('12)1,005건, ('13.11)1,108건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 내용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지원내용과 동일

### 인증대상품목

- 신기술인증제품, 특허제품, 기술혁신개발제품, 벤처기업·기술혁신형기업 제품 등 17종
- 대상품목 상세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참조([www.smba.go.kr](http://www.smba.go.kr) → 정보마당 → 법률정보 → 현행고시에서 검색)
-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 신청·접수 연중 수시 접수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http://www.smpp.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제출서류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직접 작성

- 성능인증신청서, 규격설명서
- 안전·품질·환경·보건 분야 자격 증빙서류, 기술도면 등(필요시)

### 문의처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pp.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코너 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기업마당(www.bizinfo.go.kr)

## 2) 마케팅, 홍보 지원

### 가)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을 발굴하여 방송, 신문 및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하여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해 주는 사업이다. 이를 기반으로 제품 인지도 강화와 판로확대 자발적 마케팅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지원 규모** 2,600여개 제품 홍보

\* '13년 지원현황 : 언론매체 578건, 소셜커머스 1,000여건, TV 홈쇼핑 70여건

### 지원 대상

- 국내 중소기업 제조제품(소비재 완제품). IT기업은 서비스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제품 가능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국민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주류, 건강보조/기능식품, 의약품
- 산업재, 중간재, 원부자재, 환경재 등

---

### 지원 내용

- 방송, 신문, 잡지, 온라인(소셜커머스)을 활용하여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인지도 확대를 지원하고 마케팅 교육을 통해 자발적 마케팅 역량 확보를 지원
- 공동 상표홍보 : 예산과 지원수요를 감안하여 TV, 신문 등 광고매체를 정하고 소요비용의 70%까지 지원

**신청·접수** 연중 수시 온라인([www.bizfinder.go.kr](http://www.bizfinder.go.kr))을 통한 신청

### 신청서류

홍보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특허 및 인증서 사본, 제품소개서(사진 2매 포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판로정책과 : 042-481- 4398
- 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지원팀 : 02-6678-9346,9347,9349
- 마케팅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www.smmarketing.go.kr](http://www.smmarketing.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나) 중소기업 구매상담회 지원

중소기업 제품들의 국내 판로개척을 할 수 있도록 구매상담회 개최(단체) 지원 및 중소기업과 전문 바이어와의 구매상담회를 지원한다. 구매상담회 개최지원(단체), 상담회 참가지원(업체), 대형유통점 판매전 참가지원 등 다양한 판로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책임진다.

### 지원 대상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써 직전년도 직수출 실적이 100만불 이하인 기업



소속	내용
구매상담회 개최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앙회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관련 비영리 업종단체(협회) 및 기타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단체
대형유통업체 구매상담회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제조업체
우수제품 특별 판매전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제조업체(백화점 등에 판매 가능한 공산품)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타 정부기관에서 중복으로 구매상담회 비용을 지원받는 주관단체

### 지원 내용

- 구매상담회 개최지원 :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개최하는 구매상담회 지원(10회 내외)  
\* 임차료, 설치비, 홍보비 등 행사 예산의 70% 이내 지원(30,000천원 이내)
- 구매상담회 지원 : 대형유통업체와 중소기업간의 상담회(2회) 개최
- 특별판매전 지원 : 백화점, 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를 활용한 판매행사(70회) 진행
- 대형유통망 진출 및 입점전략 세미나(4회)

**신청·접수** 온라인(www.bizfinder.go.kr)을 통한 신청

### 신청서류

- 구매상담회 개최지원 : 지원신청서, 개최계획서, 보조금사용 계획서, 서약서
- 대형유통업체 구매상담회 : 지원신청서, 제품소개서, 사업자등록증
- 우수제품 특별 판매전 : 지원신청서, 제품소개서, 판매계약서, 협약서, 사업자등록증

---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판로정책과 : 042-481-8950
- 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지원팀 : 02-6678-9313, 9321
- 전용정보사이트 : [www.bizfinder.go.kr](http://www.bizfinder.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http://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코너 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다) 중소기업 공동 A/S센터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자금, 인력 등이 부족해 자체적으로 A/S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공동 콜센터와 전국적 A/S시스템을 구축하여 제품의 A/S를 지원하여 제품의 시장 경쟁력과 소비자 신뢰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 1,000여 개 중소제조업체 A/S제공

### 지원 대상

- 국내 공장에서 일반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자체 A/S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업
- 가정용 전기·전자제품을 중심으로 A/S 지원이 필요한 13개 제품군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건설자재, 부품 등 중간재 및 의류, 일회성·소모품 생활 소비재 등
- A/S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A/S 수요가 적은 제품, 외국 생산 제품 등

### 지원 내용

- 통합 콜센터와 전문 상담요원을 운영하여 제품 사용안내, 구매문의, 불만처리
-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A/S시스템 구축을 위해 콜센터 장비 및 시스템 무료 이용
- A/S대행사를 통한 제품 수리·교환·반품요구에 대한 A/S 실시

- 참여업체가 제품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 A/S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상담 자료를 DB화하여 제조업체에 제공
- A/S에 관련한 각종 서비스 교육 및 기술 교육을 지원하여 실무능력 배양
- A/S 비용 및 통신료 등은 업체 부담

**신청·접수** 연중 수시 온라인(www.askorea.or.kr, www.bizfinder.go.kr)을 통한 신청

**신청서류** 중소기업공동A/S센터 신청서, 기업현황, A/S희망제품 설명서 등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판로정책과 : 042-481-4376
- 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지원팀 : 02-6678-9312
- 전용정보사이트 : www.bizfinder.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코너 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 라)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

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마케팅을 위하여 공동상표 개발을 추진할 경우 상표개발비를 지원하고, 공동상표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언론매체 홍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 18개 상표(지자체상표 5개, OEM 상표 5개, 공동상표 8개)

### 지원 대상

- (지자체브랜드 지원) 동일지역 내 특화산업 관련 기업 5개 이상 중소기업자의 상표 대표자(지자체 예산 연계지원 가능 기업)
- (OEM 기업 자체브랜드 지원) 등록된 자체브랜드가 없고, OEM 방식으로 국내에서 직접 제조하는 중소기업(1개 기업 또는 복수기업 공동신청 가능)

- 
- (공동상표 개발 및 홍보지원) 공동상표를 도입·이용하고자 하는 5개 이상 중소기업자의 상표 대표자(조합, 협회, 개별 중소기업 등)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무도장, 골프장, 스키장, 도박장, 주점 또는 목욕탕을 운영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기업

### 지원 내용

- (지자체브랜드 지원) 상표네이밍 및 디자인 개발, 상표개발후 홍보(언론, 방송, 카다로그 제작 등) 지원
  - \* 중기청 70%, 지자체 30% 매칭지원(상표당 최대 50백만원 이내)
- (OEM 기업 자체브랜드 지원) 상표네이밍 및 디자인 개발, 상표개발 후 홍보(언론, 방송, 카다로그 제작 등) 지원
  - \* 중기청 70%, 지원기업 30% 매칭지원(상표당 최대 50백만원 이내)
- (공동상표 개발 및 홍보지원) 공동상표 개발(네이밍, 디자인) 또는 공동상표홍보(언론, 방송, 카다로그 제작 등) 지원
  - \* 중기청 70%, 지원기업 30% 매칭지원(상표당 최대 50백만원 이내)

### 신청·접수

연간 수시접수

- 마케팅지원통합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smmarketing.go.kr)

### 신청서류

- 공동상표 개발 지원신청서, 공동상표사업추진계획서, 공동상표규약서, 참여업체 재무제표, 공동상표부착대상품목, 특허청상표등록서, 품질통제기준 및 시스템

### 문의처

중소기업청 판로정책과 : 042-481-4398

- 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지원팀 : 02-6678-9345
- 마케팅정보시스템 : [www.smmarketing.go.kr](http://www.smmarketing.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http://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코너 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마) 중소기업 마케팅 기반 조성

마케팅실행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코칭(컨설팅), 포장·브로셔·브랜드 디자인 개선, 마케팅 교육 등 종합적 마케팅지원

**지원 규모** 1,000개사 내외

#### 지원 대상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 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화의 법정관리 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실질적 기업주 포함)

#### 지원 내용

- 마케팅 코칭 : 대형유통사 MD 등 ‘마케팅코칭 전문가’를 통한 상품기획·마케팅전략 수립 코칭 (정부지원금 80%, 업체부담금 20%)
  - B2C(소비재), B2B(생산재) 코칭(컨설팅)
- 제품 상품성 향상 지원 (정부지원금 80%, 업체부담금 20%)
  - 상품·패키지(포장,브로셔 등) 및 브랜드 디자인 개선
- 마케팅실무 중심의 온·오프라인 교육
  - 유통·마케팅 전문가 오프라인 특별강의 및 온라인 마케팅 강좌 제공

● 세부사업 내역

분야	내용	지원한도
코칭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목별 코칭프로그램</li> <li>① (소비재)(1)기초단계→(2)상품성향상코칭(Ⅰ,Ⅱ)→(3)연계지원</li> <li>② (생산재)(1)기초진단→(2)전략코칭→(3)연계지원</li> <li>• 수행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li> <li>• 코칭기간 : 4주</li> <li>• 코칭비용 : 120만원(30만원/1회)</li> </ul>	코칭비용의 80%
교육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러닝 교육)마케팅, 영업, 무역, 물류 등 129개 과정</li> <li>- 수강과목 : 2개 과정, 수강기간 : 30일/1개 과정</li> <li>- 교육기관 : 중소기업연수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능률협회, 무역협회</li> <li>- 교육비 : 10만원 내외 *단, 미수료시 자부담</li> <li>• (오프라인)마케팅 분야 전문강사 초청 강연(지역순회)</li> <li>- 개최시기 : 연중 수시, 교육비 무료</li> </ul>	교육비용의 100%

신청 · 접수

- 마케팅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bizfinder.go.kr) 통한 온라인 신청
- 연간 수시접수('14.2~모집시 까지) 및 현장평가를 통한 참여 업체 선정

**제출서류** 온라인신청 (사업자등록증, 신용조회동의서, 제품소개서 첨부요망)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마케팅처 : 02-769-6949
- 사업 홈페이지 : www.smmarketing.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3) 수출 지원

#### 가)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

중소기업의 수출규모와 역량에 따라 수출초보기업, 수출유망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수출역량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

**지원 규모** 1,300개사(전체 예산 380억원)

- 수출초보기업 : 500개, 100억원
- 수출유망기업 : 600개, 180억원
- 글로벌 강소기업 : 200개, 100억원
  - \* 글로벌 강소기업은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한해 지원
  - \* 지원기업 수는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 '13년 지원현황 : 1,778개 기업(예비 728개, 유망 878개, 강소172개)

#### 지원 대상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 수출초보기업은 직전년도 직수출 실적이 100만불 이하인 기업
- 수출유망기업은 직전년도 직수출 실적이 100만불 초과~500만불 이하인 기업
- 글로벌 강소기업은 직수출실적이 500만불 초과 ~ 5,000만불 이하인 중소기업  
(단,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기업은 100만불로 예외요건 적용)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단계에 3회 참여한 기업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 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지원 내용

- 수출교육, 디자인개발,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마케팅 지원 등 4개 분야 20여개 세부사업 중 기업선택에 따라 참여, 소요비용의 90%~50%(2,000만원~5,000만원) 까지 차등지원
- 세부사업 내역

구분	항목	내용	정부지원 한도
초보 (90%)	수출교육	무역실무 과정, 온라인 무역실무 기초과정, 전략시장 진출과정, 환리스크 관리과정	2,000만원
	홍보용 디자인 개발	외국어 전자·종이 카탈로그, 외국어 포장디자인, 제품 디자인, 외국어 동영상 등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홍보지원	해외시장조사, 온라인 수출지원, 해외신용조사, 국내외 홍보전문지 활용 상품홍보	
	해외시장 개척활동지원	국내 전시회 참가, 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 전시회 마케팅 대행, 온라인 쇼핑몰(B2C) 판매대행	
유망 (70%)	수출교육	국제무역 전문가 과정, 전략시장 진출과정, 환리스크 과정 등	3,000만원
	제품 및 홍보용 디자인 개발	외국어 전자·종이 카탈로그, 외국어 포장디자인, 제품디자인, 외국어 동영상 및 제품디자인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홍보지원	해외심층조사, 온라인 수출지원, 전자무역서비스 제공, 해외신용조사, 국내외 홍보전문지 활용 상품홍보, 공중파 해외광고(arirang TV), 중소기업 플러스 보험, 환변동 보험	
	해외시장 개척활동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검색엔진등록지원, 글로벌 브랜드 개발, 온라인쇼핑몰(B2C)	
글로벌 강소 (50%)	제품 및 홍보용 디자인 개발	외국어 포장디자인 및 제품디자인	5,000만원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홍보지원	해외진출 전략컨설팅, 글로벌 경영컨설팅, 자유투자 마케팅 프로그램 등	
	해외시장 개척활동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글로벌 브랜드 개발, 홈쇼핑 동영상 제작	



**신청·접수** '14. 1. 4 ~ 1. 15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통한 온라인 신청
  - 현장진단 평가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심사평가내용
- (수출초보기업) 제품의 수출경쟁력, 서비스 역량, 경영능력 및 수출의지, (수출유망기업) 수출 신장성, 수출활동 수행능력, 기술성, 재무건전성 등
- \* 글로벌 강소기업은 별도 선정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 \* 신청양식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 게재된 사업 운영 지침에 첨부

**문의처**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4355
- 각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2년 지원시책」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수출 500만불 이상 기업 중 수출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글로벌 역량진단부터 R&D, 해외마케팅, 수출금융을 지원하여 수출 5천만불 이상의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지원사업이다.

**지원 규모** 연간 100개사

- \* 현재 총 285개사(11~13년 선정) 지원 중, 100여개 추가선정 예정(1~2월 중)

---

##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최근 3년 내 수출실적이 500만불 이상 경험이 있는 기업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휴 · 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 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시 정하는 업종별 부채비율을 초과한 경우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중소기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업체 등

## 지원 내용

글로벌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맞춤형 직접 및 연계 지원

- 글로벌 강소기업 전용 프로그램
  - (글로벌 역량진단) 마케팅 · 품목별 민간 전문가와 기업담당자로 공동으로, 재무 현황 및 마케팅 준비도, 제품 경쟁력 평가 등을 통해 해외진출 로드맵 및 연계사업 참여 계획 수립
  - (전용 해외마케팅)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사업'을 활용, 연간 5천 만원 한도, 3년간 총 1억원 규모의 전용 해외마케팅 지원
- 글로벌 강소기업 연계지원 프로그램
  - ① 수출 R&D 연계지원(중기청 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 \* 사업공고 : '14년 2~4월경 (기간, 지원조건 등은 달라질 수 있음)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50%이내에서 최대 2년, 10억원까지 지원
    - 우대내용 : 신청자격 부여, 가점부여, 참여횟수 제한(4회) 예외 인정
    - \* 신청자격 : 중기청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기업 또는 전년도 직접 수출액기준 300만불 이상이고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3%이상인 기업

- ② 중소기업청 해외마케팅 연계지원(총 1억원 규모 전용바우처 제공)
  - \* 3년간 지원횟수 제한없이 정부지원금 기준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자율 선택
  - \* 단, 개별사업별 지원한도 및 비율 등은 사업별 2014년 운영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 ③ 정책금융 및 민간금융 우대 지원
  -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금융' 대출한도 확대 : 10억원 → 30억원
  - 기업은행, 우리은행 대출한도 확대 및 금리 우대
  - 향후 타 금융권 등과 협약을 거쳐 추가 우대 상품 제공 추진

### 신청·접수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4473
- 각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2년 지원시책」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 ☎1357

### 다)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지원사업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여 자금 및 보증,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출실적이 500만불 이하인 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중기청, KOTRA, 무역보험공사 등 22개 수출지원유관기관을 통해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지원 규모 2,000개사 내외(상·하반기 2회 선정)

\* '13년 선정현황 : (상반기) 신청기업 990개사 중 642개사 선정, (하반기) 630개사

---

## 신청 평가중

### 지원 대상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전년도 또는 신청년도 수출실적이 500만불 미만인 기업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순수내수기업(전년도 및 신청년도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또는 대표자
  -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휴·폐업중인 업체
- 대외무역법 제5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
- 그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또는 대표자
- 기타 사업공고 시 신청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 내용

- 해외마케팅 지원 참여우대 : 수출역량강화사업 우대, 해외전시회·박람회 참가 시 우대지원, 수출인큐베이터사업 참여 시 우대, 바이어 발굴, 상담대행 등
- 금융 및 보증지원 : 무역금융지원, 신용·기술보증(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수출신용보증 등
- 서비스업 지원 : 문화산업완성보증 비율우대, 지식문화동반성장프로그램 보증료 감면, 서비스종합보험(일시결제방식) 보험료할인 등
- 기타 :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우대, 국방 절충교역 대상품목으로 추천, 국가기술은행(NTB) 정보서비스 무료이용 등

### 신청·접수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로그인 → 수출지원사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사업신청 → 지정신청서 및 이행 계획서 입력

### 신청서류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인터넷 접수)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인터넷 접수)
- 전년도 및 신청년도의 수출실적증명원(현장확인)
- 전년도 재무제표(현장확인)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8935
- 각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4년 지원시책」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라) 무역촉진단 파견 지원사업

해외 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및 수출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수출 기회를 제공하는 지원사업이다. 사전시장조사, 바이어발굴 비용, 전시부스 임차료부터 장치비, 운송료, 통역비, 간담회비, 홍보비, 바이어 초청비용 등 관련 비용 지원

#### 1.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규모** 2,400개사, 업체당 1,000만원 이내

#### 지원 대상

무역촉진단 활동을 주관하는 단체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업종별 협회 및 수출유관기관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평가결과가 우수하더라도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타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경우

### 지원 내용

- 업체당 1,000만원 한도내에서 다음 항목 지원

지원항목	지원기준
부스임차료	• 업체당 1부스 이내 임차료의 50%
장치비	• KOTRA 전시회별 산정금약의 50%
운송료	• 1CBM이내 편도운송료의 50%
홍보부스 (공동홍보부스에 한함)	• 임차료 : 1부스 이내 • 장치비 : 199% • 통역지원:5업체당 1인 • 안내요원 지원 : 1인 • 홍보비 : 업체당 30만원 이내 • 회선 임차료 : 인터넷 2, FAX 1
바이어 초청 간담회비	• 업체당 5만원 한도 내 지원
항공료	• 100%
사전간담회 등 운영경비	• 50만원 이내
전시장 내 컨퍼런스 등 부대행사 개최비	• 업체당 50만원 이내

### 신청 · 접수

해외전시 포털(www.sme-expo.go.kr)을 통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중소기업 중앙회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계획안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년도 전시회 파견업체 명단 및 후속 Follow-up 실적
    - 파견 이후 현재까지 파견성과 평가자료(업체별 수출실적 등)
  - 지원신청서 내용에 대한 참고 및 증빙자료
    -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m<sup>2</sup>(전시회 브로셔 등), 부스 임차계약서(사전임차의 경우), 전시물품 운송료 표준단가표 등 예산지원액 결정을 위한 각종 참고자료 첨부
    - 전시참가 희망업체 수요조사 결과
    - 부스임차료 등이 신청시기에 확정되지 않은 해외전시회는 관련 증빙자료를 2012년 기준으로 제출
- \* 참가기업 확정시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록증 사본 제출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3980
-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 : 02-2124-3185
-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www.sme-expo.go.kr) 초기화면 상단(전시회 정보)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2. 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규모** 400개사, 기업당 1,000만원 이내

\* '12년 지원현황 : 515개사, 업체당 평균 137만원

#### 지원 대상

무역촉진단 활동을 주관하는 단체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업종별 협회 및 수출유관기관

#### 지원 내용

- 업체당 1,000만원 한도내에서 다음 항목 지원

- KOTRA의 시장개척단 지역별 기준단가표의 범위 내에서 아래 항목을 지원
  - 상담장, 장치 및 현지 차량임차료
  - 바이어 섭외비 등
  - 현지 N/W구축을 위한 활동비
  - 통역비 및 광고비, 기업 IR비용 등
  - 항공료(주관단체 1인에 한함) : 100%
  - 사전간담회 등 운영경비 50만원 이내
- 세미나, 포럼, 로드쇼 등 바이어 초청 행사 및 선진 수출시스템 벤치마킹 등 : 업체당 50만원 (시개단 당 최대 10백만원) 이내

### 신청 · 접수

해외전시 포털([www.sme-expo.go.kr](http://www.sme-expo.go.kr))을 통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중소기업중앙회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계획안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원신청서 내용에 대한 참고 및 증빙자료
  - 상담장 및 현지 차량 임차료계약서(사전 임차의 경우), 바이어 섭외비, 통역비 및 광고비 등 예산지원액 결정을 위한 각종 참고자료 첨부
  - 시개단 참가 희망업체 수요조사 결과
  - 상담장 임차료 등이 신청시기에 확정되지 않은 시장개척단은 관련 증빙자료를 2012년 기준으로 제출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3980
-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 : 02-2124-3185/6
-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털([www.sme-expo.go.kr](http://www.sme-expo.go.kr)) 초기화면 상단(전시회 정보)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3. 수출컨소시엄

**지원 규모** 25개 컨소시엄(400개사), 컨소시엄당 2억원 이내

#### 지원 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 업종별 협회 및 수출유관기관 등

#### 신청·접수

해외전시 포털(www.sme-expo.go.kr)을 통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중소기업중앙회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계획안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원신청서 내용에 대한 참고 및 증빙자료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3980
-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 : 02-2124-3185/6
-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털(www.sme-expo.go.kr) 초기화면 상단(전시회 정보)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마)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설치된 수출인큐베이터에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마련하여 현지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조기정착 및 수출경쟁력 배양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 규모** 251개 기업 입주실(11개국 17개 지역)

\* 미국(뉴욕, 시카고, 워싱턴, LA), 브라질(상파울루), 독일(프랑크푸르트), 일본(도

---

교), 중국(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두), 베트남(호치민), 싱가포르, 러시아(모스크바), UAE(두바이), 인도(뉴델리), 멕시코(멕시코시티)

\* 2014년 중국(서안), 베트남(하노이) 등 3~4개소 신규설치 예정

### 지원 대상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치하려는 중소기업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 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화의 법정관리 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실질적 기업주 포함)
  -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가능

### 지원 내용

- 임차료의 80%(2차년도는 50%) 지원
- 사무공간(12~20㎡) 및 공동회의실, 사무집기 및 전화·인터넷전용선 제공
- 마케팅전문가, 법률·회계컨설턴트의 자문 및 컨설팅
- 현지 시장 정보제공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지원
- 현지 파견 직원의 현지 조기 정착을 위한 서비스·행정지원
- 수출사랑방을 통한 중소기업의 단기 출장 지원

### 신청·접수

- 수출인큐베이터 홈페이지([www.sbc-kbdc.com](http://www.sbc-kbdc.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증빙자료는 온라인 신청 후 우편 제출

### 신청서류

- 수출인큐베이터 입주신청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파견자이력서 및 입주활동계획서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 \* 수출실적증명원,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증빙서류, 제품카탈로그, 회사소개자료, 국제규격자료등은 해당기업에 한함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 : 02-769-6729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 본·지부
- 수출인큐베이터 홈페이지(www.sbc-kbdc.com)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라. 창업 지원

### 1) 창업맞춤형사업

대학, 벤처캐피탈 등 창업지원기관의“창업인프라(인력·공간·장비 등) 및 창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창업자의 원활한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원 규모** 1,000과제 내외(전체 예산 499억원)

\* 13년 지원현황 : 신청 4,265개사 중 948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지원금액 4천만원

### 지원 대상

협약종료일 기준 3개월 이전까지 창업을 완료할 수 있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 (1년 미만), 재기 중소기업

---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등
- '09~'13년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선정자 등
  - \* 당해년에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창업지원사업을 수행자는 제한적 지원(추후안내)

### 지원 내용

- 대학 등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지원
-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 조건부로 지원

### 지원 절차

- 지식서비스분야(연6회)  
신청접수 → 1차평가 → 멘토링 및 2차평가 → 자금지원
- 제조분야(연1회)  
신청접수 → 1차평가 → 2차평가 → 주관기관 선택 및 매칭 → 자금 지원

### 신청·접수

창업지원 온라인 관리시스템(startbiz.changupnet.go.kr)을 통한 접수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 문의처

- 사업관련 문의
  - (주관기관) 추후 공고
  - (창업진흥원) 창업사업화팀, (042)480-4341~8

- 창업지원 온라인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창업진흥원) 정보전략팀, (042)480-4373
- 창업넷 홈페이지 (www.changupnet.go.kr)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비즈인포(www.bizinfo.go.kr)

## 2) 선도벤처연계 창업 지원

성공한 선도벤처기업의 성공 노하우 전수 및 예비창업자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한 성공창업 유도 및 미래 스타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지원 프로그램

**지원 규모** 총 75억원, 70개 창업팀 내외 지원

\* 13년 지원현황 : 신규 74개, 계속 10개 과제, 과제당 최대 9,00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우수아이템의 개발을 통하여 선도벤처기업과 협업 등 전략적 제휴관계를 희망하는 기술창업희망자(팀)

\* 사업공고일을 기준으로 창업한지 1년 이내인 자 또는 협약종료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까지 창업을 완료할 수 있는 예비창업자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정부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중인 자 등

### 지원 내용

- 선도벤처기업이 육성하고 싶은 예비창업팀을 직접 선발하고 창업 준비공간, 전담 멘토링, 사업기획, 기술보완, 국내외 마케팅(판로개척) 등 지원
- 창업팀의 창업 준비활동 및 시제품 개발 자금을 창업 조건부로 지원

---

## 지원 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선도벤처기업 지정 → (예비)창업팀 선정 → 창업지원  
→ 최종선정 → 협약체결 → 선도벤처기업과 매칭

## 신청·접수

창업지원 온라인 관리시스템(startbiz.changupnet.go.kr)을 통한 접수

\* 단, 선도벤처수행기업의 경우 주관기관(벤처기업협회)에 직접신청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문의처

-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 042-481-8920
- 창업진흥원 창업사업화팀 : 042-480-4341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지원정책/창업·벤처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3) 실전창업리그「슈퍼스타 V」

성공 창업을 꿈꾸는 미래의 유망 CEO 발굴을 위해서 참가자들의 치열한 경쟁과정을 거친 수상자들에게 포상금과 투자유치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창업을 유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창업경진대회

**지원 규모** 30개팀 내외 (전체예산 17억원)

\* '13년 지원현황 : 총 1,096팀 참가 신청, 전국결선 30팀 수상(총 상금 3억 3천만원)전국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 2013 슈퍼스타 V 최종 3팀 수상(총 상금 1억원)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 지원 내용

- 사업화 지원 : 시제품제작, 특허출원, 투자유치 등
- 창업멘토링 지원 : 일부 참가자를 대상으로 창업멘토링 지원

### 신청·접수 3~5월 중

창업지원 온라인 관리시스템(startbiz.changupnet.go.kr)을 통한 접수

### 신청서류 사업계획서

### 문의처

- 창업진흥원 : 042-480-4336
- 창업넷 홈페이지(www.changupnet.go.kr)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4) 창업아카데미 지원

대학생들에게는 학점이 인정되는 창업강좌를 제공하고 창업동아리의 초기 사업화 지원을 제공하여 창업에 한발자국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예비창업 자에게는 실전창업교육, 성공CEO와의 멘토링·네트워킹을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창업 기업이 탄탄한 기초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지원 규모

- \* '14년 지원예산 : 100억원, 대학생 창업동아리 및 창업강좌 지원, 예비창업자 1,000여명 창업교육
- \* '13년 지원현황 : 창업강좌 200여개, 창업동아리 350개 지원, 예비창업자 1,000여명 교육

---

### 지원 대상

대학생(창업동아리 등), 예비창업자 및 창업 1년 미만의 창업자

### 신청·접수

2014년 2월 중 창업교육 운영기관 선정([www.changupnet.go.kr](http://www.changupnet.go.kr) 접수) 후 교육생 별도 모집

### 신청서류

사업계획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 문의처

- 창업진흥원 창업교육팀 : 042-480-4464
- 창업넷([www.changupnet.go.kr](http://www.changupnet.go.kr)) - 창업교육 - 창업아카데미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5) 창업기업 자금 지원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초기기업의 생산설비, 사업장 건축·매입자금 및 기업활동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 1조 2,500억원

\* '12년 지원현황 : 신청기업 6,628개사 중 4,365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3.1억원

### 지원 대상

창업기업지원자금, 재창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 창업자금 :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또는 창업을 준지 중인 자(최종 용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재창업자금 :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①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용자제외 대상 업종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기 재창업자는 영업실적 요건 예외)
- ②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 할 것
- ③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 ④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 일 것

- 청년전용창업자금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용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및 공정설치 등 소요자금
  - 안정성평가 및 유통·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단, 기업 당 1회에 한정
  - 부지매입비,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운전자금 : 창업소요비용,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과의 납품계약(계약서 등)에 근거한 제품 생산비용 등 소요자금

---

## 용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 차감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7%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 운전 구분 없이 3년 이내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협동화 승인기업 : 추진주체 50억원(운전 5억원), 참가기업 45억원(운전 5억원)
  - 협업사업 승인기업 : 추진주체 45억원(운전 5억원), 참가기업 40억원(운전 5억원)
  -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회전한도내에서 계약금액의 90% 이내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기업당 1억원

## 용자방식

- 창업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 또는 금융회사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재창업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 및 도덕성평가를 실시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 청년전용창업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또는 취급은행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대출

##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 2. 여성가족부 지원사업



### 가. 일하는 여성 지원

#### 1)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 기업수요에 맞고 다양한 대상(고학력여성, 결혼이민여성, 장애여성 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직업훈련을 위한 기자재 \* 지원 및 현장훈련 프로그램(인턴 기회제공 및 정규직 취업 지원 등) 제공
  - \* 컴퓨터, 아이패드 등
- 차상위계층 워킹맘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개인

- 경력단절여성의 꿈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 재능기부
  - 취업유망과정 : 역사문화체험학습강사, 독서미술지도사, 무역실무전문가, 의료관 광코디네이터, 발효식품제조사, 방과후독서논술지도사 등
  - \* 심화과정 : 태양광산업 QC전문인력 양성과정, 제약·화장품 QC과정 등
  - \* 창업과정 : 수공예공방 창업과정, 떡카페 창업과정, 소규모 의류수선전문가 등
  - \* 결혼이민 : 통번역지원사, 다문화방과후영어지도사, 뷰티아티스트 양성 과정 등
  - \* 중고령 : 실버라이프코치 양성, 실내환경토탈매니저, 힐링푸드매니저, 전통예 절지도사 등
  - \* 장애 : 행정사무원 양성, 장애여성전문바리스타 등
  - \* 북한이탈 : 바리스타 양성과정 등
  - \* 고학력 : 국제무역실무자, 영어연극&뮤지컬공연기획자 과정, 광고실무 전문가 양성과정, 영어스토리텔링, 글로벌셀러전문가 육성과정 등
  - \* 전문기술 : 2D애니메이션디지털제작전문가, 금형디자이너, 영화CG제 작전문가,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CNC선반전문가, 여성조선선박전기결선원 양성과정 등

● 전국 광역새일지원본부 연락처

구분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서울 새일지원본부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02-460-2381	
부산 새일지원본부	사상구 학감대로 95	051-320-8342	wcc.busan.go.kr
대전 새일지원본부	서구 배재로 155-40	070-4362-6404	
경기 새일지원본부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8	031-8008-8026	www.womanpia.or.kr
경기북부 새일지원본부	의정부시 범골로 137	031-8008-8075	www.womanpia.or.kr
충북 새일지원본부	청원군 오창읍 각리1길 7	043-215-9195	www.cbwoman.or.kr
전북 새일지원본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들사 평로 38	063-254-3814	www.jbwc.re.kr
전남 새일지원본부	무안군 상항면 남악리 어진 누리길 30	061-260-7335	
경북 새일지원본부	경산시 삼풍로 27	053-811-1982	
경남 새일지원본부	창원시 북 15로 214번지	055-286-1677	www.gnwomenwork.or.kr

### 기업협력

-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새일센터에 IT 기자재 지원  
현장훈련 프로그램, 인턴십 제공  
기타 기업차원의 기부, 봉사 등 사회공헌활동
- 연락처 : 여성가족부 미래전략기획팀  
02-2075-4736, 4720 / jhlee82@korea.kr, anmi@korea.kr

### 2) 여성인재 양성

- 경력개발, 리더십, 협상력 강화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워크숍 및 분과별 포럼 등에서 다양한 분야의 사회선배·중간관리자와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 리더십 역량진단 및 평가를 통해 핵심리더 성장에 필요한 수요를 파악, 개인별 맞춤형 컨설팅 및 멘토링 등 지원

## 개인

- 여성인재 양성을 위한 재능기부  
여성인재 양성을 위한 무료강의 지원(관계역량강화, 커뮤니케이션 및 협상력 강화, 일·가정 양립, 여성 리더십 이슈 공유 등)  
여성 역량개발, 진로상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온·오프라인 멘토링
- 연락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사업부 역량강화팀(02-3156-6011)  
사이버멘토링 운영사업 담당기관(02-3156-6174, [www.women.go.kr](http://www.women.go.kr))

## 기업협력

- 여성인재 양성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여성인재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여대생 경력개발을 위한 현장훈련 프로그램, 인턴십 제공  
기타 기업차원의 기부 등 사회공헌활동
- 연락처  
여성가족부 미래전략기획팀(02-2075-4736, 4720 / [jhlee82@korea.kr](mailto:jhlee82@korea.kr), [anmi@korea.kr](mailto:anmi@korea.kr))

### 3) 일·가족 양립문화 확산

- 유연근무제 확산,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등 일·가족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 캠페인 추진  
\* 유연근무제 보급형 매뉴얼 및 성희롱 예방교육 교재 제작 및 배포('13년 5월, 여가부)
- 공동육아나눔터, 방과후 교실, 가족품앗이 등 자발적 돌봄공동체 운영 지원
- 워킹맘에 대한 사회적지지 프로그램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워킹맘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사라져가는 엄마들의 꿈 지원  
다양한 워킹맘 인터뷰, 꿈을 이룬 멘토 강연, 시상식 등

## 개인

- 일·가족 양립문화 확산을 위한 재능기부  
가족친화 직장교육 강의 : 가족친화 경영, 일과 가족의 균형에 관한 교육 등
- 연락처  
가족친화지원센터 친화사업팀(02-3140-2264)

## 기업협력

	직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사보, 사내 방송 및 직원 교육시 홍보</li> <li>• 기업 홈페이지에 캠페인 홍보 팝업창 게시</li> </ul>
국민(고객) 대상	생활매장, 지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장·지점 내 포스터 부착 및 리플렛 배포</li> <li>• 매장·지점 내 고객 홍보용 모니터 및 ATM기 등에 포스터 등 홍보</li> </ul>
	E-MA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객 또는 회원 발송용 청구서, 안내서 및 홍보 DM 등에 캠페인 홍보 문구 및 사이트 URL 표기</li> </ul>

- 일·가족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합동 대국민 캠페인 동참(10~12월)
- 자발적 돌봄공동체 운영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및 교구, 고재비 지원 등
- 연락처  
여성가족부 미래전략기획팀(02-2075-4736, 4720 / jhlee82@korea.kr, anmi@korea.kr)

## 나. 특수환경 여성 지원

### 1) 소외계층 여성 지원

- 북한이탈여성의 안정적 정착 지원  
성공적 정착을 위한 생활설계, 멘토링, 취업 및 자녀 돌봄 지원  
북한이탈여성의 인권 침해에 대한 치유, 상담 프로그램 운영

- 여성장애인 자립 및 사회통합 지원  
주거안정 및 이동권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청각장애인 신청자녀 언어발달, 지적장애인 자녀학습, 지체장애인 자녀 문화체육  
활동 등 양육지원

### 개인

- 북한이탈여성의 희망을 지원하기 위한 재능기부, 자원봉사  
1:1 멘토링, 치유 · 상담활동, 정착도우미 자원봉사, 생활안내 등
- 연락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홍보협력부(02-3215-5736)

### 기업협력

- 북한이탈여성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주택미배정자, 무연고 청소년 등 대상 공공생활시설 건립 · 운영 지원  
개인 맞춤형 취업교육, 현장훈련 프로그램, 인턴십 제공, 채용확대 등  
무료 의료 지원  
기타 기업차원의 기부, 봉사 등 사회공헌활동
- 여성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통합지원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휠체어 리프트 차량 제공 및 편의시설 설치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인턴십 제공  
무료 의료 지원  
자녀 양육 지원(장애 유형별 학습 성장 지원, 문화체육활동 등)  
기타 기업차원의 기부, 봉사 등 사회공헌활동
- 연락처  
여성가족부 미래전략기획팀(02-2075-4736, 4720 / jhlee82@korea.kr,  
anmi@korea.kr)

---

## 다. 영·유아 보육지원

### 1) 아이돌봄지원사업

#### 지원목적

-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부모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 및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사업이다.

#### 지원내용

- 시간제 돌봄서비스  
(서비스 내용)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보육, 놀이, 등·하원(교)등 돌봄 제공  
(지원비용)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에 이용요금 차등지원(이용단가 시간당 5,500원)  
(지원시간)연 480시간 지원(저소득층 및 방과후 초등학생 대상 연 720시간)  
\* 단, 초등학생 중 방과후 보육료,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유사한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는 연 480시간 지원  
\* 지원시간 초과 사용 시 전액 본인부담(시간제 라형)으로 이용 가능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서비스 내용) 생후 3~24개월 영아 대상 이유식, 위생·안전관리 등 종일 돌봄서비스 제공  
(지원비용) 모든 소득계층의 지원대상 가정에 이용비용 차등지원  
(지원시간) 월 200시간 지원  
\* 단, 전국가구 평균소득 70%이하 가구는 월 240시간 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기준

유형	소득기준('13년) (전국가구 평균소득, 4인기준)	시간제 (시간당 5,500원)		영아종일제(월200시간 기준, 110만원)			
				0세(15개월이하)		1세(16~24개월)	
		정부지원	부모부담	정부지원	부모부담	정부지원	부모부담
가형	50%이하(237만원)	4,500원	1,000원	80만원	30만원	70만원	40만원
나형	70%이하(323만원)	2,500원	3,000원	70만원	40만원	60만원	50만원
다형	100%이하(474만원)	1,500원	4,000원	60만원	50만원	50만원	60만원
라형	100%초과	-	5,500원	50만원	60만원	40만원	70만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금액 산정

\*\* 단, 기초생활수급자(보장시설 포함), 저소득한부모가족(조손가족포함),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부과액과 무관하게 “가형”으로 판정

**지원대상**

- 취업 한부모,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 지원대상이고, 아래의 순위에 따라 우선지원
  - ① 취업 한부모가정(모자, 부자, 조손, 미혼모 포함)
  - ② 장애부모 가정(장애로 인하여 자녀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의미)
    -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
    -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애등급 중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티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 ③ 맞벌이 가정
  - ④ 다자녀 가정
    - 만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 중증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비장애아동에게 돌봄 제공)
  - ⑤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입증가능한 장기입원 등에 의한 양육공백

---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취업교육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중인 경우

\* 장애부모, 다자녀가정, 부모 질병의 경우에는 취업증명 불필요

- 정부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 정부지원유형 결정 후 통지 →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 선입금

\*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신청을 하여 전액 본인부담(시간제 라형)으로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대표전화 : 1577-2514

- 아이돌봄 홈페이지 : <http://idolbom.mogef.go.kr>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 1 조(목적)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0]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 3 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30]

제 4 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30]

제 5 조(여성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①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 
3.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기업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여성기업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여성기업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전문개정 2009.12.30]

제 6 조(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기본계획 및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12.30]

제 7 조(실태 조사) ①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제13조에 따른 한국 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여성기업 또는 여성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여성기업 또는 여성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30.]

제 8 조(여성의 창업지원 특례)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에 여성의 창업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창업자 및 창업지원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여성창업자 및 여성창업 지원 실적이 우수한 창업지원 관련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여성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30.]

제 9 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 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7.30.]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12.30]

제10조(자금지원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30]

제11조(경영능력 향상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 및 지도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30]

제12조(디자인 개발 지원)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13조(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설립 등) ① 여성경제인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려면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전문개정 2009.12.30]

제14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여성경제인에 대한 연수 및 전문여성경제인의 양성
  2. 여성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3. 여성의 창업에 대한 지원 및 촉진 활동
  4.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 지원
  5. 여성기업의 해외시장개척 및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6. 외국 여성경제인단체와의 협력
  7. 중소기업청장이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 외에 여성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
- [전문개정 2009.12.30]

제15조(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협회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12.30]

제16조(국유·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협회에 대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30]

제17조(세제 지원) 정부는 협회 및 그 주요 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30]

제1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9.12.30]

제19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12.30]

제20조(지도·감독) ① 중소기업청장은 협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회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30]
- 제21조(과태료) ① 제18조를 위반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소기업청장이 부과·징수한다.[전문개정 2009.12.30]

부 칙 <제5818호, 1999.2.5.>

이 법은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산업디자인진흥법) <제6415호, 2001.2.3>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생략
- ②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 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부 칙(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675호, 2002.3.25>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생략
- ②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2”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

부 칙 <제7557호, 2005.5.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8086호, 2006.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中小企業創業支援法 제5조제2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 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361호, 2007.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第10條第1項”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⑩ 내지 ⑰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8362호, 2007.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으로 한다.

⑩ 내지 ⑬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 〈제9684호, 2009.5.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 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 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⑯ 까지 생략

⑰ 법률 9684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으로 한다.

⑱ 부터 ㉿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 〈제9892호, 2009.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1967호, 2013.7.30.〉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 조(목적) 이 영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6.11〉

제 2 조(여성기업의 정의) 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 함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개정 2007.6.11〉

1. 상법상의 회사로서 여성이 당해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이하“회사대표”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이하“공동대표”라 한다)인 경우에는 여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하되,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남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로 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②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 3 조(여성기업활동촉진기본계획의 수립)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2월말까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09.11.19〉

제 4 조(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6.11, 2009.11.19〉

② 위원장은 중소기업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개정 2007.6.11, 2008.2.29, 2009. 11.19, 2009.11.20, 2010.3.15, 2010.7.12〉

- 
1.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및 조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회장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부이사장
  4. 「신용보증기금법」 제14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전무이사
  5.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9조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전무이사
  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전무이사
  7. 그 밖에 경제분야·중소기업 및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

④ 제3항제7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7.6.11.> [제목개정 2009.11.19]

제 5 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5.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 우대에 관한 사항
6. 법 제11조 및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능력향상과 디자인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7.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기업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청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1>

⑥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7.6.11>

제 7 조(여성기업제품의 구매증대) ① 법 제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물품 및 용역의 경우는 각 구매총액의 5퍼센트, 공사의 경우는 공사 구매총액의 3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본문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계획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공공기관이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한 구매계획에 포함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이하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목표비율이 제1항 본문에 따른 구매목표비율보다 낮은 경우
2. 공공기관이 제품구매에서 여성기업에 불리한 방법이나 절차 등을 적용하는 경우  
문개정 2009.11.19

제 8 조(지원절차 등의 고시)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9조 및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제품을 우선구매하거나 여성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구매 또는 지원대상이 되는 여성기업의 범위, 지원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1.19>

[제목개정 2009.11.19]

제 9 조(협회설립의 절차)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성경제인 5인 이상의 발기인이 여성경제인 2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발기인의 대표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기업청장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설립허가 신청서
2. 정관

- 
3. 발기인 및 동의인의 명단
  4.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5. 재산목록 및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 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6. 창립총회 회의록

③ 중소기업청장은 협회의 설립을 허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이를 행한다.

제10조(협회의 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내용
5. 회원의 자격
6. 임원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제11조(사업계획의 제출) 협회는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 및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센터의 설립 및 기능)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여성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
  2. 여성의 창업지원
  3. 여성경제인에 대한 교육, 훈련, 연수
  4. 여성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5. 여성기업 애로상담실의 운영
-

6.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한 연구 및 조사
7.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기타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협회의 회장이 위탁하는 사업

제13조(지원센터의 운영) ① 지원센터의 대표는 지원센터의 이사회가 선임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6.11>

② 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센터의 정관이나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센터에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비용)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7조제2항·법 제14조제7호 및 이 영 제12조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지원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련기관·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협회 또는 당해 기관·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6394호, 1999.6.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 2001.1.29>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내지 제4조 생략

제 5 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24> 생략

<125>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법무부·행정자치부·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행정자치부”로 한다.

<126> 내지 <152> 생략

---

부 칙 (여성부직제) <제17116호, 2001.1.29>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내지 제4조 생략

제 5 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노동부·건설교통부”를 “노동부·여성부·건설교통부”로, “여성특별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⑥ 내지 ⑭ 생략

부 칙 (여성가족부 직제) <제18873호, 2005.6.23>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내지 제4조 생략

제 5 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19> 내지 <35> 생략

부 칙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 2006.6.12>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및 제3조 생략

제 4 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51> 생략

<152>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조달청소속의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을 “조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153〉 내지 〈241〉 생략

부 칙 〈제20087호, 2007.6.11〉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연임규정의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의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 칙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8호, 2008.2.29〉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생략

제 3 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노동부·여성가족부·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노동부·여성부”로 한다.

⑤ 부터 ⑬ 까지 생략

부 칙 〈제21832호, 2009.11.19〉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 법률 제9684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은 2009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 2009.11.20〉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 부터 <64> 까지 생략

제 3 조 생략

부 칙 (여성가족부 직제) <제22076호, 2010.3.15>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생략

제 3 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17> 부터 <26> 까지 생략

부 칙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 2010.7.12>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 2 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7> 까지 생략

<88>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89> 부터 <136> 까지 생략

부 칙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2호, 2013.3.23>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및 제3조 생략

제 4 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⑤ 부터 ⑬ 까지 생략

부 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 2013.6.28)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 2 조 생략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까지 생략

<2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17조 생략



# 여성발전기본법

##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責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본이념) 이 법은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한 남녀평등의 촉진, 모성(母性)의 보호,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 개발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 3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정책”이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2. “여성단체”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여성관련시설”이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 4 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5 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 6 조(적극적 조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 제 2 장 여성정책 기본계획 등

제 7 조(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2. 여성정책의 추진 목표
  - 가. 남녀평등의 촉진
  -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다. 여성의 복지 증진
  - 라. 그 밖에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

3.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제 8 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

제9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1.18.〉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정책의 분석·평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여성의 권익(權益)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개정 2010.1.18〉

③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를 위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분석·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0.1.1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이하 “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 및 자문에 응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이 지정 기준이나 지정 조건을 위반하면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0.1.18〉

④ 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1.18.〉

제11조(여성정책조정회의) ①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

총리 소속으로 여성정책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2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여성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여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조정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조정회의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회의에 여성정책실무회의를 둔다.

④ 조정회의 및 여성정책실무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여성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성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여성 관련 문제의 조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여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4조(여성주간)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여성주간(女性週間)으로 한다.

### 제 3 장 여성정책의 기본시책

제15조(정책결정과정 및 정치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여성정책실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8.1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8.13.〉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13.8.13.〉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8.13.〉

제16조(공직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여성의 공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7조(고용평등(개정 2008.6.13))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6.13〉

② 삭제〈2002.12.11.〉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직장 내의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8.6.13〉

제17조의2(성희롱의 방지 등) ①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公表)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8>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자의 징계 등을 그 관련자가 소속된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1.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한 사실
2. 성희롱에 관한 국가기관등의 고충처리 또는 구제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학습권·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및 제5항에 따라 확인된 사실을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⑦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 및 제5항에 따른 징계 등의 요청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제17조의3(성희롱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성희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제18조(여성 건강 증진 및 모성 보호의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 특성을 고려한 여성건강증진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모성 보호를 위하여 가임기(可妊期) 여성과 임

---

신·출산 및 수유(授乳) 중인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0〉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여성의 임신·출산 및 수유와 관련한 모성보호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과 재정(財政)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늘려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0〉

제19조(가정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에서부터 남녀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학교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에서 남녀평등이념을 고취(鼓吹)하고 여성의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21조(평생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연수기관 및 「평생 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남녀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능력 향상을 통하여 남녀가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의3(여성인재의 관리·육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이하 “여성인재”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에 대한 수집·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집 정보의 범위, 정보수집 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이 소속 기관에서 관리자로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8.13.〉

제21조의4(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① 양성평등교육,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반영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性認知 教育)"이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키기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 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에는 정관(定款)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사업
2.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3. 여성과 남성의 지도력 함양 교육
4.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
5.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양성평등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협력 지원사업
6.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사업
7. 양성평등 교육 관련 자료 출간(出刊)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으로 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여성복지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연령 등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需要)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 모자가족(母子家族), 미혼모(未婚母), 장애인 여성, 가출 여성,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老人) 여성과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의 복지를 증진

---

시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병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並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013.12.30〉

1. 영유아(영유아) 어린이집의 확충
2. 방과후 아동 보육의 활성화
3.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
4. 직장 내 수유시설의 확충

제24조(평등한 가족관계 확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족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책(支援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3.8.13, 2013.12.3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17조의2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8.1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8.13, 2013.12.30〉

제26조(가사노동 가치의 평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법제도나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여성 국제협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국제적 평화 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관련 조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민족(韓民族) 여성 간의 교류와 연대

(연대)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남녀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여성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 4 장 여성발전기금

제29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2.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
3.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收益金)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收入金)

③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리·운영(運用)한다. <개정 2010.1.18>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0.5.17>

제3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지원
4. 여성의 국제협력 사업의 지원
5. 그 밖에 남녀평등 실현, 여성발전 및 가족 지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31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

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9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그 임명된 자가 각각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1.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이사(理事)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는 자  
가. 기금수입담당이사 :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  
나.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 : 기금재무관의 직무
2.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직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는 자  
가. 기금지출직원 : 기금지출관의 직무  
나. 기금출납직원 :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

## 제 5 장 여성사박물관 및 여성단단체의 지원 등<개정 213.12.30>

제32조(여성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단체가 추진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의2(여성사박물관의 설립·운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역사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조명하여 여성들을 위한 교육과 국민들의 양성평등의식 고양을 위한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사박물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사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여성 관련 문화유산의 수집·보존·연구·전시·교육
2. 여성사의 발굴 및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경험·가치에 대한 연구
3. 역사발전·사회변화를 일구어 낸 여성인물과 업적 발굴
4. 여성문화·지역여성·여성운동·여성단체·여성정책의 역사에 대한 자료 발굴·보존·연구·교육
5. 미술·음악·문학 등 여성문화 활동

6. 그 밖에 여성사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성사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여성사박물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중 국립중앙박물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제33조(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여성을 교육하기 위한 여성관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국가는 제1항의 여성관련시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여성관련시설과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하여 각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33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3조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실적 부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지정취소의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3(청문) 시·도지사는 제33조의2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4조 삭제(2002.12.11)

---

## 제6장 보칙

제35조(권한의 위임·위탁)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여성단체 또는 여성정책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1.18〉

제36조(여성정책에 관한 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주요 여성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年次報告書)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5136호, 1995.12.30.〉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9. 여성발전기본법

③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여성정책심의위원회규정에 의한 여성정책심의위원회는 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부칙 (정부조직법) 〈제5529호, 1998.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18항은 1998년 6월 14일부터, 동조 제29항 내지 제31항은 1998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2〉 생략

〈33〉 여성발전기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사무처리기관의 지정) 기본계획의 수립, 기금의 관리·운용 등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사무는 정부조직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특별위원회가 수행한다.

〈34〉 생략



제 6 조 및 제7조 생략

부 칙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5733호, 1999.1.29〉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내지 제4조 생략

제 5 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 여성발전기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35조 중 “개발원 또는 여성단체”를 “여성단체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여성개발원”으로 한다.

⑦ 내지 <21> 생략

제6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 칙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5934호, 1999.2.8〉

①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률의 개정) 여성발전기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정부조직법) 〈제6400호, 2001.1.29〉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 2 조 생략

제 3 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78> 생략

<79> 여성발전기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및 제35조 중 “정부는”을 각각 “여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정부”를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정부가”를 “여성부장관이”로 한다.

---

제3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과 관련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 4 조 생략

부 칙 〈제6770호, 2002.12.11〉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고금관리법) 〈제6836호, 2002.12.30〉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내지 제5조 생략

제 6 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3〉 생략

〈24〉 여성발전기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 한다.

〈25〉 내지 〈31〉 생략

제 7 조 생략

부 칙 (정부조직법) 〈제7413호, 2005.3.24〉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 2 조 생략

제 3 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 여성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29조제4항 및 제31조제2항 전단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29조제3항, 제31조제1항 및 제35조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⑪ 내지 ⑭ 생략

제 4 조 생략

부 칙 <제7786호, 2005.12.29>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재단법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진흥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법인은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권리와 의무는 진흥원이 승계한다. 이 경우 재산·권리와 의무에 대한 등기부 그 밖에 공부상의 법인의 명의로는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③ 진흥원의 설립 당시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제 3 조(여성인력개발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여성인력개발센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당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운영을 위탁한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본다.

제 4 조(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국가채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국가의 채권은 당해 여성인력

---

개발센터가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가 승계한다.  
제 5 조(다른 법률의 개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폐지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모·부자복지법) <제8655호, 2007.10.17>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 2 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 6 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여성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모자가정”을 “모자가족”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편부모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 7 조 생략

부 칙 (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 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 6 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4>까지 생략

<755> 여성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7조의2제1항·제2항, 제29조제3항·제4항, 제31조제1항·제2항 및 제35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756>부터 <760>까지 생략

제 7 조 생략

부 칙 <제9126호, 2008.6.13>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여성인력개발센터로서 시·도지사가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법률 제7786호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운영을 위탁한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본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정부조직법) <제9932호, 2010.1.18>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및 제3조 생략

제 4 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여성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제3항·제4항, 제31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3>부터 <137>까지 생략

제 5 조 생략

부 칙 (은행법) <제10303호, 2010.5.17.>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 9 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여성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4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52〉부터 〈8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 (영유아보육법) 〈제10789호, 2011.6.7〉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 6 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여성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부칙 〈제12080호, 2013.8.13〉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부칙 〈제12142호, 2013.12.30〉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여성사전시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여성사전시관은 이 법 제32조의2에 따라 설립된 여성사박물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표 목 차

표 1-1	각 나라별 여성기업 정의	7
표 1-2	전체 사업체 및 여성 사업체수 추세	8
표 1-3	남녀 사업체의 산업별 분포	9
표 1-4	남녀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10
표 1-5	미국의 여성기업 지원 관련 법률 변화	29
표 1-6	유럽연합(EU) 회원국	35
표 2-1	성장단계별 위치에 대한 인식	48
표 2-2	여성기업의 기업연령(업력)	49
표 2-3	여성기업의 제품/서비스 경쟁력 수준	50
표 2-4	여성기업인의 특성	51
표 2-5	여성기업 및 중소기업 종사자 현황(성별구분)	55
표 2-6	여성기업 규모별 알가정양립 지원 현황	56
표 2-7	2012년도 여성기업 재무현황 및 경영지표 비교	57
표 2-8	2012년도 여성제조기업 및 일반 중소기업 재무현황	59
표 2-9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평가	68
표 2-10	OECD 주요국가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15~64세)	71
표 2-11	OECD 주요국가의 여성고용률 추이(15~64세)	72
표 2-12	성별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72
표 2-13	OECD 회원국 여성고용 관련 지표	74
표 2-14	국가별 여성창업의향을 현황	77
표 2-15	국가별 여성자영업자 현황	78
표 2-16	2008-2012 한국 생계형과 기회추구형 창업활동	83
표 2-17	창업의도 주요 국가 간의 비교	84
표 2-18	여성기업인 학력 주요 국가 간의 비교	91
표 2-19	기업인과의 네트워크에 대한 주요 국가 간의 비교	92
표 2-20	해외 남녀 여성기업 혁신수준	93
표 2-21	한국 결혼이민자 성별 현황	96
표 3-1	연도별 「여성기업활동촉진기본계획」 주요 내용	100
표 3-2	여성창업 촉진 지원정책 흐름	102

---

표 3-3	여성기업 육성 지원정책 흐름 .....	103
표 3-4	지자체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현황 .....	111
표 3-5	주요 여성기업 관련 단체 .....	112
표 3-6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	113
표 3-7	한국여성벤처협회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	114
표 3-8	21세기여성CEO연합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	115
표 3-9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	116
표 3-10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	117
표 3-11	한국여성발명협회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	118
표 3-12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	120
표 3-13	주요 여성기업지원기관 .....	120
표 3-14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	122
표 3-15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	123
표 3-16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	123
표 3-17	한국여성경제진흥원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	125
표 3-18	중앙부처의 여성기업 지원사업 구분 .....	126
표 3-19	지방자치단체별 여성기업 지원사업 구분 .....	128
표 3-20	실전창업스쿨 지원사업 개요 .....	130
표 3-21	실전창업스쿨 지원사업 성과 .....	131
표 3-22	지역별 실전창업스쿨 교육 현황(2013년) .....	131
표 3-23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원사업 개요 .....	132
표 3-24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역별 참가 현황(2013년도) .....	133
표 3-25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원사업 성과 .....	134
표 3-26	차세대 여성CEO 양성교육 지원사업 개요 .....	134
표 3-27	차세대 여성CEO 양성교육 지원사업 성과 .....	135
표 3-28	차세대 여성CEO 양성교육 참가자 현황(2013년) .....	136
표 3-29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개요 .....	136
표 3-30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현황 .....	138
표 3-31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성과 .....	139
표 3-32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 지원사업 개요 .....	139
표 3-33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개요 .....	140
표 3-34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성과 .....	141
표 3-35	여성발명진흥지원 사업 개요 .....	142

---



---

표 3-36   여성발명진흥 지원사업 성과	142
표 3-37   이공계 여성인력 창업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143
표 3-38   이공계 여성인력 창업컨설팅 지원사업 성과	144
표 3-39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사업 개요	145
표 3-40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사업 성과	146
표 3-41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지원사업 개요	147
표 3-42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성과	148
표 3-43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 지원사업 개요	149
표 3-44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사업 개요	150
표 3-45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사업 성과	151
표 3-46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지원사업 개요	152
표 3-47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지원사업 성과	153
표 3-48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실적	154
표 3-49   17개 지자체 공공구매실적	154
표 3-50   여성기업제품 전용관 운영사업 개요	156
표 3-51   여성 신진디자이너 창업관 운영사업 성과	157
표 3-52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지원사업 개요	157
표 3-53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지원사업 성과	158
표 3-54   중소기업 R&D기획역량제고사업 개요	159
표 3-55   중소기업 R&D기획역량제고사업 성과	160
표 3-56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개요	160
표 3-57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성과	161
표 3-58   창업성장 기술개발 지원사업 개요	162
표 3-59   창업성장 기술개발 지원사업 성과	163
표 3-60   여성CEO MBA 교육 지원사업 개요	163
표 3-61   여성CEO MBA 교육 지원사업 개최 현황	164
표 3-62   여성CEO MBA 교육 지원사업 지역별 개최 내역	165
표 3-63   여성CEO MBA 교육 지원사업 성과	166
표 3-64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지원사업 개요	166
표 3-65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지원사업 성과	168
표 3-66   여성CEO 멘토링 운영	168
표 3-67   여성관리자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개요	170
표 3-68   여성관리자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성과	170

---

표 3-69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사업 개요	171
표 3-70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사업 성과	172
표 3-71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 개요	172
표 3-72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 성과	173
표 3-73	지방자치단체별 여성기업 지원사업 성과	174
표 3-74	미국 WBC 현황	178
표 3-75	여성기업 관련 지원정책의 국내외 비교 분석	209
표 4-1	창업 당시 주된 롤모델 또는 멘토	224
표 4-2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의 연도별 주요 경영지표	225
표 4-3	여성대표자 사업체수 구성비	226
표 4-4	고수익 및 저수익 창업분야의 평균수익률 비교	228
표 4-5	불황기의 재택 창업유망 아이디어 15선	229
표 4-6	2014년 유망 창업아이디어	231
표 4-7	2008년 일본의 여성창업 아이템 Top 10	233
표 4-8	2009년 중국의 여성창업 유망업종	235
표 4-9	생활기업형 여성창업 적합분야	238
표 4-10	남성창업과 비교한 여성 지식기술창업 여건	242
표 4-11	창업 의사결정에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동기부여 요인	243
표 4-12	여성 적합 녹색직종 및 교육과정	245
표 4-13	창업준비 시 애로사항	246
표 4-14	실전창업스쿨 교육과정	248
표 4-15	창업교육이 필요한 주된 이유	251
표 4-16	서울시 하이서울 창업스쿨 교육과정	252
표 4-17	단계별 학습체계도(안)	253
표 4-18	창업모델 체험교육 과정(예시)	254
표 4-19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창업본부 단계별 학습체계	256
표 4-20	여성전문융합지원팀 구성(안)	259
표 4-21	여성기업인의 학력별 사업성과 비교	262
표 4-22	창업실무와 창업자 역량 교육	263
표 4-23	국내 고등학교 현황	267
표 4-24	현 사업체의 대표를 맡기 전 종사한 직업	268
표 4-25	전업주부로 창업준비 시 애로사항	269
표 4-26	여성기업융합지원센터 내 보육실수 현황	269

표 4-27   서울시 여성창업보육센터 현황 .....	270
표 4-28   국내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 .....	271
표 4-29   협동조합의 주요 내용 .....	273
표 4-30   사회적 기업 지원제도 .....	275
표 4-31   창업보육시설 및 서비스의 중요도 평가(입주 대상자 설문결과) .....	277
표 4-32   여성가장 창업자금지원 누적 현황 .....	283
표 4-33   창업자금 지원 사례 .....	284
표 4-34   NPD사업관련 각 기관별 주요 역할 .....	293
표 4-35   사업장 진단 체크리스트(예시) .....	295
표 4-36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301
표 4-37   공공기관의 유형별 현황 .....	302
표 4-38   여성기업인의 불리한 점에 대해 느끼는 정도 .....	309
표 4-39   여성경제인협회 회원으로서 기대되는 혜택(중복응답) .....	309
표 4-40   교육 및 연수참가 집단별 경영성과 비교 .....	310
표 4-41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의 성장단계별 위치 비교 .....	315
표 4-42   WBENC Southwest의 여성기업 확인 수수료 .....	327
표 4-43   한국과 미국의 여성기업 확인제도 비교 .....	328
표 4-44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향 .....	338
표 4-45   여성기업정책연구원 설립 방안 .....	342
표 4-46   조직기능 .....	343
표 4-47   여성기업 정책자금 지원실적 .....	345
표 4-48   여성기업 보증기금 지원실적 .....	346
표 4-49   정책자금 및 보증기금의 차등적 심사기준 방향 .....	348
표 4-50   여성기업 정책자금 지원실적 .....	353
표 4-51   여성기업 보증기금 지원실적 .....	353
표 4-52   정부부처 산하 여성기업 관련 단체현황 .....	357
표 4-53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법정기능 및 협회 본래의 기능 .....	359
표 4-54   회원지원팀의 주요활동(예시) .....	361
표 4-55   지역 전략 산업 및 연고 산업 .....	364
표 4-56   벤처기업협회의 가입비 및 연회비 운영사례 .....	366
표 4-57   핀란드의 여성기업 육성 체계 .....	372
표 4-58   여성기업 지원사업 성과관리 개선 .....	374
표 4-59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376

## 그림 목 차

그림 2-1	지금의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 .....	41
그림 2-2	현 사업체의 대표를 맡기 전 종사한 직업 .....	41
그림 2-3	창업준비 시 애로사항 .....	42
그림 2-4	창업 시 필요자금 조달경로 및 구성비율 .....	43
그림 2-5	창업 시 정책 자금을 지원 받지 못한 경험 .....	44
그림 2-6	창업 시 정책 자금을 지원 받지 못한 이유 .....	44
그림 2-7	초기 사업 운영 시 가장 어려웠던 점 .....	45
그림 2-8	창업지원 기관의 창업 지원 여부 .....	45
그림 2-9	창업 준비 시 관련 정보나 자문 받은 기관 .....	46
그림 2-10	여성기업의 인증 유형 .....	47
그림 2-11	여성기업 주력시장 내 시장경쟁정도 .....	50
그림 2-12	여성기업인의 강점 및 약점 .....	52
그림 2-13	여성기업체 고용인원 및 고용구조 .....	53
그림 2-14	여성기업체 업종별 성별 고용현황 .....	54
그림 2-15	여성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 .....	56
그림 2-16	2012년도 여성기업 경영지표 비교 .....	58
그림 2-17	2012년도 여성제조기업 및 일반 중소기업 경영지표 비교 .....	59
그림 2-18	경영성과에 대한 여성기업 평가 .....	60
그림 2-19	여성기업 수출 및 매출액 구성현황 .....	61
그림 2-20	여성기업의 R&D 조직 현황 .....	62
그림 2-21	여성기업의 정기적인 직원교육 제공여부 및 교육 내용 .....	63
그림 2-22	여성경영자 교육의 필요성 .....	64
그림 2-23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차별대우 .....	65
그림 2-24	남성기업 대비 여성기업인이 느끼는 경영상 불리한 부분 .....	66
그림 2-25	여성기업의 경영상 애로 분야 .....	67
그림 2-26	여성기업이 취약한 마케팅 분야 .....	67
그림 2-27	남녀 창업기회 인식 .....	79
그림 2-28	해외 남녀 창업능력인식 .....	80
그림 2-29	해외 남녀 실패의 두려움에 대한 인식 .....	81
그림 2-30	해외 생계형 vs. 기회추구형 창업활동 .....	82

---

그림 2-31   해외 남성과 여성의 초기창업활동비율 비교 .....	85
그림 2-32   해외 여성 초기창업활동비율 vs. 안정기소유경영활동 .....	86
그림 2-33   해외 남녀 사업중단 비율 .....	87
그림 2-34   해외 남녀 사업중단 이유 .....	88
그림 2-35   해외 남·여기업의 산업분포 .....	89
그림 2-36   해외 창업활동 및 비창업활동 여성의 고졸 이상 학력 .....	90
그림 2-37   기업인과의 네트워크 .....	92
그림 3-1   중소기업청 여성기업관련 지원사업 .....	107
그림 3-2   실전창업스쿨 지원사업 프로세스 .....	130
그림 3-3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원사업 프로세스 .....	133
그림 3-4   차세대 여성CEO 양성교육 지원사업 프로세스 .....	135
그림 3-5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창업보육센터 입주프로세스 .....	137
그림 3-6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프로세스 .....	141
그림 3-7   여성발명진흥 지원사업(여성발명경진대회)의 프로세스 .....	142
그림 3-8   이공계 여성인력 창업컨설팅 지원사업 프로세스 .....	144
그림 3-9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사업 프로세스 .....	146
그림 3-10   국제회의의 한국대표단 파견 지원사업 프로세스 .....	147
그림 3-11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 지원사업 프로세스 .....	150
그림 3-12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사업 프로세스 .....	151
그림 3-13   여성기업 맞춤형 입찰정보 시스템 운영 프로세스 .....	153
그림 3-14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지원사업 홍보 브로슈어 제작 프로세스 ..	153
그림 3-15   여성기업제품 전용관 운영사업 프로세스 .....	156
그림 3-16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지원사업 프로세스 .....	158
그림 3-17   중소기업 R&D기획역량제고사업 프로세스 .....	159
그림 3-18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프로세스 .....	161
그림 3-19   여성CEO MBA 교육 지원사업 프로세스 .....	164
그림 3-20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지원사업 프로세스 .....	167
그림 3-21   여성CEO 멘토링 진행절차 .....	169
그림 3-22   여성관리자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프로세스 .....	170
그림 3-23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사업 프로세스 .....	171
그림 3-24   고급연구인력 활용 지원사업 프로세스 .....	173

---

---

그림 4-1	신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	214
그림 4-2	여성기업 발전과제와 전략	216
그림 4-3	OECD 주요 국가의 여성창업 의향률 현황(2010년)	221
그림 4-4	생활기업형 여성창업 표준모델 발굴 및 창업촉진 프로세스	241
그림 4-5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창업스쿨 교육체계도	255
그림 4-6	청년창업사관학교 거점	257
그림 4-7	여성창업사관학교 운영방안	260
그림 4-8	여대생 창업멘토링 추진 프로세스	266
그림 4-9	사회적 기업가의 성별비율	276
그림 4-10	여성가장 창업자금 신청 동기	279
그림 4-11	여성가장의 창업준비 시 애로사항	279
그림 4-12	여성가장 창업자금의 필요성	280
그림 4-13	여성가장의 창업자금 조달경로 종합	280
그림 4-14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제도의 개선점(중복응답)	282
그림 4-15	여성가장의 창업 후 손익분기점 도달기간	282
그림 4-16	여성가장의 창업자금 희망하는 적정 대출금액	283
그림 4-17	여성가장 창업자금지원 누적 현황	286
그림 4-18	기업활동 애로사항	288
그림 4-19	여성기업의 마케팅 능력 취약성	289
그림 4-20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필요분야	290
그림 4-21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Platform 전략	291
그림 4-22	NPD 지원사업 추진 프로세스	293
그림 4-23	서비스 리노베이션 지원사업 추진 프로세스	294
그림 4-24	공공기관의 의무구매에 대한 인식과 구매활용 현황	296
그림 4-25	그 공공기관 납품 경험 없는 이유	296
그림 4-26	공공기관 구매 입찰시 애로사항	297
그림 4-27	공공기관 여성기업제품 구매실적 추이	297
그림 4-28	공공구매 MAS 지원사업 추진 프로세스	300
그림 4-29	중소기업 융복합 세미나 추진 프로세스	311
그림 4-30	여성CEO 교육 추진 프로세스	313
그림 4-31	멘토링 추진 프로세스	314
그림 4-32	여성기업 건강수준별 맞춤형 지원 프로세스	316

---

---

그림 4-33   사업전환 촉진 프로세스 .....	317
그림 4-34   우리나라의 여성기업확인 신청절차 .....	325
그림 4-36   일반중소기업 대비 여성기업인의 불리한 정도 .....	344
그림 4-37   정부정책 및 자금활용시 애로사항과 지원요구사항 .....	344
그림 4-38   산업별 취업자구성과 취업계수 추이 .....	349
그림 4-39   창업초기 자금조달처와 애로사항 .....	349
그림 4-40   여성 창업활성화 생태계 시스템 .....	351
그림 4-41   여성전용창업펀드의 운영 및 지원체계 .....	352
그림 4-42   공제조합 조직도 .....	354
그림 4-43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추이 및 운용자산 현황 .....	356
그림 4-44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현 조직도 .....	360
그림 4-45   연령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 2030노동력규모 추계 .....	367
그림 4-46   한국여성기업단체 협의회 구성과 운영 (예시) .....	368





## 2013 여성기업 백서

---

발행인 : 이 민 재

발행일 : 2014년 2월

발행처 : 중소기업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기획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연구조사팀

인쇄 : 청산기획사 (02-2275-9474)

본 책의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중소기업청에 있습니다. 아울러 책의 내용에 대한 무단전재를 금하며, 가공·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중소기업청·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4 여성기업 백서」라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